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워크숍

- 일시 : 2013년 9월 27일(금) 10:00 ~ 13:00
-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CONTENTS

1. 일반조치 및 일반원칙	
● 실태 분석 :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 정책 제언 : 정 병 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3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실태 분석 : 김 영 지,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74
● 정책 제언 : 김 영 인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05
3.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 실태 분석 : 김 지 혜 (남서울대학교 교수)	121
● 정책 제언 :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51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실태 분석 : 김 지 혜 (남서울대학교 교수)	171
● 정책 제언 : 홍 나 미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241



5.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 실태 분석 : 이 민 희 (평택대학교 교수) 257



6. 특별보호조치

- 실태 분석 :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 토 론 : 이 승 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57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6개, 중분류 28개, 소분류 50개, 지표항목 145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1.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1-1. 인권 일반(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1-1-1-1.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복지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여가부 : 청소년희망센터 인권위 : 진정, 상담, 결정례	
			1-1-1-2.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복지부 : 아동복지예산 여가부(2013), 2013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1-1-2. 인권의식	1-1-2-1. 인권감수성과 태도*	중등용: 문 46.1)~4)* 초등용: 문 38.*	
			1-1-2-2.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중등용: 문 47.1)~2), 3)~7)* (초등 제외 문 47.3), 5)) 초등용: 문 39.*	
			1-1-2-3.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중고용: 문 51.* 초등용: 문 42.*	
			1-1-2-4. 인권 관련 협약, 기구에 대한 인지도*	중등용: 문 43.1)~3)* 초등용: 문 35.*	
		1-2. 일반 원칙(제2조, 제3조)	1-2-1. 차별금지	1-2-1-1. 차별경험*	중등용: 문 45.1)~8) 초등용: 문 37.
				1-2-1-2. 차별의식 및 태도*	중등용: 문 18.1)~4) 초등용: 문 16.
		1-2-2. 아동이의 최우선의 원칙	1-2-2-1. 아동·청소년 이의의 우선 고려 노력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제8조)	2-1-1. 국적 및 신분	2-1-1-1. 출생신고율	경찰청 : 영아유기율
2-2. 의견 표명권 (제12조),		2-2-1. 가정에서의 참여	2-2-1-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중등용: 문 21.1)~4) (초등 제외 문 21.2)) 초등용: 문 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표현의 자유 (제13조)	2-2-2. 학교에서의 참여		2-2-2-1.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 결정권 보장정도*	중등용: 문 37.1) (초등 제외)
			2-2-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중등용: 문 37.2) 초등용: 문 32.
			2-2-2-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중등용: 문 35.1)~3) (초등 제외)
			2-2-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중등용: 문 36. (초등 제외)
	2-2-3. 사회 참여		2-2-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청소년자료집 -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채택율
			2-2-3-2.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청소년자료집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복지부(2012). 아동총회 현황 중등용: 문 38. (초등 제외)
			2-2-3-3.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중등용: 문 40. (초등 제외)
			2-2-3-4. 참여권 보장 수준*	중등용: 문 41. 초등용: 문 33.
			2-2-3-5. 참여의 장애*	중등용: 문 42. 초등용: 문 34.
	2-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3-1. 양심적 병역 거부	2-3-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병무청, 연도별 병역거부자 현황
		2-3-2.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2-3-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중등용: 문 37.3) (초등 제외)
	2-4.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4-1. 결사·집회	2-4-1-1. 결사·집회 경험률*	중등용: 문 39.1)~3) (초등 제외)
2-5. 사생활의 보호(제16조)	2-5-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2-5-1-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중등용: 문 34.1)~3) (초등 제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2-5-2. 학생 정보 보호	2-5-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정도*	중등용: 문 37.4) (초등 제외))	
			2-5-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중등용: 문 37.5) 초등용: 문 32.	
			2-5-2-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중등용: 문 37.6) 초등용: 문 32.	
	2-6. 정보접근권 (제17조)	2-6-1. 매체에 대한 접근		2-6-1-1. 매체 이용률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2-6-1-2. 유해매체 이용률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6-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대한출판문화협회(2012, 2013). 출판통계 재구성
				2-6-1-4. 어린이도서관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도서관통계→공공도서관 총괄 표(2011)
				2-6-1-5.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6-2. 알권리		2-6-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중등용: 문 37.7) 초등용: 문 32.
				2-6-2-2.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중등용: 문 44.1)~3) 초등용: 문 36.
		2-7.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2-7-1. 체벌	2-7-1-1. 체벌 경험률*	중등용: 문 24.1)~4), 문 24-1.1)~2)
			2-7-2. 정서적 학대	2-7-2-1.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초등용: 문 22. 문 22-1.
			2-7-3. 청소년 폭력	2-7-3-1. 폭력피해 경험*	중등용: 문 25.1)~6) 초등용: 문 23.
	2-7-3-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중등용: 문 26.1)~5) 초등용: 문 24.			
	3.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3-1-1. 보호시설	3-1-1-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결과보고서
3-1-1-2. 보육시설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3.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3-1-1-4.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재구성	
			3-1-1-6.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통계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3-1-2. 부모와의 관계	3-1-2-1. 부모와의 대화시간	3-1-2-1. 부모와의 대화시간	여성가족부(2012). 2011청소년종합실태조사결과 보고서
				3-2-1-1. 가출청소년 비율	경찰청(2012). 2012 경찰백서
	3-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3-2-1. 가출청소년, 소년소녀 가정		3-2-1-2. 가출 시 이유와 서비스 이용 경험*	중등용: 문 23. 23-1. 23-2. (초등 제외) 초등용: 문 21. 문 21-1
				3-2-1-3.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여성가족부(2012). 2012청소년백서
				3-2-1-4. 소년소녀가정 현황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3-2-2. 대안적 양육	3-2-2-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3-3. 입양(제21조)	3-3-1. 입양	3-3-1-1. 국내·외 입양 현황	보건복지부(2012). 2011 보건복지백서	
3-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및 제39조)	3-4-1. 학대·방임		3-4-1-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보건복지부(2012). 2011 보건복지백서	
			3-4-1-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4-1-3. 방임 경험률*	중등용: 문 22.1)~5) 초등용: 문 22.1)~4)	
3-5.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3-5-1. 보호기관 심사	3-5-1-1. 아동복지시설 평가등급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사회복지시설평가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4-1. 장애 (제23조)	4-1-1. 장애아동·청소년 보호	4-1-1-1.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4-1-1-2. 장애 청소년 취업률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4-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4-2-1. 생존과 발달 보장	4-2-1-1. 15-19세 출산율	4-2-1-1. 15-19세 출산율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출생편)
			4-2-1-2. 0세의 기대여명	통계청(각년도). 생명표
			4-2-1-3. 영아 사망률	통계청(각년도).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통계조사
			4-2-1-4. 아동·청소년 사망률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4-2-1-5. 사고 사망률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4-2-1-6. 자살률*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중등용: 문 8. (초등 제외) 문 8-1. (초등 제외)
			4-2-1-7. 고민거리 대화 상대*	중등용: 문 9. 초등용: 문 8.
			4-2-1-8. 범죄 피해건수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홍영오(2008) 재구성
			4-2-1-9.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중등용: 문 50.2) 초등용: 문 41.2)
			4-2-1-10.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중등용: 문 50.1) 초등용: 문 41.1)
4-3. 보건서비스 (제24조)	4-3-1. 건강관리 조치	4-3-1-1. 보건교사배치현황	4-3-1-1. 보건교사배치현황	교육부(2013). 2013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4-3-1-2. 의료급여 대상자 수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4-3-1-3. 학교급식 만족도*	중등용: 문 4. 초등용: 문 4.
			4-3-1-4. 학교급식 안전 현황	통계청·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통계
4-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제24조)	4-4-1. 건강 평가 및 관심도	4-4-1-1. 주관적 건강평가*	4-4-1-1. 주관적 건강평가*	중등용: 문 6. 초등용: 문 6.
			4-4-2. 신체적 건강	4-4-2-1. 운동실천율*
	4-4-2-2. 아침식사 결식률*	중등용: 문 3. 문 3-1. 초등용: 문 3. 문 3-1.		
	4-4-2-3. 수면시간*	중등용: 문 1. 문 2.* 문 2-1.* 초등용: 문 1. 문 2.* 문 2-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4-4-2-4. 비만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1국민건강통계
			4-4-2-5. 청소년 유병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1국민건강통계
		4-4-3. 정서적 안정	4-4-3-1. 우울증 지수*	중등용: 문 10.1)~3) 초등용: 문 9.1)~3)
			4-4-3-2.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중등용: 문 7.1)~6) 초등용: 문 7.1)~6)
			4-4-3-3. 자아존중감*	중등용: 문 10.4)~7) 초등용: 문 9.4)~7)
			4-4-3-4. 행복도*	중등용: 문 11. 문 11-1. 초등용: 문 10. 문 10-1.
	4-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4-5-1. 성교육	4-5-1-1. 성교육 경험률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4-6. 약물남용 방지 대책 (제33조)	4-6-1. 예방교육	4-6-1-1.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4-6-2. 음주,흡연			4-6-2-1. 흡연율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4-6-2-2. 음주율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4-7.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4-7-1.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4-7-1-1. 빈곤율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4-7-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4-7-2. 사회보장		4-7-2-1. 아동급식지원현황	보건복지부(2012). 2011 보건복지백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서비스 내용	4-7-2-2.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2). 전국지역 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4-7-2-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4-7-2-4.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4-7-2-5. 아동발달계좌 개설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5-1. 교육 에의 권리 (제28조)	5-1-1. 교육의 기회	5-1-1-1. 취학률	KEDI 통계(2012)	
			5-1-1-2. 진학률	KEDI 통계(2012)	
			5-1-1-3. 학업중단율*	중등용: 문 14. 문 14-1. 문 15.(초등 제외) 초등용: 문 13. 문 13-1.	
			5-1-1-4. 학교부적응*	중등용: 문 16,* 문 17.* 초등용: 문 14.* 문 15.*	
			5-1-1-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KEDI 및 통계청 통계(2012)	
			5-1-1-6. 사교육 경험률*	중등용: 문 12. 초등용: 문 11.	
			5-1-1-7. 교원 1인당 학생 수	KEDI 통계(2012)	
			5-1-1-8. 대안학교 수와 종류	KEDI 통계(2012)	
			5-1-1-9. 방과후학교 운영수	KEDI 통계(2012)	
		5-1-1-8. 하루 평균 학습시간*	중등용: 문 13. 초등용: 문 12.		
		5-1-2. 진로교육 기회	5-1-2-1. 진로교육 체계	KEDI 통계(2012) 및 연구보고서	
			5-1-2-2.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	KEDI 통계(2012)	
		5-2. 교육의 목표 (제29조)	5-2-1. 학교의 의미와 기능	5-2-1-1.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인식	중등용: 문 19.* 초등용: 문 17.*
			5-2-2.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5-2-2-1. 인권교육 경험	중등용: 문 20.1),3)* 문 20-1.1),3)* 문 20-2.* 초등용: 문 18.* 문 18-1.* 문 18-2.*
				5-2-2-2. 학교 규율의 아동·청소년 인권 반영 정도	KEDI 통계(2012) 및 연구보고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5-2-2-3.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교원의 UN아동권리 협약 준수 노력 정도	KEDI 통계(2012) 및 연구보고서	
		5-2-3. 다문화 및 자연환경 이해	5-2-3-1.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교육 현황	중등용: 문 20.2)* 문 20-1.2)* 초등용: 문 18.* 문 18-1.*	
			5-2-3-2. 자연환경 교육 경험	KEDI(2012) 통계	
	5-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5-3-1.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5-4-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문화관광체육부 통계 및 문화관광정책연구원 통계(2012)	
			5-4-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중등용: 문 27.* 문 27-1.* 초등용: 문 25.* 문 25-1.*	
			5-4-1-3.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중등용: 문 28. 초등용: 문 26.	
			5-4-1-4.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청소년백서(2012)	
			5-4-1-5.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중등용: 문 29. 초등용: 문 27.	
			5-4-1-6. 휴일을 보내는 방법*	중등용: 문 30. 초등용: 문 28.	
			5-4-1-7. 여가활동 만족도		
		5-3-2. 아동·청소년활동	5-4-2-1.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중등용: 문 31. 초등용: 문 29.	
			5-4-2-2. 동아리 활동 참가율*	중등용: 문 32. 초등용: 문 30.	
			5-4-2-3.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정도*	중등용: 문 33.1)~2)* 초등용: 문 31.*	
		5-3-3.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 활동 권리	5-3-3-1.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 및 여가 활동 기회 제공 여부	청소년백서(2012) 및 통계청 통계(2012)	
6. 특별 보호 조치		6-1. 난민아동 (제22조)	6-1-1. 난민아동	6-1-1-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법무부(2013.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요청자료
				6-1-1-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법무부(2013.7.). 통일부 정착지원과 요청자료
	6-1-1-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1-1-4.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교육과학기술부(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6-2. 무력분쟁하의 아동 (제38조),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 (제39조)	6-2-1.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6-2-1-1. 아동의 무력분쟁 관련 국제조약 준수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준수를 위한 국내 법·제도 및 정책
	6-3. 법에 저촉된 아동	6-3-1. 소년사법	6-3-1-1. 소년범죄자 구성비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1-2.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1-3. 소년범죄 처리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1-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1-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2.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나, 라), 사형 및 중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 (제37조 가)		6-3-2-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2-2.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2-3.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2-4.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2-5.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2-6.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4. 착취 상황하의 아동(제32조, 제34조, 제39조)	6-4-1. 경제적 착취	6-4-1-1.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4-1-2.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4-1-3.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고용노동부(2012.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6-4-1-4.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중등용: 문 48, 문 48-1. (초등제외)	
	6-4-2. 성적 착취	6-4-2-1. 청소년 성매매 검거 인원 및 조치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중등용: 문 49. 문 49-1.* 문 49-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생산방법
				초등용: 문 40. 문 40-1.* 문 40-2.
			6-4-2-3.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6-4-2-4.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현황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1. 일반조치 및 일반원칙 실태 분석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일반(제4조, 제42조)

(1) 지표의 현황

① 인권인프라

가.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종합적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9개 유관부처 장관과 15명 이내의 아동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 아동정책 관련 주요 사안들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법 제10조 제2항),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단위 주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기대 받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 부진과 적절한 권한과 지원 자원(예산, 인력 등) 부재 등으로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민간집단들의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 재개 노력을 하였으나, 2013년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표 III-1-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연도별 추진현황(2004~2007)

일시		추진내용
2004	11.15	제1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12.15	제1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05	04.27	제2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05.03	국무회의의 아동정책 추진상황 보고
	11.24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과장직회의
	12.02	제3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12.14	제2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12.28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위원의 간담회 개최
2006	03.1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분과회의의 개최
	04.21	제4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07.20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권리분과 회의 개최
	11.24	제5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12.13	제3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서면회의)
2007	11.16	제6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11.30	제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2). 2012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2) p.109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¹⁾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수준 및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06년 설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최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영되다가 2012년 3월부터 유엔경제이사회(ECOSOC)에서 국내 최초로 포괄적 협의지위를 부여받는 NGO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촉에 의해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제1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21명 및 키즈 10명, 2008년에는 제2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10명 및 키즈 10명이 활동하였으며, 2012년 6월 제3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51명 및 키즈 36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1)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한유정 팀장) 제공 내부자료 및 2012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성함.

옴부즈퍼슨은 협약 이행 준수 의무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센터에서는 옴부즈퍼슨의 활동을 바탕으로 법, 정책,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청한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 수집,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 감시, 법·정책·서비스 개선 촉구, 아동권리 및 협약에 대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2012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2013년 3월 15일 위탁기관 선정) 총 169,300,000원(보조금 100,000,000원, 자부담 69,300,000원)의 예산으로 총 3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계약직 연구원 1명)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III-1-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년도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12년 예산(3월~12월)		
	보조금	자부담	계
합계	100,000	69,300	169,300
인건비(4월~12월)	28,935	66,600	95,535
사업비	64,700	-	64,700
시설비	4,850	-	4,850
운영비	1,515	2,700	4,215

* 출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내부자료.

2013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92,292,000원(보조금 100,000,000원, 자부담 92,292,000원)의 예산으로 총 4명(계약직 연구보조원 1명 추가)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I-1-3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년도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13년 예산		
	보조금	자부담	계
합계	100,000	92,292	192,292
인건비	42,024	88,692	130,716
사업비	56,000	-	56,000
시설비	240	-	296
운영비	1,736	3,600	5,040

* 출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내부자료.

○ 청소년희망센터

청소년희망센터는 2011년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설치된 청소년권리 전담기구이다. 2012년도 예산은 185,291,270원(집행액 179,478,930원)이었으며, 운영인력은 4명이다.

표 III-1-4 청소년희망센터 운영인력 및 담당업무

직급	담당업무
센터장(겸직)	-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총괄·조정
실장	- 세부 실행 사업계획 수립 - 기획과제 발굴 및 실태조사 - 토론회 기획 및 진행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 홍보 사업 기획 및 추진
팀장	- 기획과제 발굴 및 실태조사 - 토론회 기획 및 진행 - 모니터링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권리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홍보사업 실무, 실적관리 등
담당	- 지도자 대상 청소년권리교육 세부 추진 및 기관 연계 - 홍보 및 실적관리 등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2012년 청소년 희망센터 사업결과 보고 p.3

2012년도에 추진한 청소년희망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권리 실태 및 욕구조사 및 토론회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 권리 교육(권역별 순회교육,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 전문가 양성 워크숍 등), 청소년권리모니터링단(청소년희망목소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모니터링, 청소년권리 체험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청소년 권리침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가이드북 제작(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4) 등이 있다.

나.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다양한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중심으로 0세부터 18세 미만 사이 아동·청소년 연령과 관련이 깊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 아동복지(보육 포함) 예산, 청소년사업 예산 등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2013년도 아동·청소년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523,623천원, 아동복지(보육 포함) 4,370,406,000천원, 청소년 57,527,000천원 등 총 4,469,456,623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1,146,171,462천원 증가하였다.

표 III-1-5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단위: 천원, 천명)

구 분		2012	2013	증 △ 감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유아 및 초중등 교육	38,804,798	41,523,623	2,718,825
	아동복지(보육포함)	3,237,045,546	4,370,406,000	1,133,360,454
	청소년	47,434,817	57,527,000	10,092,183
	계	3,323,285,161	4,469,456,623	1,146,171,462
아동·청소년인구(0~18세 미만)		10,276	10,019	-257
1인당 지출비용		323	446	

* 출처: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pp. 116~119, 271~272, 277~278, 317~319,

* 출처: e-나라지표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97/원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2013년도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예산구성 세부항목을 제시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아동복지(보육 포함)' 예산은 1300항 요보호아동+1400항 아동복지+3100항 보육지원+1000항 복지부의 아동·청소년정책 예산, '청소년' 예산은 21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2200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등이다.

표 III-1-6 2013년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관련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예산 ³⁾				과제수
	'12년	'13년	증감	%	'13년 시행계획
계	3,712,224	5,448,853	1,736,629	46.8	253
여성가족부	331,643	420,107	88,464	26.7	86
방송통신위원회	3,303	4,622	1,319	39.9	3
국가보훈처	2,784	2,676	-108	-3.9	1
식품의약품안전처	785	823	38	4.8	1
국민권익위원회	542	645	103	19.0	1
교육부	2,110,105	3,147,357	1,037,252	49.2	38
외교부	3,627	3,475	-152	-1.7	12
통일부	1,900	1,900	-	-	2
법무부(대검찰청포함)	836	2,269	1,443	174.7	17
국방부	-	-	-	-	1
안전행정부	146,563	174,491	27,928	19.1	8
문화체육관광부	175,925	295,649	119,724	68.1	23
고용노동부	507,590	602,529	94,939	18.7	8
농림축산식품부	41,223	36,510	-4,713	-11.4	4
산업통상자원부	3,869	2,461	-1,408	-36.4	5
보건복지부	290,744	377,947	47,203	16.2	17
환경부	4,531	5,810	1,279	28.2	1
국토교통부	30,740	308,420	277,680	903.3	4
경찰청	11,130	30,967	19,837	178.2	8
소방방재청	4,646	14,900	10,254	220.7	1
문화재청	918	994	76	8.3	7
농촌진흥청	1,292	1,780	488	37.8	1
산림청	10,960	15,587	4,627	42.2	1
중소기업청	16,850	27,045	10,195	60.5	2
특허청	9,728	9,889	161	1.7	1

* 출처: 여성가족부(201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p. 28.

3)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표 III-1-7 2013년도 지자체별 청소년정책관련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합계	국비보조금	지자체 자체예산			사업수
			소계	지방비	기타	
서울	112,108	5,973	106,135	106,135	-	38
부산	21,241	11,900	9,341	9,341	-	45
대구	7,730	3,144	4,586	4,586	-	47
인천	15,263	5,550	9,713	9,713	-	38
광주	6,486	3,279	3,207	3,207	-	35
대전	25,448	2,214	23,234	23,234	-	21
울산	8,408	4,070	4,338	4,338	-	31
세종	9,015	7,808	1,207	1,207	-	28
경기	57,253	24,311	32,942	32,672	270	82
강원	18,642	11,552	7,090	7,090	-	47
충북	14,774	6,224	8,550	8,550	-	31
충남	16,059	7,561	8,498	8,498	-	39
전북	18,001	8,711	9,290	9,290	-	49
전남	21,066	12,062	9,004	9,004	-	33
경북	68,375	7,060	61,315	61,306	11	79
경남	12,570	6,883	5,687	5,687	-	20
제주	8,212	4,269	3,943	3,943	-	55
총계	440,651	132,571	308,080	307,799	281	718

* 출처: 여성가족부(201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p. 13.

② 인권의식

가. 인권감수성과 태도

인권감수성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 ‘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인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6.9%(그런 편이다 57.1%, 매우 그렇다 19.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3.2%(그렇지 않은 편이다 18.7%, 전혀 그렇지 않다 4.5%)로 나타나 10명 중 2명은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77.0%)이 남학생(76.9%)보다, 초등학생(86.1%)이 고등학생과 중학생(74.8%, 71.0%)보다, 중소도시 아동·청소년(77.7%)이 대도시와 읍면지역 아동·청소년(76.3%, 75.9%)보다, 학업성적이 중간인 아동·청소년(79.8%)이 높거나(78.3%) 낮은(71.0%) 아동·청소년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80.1%, 중 76.5%, 하 69.6%)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1-8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5	18.7	57.1	19.8	100.0(9,512)	
성별	남자	6.2	17.2	56.6	20.0	100.0(4,981)	457.864***
	여자	2.6	20.3	57.5	19.5	100.0(4,5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9	10.0	50.4	35.7	100.0(2,825)	336.689***
	중학교	6.2	22.8	58.2	12.8	100.0(3,278)	
	고등학교	3.2	21.9	61.4	13.4	100.0(3,409)	
지역 규모	대도시	4.1	19.7	57.1	19.2	100.0(3,940)	38.979***
	중소도시	4.7	17.6	56.7	21.0	100.0(4,393)	
	읍면지역	4.8	19.4	58.4	17.5	100.0(1,179)	
학업 성적	상	3.6	18.1	53.2	25.1	100.0(2,847)	38.679***
	중	3.5	16.7	60.2	19.6	100.0(3,999)	
	하	6.8	22.2	56.7	14.3	100.0(2,650)	
경제적 수준	상	4.3	15.7	54.7	25.4	100.0(4,315)	26.177***
	중	4.2	19.3	60.1	16.4	100.0(3,531)	
	하	5.3	25.1	57.0	12.6	100.0(1,656)	

* p<0.05, ** p<0.01, *** p<0.001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56.3%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44.6%, 매우 그렇다 11.7%)고 응답하여 절반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 인권 관련 단체나 모임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61.5%)이 남학생(51.6%)보다, 초등학생(63.0%)이 고등학생(56.3%)과 중학생(50.6%)보다, 대도시 아동·청소년(57.1%)이 읍면지역(57.0%)과 중소도시 아동·청소년(55.4%)보다,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57.1%)이 한부모가정(48.6%)과 조손가정(49.2%) 아동·청소년보다, 학업성적(상 61.1%, 중 58.0%, 하 48.6%)과 경제적 수준(상 59.9%, 중 54.8%, 하 50.5%)이 높을수록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1-9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한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2.8	30.9	44.6	11.7	100.0(9,504)	
성별	남자	16.7	31.8	40.6	11.0	100.0(4,978)	36.701***
	여자	8.6	29.9	49.0	12.5	100.0(4,5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0	25.9	44.6	18.4	100.0(2,821)	69.169***
	중학교	16.0	33.4	42.1	8.5	100.0(3,277)	
	고등학교	11.2	32.5	47.0	9.3	100.0(3,407)	
지역 규모	대도시	12.5	30.3	44.9	12.2	100.0(3,938)	25.595**
	중소도시	12.9	31.7	43.6	11.8	100.0(4,387)	
	읍면지역	13.5	29.6	47.3	9.7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2	30.7	45.2	11.9	100.0(8,495)	26.429***
	한부모가정	17.3	34.2	38.5	10.1	100.0(757)	
	조손가정	22.2	28.6	39.8	9.4	100.0(80)	
	기타	16.7	24.4	45.5	13.4	100.0(153)	
학업 성적	상	10.5	28.4	45.1	16.0	100.0(2,844)	44.621***
	중	11.6	30.3	47.2	10.8	100.0(3,997)	
	하	17.1	34.4	40.2	8.4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12.1	28.0	44.9	15.0	100.0(4,311)	127.403***
	중	12.9	32.3	45.6	9.2	100.0(3,529)	
	하	14.3	35.2	42.0	8.5	100.0(1,653)	

* p<0.05, ** p<0.01, *** p<0.001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에 대해 86.8%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49.6%, 매우 그렇다 37.2%)고 응답하여 90%에 가까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3.3%(그렇지 않은 편이다 8.3%, 전혀 그렇지 않다 5.0%)로 10명 중 1명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3.1%)이 남학생(80.9%)보다, 고등학생(89.4%)이 초등학생(87.8%)과 중학생(83.1%)보다, 대도시 아동·청소년(87.2%)이 읍면지역(86.5%)과 중소도시(86.3%) 아동·청소년보다,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87.1%)이 한부모가정(83.9%)과 조손가정(82.0%) 아동·청소년보다, 학업성적(상 89.3%, 중 87.6%, 하 82.9%)과 경제적 수준(상 87.9%, 중 86.0%, 하 85.5%)이 높을수록 어려운 이웃의 아픔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일반/특목/자율고)고등학생(90.3%)이 특성화고등학생(85.2%)에 비해 공감하는 정도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5.0	8.3	49.6	37.2	100.0(9,510)	
성별	남자	7.7	11.4	52.2	28.7	100.0(4,981)	39.801***
	여자	2.0	4.8	46.7	46.4	100.0(4,5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4.4	7.9	42.9	44.9	100.0(2,824)	93.104***
	중학교	6.8	10.1	54.1	29.0	100.0(3,277)	
	고등학교	3.7	6.9	50.8	38.6	100.0(3,409)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4.4	7.9	42.9	44.9	100.0(2,824)	16.509*
	중학교	6.8	10.1	54.1	29.0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3.2	6.5	50.5	39.8	100.0(2,799)	
	특성화고	6.1	8.6	52.3	32.9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4.6	8.2	47.6	39.6	100.0(3,941)	83.971***
	중소도시	5.3	8.3	50.7	35.6	100.0(4,391)	
	읍면지역	5.0	8.4	51.8	34.7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8	8.1	49.7	37.4	100.0(8,500)	112.513***
	한부모가정	6.1	10.1	49.4	34.5	100.0(758)	
	조손가정	10.2	7.8	43.1	38.9	100.0(80)	
	기타	7.3	9.7	45.2	37.8	100.0(153)	
학업 성적	상	3.9	6.8	44.9	44.4	100.0(2,846)	35.387***
	중	4.2	8.2	51.4	36.2	100.0(3,999)	
	하	7.2	9.9	51.9	31.0	100.0(2,650)	
경제적 수준	상	4.6	7.4	46.2	41.7	100.0(4,313)	93.831***
	중	5.3	8.8	54.5	31.5	100.0(3,531)	
	하	5.1	9.5	48.1	37.4	100.0(1,656)	

* p<0.05, ** p<0.01, *** p<0.001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1%(그렇지 않은 편이다 33.3%, 전혀 그렇지 않다 17.8%), ‘그렇다’는 응답이 48.8%(그런 편이다 40.4%, 매우 그렇다 8.4%)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으나 과반수에 가까운 48.8%의 학생들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50.5%)이 남학생(47.7%)보다, 중학생(53.4%)이 일반계고등학생(51.6%)과 특성화고등학생(43.7%), 그리고 초등학생(42.0%)보다, 대도시에 살수록(대도시 50.0%, 중소도시 48.3%, 읍면지역 47.2%),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49.1%)이 한부모가정(47.6%)과 조손가정(44.1%) 아동·청소년보다,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청소년(50.3%)이 낮거나(48.4%) 중간인 아동·청소년(48.1%)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50.4%)이 낮거나(48.3%) 중간인 아동·청소년(47.2%)보다 폭력피해 청소년이 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7.8	33.3	40.4	8.4	100.0(9,503)	
성별	남자	20.0	32.2	38.2	9.5	100.0(4,975)	78.731***
	여자	15.4	34.5	42.8	7.2	100.0(4,528)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26.8	31.3	31.1	10.9	100.0(2,818)	15.867***
	중학교	15.6	31.0	45.5	7.9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11.3	37.0	44.7	6.9	100.0(2,798)	
	특성화고	17.8	38.5	36.5	7.2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17.3	32.8	41.5	8.5	100.0(3,938)	309.189***
	중소도시	18.3	33.4	39.3	9.0	100.0(4,388)	
	읍면지역	18.0	34.9	40.8	6.4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5	33.5	40.6	8.4	100.0(8,494)	28.5***
	한부모가정	18.5	33.9	39.0	8.6	100.0(758)	
	조손가정	34.4	21.5	33.7	10.4	100.0(79)	
	기타	23.8	27.3	40.4	8.5	100.0(153)	
학업 성적	상	17.1	32.6	40.7	9.6	100.0(2,843)	782.793***
	중	17.8	34.1	40.3	7.8	100.0(3,997)	
	하	18.6	32.9	40.3	8.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18.7	30.9	39.8	10.6	100.0(4,310)	69.62***
	중	18.2	34.6	40.7	6.5	100.0(3,528)	
	하	14.8	36.9	41.5	6.8	100.0(1,654)	

* p<0.05, ** p<0.01, *** p<0.001

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1.7%(그런 편이다 26.9%, 매우 그렇다 4.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8.3%(그렇지 않은 편이다 41.9%, 전혀 그렇지 않다 26.4%)로 나타나, 70%에 가까운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의 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34.5%)이 여학생(28.7%)보다 초등학교(44.1%)이 일반계고등학교(27.1%)와 중학생(26.5%),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23.8%)보다, 대도시 아동·청소년(32.7%)이 읍면지역(31.8%)과 중소도시 아동·청소년(30.8%)보다, 조손가정 아동·청소년(40.1%)이 양부모가정(31.9%)과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29.3%)보다, 학업성적이 중간인 아동·청소년(33.7%)이 성적이 높거나(32.4%) 낮은 아동·청소년(28.1%)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36.2%, 중 29.6%, 하 24.7%) 청소년의 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4	41.9	26.9	4.8	100.0(9,503)	
성별	남자	28.0	37.5	29.0	5.5	100.0(4,973)	84.308***
	여자	24.6	46.7	24.7	4.0	100.0(4,530)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25.0	30.9	33.3	10.8	100.0(2,820)	22.782**
	중학교	29.0	44.5	23.5	3.0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23.7	49.2	25.4	1.7	100.0(2,796)	
	특성화고	30.9	45.2	22.8	1.0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25.8	41.5	27.5	5.2	100.0(3,939)	28.254***
	중소도시	26.8	42.3	26.1	4.7	100.0(4,386)	
	읍면지역	26.9	41.2	28.1	3.7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0	42.1	27.2	4.7	100.0(8,495)	170.099***
	한부모가정	29.1	41.6	23.8	5.5	100.0(756)	
	조손가정	42.3	17.6	34.9	5.2	100.0(80)	
	기타	26.3	43.5	21.5	8.6	100.0(153)	
학업 성적	상	25.7	41.9	27.2	5.2	100.0(2,846)	163.06***
	중	24.6	41.7	28.1	5.6	100.0(3,994)	
	하	29.8	42.1	24.8	3.3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25.5	38.3	29.8	6.4	100.0(4,311)	140.861***
	중	26.5	43.9	25.5	4.1	100.0(3,525)	
	하	28.3	47.0	22.6	2.1	100.0(1,656)	

* p<0.05, ** p<0.01, *** p<0.00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0.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57.6%, 매우 그렇다 22.5%)’고 응답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일반계고등학생(86.1%), 초등학생(79.4%), 특성화고등학생(76.8%), 중학생(76.4%) 순으로, 대도시(81.0%), 읍면지역(80.9%), 중소도시 아동·청소년(79.2%) 순으로, 양부모가정(80.9%), 한부모가정(76.4%),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2.9%) 순으로, 학업성적(상 84.9%, 중 80.6%, 하 74.4%)과 경제적 수준(81.0%, 중 79.4%, 하 79.4%)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10명중 3명의 초등학생(29.9%)이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2	12.7	57.6	22.5	100.0(9,495)	
성별	남자	10.3	15.6	53.2	20.9	100.0(4,970)	9.6
	여자	3.9	9.4	62.5	24.2	100.0(4,525)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7.5	13.2	49.5	29.9	100.0(2,815)	64.089***
	중학교	9.3	14.4	58.2	18.2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4.4	9.5	64.9	21.2	100.0(2,795)	
	특성화고	7.9	15.4	59.3	17.5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7.2	11.9	57.8	23.2	100.0(3,932)	197.031***
	중소도시	7.5	13.4	56.5	22.7	100.0(4,387)	
	읍면지역	6.5	12.6	61.6	19.3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7	12.4	58.1	22.8	100.0(8,489)	54.827***
	한부모가정	9.6	14.0	56.4	20.0	100.0(755)	
	조손가정	22.5	14.7	47.2	15.7	100.0(80)	
	기타	12.4	19.9	46.6	21.1	100.0(153)	
학업 성적	상	5.3	9.7	55.3	29.6	100.0(2,842)	117.277***
	중	6.3	13.0	59.8	20.8	100.0(3,993)	
	하	10.4	15.2	57.1	17.3	100.0(2,646)	
경제적 수준	상	7.2	11.7	55.2	25.8	100.0(4,303)	125.75***
	중	7.2	13.4	60.4	19.0	100.0(3,525)	
	하	7.2	13.4	58.2	21.2	100.0(1,656)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 65.5%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55.5%, 매우 그렇다 10.0%)’고 응답하였다. 성별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학생(69.8%)이 남학생(61.8%)보다 ‘그렇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1.7	22.8	55.5	10.0	100.0(6,681)	
성별	남자	15.6	22.7	51.9	9.9	100.0(3,503)	137.557***
	여자	7.4	22.9	59.6	10.2	100.0(3,178)	

* p<0.05, ** p<0.01, *** p<0.001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0.8%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8.3%, 매우 그렇다 42.5%)’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4.9%)이 남학생(87.1%)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교(94.0%), 초등학교(91.1%), 중학교(88.7%), 특성화고등학교(86.2%)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91.2%), 읍면지역(90.7%), 중소도시 아동·청소년(90.6%)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1.2%), 한부모가정(89.1%), 조손가정 아동·청소년(78.7%) 순으로, 학업성적(상 94.5%, 중 91.1%, 하 86.4%)과 경제적 수준(상 91.4%, 중 90.5%, 하 90.0%)이 높을수록 의견표명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초등학교의 경우 50.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 의견표명의 권리에 대해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5	4.7	48.3	42.5	100.0(9,494)	
성별	남자	6.8	6.1	48.4	38.7	100.0(4,967)	10.5*
	여자	2.1	3.0	48.1	46.8	100.0(4,527)	
학교 유형 ²	초등학교	4.2	4.7	40.5	50.6	100.0(2,818)	30.85*
	중학교	5.8	5.5	51.8	36.9	100.0(3,271)	
	일반/특목/자율고	2.9	3.1	51.3	42.7	100.0(2,795)	
	특성화고	6.8	7.0	51.4	34.8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4.4	4.4	47.0	44.2	100.0(3,934)	151.257***
	중소도시	4.5	5.0	48.6	42.0	100.0(4,384)	
	읍면지역	5.1	4.3	51.5	39.2	100.0(1,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	4.6	48.4	42.8	100.0(8,489)	129.958***
	한부모가정	6.1	4.8	49.2	39.9	100.0(752)	
	조손가정	15.2	6.1	40.4	38.3	100.0(80)	
	기타	8.8	8.7	38.6	44.0	100.0(153)	
학업 성적	상	2.6	2.9	44.0	50.5	100.0(2,844)	356.238***
	중	3.9	4.9	49.8	41.3	100.0(3,992)	
	하	7.5	6.0	50.5	35.9	100.0(2,643)	
경제적 수준	상	4.2	4.4	45.7	45.7	100.0(4,304)	460.914***
	중	4.5	5.0	51.9	38.6	100.0(3,526)	
	하	5.5	4.5	47.1	42.9	100.0(1,653)	

* p<0.05, ** p<0.01, *** p<0.001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92.6%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8.1%, 매우 그렇다 54.5%)’고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95.3%), 중학생(90.8%), 특성화고등학생(89.3%)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93.1%), 읍면지역 (92.7%), 중소도시 아동·청소년(92.0%)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3.0%), 한부모가정 (91.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78.0%)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93.0%), 하(92.5%), 중 (92.2%) 순으로,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3.0%, 중 92.2%, 하 92.5%) 경제적 여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의견표명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2	3.3	38.1	54.5	100.0(6,680)	
성별	남자	6.5	4.6	38.2	50.6	100.0(3,502)	241.111***
	여자	1.6	1.8	37.9	58.7	100.0(3,178)	
학교 유형 ²	중학교	5.3	3.9	39.7	51.1	100.0(3,275)	106.548***
	일반/특목/자율고	2.4	2.4	36.5	58.8	100.0(2,795)	
	특성화고	6.6	4.1	36.7	52.6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3.9	3.0	36.9	56.2	100.0(2,780)	126.745***
	중소도시	4.5	3.5	39.3	52.7	100.0(3,019)	
	읍면지역	3.9	3.4	37.6	55.1	100.0(8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7	3.2	38.6	54.4	100.0(5,955)	59.564***
	한부모가정	5.5	3.1	32.9	58.6	100.0(570)	
	조손가정	19.7	2.2	44.0	34.0	100.0(46)	
	기타	13.7	7.5	31.5	47.4	100.0(100)	
학업 성적	상	2.6	2.3	36.1	58.9	100.0(1,741)	196.764***
	중	3.5	3.2	39.7	53.7	100.0(2,639)	
	하	6.1	4.0	37.7	52.2	100.0(2,293)	
경제적 수준	상	3.7	3.2	38.2	54.8	100.0(2,559)	53.97***
	중	4.6	3.2	41.1	51.1	100.0(2,628)	
	하	4.0	3.4	32.5	60.0	100.0(1,484)	

* p<0.05, ** p<0.01, *** p<0.001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1.7%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5.4%, 매우 그렇다 56.3%)’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5.7%)이 남학생(88.2%)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93.4%), 일반계고등학생(92.5%), 중학생(90.4%), 특성화고등학생(88.2%)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92.3%), 읍면지역(91.6%), 중소도시(91.4%)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2.2%), 한부모가정(89.6%), 조손가정(83.4%) 순으로, 학업성적(상 93.9%, 중 92.6%, 하 88.4%)과 경제적 수준(상 92.5%, 중 91.7%, 하 90.2%)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1	4.1	35.4	56.3	100.0(9,494)	
성별	남자	6.4	5.4	37.9	50.3	100.0(4,968)	133.404***
	여자	1.5	2.8	32.8	62.9	100.0(4,526)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3.5	3.1	30.3	63.1	100.0(2,820)	190.867***
	중학교	5.0	4.5	37.3	53.1	100.0(3,271)	
	일반/특목/자율고	3.1	4.4	38.3	54.2	100.0(2,794)	
	특성화고	6.5	5.3	36.2	52.0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3.8	3.9	33.6	58.7	100.0(3,931)	571.533***
	중소도시	4.2	4.4	36.3	55.1	100.0(4,385)	
	읍면지역	4.7	3.7	38.4	53.2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7	4.0	35.6	56.6	100.0(8,487)	170.894***
	한부모가정	5.7	4.7	34.2	55.4	100.0(755)	
	조손가정	15.9	0.8	34.5	48.9	100.0(80)	
	기타	7.3	9.5	33.1	50.1	100.0(153)	
학업 성적	상	2.6	3.5	31.7	62.2	100.0(2,842)	2868.833***
	중	3.4	4.0	36.9	55.7	100.0(3,991)	
	하	6.6	5.0	37.3	51.1	100.0(2,646)	
경제적 수준	상	3.7	3.8	33.1	59.4	100.0(4,308)	479.887***
	중	4.1	4.1	38.6	53.1	100.0(3,522)	
	하	4.9	4.9	34.8	55.4	100.0(1,655)	

* p<0.05, ** p<0.01, *** p<0.001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85.7%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5.5%, 매우 그렇다 40.2%)’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9.4%)이 남학생(82.4%)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87.5%), 초등학생(86.1%), 중학생(84.7%), 특성화고등학생(81.0%)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86.5%), 읍면지역(85.9%), 중소도시 아동·청소년(85.0%)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6.3%), 한부모가정(82.1%), 조손가정(70.1%) 순으로, 학업성적(상 89.3%, 중 86.4%, 하 81.0%)과 경제적 수준(상 86.2%, 중 86.1%, 하 83.9%)이 높을수록 국내거주 타민족 청소년에게도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6.0	8.3	45.5	40.2	100.0(9,500)	
성별	남자	8.4	9.3	45.7	36.7	100.0(4,972)	613.211***
	여자	3.3	7.3	45.3	44.1	100.0(4,528)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5.9	8.0	39.2	46.9	100.0(2,821)	254.34***
	중학교	6.9	8.4	47.2	37.5	100.0(3,273)	
	일반/특목/자율고	4.4	8.0	49.8	37.7	100.0(2,796)	
	특성화고	8.4	10.6	45.9	35.1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5.6	8.0	45.2	41.3	100.0(3,936)	411.334***
	중소도시	6.1	8.9	45.8	39.2	100.0(4,386)	
	읍면지역	6.6	7.5	45.6	40.3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5	8.1	45.9	40.4	100.0(8,492)	317.012***
	한부모가정	8.1	9.9	43.2	38.9	100.0(756)	
	조손가정	16.5	13.5	32.3	37.8	100.0(80)	
	기타	11.6	8.1	40.5	39.8	100.0(153)	
학업 성적	상	4.2	6.5	42.8	46.5	100.0(2,846)	378.408***
	중	5.4	8.2	47.3	39.1	100.0(3,994)	
	하	8.6	10.4	45.8	35.2	100.0(2,645)	
경제적 수준	상	5.8	8.0	43.4	42.8	100.0(4,312)	325.65***
	중	5.5	8.4	49.3	36.8	100.0(3,523)	
	하	7.1	8.9	42.9	41.0	100.0(1,655)	

* p<0.05, ** p<0.01, *** p<0.001

다.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에 대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90.1%(존중받는 편이다 52.5%, 매우 존중받는다 37.6%)로 높게 나타났으나 10명 중 1명은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0.5%)이 남학생(89.7%)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92.2%), 일반계고등학생(91.6%), 중학생(87.8%), 특성화고등학생(85.4%)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0.7%), 한부모가정(84.4%), 조손가정(79.8%) 순으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읍면지역 91.5%, 중소도시 90.0%, 대도시 89.7%), 학업성적(상 93.1%, 중 92.0%, 하 83.9%)과 경제적 수준(상 93.4%, 중 90.0%, 하 81.6%)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2	7.7	52.5	37.6	100.0(9,513)		
성별	남자	2.9	7.4	52.2	37.5	100.0(4,982)	76.842***
	여자	1.4	8.1	52.8	37.7	100.0(4,531)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1.8	6.0	43.8	48.4	100.0(2,826)	202.715***
	중학교	3.2	9.0	55.6	32.2	100.0(3,281)	
	일반/특목/자율고	1.2	7.2	56.6	35.0	100.0(2,797)	
	특성화고	3.4	11.2	56.7	28.7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2.4	7.9	51.7	38.0	100.0(3,944)	104.164***
	중소도시	2.2	7.8	52.4	37.6	100.0(4,390)	
	읍면지역	1.9	6.6	55.0	36.5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	7.3	52.0	38.7	100.0(8,504)	91.429***
	한부모가정	3.5	12.0	56.6	27.8	100.0(758)	
	조손가정	13.9	6.4	59.9	19.9	100.0(80)	
	기타	5.4	9.0	51.4	34.2	100.0(154)	
학업 성적	상	1.7	5.3	44.9	48.2	100.0(2,850)	72.944***
	중	1.3	6.7	55.6	36.4	100.0(4,000)	
	하	4.3	11.8	56.0	27.9	100.0(2,650)	
경제적 수준	상	1.5	5.0	45.9	47.5	100.0(4,315)	109.838***
	중	1.9	8.1	58.7	31.3	100.0(3,534)	
	하	4.6	13.9	56.4	25.2	100.0(1,656)	

* p<0.05, ** p<0.01, *** p<0.001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에 대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80.1%(존중받는 편이다 63.6%, 매우 존중받는다 16.5%)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1.3%)이 남학생(78.8%)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87.0%), 중학생(78.7%), 일반계고등학생(77.4%), 특성화고등학생(68.1%)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0.6%), 대도시(80.1%), 읍면지역 아동·청소년(78.0%)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0.8%), 한부모가정(76.1%), 조손가정 아동·청소년(55.7%) 순으로, 학업성적(상 85.4%, 중 83.2%, 하 69.6%)과 경제적 수준(상 84.1%, 중 79.3%, 하 71.2%)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청소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인권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4.6	15.3	63.6	16.5	100.0(9,512)	
성별	남자	6.1	15.0	61.3	17.5	100.0(4,983)	55.811***
	여자	3.0	15.6	66.0	15.3	100.0(4,529)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2.6	10.5	60.0	27.0	100.0(2,826)	34.686***
	중학교	5.3	16.0	63.9	14.8	100.0(3,280)	
	일반/특목/자율고	5.3	17.3	67.7	9.7	100.0(2,797)	
	특성화고	7.1	24.8	60.1	8.0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4.8	15.1	63.6	16.5	100.0(3,943)	39.221***
	중소도시	4.4	15.0	63.6	17.0	100.0(4,389)	
	읍면지역	5.0	17.0	63.7	14.3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4	14.8	63.8	17.0	100.0(8,503)	41.265***
	한부모가정	5.2	18.7	64.6	11.5	100.0(758)	
	조손가정	12.9	31.4	47.6	8.1	100.0(80)	
	기타	8.2	14.7	59.5	17.6	100.0(154)	
학업 성적	상	3.9	10.7	60.6	24.8	100.0(2,849)	68.144***
	중	2.9	13.9	67.8	15.4	100.0(4,000)	
	하	8.0	22.4	60.7	8.9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3.9	12.1	61.5	22.6	100.0(4,314)	6.2
	중	4.3	16.5	66.6	12.7	100.0(3,533)	
	하	7.4	21.4	62.8	8.4	100.0(1,656)	

* p<0.05, ** p<0.01, *** p<0.001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에 대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81.1%(존중받는 편이다 64.9%, 매우 존중받는다 16.2%)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1.9%)이 남학생(80.3%)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83.4%), 중학생(80.7%), 초등학생(80.2%), 특성화고등학생(76.3%)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1.4%), 대도시(81.1%), 읍면지역 아동·청소년(79.9%)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1.5%), 한부모가정(77.6%), 조손가정 아동·청소년(70.9%) 순으로, 학업성적(상 84.3%, 중 83.4%, 하 74.1%)과 경제적 수준(상 84.5%, 중 80.7%, 하 73.2%)이 높을수록 지역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4.1	14.8	64.9	16.2	100.0(9,511)	
성별	남자	5.3	14.3	62.4	17.9	100.0(4,981)	9.752*
	여자	2.7	15.3	67.6	14.3	100.0(4,530)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4.5	15.3	55.5	24.7	100.0(2,825)	14.188**
	중학교	4.3	15.0	65.6	15.1	100.0(3,281)	
	일반/특목/자율고	3.2	13.3	73.1	10.3	100.0(2,796)	
	특성화고	5.1	18.6	67.2	9.1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3.9	15.0	64.9	16.2	100.0(3,943)	9.0
	중소도시	4.5	14.2	64.7	16.7	100.0(4,390)	
	읍면지역	3.4	16.7	65.7	14.2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	14.6	65.0	16.5	100.0(8,502)	6.9
	한부모가정	4.6	17.7	65.5	12.1	100.0(758)	
	조손가정	14.2	14.9	54.5	16.4	100.0(80)	
	기타	11.7	11.5	60.0	16.8	100.0(154)	
학업 성적	상	3.4	12.3	61.8	22.5	100.0(2,850)	5.2
	중	3.0	13.6	68.0	15.4	100.0(3,999)	
	하	6.5	19.4	63.7	10.4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3.5	12.1	62.2	22.3	100.0(4,315)	10.74*
	중	3.6	15.7	68.5	12.2	100.0(3,532)	
	하	6.7	20.1	64.5	8.7	100.0(1,656)	

* p<0.05, ** p<0.01, *** p<0.001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67.6%(존중받는 편이다 54.6%, 매우 존중받는다 13.0%)로 생활영역별 인권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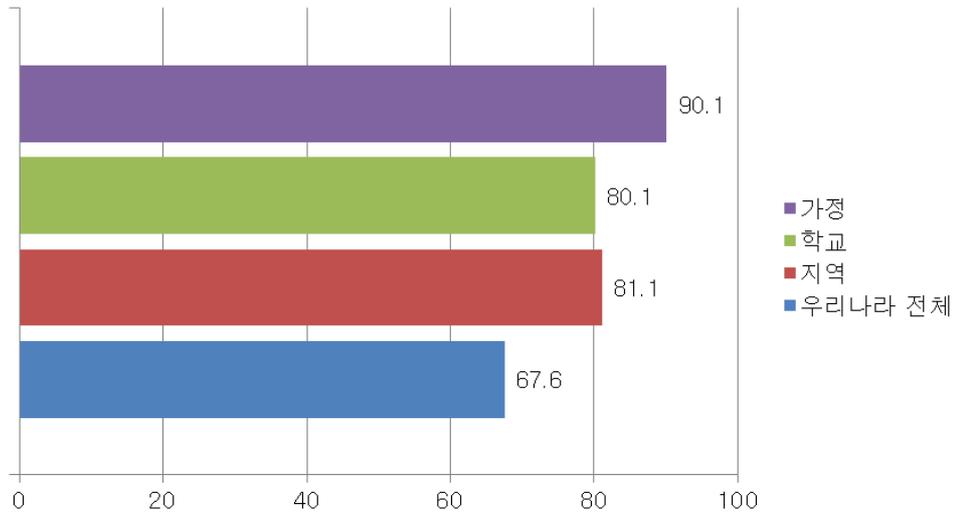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69.0%)이 남학생(66.3%)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70.6%), 일반계고등학생(67.4%), 초등학생(66.3%), 특성화고등학생(58.2%)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68.3%), 대도시(67.6%), 읍면지역 아동·청소년(65.3%)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68.2%), 한부모가정(63.0%), 조손가정 아동·청소년(51.8%) 순으로, 학업성적(상 71.8%, 중 69.6%, 하 60.1%)과 경제적 수준(상 71.6%, 중 68.0%, 하 56.0%)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9.4	23.0	54.6	13.0	100.0(9,508)	
성별	남자	11.0	22.7	51.9	14.4	100.0(4,981)	27.749***
	여자	7.6	23.4	57.6	11.4	100.0(4,528)	
학교 유형 ²	초등학교	11.4	22.2	46.9	19.4	100.0(2,825)	294.503***
	중학교	8.8	20.6	57.2	13.4	100.0(3,280)	
	일반/특목/자율고	7.4	25.2	60.0	7.4	100.0(2,795)	
	특성화고	12.1	29.6	51.8	6.4	100.0(608)	
지역 규모	대도시	9.5	23.0	54.6	13.0	100.0(3,941)	460.397***
	중소도시	9.3	22.5	54.9	13.4	100.0(4,388)	
	읍면지역	9.4	25.2	53.9	11.4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0	22.8	55.0	13.2	100.0(8,500)	308.348***
	한부모가정	10.3	26.7	53.1	9.9	100.0(757)	
	조손가정	23.3	24.8	41.3	10.5	100.0(80)	
	기타	15.5	18.8	50.3	15.4	100.0(154)	
학업 성적	상	8.9	19.3	54.4	17.4	100.0(2,849)	293.968***
	중	7.8	22.7	57.4	12.2	100.0(3,997)	
	하	12.3	27.6	50.9	9.2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8.3	20.0	54.0	17.6	100.0(4,316)	255.228***
	중	8.6	23.3	58.0	10.0	100.0(3,528)	
	하	13.7	30.3	49.0	7.0	100.0(1,656)	

* p<0.05, ** p<0.01, *** p<0.001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는 가정(90.1%), 지역사회(81.1%), 학교(80.1%), 우리나라 전체(6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는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자신과 밀접한 생활영역에서는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권존중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1】 아동·청소년 인권준중 정도

라. 인권 관련 협약·기구에 대한 인지도

○ 유엔(UN)아동권리협약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국가·사회가 보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의 인권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으로 전세계 193개국에 비준한 보편적 인권기준이라 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모른다’ 46.8%, ‘이름만 들어봤다’ 40.1%,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13.1%로 나타나, 과반수를 조금 넘는 53.2%의 아동·청소년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3.1%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협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아동·청소년이 46.8%, 협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동·청소년이 10명 중 8명이 넘는다는 것은(86.9%) 협약 관련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56.5%), 대도시(54.3%), 중소도시 아동·청소년(51.4%) 순으로, 학업성적(상 58.5%, 중 52.3%, 하 48.9%)과 경제적 수준(상 57.3%, 중 50.2%, 하 49.2%)이 높을수록 협약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많이 나타났다. ‘협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와 다소 순위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13.6%), 읍면지역(13.0%), 중소도시 아동·청소년(12.7%)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17.4%, 중 12.2%, 하 9.8%),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15.6%), 낮은 경우(11.6%), 중간인 경우(10.8%)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표 유엔(UN)아동권리협약 인지도

(단위 :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46.8	40.1	13.1	100.0(9,509)	
지역 규모	대도시	45.7	40.7	13.6	100.0(3,941)	8.082*
	중소도시	48.6	38.7	12.7	100.0(4,389)	
	읍면지역	43.6	43.5	13.0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5.9	40.8	13.4	100.0(8,499)	19.9
	한부모가정	53.3	35.6	11.1	100.0(758)	
	조손가정	60.5	32.5	6.9	100.0(80)	
	기타	53.4	33.7	12.9	100.0(153)	
학업 성적	상	41.5	41.1	17.4	100.0(2,848)	57.123***
	중	47.7	40.1	12.2	100.0(3,999)	
	하	51.0	39.1	9.8	100.0(2,646)	
경제적 수준	상	42.7	41.7	15.6	100.0(4,314)	43.042***
	중	49.7	39.4	10.8	100.0(3,530)	
	하	50.8	37.6	11.6	100.0(1,654)	

* p<0.05, ** p<0.01, *** p<0.001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자치법규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언급되었던 사안이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2008년경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발로 지역별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지역 학생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인권 기준으로 기능하는데, 특히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이므로 학생들의 인권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모른다’ 39.5%, ‘이름만 들어봤다’ 44.0%,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16.5%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6.5%인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4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조례제정을 위한 논의가 오랜기간 진행되고 있는 곳도 4~5개 지역(충북,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에 이르는 상황을 볼 때,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이해 및 이행 노력과 모니터링 등이 조례제정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16.5%에 불과한 것은 조례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교육구성원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64.0%)이 남학생(57.4%)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77.5%), 특성화고등학생(62.2%), 중학생(55.3%), 초등학생(49.5%)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61.1%), 중소도시(60.6%), 대도시 아동·청소년(60.4%)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61.0%), 한부모가정(58.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49.1%)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66.1%, 중 59.5%, 하 56.1%),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62.3%), 낮은 경우(62.2%), 중간인 경우(57.6%) 순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와 지역규모별 순위만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도시(17.0%), 대도시(16.4%), 읍면지역 아동·청소년(15.2%)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여 읍면지역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비율은 가장 높았으나 무엇인지 알고 있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한편, 일반계고등학생 10명 중 3명 정도(28.8%)가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학교유형별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내용 인지율을 보였다.

(단위 :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39.5	44.0	16.5	100.0(9,508)		
성별	남자	42.7	41.8	15.6	100.0(4,979)	117.942***
	여자	36.0	46.5	17.5	100.0(4,529)	
학교 유형 ²	초등학교	50.5	41.2	8.3	100.0(2,826)	42.485***
	중학교	44.7	42.1	13.2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22.5	48.7	28.8	100.0(2,797)	
	특성화고	37.8	46.1	16.1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39.7	44.0	16.4	100.0(3,941)	219.137***
	중소도시	39.5	43.6	17.0	100.0(4,390)	
	읍면지역	38.9	45.9	15.2	100.0(1,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9.0	44.3	16.7	100.0(8,498)	190.876***
	한부모가정	41.5	42.3	16.2	100.0(758)	
	조손가정	50.9	40.0	9.1	100.0(80)	
	기타	48.3	39.8	11.9	100.0(153)	
학업 성적	상	33.9	45.8	20.3	100.0(2,848)	131.959***
	중	40.5	44.0	15.5	100.0(3,997)	
	하	43.9	42.1	14.0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37.7	44.6	17.7	100.0(4,314)	49.25***
	중	42.3	43.0	14.6	100.0(3,530)	
	하	37.9	44.7	17.5	100.0(1,653)	

* p<0.05, ** p<0.01, *** p<0.001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인권전담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의식 증진부터 인권침해 사례 진정을 통한 구제 등이 가능하므로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모른다’ 28.3%, ‘이름만 들어봤다’ 54.2%,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17.6%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71.8%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아동·청소년은 17.6%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11월로 설립 12주년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친화적 홍보 및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분야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인권전담

기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75.1%)이 남학생(68.7%)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73.6%), 중학생(73.5%), 초등학생(69.1%), 특성화고등학생(65.6%)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72.5%), 읍면지역(71.9%), 중소도시 아동·청소년(70.9%)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72.6%), 한부모가정(66.3%),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1.3%) 순으로, 학업성적(상 77.3%, 중 71.1%, 하 66.6%)과 경제적 수준(상 74.9%, 중 69.4%, 하 68.5)이 높을수록 들어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와 지역규모별 순위만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18.4%), 중소도시(17.1%), 읍면지역 아동·청소년(16.3%)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한편, 중학생의 21.3%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교급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특성화고등학생은 11.7%로 초등학생(15.6%)보다도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28.3	54.2	17.6	100.0(9,506)	
성별	남자	31.3	51.4	17.3	100.0(4,978)	360.847***
	여자	25.0	57.2	17.9	100.0(4,528)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30.9	53.5	15.6	100.0(2,826)	108.638***
	중학교	26.5	52.2	21.3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26.4	57.2	16.4	100.0(2,797)	
	특성화고	34.4	53.9	11.7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27.5	54.1	18.4	100.0(3,941)	219.865***
	중소도시	29.0	53.8	17.1	100.0(4,389)	
	읍면지역	28.1	55.6	16.3	100.0(1,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5	54.7	17.9	100.0(8,498)	220.306***
	한부모가정	33.6	50.8	15.5	100.0(758)	
	조손가정	38.7	47.6	13.7	100.0(79)	
	기타	36.5	48.2	15.3	100.0(153)	
학업 성적	상	22.7	54.2	23.1	100.0(2,848)	138.358***
	중	28.8	54.4	16.7	100.0(3,997)	
	하	33.4	53.7	12.9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25.0	54.5	20.4	100.0(4,314)	58.189***
	중	30.6	53.8	15.6	100.0(3,529)	
	하	31.5	54.0	14.5	100.0(1,653)	

* p<0.05, ** p<0.01, *** p<0.001

2) 일반원칙(제2조,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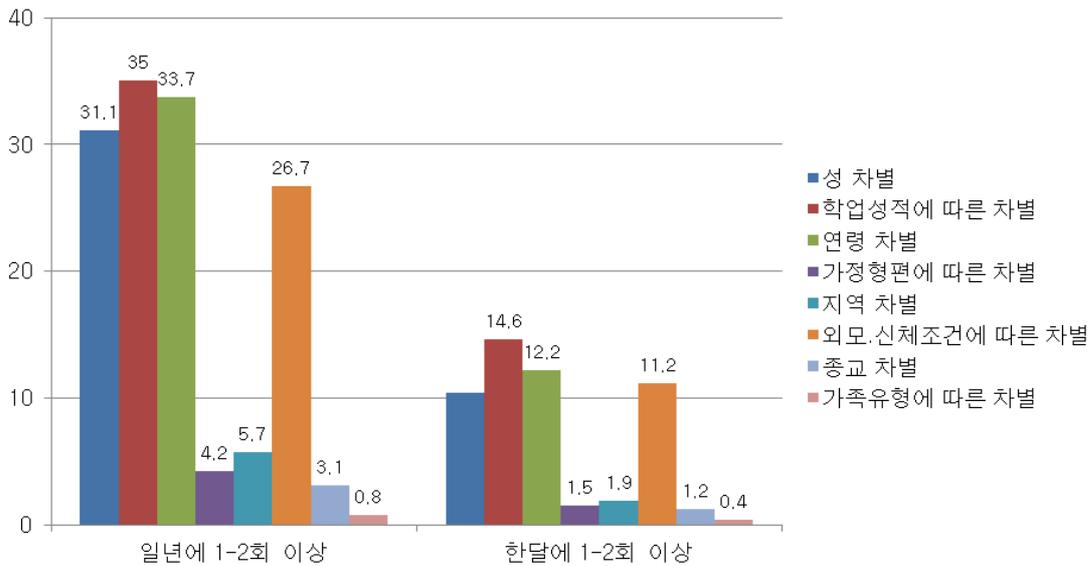
(1) 지표의 현황

① 차별금지

가. 차별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는지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등 8가지 차별경험을 알아보았다. 일년에 1~2회 이상 경험율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3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차별 33.7%, 성차별 31.1%,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6.7%, 지역차별 5.7%,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4.2%, 종교차별 3.1%,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0.8%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2회 이상 경험율 또한 경험정도의 순서는 일년에 1~2회 이상의 경우와 같았으며, 10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한두번 이상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14.6%), 연령차별(12.2%),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11.2%), 성차별(10.4%)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차별경험

나. 차별의식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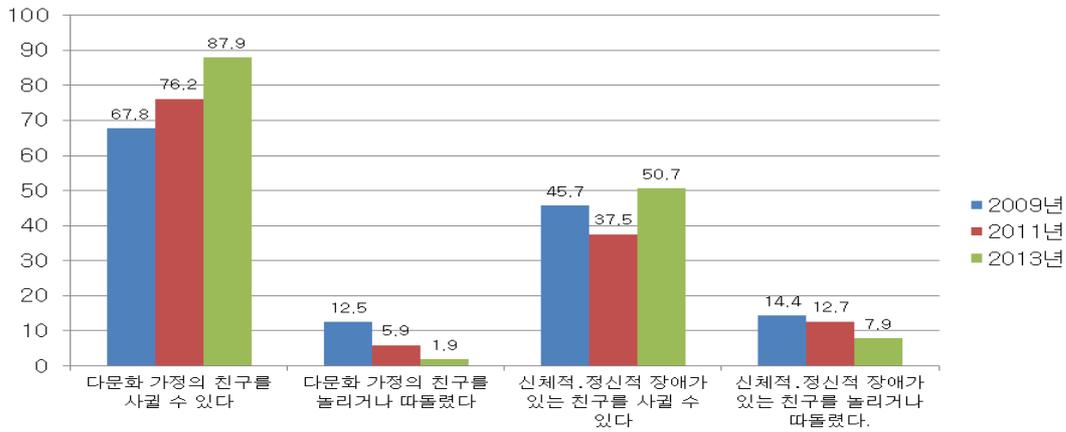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차별의식과 태도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허용도와 따돌림 경험을 알아보았다.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의 또래 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 ‘신체적·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언어장애, 다운증후군 등)가 있는 또래 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로 나타나 장애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1.9%,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7.9%로 나타나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따돌리는 아동·청소년이 한 학급에 한 명 이상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확산효과를 생각할 때 의미있는 수치라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주변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이 많지 않아 이들을 접하기 용이하지 않은 기본 상황을 고려할 때 1.9%나 7.9%의 경험율은 더 많은 수치적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차별의식과 태도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값과 교급별 추이 모두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 증가), 이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전체)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2009년	67.8	12.5	45.7	14.4
2011년	76.2	5.9	37.5	12.7
2013년	87.9	1.9	50.7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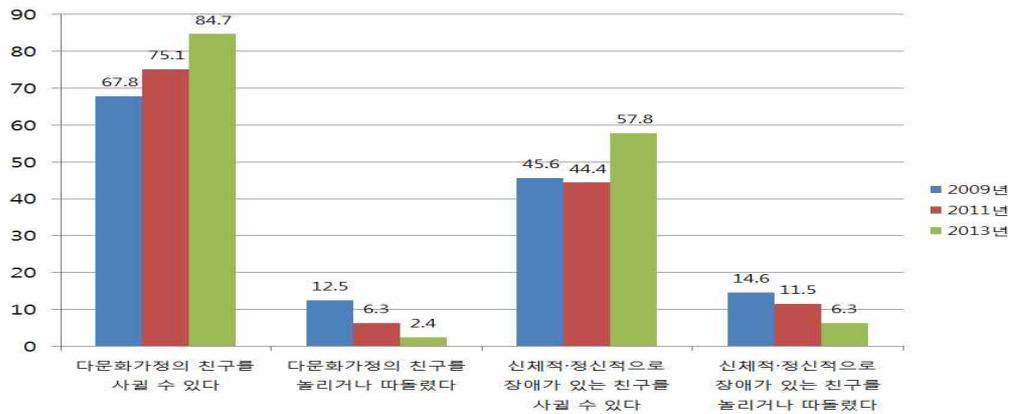


【그림 III-1-3】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전체)

표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2009년	67.8	12.5	45.6	14.6
2011년	75.1	6.3	44.4	11.5
2013년	84.7	2.4	57.8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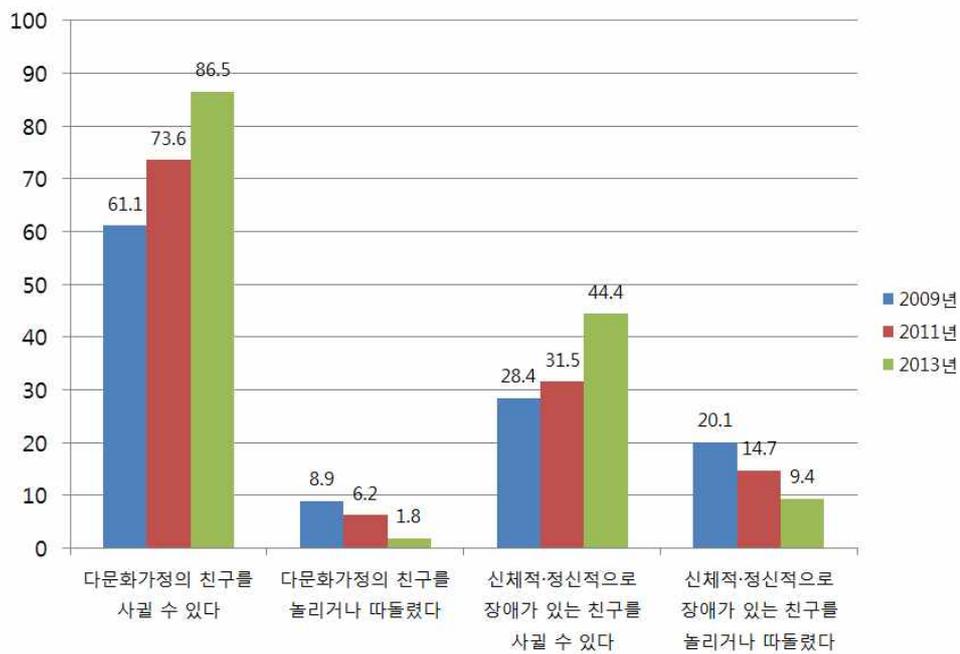


주) 2009년, '약간 있다+많이 있다=그렇다'로, 2011년과 2013,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그렇다'로 계산.

【그림 III-1-4】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2009년	61.1	8.9	28.4	20.1
2011년	73.6	6.2	31.5	14.7
2013년	86.5	1.8	44.4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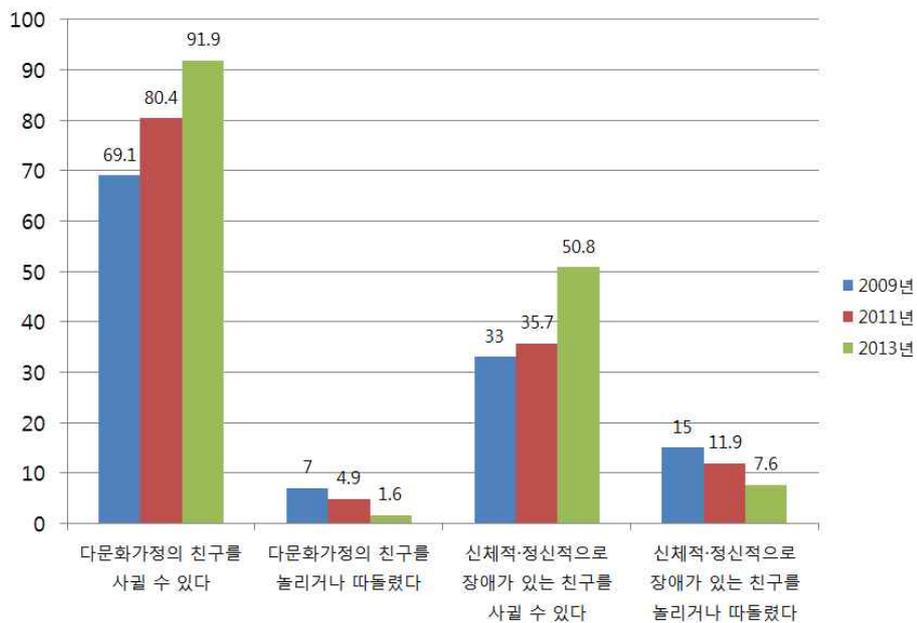
【그림 III-1-5】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표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고등학생)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2009년	69.1	7.0	33.0	15.0
2011년	80.4	4.9	35.7	11.9
2013년	91.9	1.6	50.8	7.6



【그림 III-1-6】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고등학생)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서울: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2). **2012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여성가족부(201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2012년 청소년 희망센터 사업결과 보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e-나라지표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97/
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1. 일반조치 및 일반원칙 정책 제언

정 병 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대분류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정책제언

정 병 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생산방법	
1.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1-1. 인권 일반(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1-1-1-1.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조직	복지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여가부 : 청소년희망센터 인권위 : 진정, 상담, 결정례	
			1-1-1-2.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복지부 : 아동복지예산 여가부(2013). 2013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1-1-2. 인권의식	1-1-2-1. 인권감수성과 태도*	중등용: 문 46.1)~4)* 초등용: 문 38.*	
			1-1-2-2.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중등용: 문 47.1)~2), 3)~7)* (초등 제외 문 47.3), 5)) 초등용: 문 39.*	
			1-1-2-3.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중고용: 문 51.* 초등용: 문 42.*	
			1-1-2-4. 인권 관련 협약, 기구에 대한 인지도*	중등용: 문 43.1)~3)* 초등용: 문 35.*	
		1-2. 일반 원칙(제2조, 제3조)	1-2-1. 차별금지	1-2-1-1. 차별경험*	중등용: 문 45.1)~8) 초등용: 문 37.
				1-2-1-2. 차별의식 및 태도*	중등용: 문 18.1)~4) 초등용: 문 16.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1-2-2-1.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1-1 인권일반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1-1-1-1.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연도별 추진현황

일시	추진 내용	일시	추진 내용
2004.11.15	제1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6.03.1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분과회의 개최
2004.12.15	제1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06.40.21	제4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5.04.27	제2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6.07.20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권리분과 회의 개최
2005.05.03	국무회의 아동정책 추진상황 보고	2006.11.24	제5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5.11.24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과장직회의	2006.12.13	제3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서면회의)
2005.12.02	제3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7.11.16	제6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5.12.14	제2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07.11.30	제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05.12.28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위원의 간담회 개최	2013. 7. 19	비공식 간담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효과성 및 문제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효과성

-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에 대한 조정, 정책이행의 감독 및 평가

등을 담당하여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아동정책의 수립의 민주적 절차 및 효과성을 증진하고 정부 민간의 협력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문제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담당 역할에 비하여 회의 개최 회수가 부족함
 - ☞ 동위원회 연 1회 회의 개최
 - ☞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 예산편성 요구됨(2005년 예산편성 없음. 2006년 운영경비 2백만 편성)
- 아동정책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부재함
 - ☞ 정부행정조직 내 정책조정기구 형태, 부처 간 아동정책 의견조정이 가능하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무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음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의 상시화를 권고하였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사무국 없이 관련 부처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한 정책 브리핑 정도로 그치고 있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회의 내용, 운영에 대한 자료공개가 부족
- 아동정책성과에 대한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부족함
- 동 위원회의 아동정책에 대한 감독과 이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심의 조정 기능에 대한 역할 미비

제안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기적 회의 개최(국무총리 주재, 격월) 및 적절한 예산 편성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일정, 안건, 논의내용 공개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정책종합계획 수립
- 아동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상설화 및 사무국 운영(국무총리실 아동정책과 신설, 그러나 사무국 역할은 하지 않음)

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사회연구원 산하 운영(2006 ~ 2011년)

2012년 위탁운영 공모로 굿네이버스 위탁운영

제안

- 독립성 보장(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으로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예산지원 확대(현재 년 1억원 정도의 정부지원으로 굿네이버스 자부담 증가)

3)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및 아동인권전문가 부재(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

제안

- 아동권리분과위원회 설치 및 아동인권관련 전문가 배치
-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기능 부여

- 아동연령 통합 및 아동청소년 업무 통합

- 법령에 따른 아동연령 통합 요구됨
- 아동과 청소년 업무에 대한 통합 요구

1-1-1-2.

예산 및 자원 할당

- 아동복지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으로 인한 지역별 불균형 : 2005년 아동복지관련 사업 중 입양, 가정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지원, 아동급식지원, 결연기관운영, 퇴소아동정착금 등 9개 사업의 예산이 일부 또는 전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아동예산에 대한 분석 요구(재정자립도 대비 아동예산 분석 필요)
- 복지부 외 다른 부처의 아동관련 예산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 아동관련 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이 가장 높음(3,4차 권고사항)
- 2013년 보건복지부 총 예산 410,673억원 중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13,827억원으로 총 예산의 3.4%.
-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가 아동복지 예산
- 2013년 보건복지부 분야별 세출 예산(단위 : 억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증감 (B-A)	%
□ 총 지출(A)	366,928	410,673	43,745	11.9
○ 사회복지	290,973	326,205	35,232	12.1
- 기초생활보장	79,028	85,531	6,503	8.2
- 취약계층지원	11,880	13,827	1,948	16.4
- 공적연금	124,415	135,539	11,125	8.9
- 보육	30,999	41,778	10,779	34.8
- 노인	39,040	42,931	3,891	10.0
- 사회복지일반	5,611	6,589	986	17.6
○ 보건	75,955	84,468	8,513	11.2
- 노인	15,842	19,337	3,495	22.1
- 사회복지일반	60,113	65,131	5,018	8.3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예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요구됨(지역별, 분야별)
- 지역별, 분야별 아동관련 예산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분석이 요구됨
- 필요에 적합한 아동 예산 증액(OECD평균 GDP대비 2.3%)
- 재정자립도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 간 아동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중앙 이양 등)
- 예산 할당 및 심의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인권에 기반을 두고 자원배분

1-1-2-4.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2013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진행 중
- 아동인권교육
 - : 학생인권조례 명시

지역	학생인권교육	교사인권교육	부모인권교육	기타
광주광역시	학기당 2시간이상	교육청 주관 모든 자격연수에 편성	교육 및 간담회 연1회 이상	교육교재 제작 배포
경기도	학기당 2시간 이상(근로권 포함)	학교에서 연2회 이상	교육 및 간담회 연2회 이상	교육교재 제작 배포
전라북도	학기당 2시간 이상(노동권 포함)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교원연수에 내용 포함	교육 및 간담회 연2회 이상	교육교재 제작 배포
서울	학기당 2시간 이상(노동권 포함)	교육청 주관 모든 자격연수에 연2시간 이상 교육청 주관 직무연수에 내용 반영 학교는 연2시간 이상	교육 및 간담회 연1회 이상	교육교재 제작 배포

: 인권교육지원에 대한 법률안: 2011.3.31.의원입법(이은재 의원 등 15인) 발의 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1-2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1-2-1

비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제안 : 2013년 2월 12일(김한길 의원 등 51인)

철회 : 2013년 4월 24일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 진행 중

성소수자 및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됨(관련 캠페인 및 지속적 교육이 요구됨)

이주아동권리보장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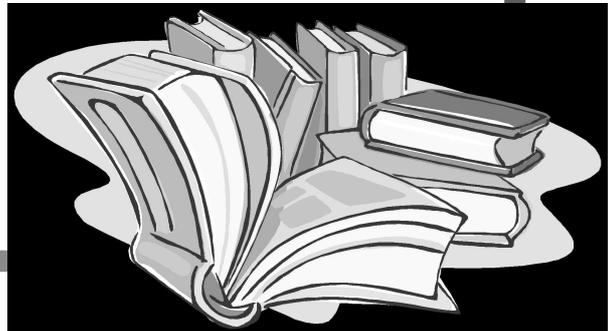
2010년 10월 22일 의원입법(김동성의원 등 43인) 발의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실태 분석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1) 지표의 현황

① 국적 및 신분

가. 출생신고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과 기본적 시민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와 유엔인권이사회(2012)는 출생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적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쉽게 아동 유기나 불법 입양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를 개선하여 출생자동등록제도로의 전환 권고, 국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출생신고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1991~1994년 97.5%)(김남일, 1997), 공식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지는 않으며,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법정기한(1개월) 내 출생신고율’의 대안으로 경찰청의 ‘영아 유기율’을 지표값으로 산출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필요

2) 의견 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1) 지표의 현황

① 가정에서의 참여

가.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지' 물어본 결과, 80.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54.5%, 매우 그렇다 25.6%)'고 응답하였다. 여학생(81.5%)이 남학생(78.9%)보다, 초등학교생(84.5%), 일반계고등학교생(79.5%), 특성화고등학교생(72.6%), 중학생(78.3%)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0.3%), 대도시(80.2%), 읍면지역 아동·청소년(79.1%)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1.0%), 한부모가정(73.6%),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2.8%) 순으로, 학업성적(상 84.3%, 중 82.3%, 하 72.4%)과 경제적 수준(상 85.4%, 중 79.1%, 하 68.7%)이 높을수록 의견존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생보다도 집안의 중요한 문제 결정 시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2-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3	15.6	54.5	25.6	100.0(9,503)	
성별	남자	5.2	15.9	54.3	24.6	100.0(4,979)	358.004***
	여자	3.2	15.3	54.8	26.7	100.0(4,525)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4.4	11.1	47.4	37.1	100.0(2,820)	36.607***
	중학교	4.7	17.1	57.2	21.1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3.4	17.1	58.8	20.7	100.0(2,798)	
	특성화고	5.7	21.7	53.8	18.8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4.2	15.6	54.1	26.1	100.0(3,939)	193.881***
	중소도시	4.4	15.3	54.6	25.7	100.0(4,388)	
	읍면지역	3.9	16.9	55.6	23.5	100.0(1,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	15.2	54.9	26.1	100.0(8,494)	73.985***
	한부모가정	7.0	19.5	52.3	21.3	100.0(756)	
	조손가정	19.1	18.1	48.4	14.4	100.0(80)	
	기타	5.4	17.0	48.9	28.7	100.0(153)	
학업 성적	상	3.2	12.5	50.8	33.5	100.0(2,849)	101.513***
	중	3.5	14.2	57.2	25.1	100.0(3,991)	
	하	6.5	21.1	54.6	17.8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3.1	11.6	51.7	33.7	100.0(4,309)	116.285***
	중	4.4	16.5	59.1	20.0	100.0(3,528)	
	하	7.0	24.3	52.3	16.4	100.0(1,654)	

* p<0.05, ** p<0.01, *** p<0.001

‘상급학교 진학 결정 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준다’는 응답은 84.7%(그런 편이다 58.8%, 매우 그렇다 25.9%)로 나타났다. 성별 및 가족유형별 차이만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여학생(86.2%)이 남학생(83.3%)보다, 양부모가정(85.5%), 한부모가정(79.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1.4%) 순으로 존중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상급학교 진학 결정 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	12.1	58.8	25.9	100.0(6,686)	
성별	남자	3.8	12.9	60.6	22.7	100.0(3,510)	578.583***
	여자	2.4	11.3	56.8	29.4	100.0(3,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	11.6	59.2	26.3	100.0(5,959)	17.268*
	한부모가정	4.4	16.1	56.2	23.3	100.0(571)	
	조손가정	17.5	21.1	51.1	10.3	100.0(46)	
	기타	5.7	14.0	54.0	26.3	100.0(99)	
경제적 수준	상	2.2	10.1	55.2	32.6	100.0(2,561)	76.644***
	중	3.0	12.1	63.2	21.7	100.0(2,631)	
	하	4.9	15.7	57.4	22.0	100.0(1,484)	

* p<0.05, ** p<0.01, *** p<0.001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준다’는 응답은 87.8%(그런 편이다 50.2%, 매우 그렇다 37.6%)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8.5%)이 남학생(87.2%)보다, 초등학생(89.5%), 일반계고등학생(88.3%), 중학생(87.2%), 특성화고등학생(82.0%)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8.4%), 대도시 및 읍면지역 아동·청소년(각각 87.4%) 순으로, 양부모가정(88.4%), 한부모가정(84.3%),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6.1%) 순으로, 학업성적(상 91.1%, 중 88.8%, 하 82.7%)과 경제적 수준(상 90.5%, 중 87.8%, 하 81.2%)이 높을수록 존중받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II-2-3 장래희망을 결정 시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	9.5	50.2	37.6	100.0(9,507)	
성별	남자	3.1	9.6	52.6	34.6	100.0(4,981)	62.779***
	여자	2.1	9.4	47.6	40.9	100.0(4,526)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2.6	8.0	38.0	51.5	100.0(2,823)	75.141**
	중학교	2.8	10.1	55.9	31.3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2.4	9.3	54.4	33.9	100.0(2,798)	
	특성화고	3.1	14.9	57.4	24.6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2.7	9.9	49.1	38.3	100.0(3,941)	548.76***
	중소도시	2.5	9.2	50.3	38.1	100.0(4,389)	
	읍면지역	2.9	9.7	54.0	33.4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	9.2	50.5	37.9	100.0(8,497)	445.068***
	한부모가정	3.4	12.3	49.2	35.1	100.0(757)	
	조손가정	15.2	18.7	45.2	20.9	100.0(80)	
	기타	3.5	9.1	47.4	40.1	100.0(153)	
학업 성적	상	1.7	7.1	43.5	47.6	100.0(2,849)	257.903***
	중	2.3	8.9	52.1	36.7	100.0(3,994)	
	하	4.2	13.1	54.6	28.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2.0	7.5	44.3	46.2	100.0(4,310)	459.799***
	중	2.6	9.7	56.4	31.4	100.0(3,530)	
	하	4.3	14.5	52.7	28.5	100.0(1,655)	

* p<0.05, ** p<0.01, *** p<0.001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준다는 응답은 79.6%(그런 편이다 50.6%, 매우 그렇다 29.6%)로 나타나 진학(84.7%) 및 진로·직업(87.8%) 결정 시보다 의견을 존중받는 정도가 낮았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2.6%)이 남학생(79.6)보다, 일반계고등학생(83.9%), 초등학생(79.1%), 중학생(77.1%), 특성화고등학생(76.7%) 순으로, 대도시(80.2%), 읍면지역(79.7%), 중소도시 아동·청소년(79.2%) 순으로, 양부모가정(80.1%), 한부모가정(76.6%),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4.4%) 순으로, 학업성적(상 84.0%, 중 80.7%, 하 73.3%)과 경제적 수준(상 82.7%, 중 78.9%, 하 73.2%)이 높을수록 학업관련 의사결정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5.5	14.9	50.0	29.6	100.0(9,502)		
성별	남자	6.7	16.4	50.6	26.4	100.0(4,979)	304.442***
	여자	4.2	13.2	49.4	33.2	100.0(4,524)	
학교 유형 ²	초등학교	6.8	14.1	38.9	40.2	100.0(2,822)	2954.749***
	중학교	6.3	16.6	52.8	24.3	100.0(3,273)	
	일반/특목/자율고	3.3	12.8	57.1	26.8	100.0(2,798)	
	특성화고	4.6	18.7	54.0	22.7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5.2	14.7	50.1	30.1	100.0(3,938)	2663.275***
	중소도시	5.8	15.1	49.5	29.7	100.0(4,387)	
	읍면지역	5.4	14.8	51.8	27.9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3	14.5	50.0	30.1	100.0(8,493)	1764.626***
	한부모가정	5.9	17.5	50.4	26.2	100.0(756)	
	조손가정	15.3	20.4	45.2	19.2	100.0(80)	
	기타	7.1	16.1	50.4	26.4	100.0(153)	
학업 성적	상	4.1	11.9	45.5	38.5	100.0(2,847)	296.277***
	중	5.0	14.3	51.6	29.1	100.0(3,992)	
	하	7.7	19.0	52.3	21.0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4.4	12.9	45.1	37.6	100.0(4,310)	134.935***
	중	5.9	15.2	55.3	23.6	100.0(3,527)	
	하	7.5	19.3	51.5	21.7	100.0(1,654)	

* p<0.05, ** p<0.01, *** p<0.001

② 학교에서의 참여

가.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2%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즉, 두 명 중 한 명은 선택권이 없이 부모나 교사의 권유 또는 지시에 따라 추가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52.0%)이 여학생(51.5%)보다, 일반계고등학생(53.6%), 중학생(50.7%), 특성화고등학생(49.7%) 순으로, 읍면지역(57.8%), 대도시(52.1%), 중소도시 아동·청소년(49.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54.1%, 상 51.2%, 중 51.1%) 자신의 의사보다는 강제에 따라 추가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5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7	23.1	36.1	12.1	100.0(6,683)	
성별	남자	30.8	21.2	35.1	12.9	100.0(3,505)	21.631*
	여자	26.4	25.1	37.2	11.3	100.0(3,178)	
학교 유형	중학교	27.1	23.6	39.7	9.6	100.0(3,274)	52.656***
	고등학교	30.2	22.6	32.6	14.6	100.0(3,409)	
학교 유형 2	중학교	27.1	23.6	39.7	9.6	100.0(3,274)	38.171***
	일반/특목/자율고	29.3	24.3	31.6	14.8	100.0(2,800)	
	특성화고	34.7	15.0	37.0	13.4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28.3	23.8	35.9	12.0	100.0(2,781)	17.679*
	중소도시	27.1	22.6	36.8	13.4	100.0(3,020)	
	읍면지역	35.7	22.1	33.9	8.3	100.0(881)	
경제적 수준	상	28.5	22.7	35.5	13.3	100.0(2,559)	46.686***
	중	27.9	23.2	38.1	10.8	100.0(2,631)	
	하	30.5	23.6	33.5	12.3	100.0(1,483)	

* p<0.05, ** p<0.01, *** p<0.001

나.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54.6%(그런 편이다 42.7%, 매우 그렇다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이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2012년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및 연수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45.4%의 학교는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2	27.2	42.7	11.9	100.0(9,506)	
성별	남자	19.7	27.0	41.0	12.3	100.0(4,977)	55.487***
	여자	16.4	27.5	44.5	11.6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6.2	11.9	52.7	29.1	100.0(2,827)	38.288***
	중학교	23.2	30.9	40.3	5.5	100.0(3,272)	
	고등학교	23.2	36.4	36.6	3.8	100.0(3,407)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6.2	11.9	52.7	29.1	100.0(2,827)	26.319*
	중학교	23.2	30.9	40.3	5.5	100.0(3,272)	
	일반/특목/자율고	21.6	36.3	38.3	3.8	100.0(2,799)	
	특성화고	30.9	36.5	28.8	3.8	100.0(608)	
지역 규모	대도시	18.6	26.9	42.1	12.4	100.0(3,942)	39.29***
	중소도시	17.2	27.1	43.2	12.5	100.0(4,386)	
	읍면지역	20.2	28.8	42.7	8.3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8	27.3	42.8	12.1	100.0(8,494)	25.594*
	한부모가정	20.7	27.7	42.7	8.9	100.0(758)	
	조손가정	23.0	23.4	36.3	17.4	100.0(80)	
	기타	19.3	25.4	42.3	13.1	100.0(153)	

* p<0.05, ** p<0.01, *** p<0.001

다.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생회 운영 자율권 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회의 독립성, 임원후보 자격 제한, 학생회 활동 지원 등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28.8%, '그렇다' 14.5%, '잘 모르겠다' 56.7%로 나타나 학생회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장받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7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위 :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28.8	14.5	56.7	100.0(6,687)	
성별	남자	29.1	15.4	55.6	100.0(3,509)	129.195***
	여자	28.6	13.5	57.9	100.0(3,179)	
학교 유형 ²	중학교	28.1	14.8	57.1	100.0(3,279)	46.337***
	일반/특목/자율고	30.1	13.8	56.0	100.0(2,799)	
	특성화고	27.0	15.6	57.4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29.1	14.0	56.9	100.0(2,783)	41.542***
	중소도시	28.2	15.0	56.8	100.0(3,023)	
	읍면지역	30.3	14.1	55.7	100.0(8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8	14.6	56.5	100.0(5,959)	23.93***
	한부모가정	28.0	12.4	59.5	100.0(571)	
	조손가정	44.9	10.5	44.6	100.0(46)	
	기타	25.6	14.9	59.5	100.0(100)	
학업 성적	상	28.3	15.1	56.6	100.0(1,741)	26.769**
	중	27.7	15.1	57.2	100.0(2,640)	
	하	30.6	13.1	56.2	100.0(2,297)	
경제적 수준	상	28.9	16.2	54.9	100.0(2,561)	194.595***
	중	27.4	13.8	58.8	100.0(2,632)	
	하	31.2	12.6	56.2	100.0(1,483)	

* p<0.05, ** p<0.01, *** p<0.001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아니다’ 28.5%, ‘그렇다’ 30.0%, ‘잘 모르겠다’ 41.5%의 응답률을 보여, 학생회 임원 입후보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8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위 :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28.5	30.0	41.5	100.0(6,685)	
성별	남자	31.0	25.4	43.6	100.0(3,509)	44.662***
	여자	25.8	35.1	39.1	100.0(3,176)	
학교 유형 2	중학교	27.3	29.0	43.7	100.0(3,278)	60.432***
	일반/특목/자율고	30.9	30.7	38.4	100.0(2,798)	
	특성화고	24.1	32.1	43.7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24.2	36.6	39.2	100.0(2,783)	49.065***
	중소도시	31.0	25.2	43.8	100.0(3,021)	
	읍면지역	33.9	25.6	40.5	100.0(8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8	30.1	41.1	100.0(5,957)	37.409***
	한부모가정	23.7	29.9	46.4	100.0(571)	
	조손가정	41.0	32.7	26.3	100.0(46)	
	기타	29.2	25.0	45.8	100.0(100)	
학업 성적	상	33.1	30.5	36.4	100.0(1,739)	55.545***
	중	28.4	28.7	43.0	100.0(2,640)	
	하	25.3	31.2	43.6	100.0(2,297)	
경제적 수준	상	31.5	30.6	37.9	100.0(2,559)	86.431***
	중	26.4	28.2	45.4	100.0(2,632)	
	하	27.1	32.1	40.8	100.0(1,482)	

* p<0.05, ** p<0.01, *** p<0.001

표 III-2-9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단위 :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15.5	20.8	63.7	100.0(6,682)	
성별	남자	17.9	21.0	61.1	100.0(3,506)	45.718***
	여자	12.8	20.7	66.6	100.0(3,176)	
학교 유형 2	중학교	16.9	20.4	62.7	100.0(3,276)	52.93***
	일반/특목/자율고	13.3	21.7	65.1	100.0(2,798)	
	특성화고	17.9	19.2	62.9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1	21.1	63.8	100.0(5,954)	62.684***
	한부모가정	17.0	19.6	63.4	100.0(571)	
	조손가정	34.9	11.1	54.0	100.0(46)	
	기타	16.5	16.1	67.3	100.0(100)	
경제적 수준	상	16.2	23.7	60.1	100.0(2,561)	34.406***
	중	14.0	19.3	66.6	100.0(2,630)	
	하	16.6	18.6	64.8	100.0(1,481)	

* p<0.05, ** p<0.01, *** p<0.00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경우는 20.8%, ‘그렇지 않은’ 경우는 15.5%로 나타나, 학생회 활동에 예산, 장소, 시간 등을 지원하는 학교가 5.3% 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라.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8.8%,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경우’ 7.1%,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 18.1%로 나타났다.

표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단위 :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8.8	7.1	18.1	66.0	100.0(6,635)		
성별	남자	11.0	7.1	16.1	65.8	100.0(3,471)	65.04***
	여자	6.4	7.1	20.3	66.3	100.0(3,164)	
학교 유형	중학교	10.1	7.4	16.2	66.2	100.0(3,253)	115.475***
	고등학교	7.5	6.8	19.9	65.9	100.0(3,382)	
학교 유형 2	중학교	10.1	7.4	16.2	66.2	100.0(3,253)	64.159***
	일반/특목/자율고	6.9	6.7	20.9	65.5	100.0(2,774)	
	특성화고	10.0	7.4	15.2	67.4	100.0(608)	
지역 규모	대도시	7.9	7.5	18.4	66.1	100.0(2,756)	137.875***
	중소도시	9.7	6.8	17.2	66.2	100.0(3,003)	
	읍면지역	8.1	6.8	20.1	64.9	100.0(8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4	7.1	18.5	66.0	100.0(5,917)	56.815***
	한부모가정	11.3	7.1	15.8	65.8	100.0(565)	
	조손가정	16.0	5.6	11.0	67.4	100.0(45)	
	기타	13.5	9.5	7.2	69.8	100.0(98)	
학업 성적	상	7.0	6.6	21.9	64.4	100.0(1,735)	95.431***
	중	9.0	7.0	17.9	66.1	100.0(2,619)	
	하	9.9	7.7	15.3	67.1	100.0(2,272)	
경제적 수준	상	8.8	7.7	19.9	63.7	100.0(2,542)	34.034***
	중	8.4	6.7	16.6	68.2	100.0(2,608)	
	하	9.4	6.8	17.7	66.1	100.0(1,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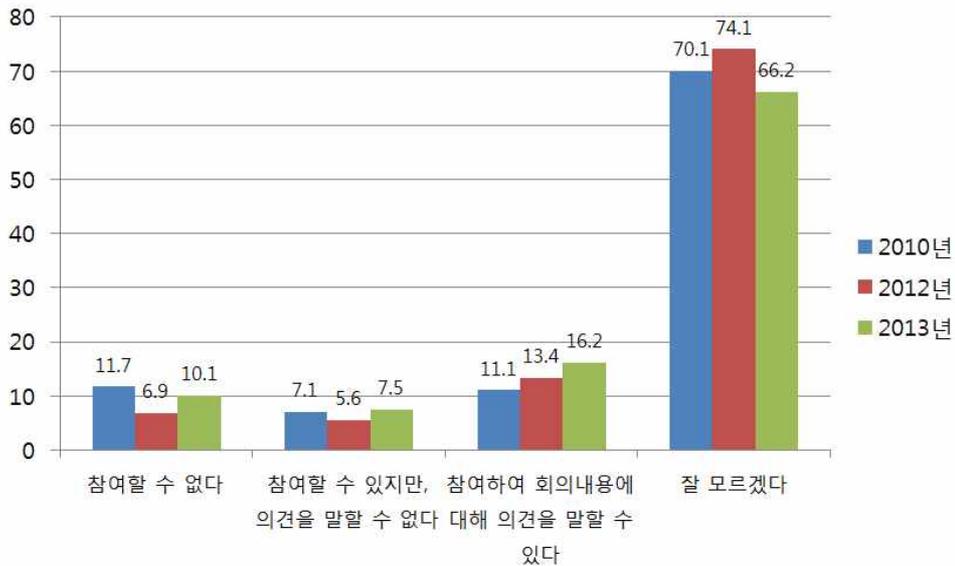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의 2010년, 2012년, 2013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11.1% → 13.4% → 16.2%)과 고등학생(13.0% → 16.6% → 19.9%) 모두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단위 : %)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할 수 없다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2010년	11.7	7.1	11.1	70.1
2012년	6.9	5.6	13.4	74.1
2013년	10.1	7.5	16.2	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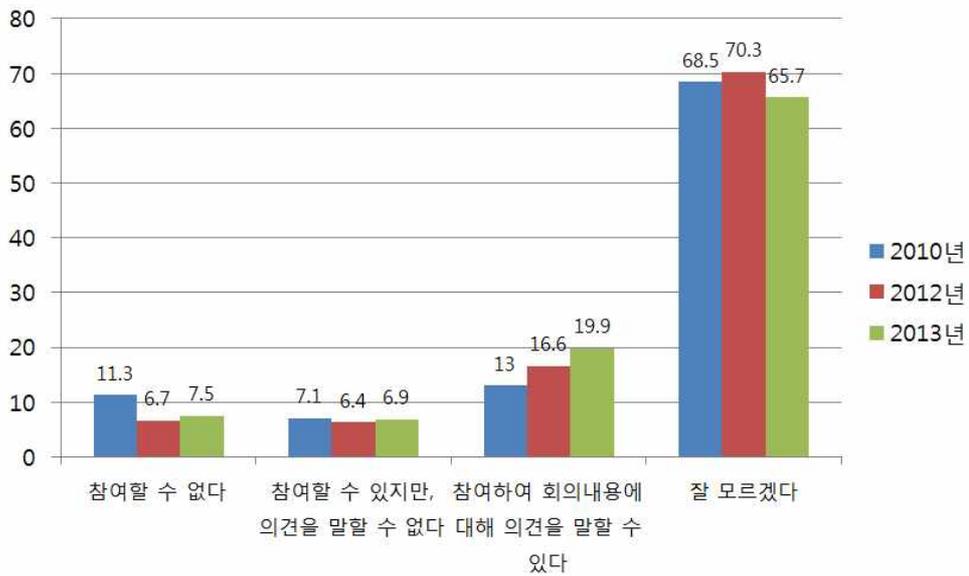
【그림 III-2-1】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고등학생)

(단위 : %)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할 수 없다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2010년	11.3	7.1	13.0	68.5
2012년	6.7	6.4	16.6	70.3
2013년	7.5	6.9	19.9	65.7



【그림 III-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고등학생)

③ 사회참여

가. 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

표		청소년 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 자료: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p. 4

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경험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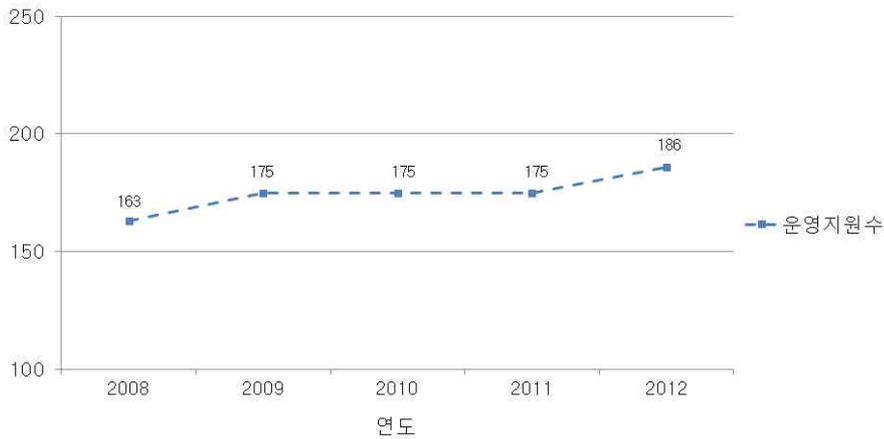
■ 청소년참여위원회

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2)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운영지원수	163	175	175	175	186

* 자료: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p. 5.



자료: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p.5.

【그림 III-2-3】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표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2)

(단위: 개)

계	여성 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6	1	6	3	2	10	2	2	6	32	19	5	16	15	23	23	20	1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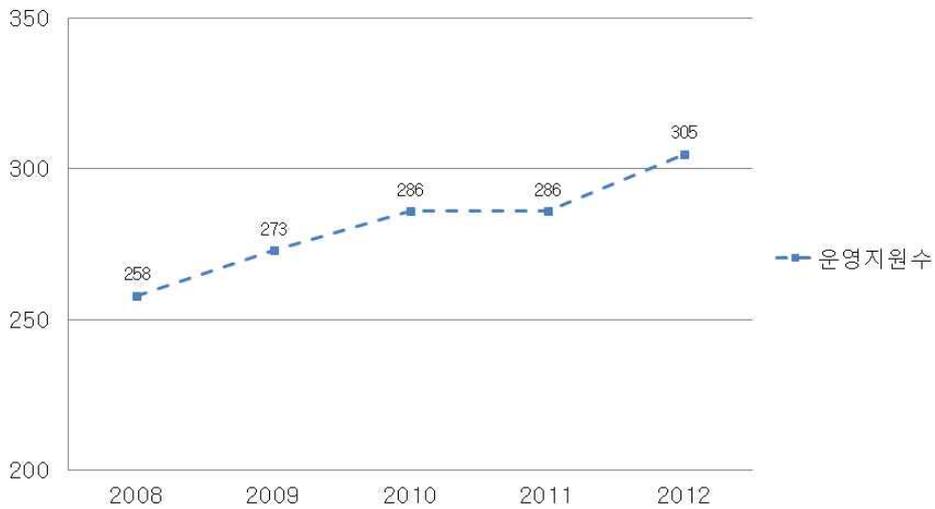
■ 청소년운영위원회

표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현황(2008~2012)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운영지원수	258	273	286	286	305

* 자료: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p.5.



자료: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p.5.

【그림 III-2-4】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표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2)

(단위: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5	44	14	9	12	6	10	7	62	32	15	14	16	14	13	15	22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p. 64.

■ 아동총회

표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2)

구분	주요내용
제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04. 7. 27 ~ 29(2박 3일) 주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만들기 참여인원: 112명
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05. 10. 20 ~ 22(2박 3일) 주제: 아동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참여인원: 480명(지역대회 개최)
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06. 9. 21 ~ 23(2박 3일) 주제: 아동,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참여인원: 500명(이주아동 참가, 지역대회 개최)
제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07. 8. 14 ~ 16(2박 3일) 주제: 아동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참여인원: 560명(아동권리 수호천사 및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
제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08. 8. 18 ~ 20(2박 3일) 주제: 우리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여인원: 총 610명(아동 580명, 지도자 30명)
제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09. 11. 17 ~ 19(2박 3일) 주제: 서로 존중해주는 세상을 위하여 참여인원: 총 547명(아동 418명, 지도자 12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회: 410명 - 본대회: 137명(지역대회 선발아동,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
제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10. 8. 24 ~ 26(2박 3일) 주제: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말하다 참여인원: 총 1,335명(아동 1,040명, 지도자 29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회: 1,182명 - 본대회: 153명(지역대회 선발아동, 이주새터민 의장단 등)
제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11. 8. 17 ~ 19(2박 3일) 주제: 세상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 참여인원: 총 1,741명(아동 1,338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회: 1,583명(아동 1,216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7명) - 본대회: 15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명)
제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12. 8. 8 ~ 10(2박 3일) 주제: 꿈, 행복을 향한 도전 참여인원: 총 1,831명(아동 1,529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회: 1,663명(아동 1,307명, 지도자 및 실무자 356명) - 본대회: 16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46명)

* 출처: 보건복지부(2012), '꿈, 행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아동총회 개최(8. 9일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2), 제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과보고서 "꿈, 행복을 향한 도전", p. 3-4.

○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62.4%, ‘이름을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8.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7.2%,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떤 기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9.3%로 나타난 반면,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도 62.4%로 나타났다.

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단위 :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N)	χ^2
전체		62.4	28.3	7.2	2.1	100.0(6,664)	
성별	남자	64.5	26.6	6.6	2.3	100.0(3,493)	22.019**
	여자	60.1	30.1	7.9	1.9	100.0(3,171)	
학교 유형 2	중학교	62.5	28.2	7.4	1.8	100.0(3,260)	32.516***
	일반/특목/자율고	60.9	29.3	7.3	2.5	100.0(2,795)	
	특성화고	68.1	23.9	6.0	2.1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62.6	28.3	7.2	1.9	100.0(2,776)	24.693*
	중소도시	62.7	28.6	6.4	2.2	100.0(3,009)	
	읍면지역	60.3	26.9	10.3	2.5	100.0(879)	
학업 성적	상	62.5	28.0	6.8	2.7	100.0(1,740)	21.255*
	중	58.6	30.7	8.4	2.3	100.0(2,631)	
	하	66.7	25.6	6.3	1.5	100.0(2,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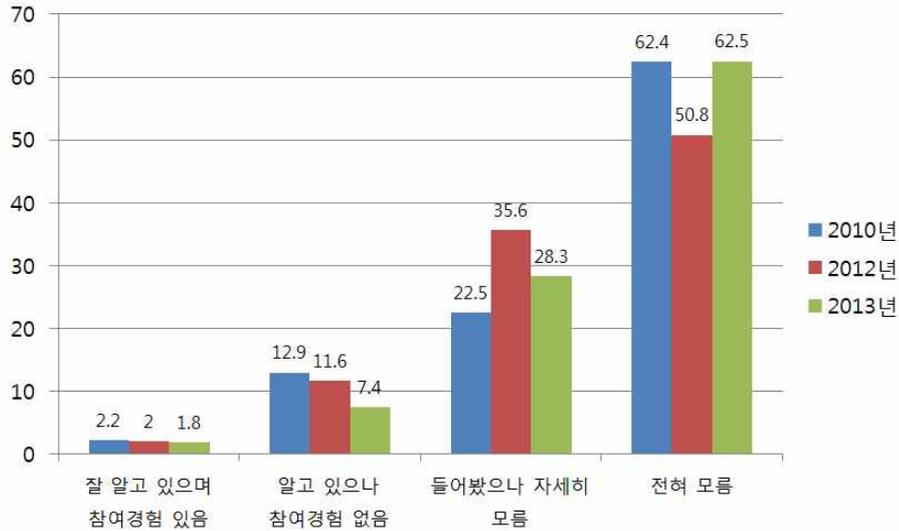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해본 경험의 2010년, 2012년, 2013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2.2% → 2.0% → 1.8%), 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1.9% → 2.3% → 2.4%) 볼 수 있다.

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3개년 비교 : 중학생)

	잘 알고 있으며 참여경험 있음	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음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
2010년	2.2	12.9	22.5	62.4
2012년	2.0	11.6	35.6	50.8
2013년	1.8	7.4	28.3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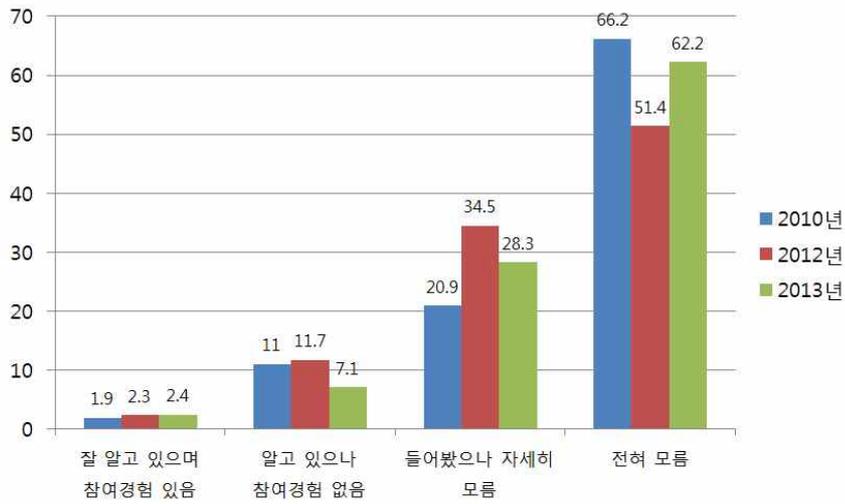


【그림 Ⅲ-2-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3개년 비교 : 중학생)

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3개년 비교 : 고등학생)

	잘 알고 있으며 참여경험 있음	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음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
2010년	1.9	11.0	20.9	66.2
2012년	2.3	11.7	34.5	51.4
2013년	2.4	7.1	28.3	62.2



【그림 Ⅲ-2-6】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3개년 비교 : 중학생)

다.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이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낮추어야 한다’ 26.5%,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53.0%,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6.7%, ‘잘 모르겠다’ 13.8%의 응답율을 보여 만19세 유지 의견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단위 : %, 명)

구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26.5	53.0	6.7	13.8	100.0(6,683)	
성별	남자	27.3	48.7	8.1	15.8	100.0(3,505)	35.136***
	여자	25.6	57.7	5.1	11.6	100.0(3,178)	
학교 유형	중학교	30.2	47.8	5.1	16.9	100.0(3,276)	32.189**
	고등학교	23.0	58.0	8.2	10.8	100.0(3,407)	
학교 유형 2	중학교	30.2	47.8	5.1	16.9	100.0(3,276)	40.6***
	일반/특목/자율고	22.9	59.4	8.2	9.6	100.0(2,798)	
	특성화고	23.4	51.5	8.3	16.8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2	53.8	6.5	13.5	100.0(5,956)	22.669*
	한부모가정	28.1	48.4	8.5	15.0	100.0(572)	
	조손가정	36.6	34.6	7.1	21.7	100.0(46)	
	기타	28.6	39.1	7.2	25.1	100.0(100)	
학업 성적	상	26.1	57.2	8.1	8.6	100.0(1,743)	792.065***
	중	26.3	53.9	6.0	13.8	100.0(2,639)	
	하	27.0	48.8	6.4	17.9	100.0(2,294)	
경제적 수준	상	26.4	55.1	7.0	11.5	100.0(2,559)	27.345**
	중	26.2	51.7	5.4	16.6	100.0(2,631)	
	하	27.1	51.8	8.4	12.7	100.0(1,483)	

* p<0.05, ** p<0.01, *** p<0.001

라. 참여권 보장 수준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51.6%(그런 편이다 37.5%, 매우 그렇다 14.1%), ‘그렇지 않다’ 48.4%(그렇지 않은 편이다 31.3%, 전혀 그렇지 않다 17.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7.1	31.3	37.5	14.1	100.0(9,499)	
성별	남자	19.2	29.2	37.7	13.9	100.0(4,973)	37.38***
	여자	14.8	33.7	37.3	14.3	100.0(4,527)	
학교 유형 2	초등학교	6.7	17.7	51.4	24.2	100.0(2,819)	34.201***
	중학교	19.9	32.4	37.2	10.5	100.0(3,274)	
	일반/특목/자율고	23.3	43.3	24.6	8.8	100.0(2,797)	
	특성화고	22.2	33.6	33.8	10.5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17.5	32.3	35.5	14.7	100.0(3,941)	57.578***
	중소도시	16.9	30.2	38.9	14.0	100.0(4,380)	
	읍면지역	16.6	32.2	39.1	12.1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8	31.7	37.5	14.0	100.0(8,491)	24.546**
	한부모가정	20.6	29.6	35.7	14.1	100.0(757)	
	조손가정	24.9	13.5	51.0	10.6	100.0(80)	
	기타	15.4	26.8	39.2	18.6	100.0(153)	
학업 성적	상	16.8	32.7	34.2	16.4	100.0(2,849)	42.696***
	중	14.3	30.0	42.0	13.7	100.0(3,992)	
	하	21.8	31.9	34.4	12.0	100.0(2,644)	
경제적 수준	상	14.9	28.0	40.3	16.8	100.0(4,308)	71.926***
	중	16.5	33.2	38.6	11.7	100.0(3,526)	
	하	24.2	35.9	27.9	11.9	100.0(1,654)	

* p<0.05, ** p<0.01, *** p<0.001

마. 참여의 장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35.7%, ‘시간 부족’ 31.5%,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 14.3%, ‘참여활동 정보 부족’ 13.3%, ‘부모님(보호자) 반대’ 3.6%, ‘학교 반대’ 1.6% 순의 응답율을 보였다.

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단위 :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움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부모님 (보호자) 반대	학교 반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 부족	전체(N)	χ^2	
전체	31.5	13.3	3.6	1.6	35.7	14.3	100.0(9,475)		
성별	남자	36.9	12.8	4.4	2.3	30.7	12.9	100.0(4,965)	56.931***
	여자	25.5	13.8	2.7	0.9	41.3	15.9	100.0(4,510)	
학교 유형	초등학교	42.6	12.5	6.9	0.9	22.3	14.8	100.0(2,806)	42.322***
	중학교	28.1	14.1	3.4	1.8	40.4	12.2	100.0(3,268)	
	고등학교	25.5	13.1	1.0	2.0	42.4	15.9	100.0(3,401)	
지역 규모	대도시	30.7	13.1	3.2	1.5	37.5	13.8	100.0(3,931)	16.124*
	중소도시	32.5	13.3	3.9	1.6	34.1	14.7	100.0(4,372)	
	읍면지역	30.1	13.5	3.8	1.9	36.1	14.6	100.0(1,171)	

* p<0.05, ** p<0.01, *** p<0.001

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1) 지표의 현황

① 양심적 병역 거부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표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단위: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인원	755	828	781	571	375	728	721	633	598	100	6,090

* 자료: 형혁규·김성봉(20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93호.p. 2

* 원자료 : 병무청 제출자료(2013. 7)

표 연도별 종교적 사유의 병역 거부자 발생현황

(단위: 명)

발생년도	계	여호와의 증인	불 교	기 타
계	6,163	6,115	2	46
2012년	210	209	-	1
2011년	633	627	-	6
2010년	721	715	-	6
2009년	728	723	-	5
2008년	375	373	-	2
2007년	571	567	-	4
2006년	781	778	-	3
2005년	828	818	1	9
2004년	755	748	-	7
2003년	561	557	1	3

* 자료 : 병무청 2012 국정감사 요구자료(2012. 7. 31. 현재),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징집거부자 발생현황
http://www.mma.go.kr/kor/s_info/assembly/assembly01/assembly0101/1264051_1295.html

표 최근 10년간(2004~2013.6.30.) 병역거부자 처리 현황

(단위 : %, 명)

구분	계	형 확정자			재판계류 등
		소계	징역	집행유예	
인원	6,090	5,695	5,669	26	395
비중(%)	100	93.5	93.1	0.4	6.5

* 자료: 형혁규·김성봉(20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93호.p. 2
 * 원자료 : 병무청 제출자료(2013. 7)

- 2012년도 입영 및 징집거부자 210명(7.31일 기준)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실형 2명, 집행유예 0명, 재판계류 208명

②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가.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응답으로만 분석한 결과,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40.7%(그런 편이다 27.3%, 매우 그렇다 13.4%), ‘그렇지 않다’는 59.3%(그렇지 않은 편이다 19.6%, 전혀 그렇지 않다 39.7%)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종교학교가 학생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학교의 종교행사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한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χ^2
전체		39.7	19.6	27.3	13.4	100(708)	
학교 유형	중학교	61.1	13.0	18.3	7.6	100(131)	30.584***
	고등학교	34.9	21.1	29.2	14.7	100(578)	
학교 유형 ²	중학교	61.1	13.0	18.3	7.6	100(131)	47.641***
	일반/특목/자율고	33.2	21.4	30.4	15.0	100(546)	
	특성화고	70.0	19.7	27.2	13.3	100(30)	
지역 규모	대도시	46.8	17.8	22.7	12.7	100(432)	24.843***
	중소도시	28.6	22.8	34.4	14.1	100(276)	
	읍면지역	-	-	-	-	-	

* p<0.05, ** p<0.01, *** p<0.001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1) 지표의 현황

① 결사·집회

가. 결사·집회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의 활동 빈도를 물어보았다.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가끔있다'와 '자주있다'), '친구들과 사회문제 토론' 27.1%(23.7%+3.4%),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20.1%(15.7%+4.4%),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8.1%(7.3%+0.8%)로 나타나 10명 중 2~3명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모임 가입 등의 활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생활의 보호(제16조)

(1) 지표의 현황

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가.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검사 경험을 알아본 결과,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용모검사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복장검사의 경우 두 집단 모두 2011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지품검사는 중학생이 2011년에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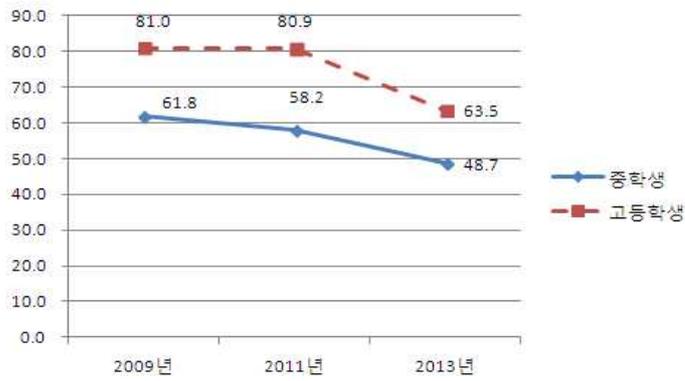
표 용모검사 경험(3개년 추이)

(단위 : %)

	2009년	2011년	2013년
중학생	61.8	58.2	48.7
고등학생	81.0	80.9	63.5

* 2009년의 경우, '아니오, 예'의 2척도에서, 2011년의 경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의 5척도로 변경, 2013년의 경우, 2011년과 동일.

*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문항 동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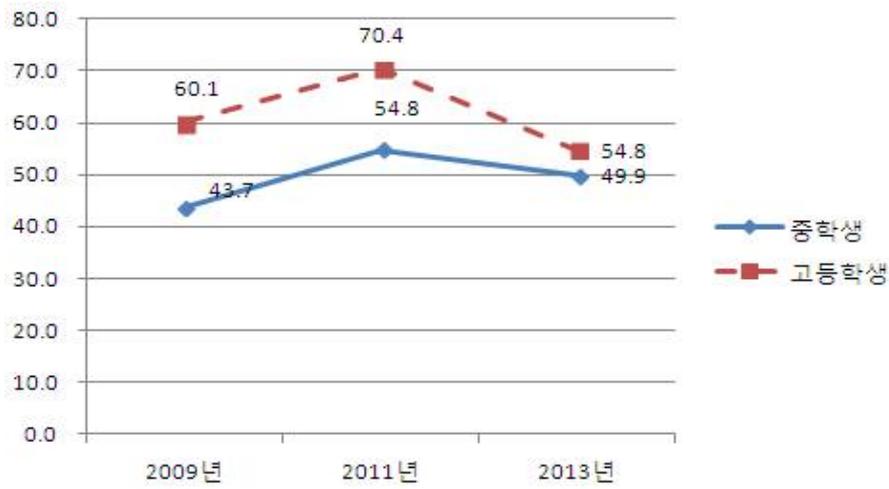


【그림 Ⅲ-2-7】 용모검사 경험(3개년 추이)

표 복장검사 경험(3개년 추이)

(단위 : %)

	2009년	2011년	2013년
중학생	43.7	54.8	49.9
고등학생	60.1	70.4	54.8



【그림 Ⅲ-2-8】 복장검사 경험(3개년 추이)

(단위 : %)

	2009년	2011년	2013년
중학생	21.4	23.5	15.6
고등학생	43.9	34.5	18.3



【그림 III-2-9】 소지품검사 경험(3개년 추이)

② 학생 정보 보호

가.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정도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18.1%(그런 편이다 13.4%, 매우 그렇다 4.7%), ‘그렇지 않다’ 57.9%(그렇지 않은 편이다 24.0%, 전혀 그렇지 않다 57.9%)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나.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31.5%(그런 편이다 22.9%, 매우 그렇다 8.6%), ‘그렇지 않다’ 68.5%(그렇지 않은 편이다 36.5%, 전혀 그렇지 않다 32.0%)의 응답율을 보여 징계받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 성적 공개 정도

‘선생님이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에 대해 29.1%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0.8%, 매우 그렇다 8.3%)’, 71.0%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30.3%, 전혀 그렇지 않다 40.7%)’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의 학생은 개인 성적이 친구들 앞에서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6) 정보접근권

(1) 지표의 현황

① 매체에 대한 접근

가. 매체 이용률

매체이용률은 아동·청소년이 정보 습득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 SNS 이용률, 스마트폰 이용률, 독서율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은 대부분이 매일 인터넷을 접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시간씩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10대와 20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20대가 10대 보다 인터넷 사용을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었다. 2012년 현재 10대 아동·청소년들은 97.6%가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24%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어, 10대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이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평균으로 볼 때 10대 아동·청소년들은 14.1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2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98.5%가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1.4%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어, 20대 청소년들

대부분이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평균으로 볼 때 20대 아동·청소년들은 21.7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3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
2009	10대	100.0	96.7	3.3	-	-	10.8
	20대	100.0	91.3	8.7	-	-	18.6
2010	10대	100.0	97.3	2.7	-	0.0	12.4
	20대	100.0	96.8	3.2	-	-	19.4
2011	10대	100.0	97.8	2.2	0.1	0.0	13.2
	20대	100.0	98.5	1.5	-	0.0	20.4
77201 2	10대	100.0	97.6	2.4	0.0	0.0	14.1
	20대	100.0	98.5	1.4	0.0	0.0	21.7

* 출처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 통계

* 원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편, 2009년 이후로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 청소년 모두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9년에 10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은 10.8시간이었으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14.1시간으로 증가하였다. 20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2009년에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이 18.6시간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 21.7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률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공통적으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 초등학생은 커뮤니티(72.0%)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생들은 미니홈피(중학생 81.2%, 고등학생 93.3%)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커뮤니티(80.0%), 미니홈피(89.9%), 프로필 기반 서비스(22.0%), 마이크로 블로그(23.0%) 등 모든 SNS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에 블로그, 커뮤니티, 미니홈피의 이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프로필 기반 서비스와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들 사이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 이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단위 : %)

		SNS 이용 ¹⁾ 현황(복수응답)				
		블로그 ²⁾	커뮤니티	미니홈피	프로필 기반 서비스 ³⁾	마이크로블로그 ⁴⁾
2010	초등학생	70.4	73.9	55.9	-	2.6
	중학생	95.5	61.3	82.0	-	12.2
	고등학생	94.1	59.4	95.6	-	18.0
	대학생	87.1	80.4	92.4	-	21.6
2011	초등학생	70.7	74.5	61.5	13.9	3.8
	중학생	92.1	63.5	82.0	11.6	13.2
	고등학생	94.3	61.4	94.3	11.5	17.9
	대학생	91.1	81.4	91.7	18.9	21.9
2012	초등학생	69.0	72.0	61.2	16.5	5.3
	중학생	90.6	62.5	81.2	13.1	13.8
	고등학생	92.6	59.7	93.3	13.6	18.7
	대학생	89.0	80.0	89.9	22.0	23.0

* 출처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 통계

* 원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주 : 1) 최근 1년 이내 이용여부임

2)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

3) 나이, 학력 등 개인정보 및 사진, 친구목록 등이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맥형성, 교류하는 서비스 (페이스북 등)

4) 한 두 문장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의 한 종류 (트위터, 미투데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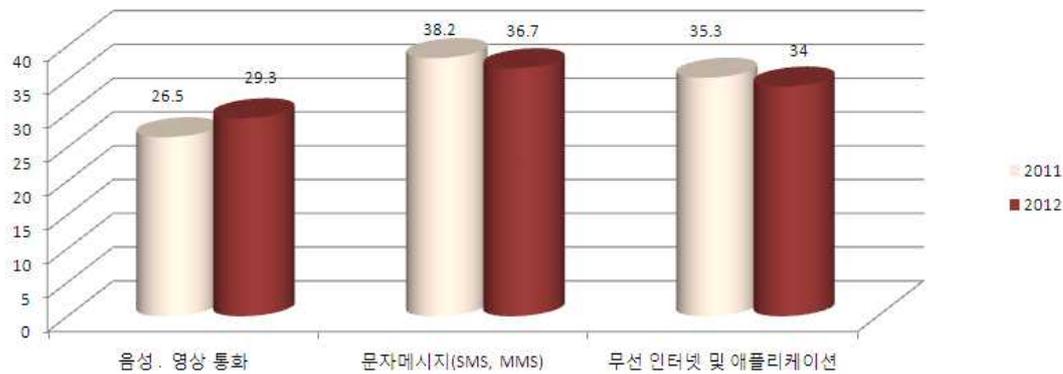
12~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2년 현재 80.7%로 10명중 8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40.0%)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은 2배로 증가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자메시지가 3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선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34.0%), 음성·영상 통화(29.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비해서 문자메시지, 무선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감소한 반면, 음성·영상 통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이용률	이용 현황			계
		음성·영상 통화	문자메시지 (SMS, MMS)	무선 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2011	40.0	26.5	38.2	35.3	100.0
2012	80.7	29.3	36.7	34.0	100.0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2012). 청소년 통계

* 원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그림 III-2-10】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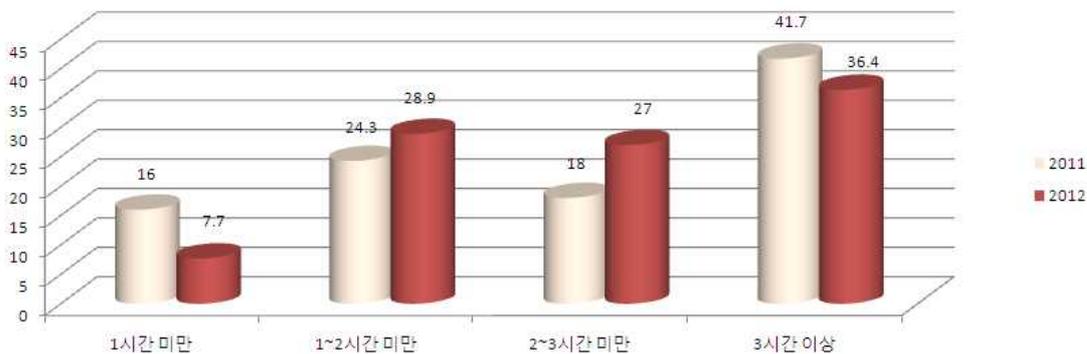
12~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012년 현재 하루 평균 2.6시간으로 2011년(2.7시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이용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3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한 청소년은 3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2시간 미만(28.9%), 2~3시간 미만(27.0%), 1시간 미만(7.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비교해 보면, 1시간 미만과 3시간 이상 이용한 비율은 감소했지만, 1~2시간 미만과 2~3시간 미만 이용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시간 이용 비율의 증가가 높았는데, 2011년에 18.0%에서 2012년에는 27.0%로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시간)

	(일)평균 이용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2011	2.7	16.0	24.3	18.0	41.7	100.0
2012	2.6	7.7	28.9	27.0	36.4	100.0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2012). 청소년 통계

* 원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그림 III-2-11】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한편, 청소년들의 일반도서 독서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1권 이상 책을 읽은 비율인 독서율은 2011년에 83.8%로 나타났다. 청소년 독서율은 성인 독서율 66.8%에 비해 높지만, 2010년의 청소년 독서율(92.3%)에 비하면 8.5%나 감소한 것이다. 2011년 청소년 독서율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93.8%, 중학생 79.3%, 고등학생 79.1%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으며, 중·고등학생과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구분		년도	2010	2011
성인			65.4	66.8
학생	소계		92.3	83.8
	초등학생		97.6	93.8
	중학생		86.9	79.3
	고등학생		89.8	79.1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1). 국민독서실태 조사

나. 유해매체 이용률

이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을 말하는 생애경험률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위기청소년의 유해매체 생애 경험률은 위기청소년이 모든 매체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성인용 게임 이용 비율(17.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6.4%), 지상파 TV 성인용 프로그램(5.7%), 케이블 TV 성인용 프로그램(5.2%)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컴퓨터 성인물(45.5%)과 성인용 간행물(40.0%)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용 게임(32.3%), 성인용 영상물(2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용 간행물(76.3%)과 컴퓨터 성인물(71.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인용 영상물(59.6%), 성인용 게임(55.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용 게임을 통한 유해매체 접촉이 가장 많은 반면, 중고등학생이나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간행물을 통한 유해매체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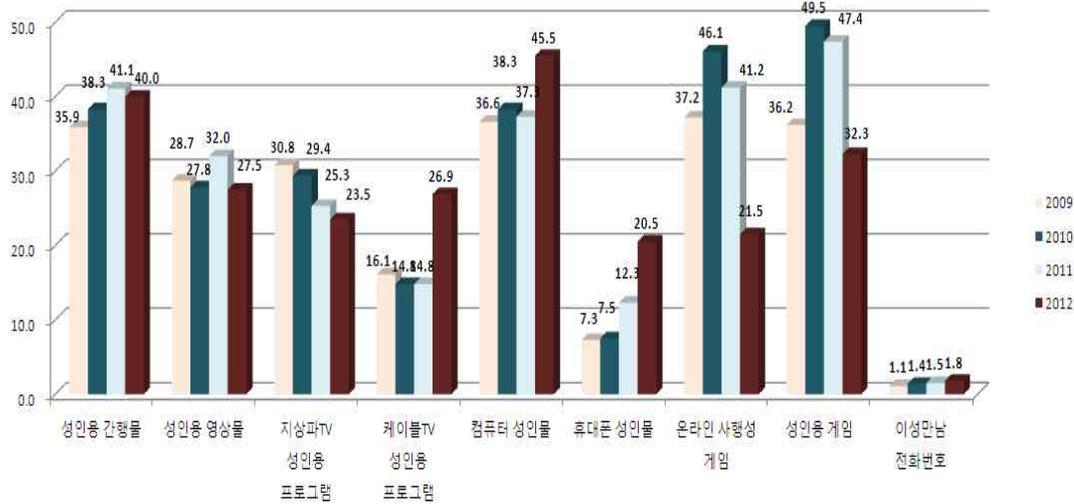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매체 이용 경험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물	휴대폰 성인물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이성만남 전화번호
초등학생 (5~6학년)	1,514	3.6	2.6	5.7	5.2	4.7	2.3	6.4	17.9	-
중·고등학생	15,487	40.0	27.5	23.5	26.9	45.5	20.5	21.5	32.3	1.8
위기청소년	1,351	76.3	59.6	47.5	51.8	71.6	31.0	40.8	55.3	8.2

*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사례수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한편, 지난 4년간(2009~2012년) 중·고등학생들의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휴대폰 성인물 경험률, 케이블 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물이 증가한 반면,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지상파 TV 성인용 프로그램 등의 경험률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휴대폰 성인물의 경우에는 유해매체 생애 경험률이 2009년에 7.3%에서 2012년에 20.5%로 2009년 대비 180.8% 증가하였고, 케이블 TV 성인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009년에 16.1%에서 2012년에 26.9%로 2009년 대비 67.1% 증가하였으며, 컴퓨터 성인물의 경우에는 2009년에 36.6%에서 2012년에 45.5%로 2009년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사행성 게임은 유해매체 생애경험률이 2009년에 37.2%에서 2012년에 21.5%로 2009년 대비 42.2% 감소하였고, 성인용 게임은 2009년 36.2%에서 2012년 32.3%로 2009년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지상파 TV 성인용 프로그램은 2009년 30.8%에서 2012년 23.5%로 2009년 대비 2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에 여전히 간행물을 통한 성인물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휴대폰, 케이블 TV 프로그램, 컴퓨터 등을 통한 성인물 접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케이블 TV나 휴대폰을 통한 성인물 접촉 증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III-2-12】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2009~2012)

표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

	사례수* (명)	매체 이용 경험(%)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용 프로그램	휴대폰 성인용 프로그램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이성만남 전화번호
2009	15,225	35.9	28.7	30.8	16.1	36.6	7.3	37.2	36.2	1.1
2010	16,572	38.3	27.8	29.4	14.8	38.3	7.5	46.1	49.5	1.4
2011	15,954	41.1	32.0	25.3	14.8	37.3	12.3	41.2	47.4	1.5
2012	15,487	40.0	27.5	23.5	26.9	45.5	20.5	21.5	32.3	1.8

*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사례수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 척측 종합실태조사

다. 아동·청소년 도서발행 비율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서는 지적 발달은 물론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매체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도서의 발행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도서를 기준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집계하는 출판통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아동·청소년도서는 전체 발행 도서 중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오고 있다. 2012년에

아동·청소년도서의 신간 발행 종수 점유율은 18.9%로 문학(2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신간 발행 부수는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단위: 종, 부, %)

구분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2010년	2011년	2012년	점유율	2010년	2011년	2012년	점유율
총계	40,291	44,036	39,767	100.0%	106,309,626	109,550,227	86,906,643	100.0%
아동	7,352	9,546	7,495	18.9%	26,199,626	37,705,148	26,537,234	30.5%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2011, 2012). 「출판통계」 재구성

하지만 지난 3년간 아동·청소년 도서의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신간 발행 종수와 신간 발행 부수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2010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도서의 감소폭(-21.5%)이 학습참고서의 감소폭(-36.1%) 다음으로 가장 컸는데, 신생아 출산율 저하와 아동인구의 감소로 아동용 대형기획물(전집)의 발행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2). 그렇지만 2011년의 아동·청소년분야의 신간 발행 종수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도 학부모 성향에 따른 아동·청소년용 전집 도서의 발생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임희진, 김현신, 2012: 146), 매년 전집 도서의 발행 여부에 따라서 아동·청소년도서의 발행 수가 크게 변동하고 있어서 부모의 선호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을 먼저 고려하는 방향에서의 도서 발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알권리

가.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규칙 공지 정도

학교규칙은 학교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규정과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의 공지 정도에 대해서 89.7%가 긍정적으로(“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으며, 20.3%는 부정적으로(‘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규칙을 공지한 정도는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87.7%)에 대한 공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특성화 고등학생(70.4%)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80.9%)에 대한 공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 학생(79.6%), 중소도시 지역 학생(7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나 대도시 지역의 학교일수록 학교규칙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지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0 학교규칙 공지 정도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8.8	11.5	54.4	25.3	100.0(9,485)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	6.1	45.1	42.6	100.0(2,815)	32.305***
	중학교	11.4	12.8	55.3	20.5	100.0(3,266)	
	일반계고/특목고 /자율고	7.5	14.1	62.2	16.2	100.0(2,795)	
	특성화고	12.2	17.4	56.8	13.6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8.1	11.0	54.5	26.4	100.0(3,933)	52.691***
	중소도시	9.4	11.8	53.4	25.4	100.0(4,380)	
	읍면지역	8.4	12.0	57.9	21.7	100.0(1,172)	

* p<0.05, ** p<0.01, *** p<0.001

나.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 제공 정도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인권 자료, 권리 침해시 상담 구제받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23.6%만이 제공받고 있었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자료는 13.3%만 제공받고 있었으며, 권리 침해시 상담·구제 관련 정보는 34.7%만이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3명 정도만이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고 대부분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없어서 전반적으

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청소년정책 및 인권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은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들의 경우에 청소년 관련 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인권 자료, 권리 침해 시 상담 구제받는 방법 모두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보

(단위 : %)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χ^2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65.5	34.5	100.0(2,825)	93.692***
	중학교	79.2	20.8	100.0(3,276)	
	일반계고/특목고/자율고	83.2	16.8	100.0(2,797)	
	특성화고	81.2	18.8	100.0(610)	
	소계	76.4	23.6	100.0(9,507)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80.6	19.4	100.0(2,822)	709.217***
	중학교	88.3	11.7	100.0(3,276)	
	일반계고/특목고/자율고	90.3	9.7	100.0(2,797)	
	특성화고	89.0	11.0	100.0(610)	
	소계	86.7	13.3	100.0(9,504)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31.3	68.7	100.0(2,824)	76.091***
	중학교	80.8	19.2	100.0(3,276)	
	일반계고/특목고/자율고	77.7	22.3	100.0(2,798)	
	특성화고	82.1	17.9	100.0(610)	
	소계	65.3	34.7	100.0(9,507)	

* p<0.05, ** p<0.01, *** p<0.001

7)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1) 지표의 현황

① 체벌

가. 체벌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학교, 학원에서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체벌, 학교 교사에 의한 체벌, 학원 교사에 의한 체벌을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30.6%,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29.8%, 학원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13.4%로, 10명 중 3명은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체벌을 경험하였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에 의해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1년간 체벌 받음 경험 정도

(단위: 명, %)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부모에 의한 체벌	성별							13.2	
		남자	68.7	22.4	6.3	1.6	100.0(4,974)		
		여자	70.1	22.2	5.8	1.4	100.0(4,5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5	24.2	8.7	2.4	100.0(2,821)	294.851***	
		중학교	64.5	25.6	7.4	1.8	100.0(3,270)		
일반계고/특목고 /자율고		79.0	17.5	2.6	0.5	100.0(2,793)			
특성화고	78.9	17.2	2.5	1.1	100.0(609)				
전체		69.4	22.3	6.1	1.5	0.7	100.0(9,492)		
교사에 의한 체벌	성별							63.614***	
		남자	62.3	15.8	12.6	5.9	3.4		100.0(4,969)
		여자	78.9	12.5	5.1	2.4	1.1	100.0(4,5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81.9	9.2	4.7	2.8	1.3	100.0(2,821)	160.69***
		중학교	64.3	16.6	10.5	5.8	2.8	100.0(3,267)	
일반계고/특목고 /자율고		66.4	16.3	11.3	3.3	2.6	100.0(2,790)		
특성화고	65.6	14.8	10.7	5.9	3.0	100.0(610)			
전체		70.2	14.2	9.0	4.2	2.3	100.0(9,488)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학원교사에 의한 체벌	성별							165.64***	
		남자	83.4	6.1	5.1	3.1	2.2		100.0(4,696)
		여자	90.0	4.5	2.8	2.0	0.7	100.0(4,281)	
	학교유 형	초등학교	86.5	6.1	3.5	2.4	1.5	100.0(2,756)	4.9
		중학교	79.7	7.1	6.7	4.1	2.4	100.0(3,128)	
		일반계고/특목고 /자율고	93.9	2.6	1.6	1.3	0.7	100.0(2,567)	
특성화고		92.2	3.8	2.7	0.8	0.6	100.0(525)		
전체	86.6	5.3	4.0	2.6	1.5	100.0(8,976)			

* p<0.05, ** p<0.01, *** p<0.001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이 36.5%, 중학생이 35.5%, 일반계 고등학생이 21.0%, 특성화 고등학생이 21.1%로, 가정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체벌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체벌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 한 달에 1~2회 체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8.7%, 중학생의 경우에는 7.4%,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6%,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5%로, 고등학생에 비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보호자)에 의한 체벌을 3배 정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성별과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남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37.7%, 여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21.1%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대한 처벌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18.1%, 중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5.7%, 일반계 고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3.6%, 특성화 고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4.4%로,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은 중학생이 가장 많고, 초등학생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달에 1~2회 체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10%를 넘고 있어, 아직도 학교에서 잦은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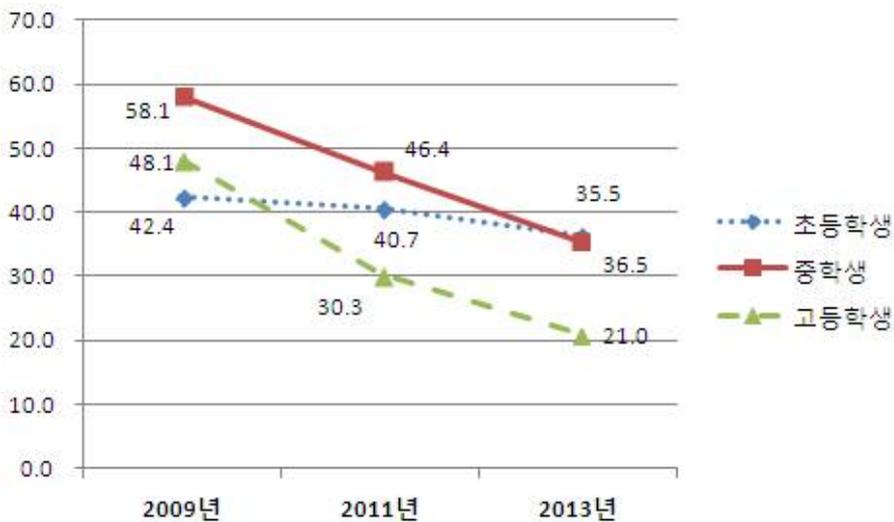
학원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16.6%, 여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10.0%로, 학원에서 교사들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대한 처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 체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5.1%, 여학생은 2.8%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2011년, 2013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로 체벌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2009년에 초등학생이 42.4%였으나 2011년에는 40.7%, 2013년에는 36.5%로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58.1%였던 것이 2011년에 46.4%, 2013년에는 35.5%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48.1%에서 2011년에는 30.3%, 2013년에는 21.0%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 추이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42.4	40.7	36.5
중학생	58.1	46.4	35.5
고등학생	48.1	30.3	21.0



【그림 III-2-13】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 추이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2009년에 초등학생이 25.3%였으나 2011년에는 21.4%, 2013년에는 18.1%로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68.6%였던 것이 2011년에 49.9%, 2013년에는 35.7%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70.4%에서 2011년에는 47.2%, 2013년에는 33.8%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 추이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25.3	21.4	18.1
중학생	68.6	49.9	35.7
고등학생	70.4	47.2	33.8



【그림 III-2-14】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 추이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은 조사가 실시된 2009년 이후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청소년의 체벌은 2009년과 비교해 보면, 2013년 현재 과반수 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 학생에 대한 인권과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효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에도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중·고등학생의 체벌이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② 정서적 학대

가.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도 체벌 경험률과 같이 부모 또는 보호자, 학교 교사, 학원 교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33.1%,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27.3%, 학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12.4%로, 10명 중 3명의 아동·청소년은 부모(보호자)나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1년간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경험 정도

(단위: 명, %)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부모에 의한 욕설	성별	남자	65.4	17.7	9.6	3.8	3.5	100.0(4,973)	414.696***	
		여자	66.4	18.3	8.8	3.9	2.6	100.0(4,5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73.1	14.3	6.9	3.1	2.7	100.0(2,815)		57.965***
		중학교	61.0	20.3	10.2	4.7	3.8	100.0(3,275)		
		일반계고/특목고/ 자율고	64.2	19.5	10.7	3.2	2.5	100.0(2,793)		
		특성학교	66.8	15.9	7.9	6.2	3.1	100.0(609)		
	학업 성적	상	68.1	17.1	8.4	3.7	2.8	100.0(2,847)		101.014***
		중	68.1	17.7	8.6	3.3	2.3	100.0(3,984)		
		하	60.4	19.2	11.0	4.9	4.4	100.0(2,643)		
	전체		65.9	18.0	9.2	3.9	3.0	100.0(9,491)		
학교 교사에 의한 욕설	성별	남자	69.4	13.1	8.8	4.6	4.0	100.0(4,966)	1003.306***	
		여자	76.4	13.6	5.6	2.8	1.6	100.0(4,510)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2	7.1	2.7	1.6	1.3	100.0(2,813)		442.123***
		중학교	67.0	15.6	9.4	4.6	3.4	100.0(3,266)		
		일반계고/특목고/ 자율고	66.3	16.6	9.0	4.4	3.8	100.0(2,788)		
		특성학교	66.2	15.5	8.6	6.4	3.3	100.0(609)		
	학업 성적	상	75.2	12.7	5.8	3.2	3.0	100.0(2,846)		1725.613***
		중	76.0	11.9	6.7	3.2	2.2	100.0(3,979)		
		하	65.3	16.1	9.5	5.3	3.7	100.0(2,634)		
	전체		72.7	13.4	7.2	3.8	2.9	100.0(9,476)		
학원교사에 의한 욕설	성별	남자	86.3	5.7	3.6	2.4	2.0	100.0(4,696)	1821.477***	
		여자	89.0	5.6	2.8	1.6	0.9	100.0(4,276)		
	학교 유형	초등학교	88.8	5.6	2.7	1.5	1.5	100.0(2,754)		159.834***
		중학교	82.1	7.6	4.9	3.3	2.1	100.0(3,127)		
		일반계고/특목고/ 자율고	91.8	3.9	2.1	1.3	0.8	100.0(2,565)		
		특성학교	94.2	2.6	1.5	1.0	0.7	100.0(526)		
전체		87.6	5.7	3.2	2.0	1.5	100.0(8,972)			

* p<0.05, ** p<0.01, *** p<0.001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34.6%)이 여학생(33.6%)보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39.0%), 일반계 고등학생(35.8%), 특성화 고등학생(33.2%), 초등학생(26.9%)의 순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욕적인 말·욕설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는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10.2%, 일반계 고등학생이 10.7%로, 초등학생(6.9%)이나 특성화 고등학생(7.9%)에 비해 중학생이나 일반계 고등학생이 자주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춘기 연령대의 청소년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반응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표현되는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하(39.6%)인 경우에 상(31.9%)이나 중(31.9%)인 경우보다 부모(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은 성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30.6%)이 여학생(33.6%)보다 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 고등학생(33.8%), 일반계 고등학생(33.7%), 중학생(33.0%), 초등학생(12.8%)의 순으로, 초등학생에 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훨씬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인 하(34.7%)인 경우에 상(24.8%)이나 중(24.0%)인 경우에 비해서 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13.7%)이 여학생(11.0%)보다 학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17.9%)이 모욕적인 말·욕설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11.2%), 일반계 고등학생(8.2%), 특성화 고등학생(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2011년, 2013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2009년 이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에 초등학생이 49.2%였으나 2011년에는 29.2%, 2013년에는 2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71.3%였던 것이 2011년에 44.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다시 39.0%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72.1%에서 2011년에는 43.0%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35.3%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49.2	29.2	26.9
중학생	71.3	44.4	39.0
고등학생	72.1	43.0	35.3



【그림 III-2-15】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추이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도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2011년 이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2009년에 초등학생이 30.0%였으나 2011년에는 12.5%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12.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62.2%에서 2011년에 38.0%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도 33.0%로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65.8%에서 2011년에는 41.9%, 2013년에는 3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30.0	12.5	12.8
중학생	62.2	38.0	33.0
고등학생	65.8	41.9	33.7



【그림 III-2-16】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추이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도 조사가 실시된 2009년 이후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도 아동·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체벌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30% 이상의 청소년들이 부모(보호자)나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③ 청소년 폭력

가. 폭력피해 경험

이 지표에서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생애 경험률과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률(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이나 물건 갈취, 협박, 성희롱이나 추행)을 분석하였다.

표 폭력 피해 생애경험률

(단위: 명, %)

		폭력 피해 경험(%)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 체		11.4	88.6	15,382
성 별	남자	9.7	90.3	8,140
	여자	13.4	86.6	7,242
교 급	중학생	12.9	87.1	7,558
	고교생	10.1	89.9	7,824
학 년	중1	13.1	86.9	2,549
	중2	13.5	86.5	2,485
	중3	12.0	88.0	2,524
	고1	11.8	88.2	2,596
	고2	10.0	90.0	2,916
	고3	8.3	91.7	2,311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중·고등학생들의 폭력피해 생애경험률은 11.4%로, 10명중 1명이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9.7%, 여학생이 13.4%로 여학생들의 피해가 많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12.9%, 고등학생이 10.1%로 중학생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13.5%)의 피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13.1%), 중학교 3학년(12.0%), 고등학교 1학년(11.8%), 고등학교 2학년(10.0%), 고등학교 3학년(8.3%)의 순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폭력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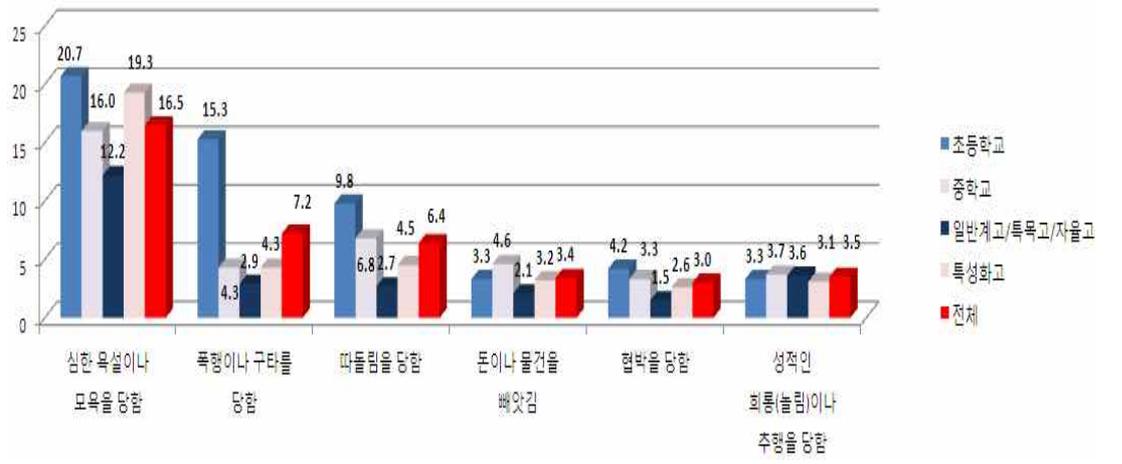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률은 학교 내 폭력

유형 중에서 심한 욕설이나 모욕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행이나 구타(7.2%), 따돌림(6.4%),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3.5%), 돈이나 물건 갈취(3.4%), 협박(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은 다른 폭력 유형으로 인한 피해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청소년폭력 유형 중에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학교 내 선·후배,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특목고/자율고	특성화고	전체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0.7	16.0	12.2	19.3	16.5 (9,513)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15.3	4.3	2.9	4.3	7.2 (9,511)
따돌림을 당함	9.8	6.8	2.7	4.5	6.4 (9,510)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3.3	4.6	2.1	3.2	3.4 (9,509)
협박을 당함	4.2	3.3	1.5	2.6	3.0 (9,512)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3.3	3.7	3.6	3.1	3.5 (9,513)



【그림 III-2-17】 학교 내 선·후배,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학교 내 폭력피해 경험을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20.7%), 폭행이나 구타(15.3%), 따돌림(9.8%), 돈이나 물건 갈취(3.4%)의 피해가 중·고등학생들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폭행이나 구타 경험률은 15.3%로 중·고등학생의 피해경험(3~4%)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따돌림(9.8%), 돈이나 물건 갈취(3.3%), 협박(4.2%),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3.7%)에 대한 피해 경험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많았고, 특히, 따돌림 피해 경험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유형의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으나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 경험은 3.6%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률이 19.3%로 중학생(16.0%)이나 일반계 고등학생(12.2%)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지난 1년간 초등학생의 학교 내 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명 중 2명이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따돌림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폭력 피해 유형 중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했으며,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이 지표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채팅, 게시판 댓글 등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협박, 성희롱, 사생활 유포 등의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3년도에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의 피해 경험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22.1%), 협박(3.4%), 성희롱(4.5%), 사생활 유포(4.4%), 따돌림(2.4%)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의 3개년 동안 인터넷에서의 초·중·고등학생 전체의 피해경험의 비교를 통해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초·중·고등학생들의 피해 경험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피해는 2009년에 32.4%에서 2011년에 36.4%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2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협박 피해 경험도 2009년에 13.1%였으나 2011년에는 6.5%, 그리고 2013년에는 3.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성희롱 경험도 2009년에 11.9%에서 2011년에는 4.9%, 그리고 2013년에는 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유포 경험도 2009년에는 11.5%에서 2011년에 8.2%, 그리고 2013년에는 4.2%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0 인터넷 상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2009년	2011년	2013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32.4	36.4	22.1
협박을 당함	13.1	6.5	3.4
성희롱(놀림)을 당함	11.9	4.9	4.5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사생활 유포	11.5	8.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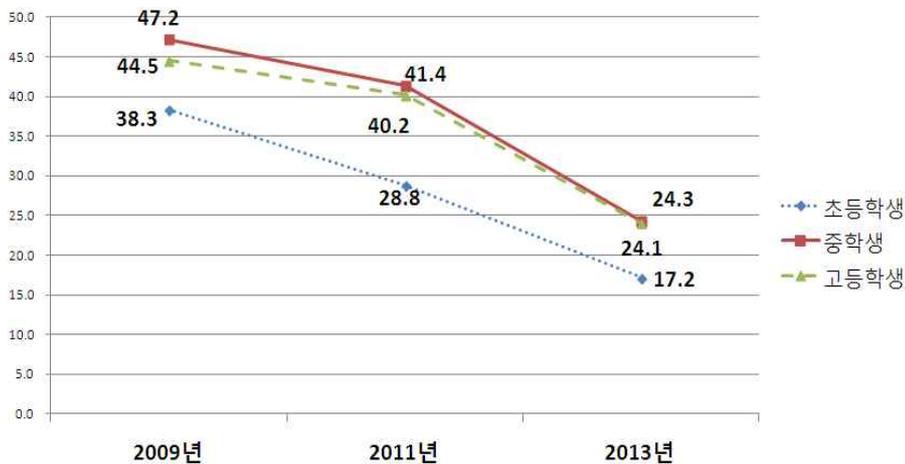
【그림 III-2-18】 인터넷 상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경험을 피해 유형별로 구분해서 학교급별로 2009년, 2011년, 2013년의 3개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은 초·중·고등학생 모두 조사가 실시된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38.3%에서 2011년에 28.8%, 그리고 2013년에는 17.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47.2%에서 2011년에 41.4%, 그리고 2013년에는 24.3%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44.5%에서 2011년에 40.2%, 그리고 2013년에는 24.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인터넷 상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 2009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모두 다른 유형의 피해에 비해서 여전히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III-2-51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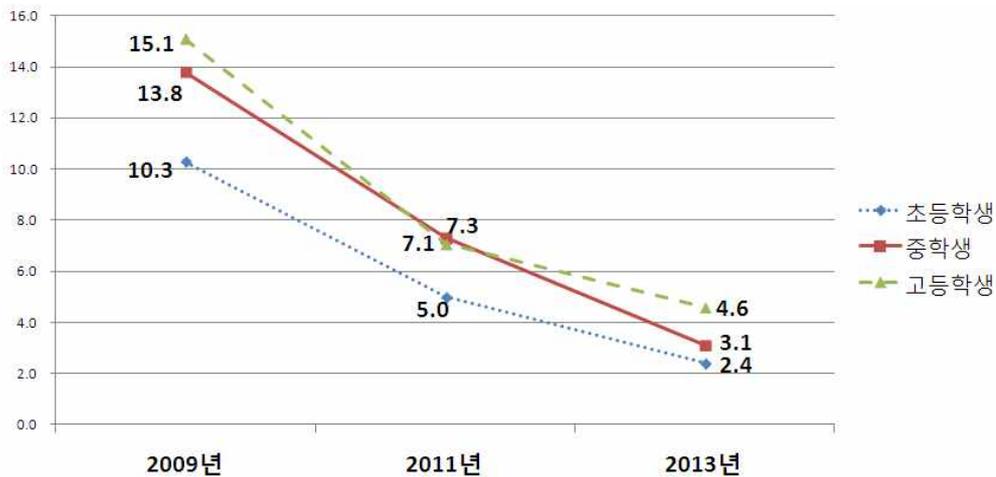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38.3	28.8	17.2
중학생	47.2	41.4	24.3
고등학생	44.5	40.2	24.1



【그림 III-2-19】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

인터넷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은 초·중·고등학생 모두 2009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10.3%에서 2011년에 5.0%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2013년에도 24%로 다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13.8%에서 2011년에 7.3%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 다시 3.1%로 감소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15.1%에서 2011년에 7.1%, 그리고 2013년에는 4.6%로 감소하였다. 인터넷 상에서의 초·중·고등학생들의 협박에 대한 피해가 2009년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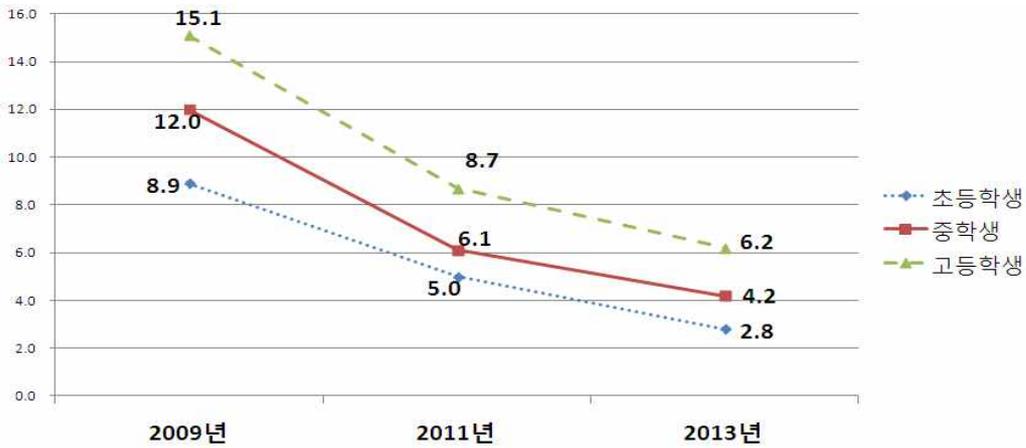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10.3	5.0	2.4
중학생	13.8	7.3	3.1
고등학생	15.1	7.1	4.6



【그림 III-2-20】 인터넷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

인터넷 상에서 성희롱(놀림)을 당한 경험도 초·중·고등학생 모두 2009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8.9%에서 2011년에는 5.0%, 그리고 2013년에는 2.8%로 감소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12.0%에서 2011년에 6.1%, 그리고 2013년에는 4.2%로 감소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15.1%에서 2011년에 8.7%, 그리고 2013년에는 6.2%로 감소하였다. 2009년 이후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3년에도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상에서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8.9	5.0	2.8
중학생	12.0	6.1	4.2
고등학생	15.1	8.7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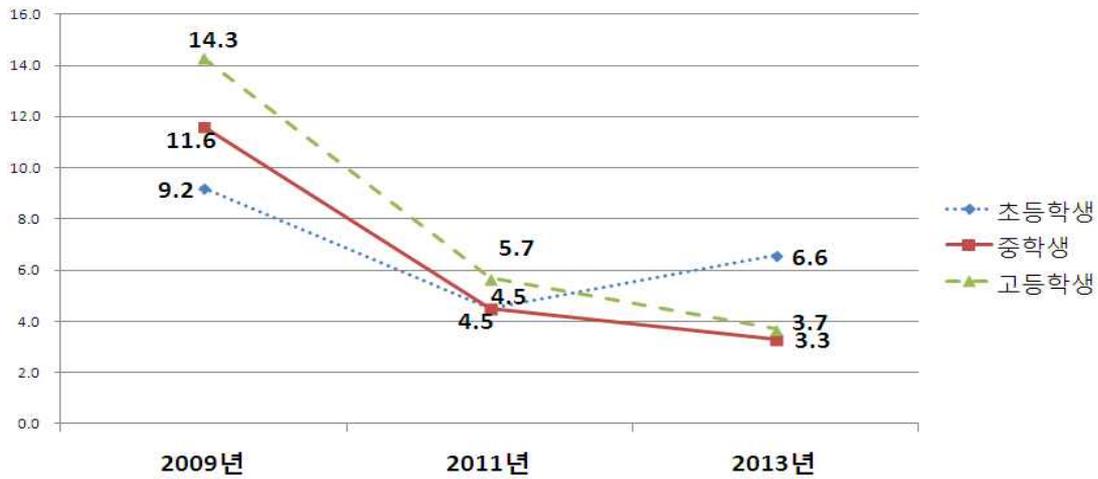


【그림 III-2-21】 인터넷 상에서 성희롱(놀림)을 당한 경험

인터넷 상에서 개인 사생활 유포를 당한 경험은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는 11.6%에서 2011년에 4.5%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3년에도 3.3%로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14.3%에서 2011년에 5.7%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3.7%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9.2%에서 2011년에는 4.5%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6.6%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유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54 인터넷 상에서 개인 사생활 유포를 당한 경험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9.2	4.5	6.6
중학생	11.6	4.5	3.3
고등학생	14.3	5.7	3.7



【그림 III-2-22】 인터넷 상에서 개인 사생활 유포를 당한 경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정책 제언

김 영 인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김 영 인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의견 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2) 정책제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청소년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해당 청소년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적·사법적 절차에 있어 진술 기회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는 청소년의 견해 표명에 대해 적절한 비중을 주어 존중해야 함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자기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내용과 방법에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의 사유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권과 존중, 포괄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기본토대인 참여권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과 존중, 의사표현의 자유 없이는 참여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중분류 영역을 가정에서의 참여, 학교에서의 참여, 사회참여의 세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정책제언에서는 이 세 하위영역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정에서의 참여는 청소년들의 삶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성장세대인 청소년에게 가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관심,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는 행복한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참여는 민주사회에서의 시민 역할을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기회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조사의 가정에서의 참여 지표 영역은 크게 ‘집안 의사결정 참여(문 21-1)’와 ‘자기결정권 존중(문 21-2, 3, 4)’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개의 지표영역 모두 ‘그런 편이다’ 이상의 응답 비율이 80% 안팎이어서 가정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족유형 별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려할만한 사항도 있다.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에 비해 집안 의사결정 참여나 자기관련 사안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 이 점은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참여와 관련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 마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손가정에 있어서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조부모 세대의 청소년 인권과 참여, 가정 내 민주적 의사결정,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 외에도 시민교육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 역할을 하는 조부모 세대에 대해 청소년 인권과 참여, 가정 내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세대 차이가 나는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터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정책입안자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조손 가정의 경우에는 단순한 물질 지원과 상담 외에 청소년 인권과 참여, 가정 내 민주적 의사결정,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등을 담은 시민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모듬교육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담당자 가정방문교육을 통해 조부모를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

가정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참여, 존중, 자율 등은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기관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참여, 존중, 자율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은 사적 영역이어서 제도나 법 등 외적 요소에 의한 개입이 용이하지 않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는 부모를 변화시켜 이들로 하여금 민주적이고 인격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부모교육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은 현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현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내용에는 청소년 인권과 참여, 가정 내 민주적 의사결정,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기존 부모교육에도 포함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실태를 볼 때 조사결과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활동이나 교칙 제·개정 등에 대한 참여보장 정도에 있어 50% 안팎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60% 안팎의 응답자가 잘 모르는 상태이며, 응답한 경우에도 학생회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66% 정도가 외부의 간섭 없는 자율적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50% 가까이가 학생회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고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25% 정도가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는 학교가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체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조사결과에 나타난 학교에서의 참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활동의 절차와 참여방법, 활동내용 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학교는 참여 절차와 활동 내용을 알려야 하고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내용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이 기구에 대한 학생 참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정보 공개를 제도화 하는 것 외에 학생회 참여, 학교 규칙과 규정을 포함한 학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제도화 하여 학교에서의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화의 예로 경기학생인권조례를 들 수 있다. 경기학생인권조례에서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로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 열람, 정보공개 청구 등 정보에 관한 권리 역시 명문화 하고 있다(<http://shr.goe.go.kr>).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학생인권조례처럼 학생의 학교에서의 참여 절차와 권리를 구체화 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교 참여 인권지표 실태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성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기, 서울, 광주와 여타 지역을 구분하여 실태를 제시하면 학생인권조례라는 제도가 학교에서의 참여와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이다. 특히 학교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성과는

달라진다. 이들 교장,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 중 하나로 교장, 교사들의 일반연수, 자격연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학생)의 인권과 참여에 대한 교육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많이 확대되어온 청소년 참여영역이다. 대표적으로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이후 제도적으로 청소년참여가 장려되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만들어졌고, 2002년 월드컵 참여, 효선 미순 사망 항의 촛불집회, 선거권연령 인하 운동, 광우병소고기 수입금지 촛불집회 등과 같은 길거리 참여가 활성화 되었다. 특히 길거리 참여에서 청소년들은 활기찬 참여 열기와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보였다.

길거리 참여 열기에 비해 제도권의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열기는 매우 낮아 보인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매년 전국에서 청소년대표를 선발하여 개최되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186개, 청소년운영위원회 305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성가족부, 2012), 조사결과를 62.4%의 청소년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며, 28.3%의 청소년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단지 2.1%의 청소년만이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 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참여 기구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은 대부분 알고 있지 못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은 청소년정책이 당사자인 청소년과 괴리되어 곁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기구를 포함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전략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교육정책의 주무부서인 교육부 또는 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기구를 포함한 청소년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매스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한 후에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구사해야 한다.

청소년의 선거 참여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있어서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선거 참여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정치참여권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들

이 중심이 되어 18세 선거권 운동이 2000년대 초반 벌어졌고 이 결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세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낮추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일각에서는 강력하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일례로 2012년에 선거연령을 18세를 낮추기 위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고(매일노동뉴스, 2012.10.22),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연령기준 의견표명, 2013).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세계 232국 중 92.7% 정도(215국)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0세 이상)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청소년의 생물학적, 인지적 발달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정책추진부서는 이를 청소년 인권 차원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선거권 문제는 정파적 이해득실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의 인권 또는 시민권 보장이라는 차원과 청소년의 의견과 에너지, 아이디어 등을 국가운영에 투입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19세 선거권연령을 유지 또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59.7%로 선거권연령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이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벌인 선거권 인하운동과는 반대되는 응답이고 선거권이 청소년의 시민권의 핵심이라는 논리를 청소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아마도 청소년들이 선거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응답했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이 조사결과가 지니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내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참여 장애요인에 대책마련이다.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 하려면 청소년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참여 장애요인으로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편견은 기성세대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실행할 필요가 있다. 세대 공감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기성세대들이 청소년과 함께 참여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기성세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 모델이 창출되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간부족은 입시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입시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협조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발표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여기에서 입상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2) 정책제언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새 military service)는 자신의 신앙, 가치관, 도덕률, 정치적·철학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무기를 휴대한 병역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순수한 평화주의에 바탕한 개념이다(나달숙, 2008). 우리 법체계와 사법적 판단은 비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병역의무 거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수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중 양심의 자유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심의 자유는 인권적 차원의 가치라면 병역의무의 수행은 국가체제의 유지 차원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치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인권이자 내면적 권리로서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병역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남북한 휴전상태인 우리의 특수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병역의무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고 병역의무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국가안보와 국가체제의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거 하에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의무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대법원은 2004년 7월 1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라고 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인정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재량 사항으로 판시하고 있다(출처: 대법원 2004.0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출처: 2011. 8. 30. 2008헌기122, 2009헌기17-24, 2010헌기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http://search.court.go.kr/ths/pr/ths_pr0101_PL.do).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결의, 유럽의회 결의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민간대체복무 또는 군대에서 비전투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도 상당수 있는데,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25개국에 이른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심의 명령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범죄자로 내모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볼 때 세계적인 흐름과 부합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가안보가 중시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조건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입법재량사항으로 남겨둔 대체복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제는 군대 밖에서 하는 것과 군대 안에서 하는 것,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군대 밖에서 하는 경우 대체복무제의 기간을 병역의무기간보다 3~4배 길게 하고 그 업무의 난이도도 높게 할 필요가 있고 군대 안에서 하는 경우도 기간을 일반 병역의무보다 길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이익이 되게 대체복무제의 제도를 만들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5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적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60220 양심적 병역거부결정문,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핵심적 요소로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종교행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의 형성, 변경, 포기과 불신앙의 자유,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고 신앙실행의 자유에는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박종보, 2007). 학생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이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를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는 중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인권문제로 제기하는 사례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공립학교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전파할 수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중립 사립학교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중립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른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학생은 인권 차원에서 당연히 불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박종보, 2007).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내세워 학교가 특정 종교교육을 받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때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교평준화 제도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과 종교행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중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출처 : 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89.4%)가 종교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머지 종교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11.6%의 응답자 중 54% 정도는 학교의 종교행사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참여한다고 답변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도 보장하고 학생의 신앙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학교배정거부권을 주거나 전학권을 주는 것이다. 종립학교의 경우 학교 배정 이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 학교의 선교와 종교교육 정책과 방침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특성을 충분히 소명한 후 특정 종립학교의 배정을 사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우면 배정된 후 전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다. 학교배정거부권이나 전학권의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특정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사를 할 때 이에 종교상 이유로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사가 학생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당국은 이런 점에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 정책제언

결사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권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아테네 민주주의가 집회와 토론을 근간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양한

결사체로 보았던 토크빌(A. de Tocqueville)의 견해를 참고할 때 민주주의에서 결사와 집회, 토론의 자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사전 허가제를 불허하고 있다. 결사와 집회의 자유는 성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권리여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에서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길거리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발 제한 반대 서명운동 참여, 효순이·미선이 사건 촛불집회 참여, 노무현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 참여, 미국산쇠고기 반대 집회와 시위 참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오프라인 상의 집회와 시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블로그나 카페 등을 개설하여 홍보전을 펼치기도 하고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의 결사·집회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 사회문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 등의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조사결과는 이런 예상과는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원형으로 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부활과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능력이다. 시민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능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 대화와 토론능력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와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전국 차원에서의 다양한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학교나 청소년활동기관에서는 토론 클럽을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이 단위 토론 클럽 간의 토론대회가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 이런 토론 대회 우승자들을 전국적으로 모아 일년에 한 번 대통령상을 내걸고 토론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토론 클럽을 안내할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교육도 준비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연구, 청소년지도자연수에 토론클럽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토론 클럽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온라인 상에 주로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하며 시위를 한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모임활동과 시위가 시민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인터넷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민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배려와 연대, 예의, 정직성

등을 갖추어야 온라인 상의 모임활동과 시위, 대화와 토론 등이 생산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청소년교육기관 등에서의 인터넷 시민윤리교육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학교 운영자와 교사는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통한 의사표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처벌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일례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에 의한 인권 침해에 관한 결정을 보면, 중학생 150여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 20분간 학생인권, 두발자유 등을 외치며 학내집회를 하자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사들이 강제 해산을 하고 집회 주동학생들에게 진술서를 강요하고 외부 청소년인권단체인 이수나로 가입학생에게 탈퇴를 강요한 사안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심시간의 평화적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여 학교의 강제해산과 진술서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4150 학생에대한집회해산등에의한인권침해, <http://www.humanrights.go.kr/search/XSearch.jsp>). 학교는 학생들의 평화적인 학내집회와 결사를 무조건 막고 불법시하기 보다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5) 사생활의 보호(제16조)

(2) 정책제언

사람은 사적인 생활의 비밀과 평온이 보장될 때 자존감을 느끼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6조에서는 사적인 생활의 비밀과 평온은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청소년기는 특히 개인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자신만의 세계의 형성에 대한 환상과 열망이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이런 자신만의 세계에 대한 침해에 대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는 절제되어야 하며 사적인 비밀과 생활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를 비중 있게 다루어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경기학생인권의 광장 <http://shr.goe.go.kr>; 서울학생인권조례 <http://www.st-rights.or.kr>).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권지표는 크게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와 학생정보보호로 나누어져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용모와 복장은 응답자의 50% 이상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소지품의 경우는 17%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09년부터의 추세를 보면 검사를 받은 청소년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용모·복장·소지품과 관련한 청소년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용모·복장·소지품 검사를 받고 있어 사생활과 관련해 인권 침해의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용모·복장·소지품과 관련한 교육적 차원의 지도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적 차원의 지도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적 차원의 지도와 사생활 침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학교별로 용모·복장·소지품·휴대품에 관한 규약을 학생 참여하에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규약을 교사나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규약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학생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성적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응답률이 18.1%, 31.5%, 29.1%로 나타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학생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나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학교에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구성원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중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경기학생인권의 광장. <http://shr.goe.go.kr>
- 국가인권위원회. 060220 양심적병역거부결정문,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4150 학생에대한집회해산등에의한인권침해,
<http://www.humanrights.go.kr/search/XSearch.jsp>
- 나달숙(2008).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와 현황. 토지공법연구 41, pp. 453~479.
- 대법원 2004.0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매일노동뉴스, 2012.10.22
- 박종보(2007).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pp. 49~67.
- 서울학생인권조례 <http://www.st-rights.or.kr>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헌법재판소. http://search.ccourt.go.kr/thr/pr/thr_pr0101_P1.do



3.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실태 분석

김 지 혜 (남서울대학교 교수)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김 지 혜 (남서울대학교 교수)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지표의 현황

① 보호시설

가.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는 <표 Ⅲ-3-1>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2012)가 평일 방과 후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아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매일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만 9-12세는 15.3%, 만 13-24세는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13.5%, 여자가 16.4%로 여자 아동이 거의 매일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1-2일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만 9-12세가 17.7%, 만 13-24세가 17.9%이고, 주 3-4일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만 9-12세가 11.3%, 만 13-24세가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날이 거의 없는 아동은 만 9-12세가 55.7%, 만 13-24세는 57.7%였다.

표 III-3-1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단위:%)

구분	거의없다	1-2일	3-4일	거의매일
청소년 전체	57.1	17.8	10.1	15.0
만9-12세	55.7	17.7	11.3	15.3
만13-24세	57.7	17.9	9.6	14.8
남	58.3	17.8	10.4	13.5
여	55.9	17.9	9.8	16.4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나. 보육시설 수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을 설립주체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a). 각 보육시설의 설립주체별로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2>와 같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총 42,527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가정 어린이집이 22,935개소(5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민간 어린이집 14,440개소(34.0%), 국·공립 어린이집 2,203개소(5.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444개소(3.4%), 법인·단체 어린이집 869개소(2.0%), 직장 어린이집 523개소(1.2%) 부모협동 어린이집 113개소(0.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어린이집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2003년 8,933개소에서 2012년 22,935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2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03	1,329	1,632	787	11,225	8,933	미분류	236	24,142
2004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6,903
2005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다.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를 설립주체별로 구분한 현황은 <표 III-3-3>과 같다. 2012년 현재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총 아동 수는 1,487,361명이며, 민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 768,256명(51.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정 어린이집 371,671명(25.0%), 국공립 어린이집 149,677명(10.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3,049명(7.6%), 법인·단체 어린이집 51,914명(3.5%), 직장 어린이집 29,881명(2.0%), 부모협동 어린이집 2,913명(0.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3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03	103,474	140,994	37,911	461,640	103,935	미분류	10,391	858,345
2004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930,252
2005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06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2007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2008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200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20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2011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48,729
2012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487,361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라.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는 특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의 현황을 나타낸 지표로 <표 III-3-4>와 같다. 특수 어린이집은 부모나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써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2004년 이전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이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정원의 20%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체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며,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이고, 24시간 어린이집은 24시간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또한, 휴일 어린이집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며,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12a).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수보육어린이집은 10,782개소이며, 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25.4%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8,164개소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836개소, 영아전담 어린이집 629개소, 방과후 어린이집 427개소, 휴일 어린이집 287개소, 24시간 어린이집 268개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71개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 277개소(4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220개소(35.0%)였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00개소(5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34개소, 19.9%)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27개소(6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많은 수는 민간 어린이집(195개소, 23.3%) 이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150개소(3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인·단체 어린이집(103개소, 24.1%)이었으며,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3,760개소(4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민간어린이집(2,590개소, 31.7%)이었다. 휴일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138개소(4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민간어린이집(59개소, 20.6%)이고, 24시간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103개소(3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정어린이집(90개소,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총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57	220	21	277	54	-	-	629
	아동	아동정원	2,841	14,105	837	11,556	1,060	-	-	30,399
		영아아동현원	2,603	10,768	753	10,332	1,041	-	-	25,497
	보육교직원	영아반보육교사	489	1,875	148	1,953	220	-	-	4,685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34	100	7	28	2	-	-	171
	아동	아동정원	1,311	5,409	328	1,090	40	-	-	8,178
		장애아동현원	1,040	3,845	260	813	36	-	-	5,994
	보육교직원	장애아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440	1,629	108	337	13	-	-	2,527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총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527	43	42	195	26	1	2	836
	아동	아동정원	49,854	4,833	3,769	17,802	491	37	138	76,924
		장애아동현원	2,470	165	201	672	46	3	8	3,565
	보육교직원	장애아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911	63	68	230	9	1	3	1,285
방과 후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87	69	103	150	13	1	4	427
	아동	아동정원	7,608	7,505	5,534	12,834	244	122	544	34,391
		방과 후 아동현원	1,605	630	2,171	1,375	29	-	65	5,875
	보육교직원	방과 후 보육교사	90	22	86	62	-	-	3	263
시간연장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1,177	359	182	2,590	3,760	6	90	8,164
	아동	아동정원	92,428	35,496	13,726	160,441	67,547	374	7,958	377,970
		시간연장 아동현원	5,272	1,838	1,080	15,014	15,470	52	561	39,287
	보육교직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859	246	149	2,181	2,458	6	96	5,995
휴일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138	41	14	59	28	-	7	287
	아동	아동정원	11,815	4,429	1,293	3,169	518	-	549	21,773
		휴일 아동현원	74	143	114	208	33	-	-	572
	보육교직원	휴일반 보육교사	173	101	48	153	36	-	11	522
24시간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53	13	3	103	90	-	6	268
	아동	아동정원	4,311	1,005	344	6,350	1,663	-	608	14,281
		24시간 아동현원	167	58	6	395	224	-	21	871
	보육교직원	24시간 보육교사	54	20	3	129	103	-	5	314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마.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교사 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현황은 <표 III-3-5>와 같다. 2012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5.2명인데, 이는 보육교사 284,237명이 1,487,36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결과이다. 2006년도에는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10.0명 이었으며, 매년 교사대 아동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육 아동수	1,040,361	1,099,933	1,135,502	1,175,049	1,279,910	1,348,729	1,487,361
보육 교사수	104,320	120,963	139,060	150,477	166,937	180,247	284,237
교사 1인당아동수	10.0	9.1	8.2	7.8	7.7	7.5	5.2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재구성

* 원자료 :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 주 : 2012년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2 보육통계 자료를 통해 산출한 것임

바. 방과 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 중에서 집에 보호자가 없거나 방과후에 특별활동을 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임희진·김현신, 2012: 182). 청소년 방과후 공적서비스는 방과후 학교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방과 후 학교는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참여실태는 <표 III-3-6>과 같다. 2012년 초·중·고등학생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비율은 57.6%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방과후학교 이용비용은 1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참여율은 52.6%, 중학생은 49.4%, 고등학생은 77.1%이며, 1인당 월평균 이용 비용은 초등학생 1만 5천원, 중학생 4천원,

고등학생 2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 등을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임희진·김현신, 2012: 183). 이는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가 맞벌이부모의 자녀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이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인권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고등학생은 반대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9년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인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6 방과 후 학교¹⁾ 참여 실태

(단위:%,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²⁾		계	
	참여율 ³⁾	비용 ⁴⁾	참여율 ³⁾	비용 ⁴⁾	참여율 ³⁾	비용 ⁴⁾	참여율 ³⁾	비용 ⁴⁾
2009	43.1	1.2	43.1	0.6	80.1	2.6	51.3	1.3
2010	45.0	1.3	50.0	0.7	84.6	2.8	55.6	1.4
2011	50.4	1.6	48.3	0.6	80.9	2.6	56.6	1.5
2012	52.6	1.5	49.4	0.4	77.1	2.2	57.6	1.3

* 출처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통계

* 원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 * 주 : 1) 방과 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
 2) 일반고등학교임
 3) 참여율은 무상+유상임
 4)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 중 학교 수업 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과 적성교육 실시, 급식 지원,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적인 학습과 복지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연도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7>과 같다. 2012년 현재 200개소에서 8,00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인원은 2,300,000명이다. 2005년 처음 시작할 때에는 46개소였으며,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500개소로 증가시킨다는 목표치를 갖고 있다(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505&bbs=INDX_001&clas_div=A)

표 III-3-7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단위:개소,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소	46개소	100개소	151개소	185개소	178개소	171개소	200개소	200개소
지원 인원	2,350	4,200	6,300	7,680	7,245	6,700	8,000	8,000
연인원	282,000	1,260,000	1,890,000	2,165,760	2,064,825	1,905,000	2,300,000	2,300,000

* 출처 :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② 부모와의 관계

가. 부모와의 대화시간

여성가족부(2012)에서 2011년도에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표 III-3-8>과 같다. 먼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이 6.8%였으며, 30분 미만이 42.1%, 30분-1시간 미만이 21.7%, 1-2시간 미만이 11.3%, 2시간 이상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은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이 2.5%, 30분 미만이 22.4%, 30분-1시간 미만이 26.8%, 1-2시간 미만이 18.2%, 2시간 이상이 27.0%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9-12세에 비해 만 13-24세 청소년의 대화시간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구분		전혀 하지않는다	30분미만	30분- 1시간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이상	해당없음
아버지	청소년전체	6.8	42.1	21.7	11.3	12.6	5.5
	만9-12세	5.5	33.7	23.7	13.4	19.5	4.1
	만13-24세	7.2	44.8	21.0	10.7	10.4	5.9
어머니	청소년전체	2.5	22.4	26.8	18.2	27.0	3.1
	만9-12세	3.1	14.0	21.6	19.3	39.1	2.8
	만13-24세	2.3	25.1	28.4	17.9	23.1	3.2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 지표의 현황

① 가출청소년, 소년소녀가정

가. 가출청소년 비율

가출인이란 만 14세 이상의 자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14-19세), 그 외를 가출성인으로 통칭한다(경찰청, 2012). 경찰청(2012)의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전체 가출인은 65,028명이고, 가출청소년은 20,434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신고접수된 가출청소년이 15,114명이고, 2010년 19,4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고 접수된 현황으로 실제 가출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요청된다.

표 III-3-9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단위:명)

연도	가출청소년(14-19세)			성인가출인			가출인(전체)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2009	15,114	5,251	9,863	40,583	17,894	22,689	55,697	23,145	32,552
2010	19,440	6,654	12,786	40,640	18,039	22,601	60,080	24,693	35,387
2011	20,434	7,354	13,080	44,594	21,087	23,507	65,028	28,441	36,587

* 출처 : 경찰청(2012). 2012 경찰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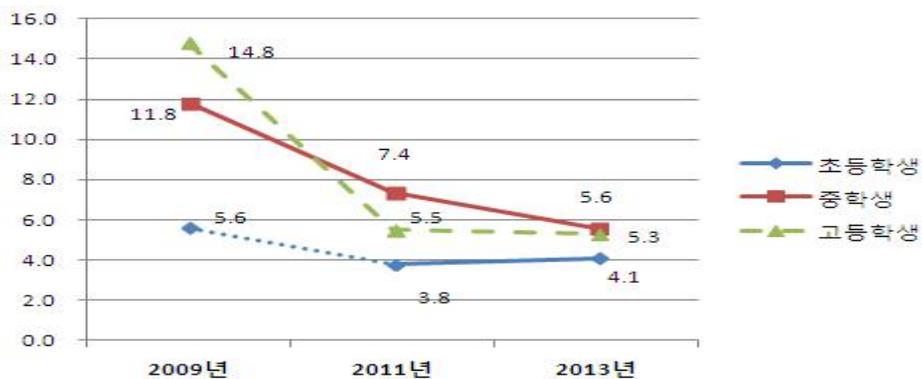
위의 경찰청 자료는 신고접수된 가출 청소년의 현황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5.1%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3-10>과 같다.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29.714$, $p<.001$, $\chi^2=1467.425$, $p<.001$, $\chi^2=1005.248$, $p<.001$, $\chi^2=511.709$,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6.3%, 여자는 3.7%가 가출경험이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중 7.1%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학생(5.7%),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4.9%), 초등학생(4.1%)의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이 1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9.9%),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6.8%가 최근 1년 동안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4.0%, 중위층 아동·청소년은 5.5%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위 : %)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5.1	94.9	100.0(9,503)	
성별	남자	6.3	93.7	100.0(4,974)	129.714***
	여자	3.7	96.3	100.0(4,5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4.1	95.9	100.0(2,829)	1467.425***
	중학교	5.7	94.3	100.0(3,274)	
	일반/특목/자율 고	4.9	95.1	100.0(2,792)	
	특성화고	7.1	92.9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5	95.5	100.0(8,495)	1005.248***
	한부모가정	9.9	90.1	100.0(755)	
	조손가정	12.9	87.1	100.0(80)	
	기타	3.9	96.1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4.0	96.0	100.0(4,310)	511.709***
	중	5.5	94.5	100.0(3,527)	
	하	6.8	93.2	100.0(1,653)	

* p<0.05, ** p<0.01, *** p<0.001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3-1>과 같다. 2009년에 비해 가출경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09년에 14.8%, 2011년에 5.5%, 2013년 5.3%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의 3개년 추이

나. 가출시 이유와 서비스 이용 경험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이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가출의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표 III-3-11>과 같다. 가장 많은 이유는 부모님 등 보호자와의 문제였으며(65.7%), 이어서 학업부담(14.5%),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9.1%)의 순이었다. 학교유형별로 가출의 이유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학교 학생들과 차이를 보였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주된 가출 이유는 보호자와의 문제가 73.8%였으며, 그 다음이 친구와 함께 하기위해서(12.8%), 학교문제(2.8%), 학업부담(2.7%)의 순이었다. 반면에, 일반고나 특목, 자율고의 학생들은 보호자와의 문제로 인한 가출이 67.9%였고, 다음으로 학업부담(14.3%),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8.7%)의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모두 보호자와의 문제로 인한 가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업부담과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아동·청소년의 가출이유는 보호자와의 문제, 학업부담,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의 순이었으나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의 가출이유는 보호자와의 문제,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학업부담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가출 이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523.121$, $p<.001$, $\chi^2=16.421$, $p<.05$).

표 III-3-11 가출을 한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학업 부담	보호자와의 문제	학교 문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기타	전체(N)	χ^2
전체		14.5	65.7	2.1	0.4	9.1	8.3	100.0(47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2	66.1	1.0	1.6	7.4	7.7	100.0(108)	523.121***
	중학교	16.4	61.9	2.4	0.0	9.5	9.8	100.0(183)	
	일반/특목/자율고	14.3	67.9	2.3	0.0	8.7	6.8	100.0(137)	
	특성화고	2.7	73.8	2.8	0.0	12.8	8.0	100.0(43)	
지역 규모	대도시	15.1	65.5	1.3	0.0	9.1	9.0	100.0(174)	16.421*
	중소도시	14.7	68.0	2.3	0.4	7.3	7.4	100.0(237)	
	읍면지역	11.8	57.2	3.6	1.4	16.1	10.0	100.0(60)	

* $p<0.05$, ** $p<0.01$, *** $p<0.001$

가출을 한 주된 이유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I-3-12>와 같다. 모든 학교유형에서 학업부담으로 인한 가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09년 11.1%, 2011년 13.2%, 2013년 16.2%로 증가폭이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학교문제로 인한 가출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12 가출을 한 주된 이유에 대한 3개년 추이

(단위 : %)

	학교유형	학업부담	부모님과 의 문제	학교문제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타
2009년	초등학교	11.1	62.2	8.1	3.0	6.7	8.9
	중학교	13.6	66.1	5.1	2.5	8.5	4.2
	고등학교	10.2	70.1	5.4	2.0	9.5	2.7
2011년	초등학교	13.2	55.0	2.3	2.8	1.2	25.4
	중학교	14.6	63.6	3.8	0.0	8.4	9.6
	고등학교	3.3	73.9	5.2	3.9	4.6	9.1
2013년	초등학교	16.2	66.1	1.1	1.7	7.3	7.7
	중학교	16.3	61.9	2.4	0.0	9.5	9.8
	고등학교	11.5	69.3	2.4	0.0	9.7	7.1

* 2009년의 경우 ① 가출한 적 없음 ② 부모님과 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③ 학업에 대한 부담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⑤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⑥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⑦ 기타'으로 문항 출제 되어 있어서, '① 가출한 적 없음' 문항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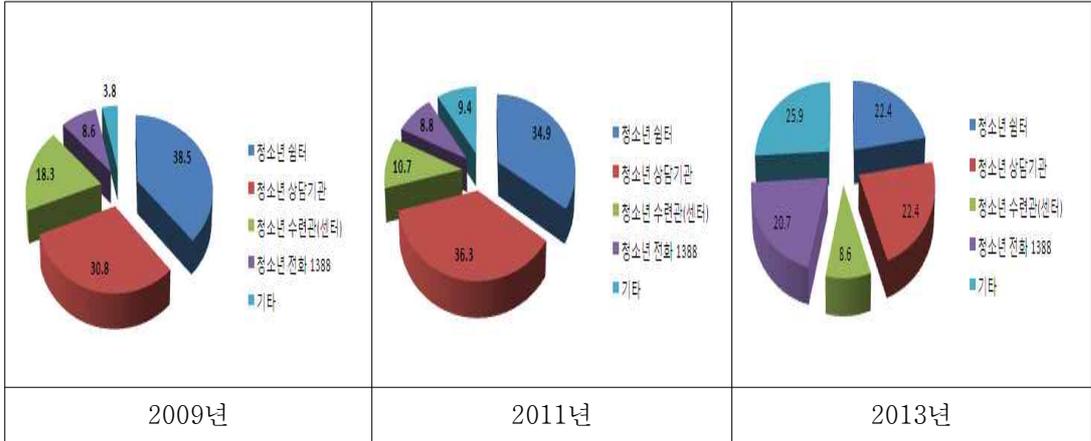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로는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93.7%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상담기관 1.3%, 청소년 쉼터 1.2%, 청소년수련관 1.0%, 청소년 전화 1388 0.8%의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은 청소년쉼터의 이용률이 26%로 중소도시(0.5%), 읍면지역(0.0%)보다 많았으며, 청소년상담기관은 읍면지역 청소년의 이용률이 5.7%로 대도시(0.0%)와 중소도시(1.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10.875$, $p<.001$).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에 차이를 보였는데($\chi^2=97.953$, $p<.001$),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가출시 청소년상담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11.1%로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1.3%)이나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0.0%)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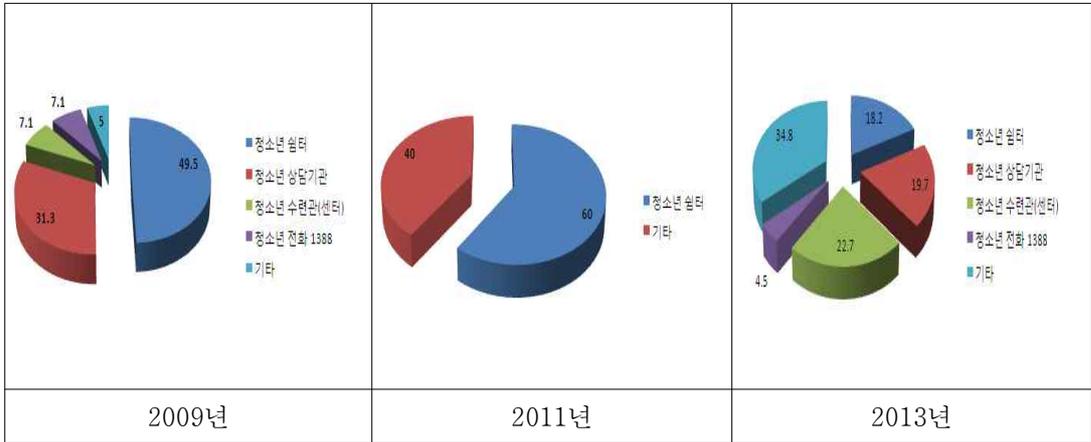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컴퓨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전체	93.7	1.2	1.3	1.0	0.8	2.0	100.0(360)	
지역 규모	대도시	94.6	2.6	0.0	0.0	0.4	100.0(136)	210.875***
	중소도시	92.9	0.5	1.2	2.0	1.3	100.0(179)	
	읍면지역	94.3	0.0	5.7	0.0	0.0	100.0(4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5	0.9	1.3	1.2	0.4	100.0(285)	97.953***
	한부모가정	92.0	1.6	0.0	0.0	2.9	100.0(59)	
	조손가정	88.9	0.0	11.1	0.0	0.0	100.0(9)	
	기타	100.0	0.0	0.0	0.0	0.0	100.0(5)	

* p<0.05, ** p<0.01, *** p<0.001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III-3-2>와 같다. 중학생의 경우, 청소년 컴퓨터의 이용은 2009년 38.5%, 2011년 34.9%, 2013년 22.4%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기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이용도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청소년 전화의 이용률은 2009년 8.6%, 2011년 8.8%, 2013년 20.7%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청년 컴퓨터 이용은 2009년 49.5%, 2011년 60.0%, 2013년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학생



* 고등학생

【그림 III-3-2】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3개년 추이

다.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로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담하여 가출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12b). 전문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일시쉼터 13개소, 단기쉼터 49개소, 중장기쉼터 30개소 등 총 92개소의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71개소, 2009년 81개소, 2012년 92개소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인원도 2006년도에 11,018명에서 2009년 16,519명, 2011년 23,42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2012)의 신고·접수된 가출청소년 현황과 비교해 보면, 2011년도에 신고 접수된 20,434명보다 더 많은 23,427명의 청소년들이 2011년도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가출청소년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과 개입을 위해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전국 일시컴터에 배치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일시컴터 야간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의료특화 이동형 컴퓨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표 III-3-14 연도별 청소년컴터 운영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시컴터	7	9	9	10	10	10	13
단기컴터	43	45	42	47	49	48	49
중장기컴터	21	25	25	24	24	25	30
계	71	72	76	81	83	83	92
이용인원(명)	11,018	14,360	15,133	16,519	16,687	23,427	-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라. 소년소녀가정 현황

보건복지부의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정은 2011년 현재 1,02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년소녀가 세대주인 경우가 699가구(68.5%)이며, 세대원인 가구는 321가구(31.5%)이다. 아동청소년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이 8가구(0.8%), 초등학생 아동이 103가구(10.1%), 중학생이 264가구(25.9%), 고등학생이 601가구(58.9%)로 소년소녀 가정 중 50%이상은 고등학생이 가장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이하도 1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소년소녀가정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연도	세대주	세대원	재학별					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2003	3,994	2,190	99	1,309	1,966	2,668	142	6,184
2004	3,504	1,940	87	1,244	1,681	2,331	101	5,444
2005	2,755	1,577	85	901	1,343	1,923	80	4,332
2006	2,086	1,185	39	572	1,031	1,570	59	3,271
2007	1,630	871	25	401	789	1,226	60	2,501
2008	1,337	721	12	292	621	1,080	53	2,058
2009	1,054	542	10	196	440	904	46	1,596
2010	905	422	9	149	375	753	41	1,327
2011	699	321	8	103	264	601	44	1,020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② 대안적 양육

가.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요보호아동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bs=INDX_001&clas_div=A).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현황을 살펴보면, 빈곤이나 부모의 실직,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2012년 현재 3,944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모에 의한 요보호 아동이 1,989명이며, 부모의 비행이나 가출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708명, 기아가 235명, 미아가 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요보호아동의 전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발생유형별로 보면 부모의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소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혼모에 의한 요보호아동과 기아의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부모의 비행이나 가출로 인한 요보호아동은 2003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16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현황

(단위: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0,222	9,393	9,420	9,034	8,861	9,284	9,028	8,590	7,483	6,926
빈곤· 실직· 학대	4,463	4,265	4,877	4,925	5,354	5,876	4,994	4,613	3,928	3,944
비행· 가출	595	581	1,413	802	748	706	707	772	741	708
미혼모	4,457	4,004	2,638	3,022	2,417	2,349	3,070	2,084	2,515	1,989
기아	628	481	429	230	305	202	222	191	218	235
미아	79	62	63	55	37	151	35	210	81	50

* 출처 :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현황(<http://www.index.go.kr>)

다음으로 보호유형별로 요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17>과 같다. 2012년 현재 전체 요보호아동 6,926명 중 3,748명(54.1%)이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2,289명(33.0%)이 가정위탁을 받고 있고, 772명(11.2%)이 입양되었으며, 소년소녀가정은 117명(1.7%)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입양과 소년소녀가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17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0,222	9,393	9,420	9,034	8,861	10,534	10,153	8,590	7,483	6,926
시설보호	4,824	4,782	4,818	4,366	3,245	4,964	4,767	4,842	3,752	3,748
가정위탁	2,392	2,212	2,322	3,101	3,378	2,838	2,734	2,124	2,350	2,289
입양	2,506	2,100	1,873	1,259	1,191	1,304	1,314	1,393	1,253	772
소년소녀 가정	500	299	407	308	247	178	213	231	128	117

* 출처 :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현황(<http://www.index.go.kr>)

3) 입양

(1) 지표의 현황

① 입양

가. 국내·외 입양 현황

정부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국내입양을 추진하고(07 국내입양우선추진제),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에만 해외입양조치 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 이러한 조치로 인해 <표 III-3-18>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해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많았으나,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많이 이루어졌다. 2011년도에 국내입양된 아동은 1,548명이며, 해외입양된 아동은 916명으로 총 2,464명의 아동이 입양조치 되었다.

표 III-3-18 국내 외 입양 현황

(단위: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	1,641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1,548
해외	2,258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916
계	3,899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1 보건복지백서

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지표의 현황

① 학대·방임

가.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보건복지부(2012b)에 의하면, 2011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0,146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은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6,05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2,921건 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1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도 2003년 19개소였으나 2011년도에는 44개소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19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	건수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증가율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아동보호 전문 기관수	기관수	19	37	38	42	43	43	44	44	44
	증가수	2	18	1	4	1	-	1	-	-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1 보건복지백서

* 주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나.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2012년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표 III-3-20>과 같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전체 피해아동의 연령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신체학대는 만 13-15세가 748명(26.2%)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만 10-12세(24.6%), 만 7-9세

(17.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도 만 13-15세가 945명(25.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 10-12세(24.1%), 만 7-9세(17.4%)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만 13-15세가 38.8%, 만 10-12세 27.8%, 만 16-18세 12.8%의 순이었으며, 방임은 만 10-12세가 577명(20.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만 13-15세(18.0%), 만 7-9세(17.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임사례 중 1세미만(9.9%)과 1-3세(14.6%)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자녀출산 후 병원 및 시설 등에 아동을 버리고 가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표 III-3-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건,%)

유형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미만	39(1.4)	93(2.5)	1(0.2)	281(9.9)	414(4.2)
1-3세	252(8.8)	378(10.0)	8(1.8)	415(14.6)	1,053(10.6)
4-6세	359(12.6)	471(12.4)	34(7.6)	430(15.1)	1,294(13.0)
7-9세	509(17.8)	660(17.4)	49(11.0)	500(17.6)	1,718(17.3)
10-12세	702(24.6)	914(24.1)	124(27.8)	577(20.3)	2,317(23.3)
13-15세	748(26.2)	945(25.0)	173(38.8)	512(18.0)	2,378(23.9)
16-18세	249(8.7)	324(8.6)	57(12.8)	134(4.7)	764(7.7)
계	2,858(100.0)	3,785(100.0)	446(100.0)	2,849(100.0)	9,938(100.0)

*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주 : 중복포함

다. 방임 경험률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소홀한 아동양육 및 보호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임희진·김현신, 2011:115).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의 방임 경험 유무와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21>과 같다.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경우가 41.7%, 년1-2회 정도가 34.4%, 월1-2회가 14.2%, 주1-2회가 5.1%, 주3회 이상이 4.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교유형과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이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1326.677$, $p<.001$, $\chi^2=215.828$, $p<.001$, $\chi^2=802.393$, $p<.001$), 먼저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급학교로 갈수록 방임의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주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방임 빈도가 주 3회 이상이 10.7%로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방임의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불결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을 살펴보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91.7%였으며, 년 1-2회가 6.2%, 월 1-2회가 1.4%, 주 1-2회가 0.4%, 주 3회 이상이 0.2%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유형과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03.382$, $\chi^2=1129.398$, $p<.001$, $\chi^2=711.338$, $p<.001$).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한 번도 없는 빈도가 88.7%로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낮았으며,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이(83.8%), 경제적 수준은 하위계층(86.2%)이 한 번도 없는 빈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보호자)이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92.4%, 년 1-2회가 5.2%, 월 1-2회가 1.5%, 주 1-2회가 0.6%, 주 3회 이상이 0.4%였으며, 이 항목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52.411$, $p<.001$, $\chi^2=948.863$, $p<.001$, $\chi^2=313.757$, $p<.001$). 학교유형별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초등학생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비율이 94.9%로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플 경우에 부모가 돌봄을 더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이 아파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이 식사를 못해도 몰랐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86.2%가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년 1-2회가 6.7%, 월 1-2회가 3.8%, 주 1-2회가 2.1%, 주 3회 이상이 1.1%였다.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와 한부모가정, 경제적 수준이 하위층인 아동·청소년들의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결석해도 부모님(보호자)이 모른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전체의 98.1%가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년 1-2회가 1.1%, 월 1-2회가 0.4%, 주 1-2회가 0.3%, 주 3회 이상이 0.2%였다.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조손가정, 경제적 하위계층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1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단위 : %)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회 정도	월1-2회 정도	주1-2회 정도	주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41.7	34.4	14.2	5.1	4.5	100.0(9,510)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봄	학교 유형	초등학교	55.2	26.2	10.7	4.0	3.9	100.0(2,827)	1326.677***
		중학교	37.8	36.4	15.5	5.7	4.6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34.4	40.1	16.0	5.7	3.9	100.0(2,797)	
		특성화고	33.9	35.5	15.4	5.0	10.2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6	35.1	13.6	4.8	3.9	100.0(8,501)	215.828***
		한부모가정	31.4	28.6	20.3	9.0	10.7	100.0(756)	
		조손가정	44.4	29.9	16.4	6.0	3.4	100.0(80)	
		기타	41.0	28.5	16.2	6.3	8.1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46.9	33.4	12.6	3.8	3.3	100.0(4,314)	802.393***
		중	40.8	35.1	14.3	5.6	4.2	100.0(3,529)	
		하	30.2	35.6	18.4	7.7	8.2	100.0(1,654)	
	전체		91.7	6.2	1.4	0.4	0.2	100.0(9,505)	
더러운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0	4.0	0.6	0.2	0.2	100.0(2,824)	703.382***
		중학교	90.5	7.2	1.5	0.6	0.2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90.6	6.9	1.8	0.4	0.3	100.0(2,797)	
		특성화고	88.7	8.2	2.6	0.6	0.0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2	6.0	1.2	0.4	0.1	100.0(8,495)	1129.398***	
	한부모가정	86.8	8.7	2.7	0.9	0.9	100.0(757)		
	조손가정	83.8	10.9	3.9	1.4	0.0	100.0(80)		
	기타	92.3	4.2	3.5	0.0	0.0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93.8	5.0	0.9	0.2	0.1	100.0(4,314)	711.338***	
	중	91.9	6.3	1.2	0.5	0.1	100.0(3,523)		
	하	86.2	9.4	3.2	0.7	0.6	100.0(1,655)		
전체		92.4	5.2	1.5	0.6	0.4	100.0(9,503)		
아파도 그냥 내버려둠	학교 유형	초등학교	94.9	3.4	0.8	0.5	0.4	100.0(2,823)	952.411***
		중학교	91.0	6.1	1.6	0.9	0.5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91.9	5.8	1.7	0.5	0.2	100.0(2,796)	
		특성화고	90.8	5.6	2.7	0.1	0.8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9	4.9	1.3	0.6	0.4	100.0(8,492)	948.863***	
	한부모가정	87.3	8.0	3.0	0.7	0.9	100.0(757)		
	조손가정	85.9	5.4	7.2	1.4	0.0	100.0(80)		
	기타	90.7	6.2	1.6	1.1	0.4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94.5	3.9	1.2	0.3	0.2	100.0(4,314)	313.757***	
	중	92.6	5.1	1.3	0.6	0.4	100.0(3,523)		
	하	86.8	8.5	2.4	1.4	0.9	100.0(1,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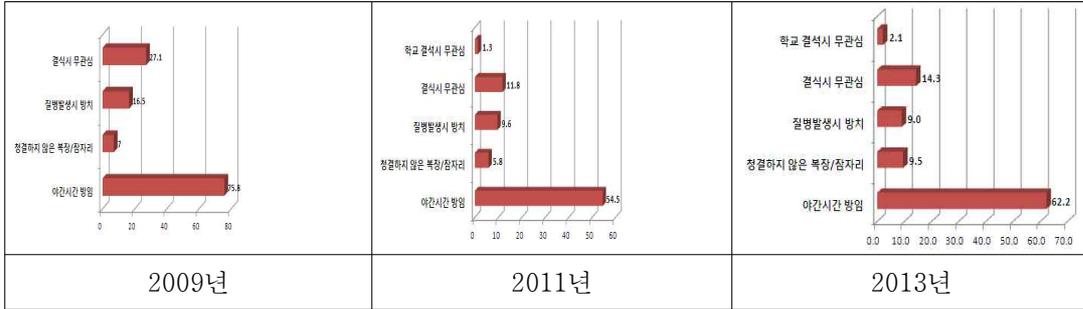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회 정도	월1-2회 정도	주1-2회 정도	주3회 이상	전체(N)	χ^2	
식사를 못해도 모름	전체	86.2	6.7	3.8	2.1	1.1	100.0(9,50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3.0	4.1	1.5	0.8	0.6	100.0(2,824)	141.757***
		중학교	85.6	6.9	4.0	2.4	1.0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81.4	8.8	5.6	2.8	1.5	100.0(2,797)	
		특성화고	79.1	8.8	5.1	4.1	2.9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7.0	6.6	3.6	1.9	1.0	100.0(8,497)	126.007***
		한부모가정	78.1	8.2	6.2	4.6	2.8	100.0(756)	
		조손가정	81.1	5.8	8.6	3.0	1.4	100.0(80)	
		기타	84.3	6.8	3.0	4.1	1.7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90.5	5.1	2.7	1.1	0.6	100.0(4,314)	4034.255***
		중	85.1	7.9	4.0	2.1	0.8	100.0(3,524)	
		하	77.2	8.6	6.3	4.8	3.1	100.0(1,655)	
	학교를 결석해도 모름	전체	98.1	1.1	0.4	0.3	0.2	100.0(9,5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3	0.5	0.1	0.1	0.0	100.0(2,822)	1354.145***
		중학교	97.9	1.1	0.4	0.5	0.1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97.9	1.2	0.6	0.1	0.2	100.0(2,797)	
		특성화고	94.3	3.2	1.8	0.2	0.5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3	1.0	0.3	0.2	0.1	100.0(8,495)	614.48***
		한부모가정	96.2	2.1	1.0	0.5	0.2	100.0(755)	
		조손가정	90.2	2.4	4.8	0.0	2.5	100.0(80)	
		기타	96.2	1.9	1.5	0.4	0.0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98.5	0.8	0.4	0.2	0.1	100.0(4,313)	276.388***
		중	98.5	0.8	0.3	0.3	0.1	100.0(3,524)	
		하	96.0	2.3	0.9	0.3	0.5	100.0(1,654)	

* p<0.05, ** p<0.01, *** p<0.001

최근 1년간 방임경험 빈도에 대한 3개년 비교결과는 <그림 III-3-3>과 같다. 학교 결석시 무관심한 경우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2009년에 비해 빈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질병발생 시 방치하는 빈도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결하지 않은 복장이나 잠자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다소 증가하였으며, 야간시간 방임은 전 연령에 걸쳐 2009년보다 2011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초등학생



* 중학생



* 중학생

* 2009년 1) '부모님 없이'에서 2011년 '돌봐주는 사람 없이'로 변경, 2013년은 2011년과 동일.

* 2011년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모른다' 문항 추가, 2013년은 2011년과 동일.

【그림 Ⅲ-3-3】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

5)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1) 지표의 현황

① 보호기관심사

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등급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9년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0년도에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표 III-3-22>와 같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항목별 등급 및 총점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도 평가결과, 총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49개소(56.0%)이며, 우수 등급 83개소(31.2%), 양호 18개소(6.8%), 보통 13개소(4.9%), 미흡 3개소(1.1%)로 우수 이상이 87.2%, 양호 이하가 12.8%였다. 세부항목별로는 재정 및 조직운영 항목에서 양호 이하가 65개소(24.5%)였으며, 인적자원관리 항목에서 양호 이하가 50개소(18.8%)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 즉,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대부분 우수하나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해야 할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권리는 최우수가 205개소(77.1%), 우수가 40개소(15.0%), 양호가 7개소(2.6%), 보통 11개소(4.1%), 미흡 3개소(1.1%)로 시설에서의 아동권리측면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2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n=266)

(단위 : 개, %)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총점	149(56.02)	83(31.20)	18(6.77)	13(4.89)	3(1.13)
시설 및 환경	218(81.95)	33(12.41)	14(5.26)	1(0.38)	-
재정 및 조직운영	71(26.69)	130(48.87)	43(16.17)	11(4.14)	11(4.14)
인적자원관리	96(36.09)	120(45.11)	33(12.41)	12(4.51)	5(1.88)
프로그램 및 서비스	167(62.78)	62(23.31)	18(6.77)	8(3.01)	11(4.14)
아동의 권리	205(77.07)	40(15.04)	7(2.63)	11(4.14)	3(1.13)
지역사회관계	161(60.53)	63(23.68)	20(7.52)	11(4.14)	11(4.14)

*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3.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정책 제언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3.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정책제언

현재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저소득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별적 서비스로 진행되던 보육정책이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2012년 기준 약 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환영받기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민간독점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민간보육시장의 지나친 독점구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왜곡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2012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 5.2%에 불과한데(표 III-3-2 참조) 이를 최소 30% 정도까지 끌어올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보육시설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과 장애아동 등을 위한 특수보육어린이집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공성 측면에서 이들 시설의 확충이 요청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보육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25.4%에 해당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75.7%)이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7.8%,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5.8%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III-3-4 참조). 다른 형태의 특수보육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이를 확대하기보다 육아휴직 등을 통해 영유아가 부모의 돌봄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원조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적 보육 필요 발생 시 탄력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시돌봄서비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갑자기 전염병이 걸려서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게 되거나 급한 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렵게 되었을 때 자녀를 돌봐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에 영유아양육지원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의 강화,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와 질 높고 포괄적인 양육지원의 내용을 만들어 내야 한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보수수준을 현실화하여 자격 있는 전문교사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보육행정체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표준보육서비스(child care minimum)를 강력히 제도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표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통폐합하여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격 미달 어린이집에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질 높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오정수, 정익중, 2013).

보육서비스의 질은 결국 보육교사의 질로 결정된다.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 2012년 기준 교사 1인당 아동수는 5.2명이고(표 III-3-5) 보육교직원(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관리체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어린이집이 민간독점 공급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집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가능한 낮은 임금의 교사를 구해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이 매우 다양하여 낮은 임금에도 일할 수 있는 예비인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좋은 교사를 고용할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일일 근무 시간은 9시간 28분, 보수(수당 포함)는 월 155만원이었고, 2009년에 보육교사의 일일 근무 시간은 평균 9시간 53분, 보수(수당 포함)는 월 13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일일 근무 시간은 25분 줄어들고, 보수는 약 17만원이 증가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가 일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에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201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보육교사 인력은 284,237명으로 1급 보육교사 비율이 49.2%, 2급이 42.2%이며 3급 교사가 8.6%이다.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1급 교사(원장 포함) 비율은 73.3% 이상이며, 법인, 법인 외, 부모협동 어린이집도

1급 교사(원장 포함) 비율이 62~67%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1급 교사(원장 포함) 비율은 각각 54.7%, 54.4%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2). 돌봄의 질은 주로 제공인력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 보수교육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와 낮은 급여 수준 등 근무환경도 개선하여 보육교사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고 유치원과 같이 보조교사, 종일제 교사 등 추가 인력 공급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교사도 교육 인력인 만큼 현행 최저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와 양성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내 필요한 인력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종일보육이나 시간연장형 보육을 담당할 경우,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만으로 모든 보육업무를 완벽하게 담당할 수 없다. 보육교사나 보조교사의 충원 뿐만 아니라 사무인력,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 청소 인력, 상담사 등 다양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어린이집 인력에 대한 개선은 보육환경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오정수, 정익중, 2013).

보육서비스는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초등학교 이상 아동은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빈곤·방임의 확대, 이혼의 급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아동의 양육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방과 후 어른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만 9-12세는 15.3%, 13-24세는 14.8%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2) 방과 후 방치 및 방임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표 III-3-1 참조). 또한 빈곤층 아동의 경우 저녁식사 후 아동이 혼자서 혹은 어른 없이 형제자매와 지내는 경우 역시 6-8세 10.9%, 12-18세 30.1%로(보건복지부, 2009) 빈곤층 가구 내 아동의 방과 후 야간방임은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야간에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 유괴는 물론 화재, 감전, 익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인의 보호없이 홀로 집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안전문제 뿐 아니라 과도한 인터넷 사용, 게임중독, 부적절한 TV시청, 무분별한 간식 등으로 공격적인 행동, 산만함, 학습결손,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익중·이경립, 2008; 정익중, 2011).

하지만 아동의 야간방임 현황을 비롯한 야간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정확한 통계조차 부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복지법 내 이용시설로서 빈곤 및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부분적으로 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중 저녁 8시 이후 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가 2007년에 전체의 25.4%였으나(지역아동정보센터, 2007), 2011년에는 54.6%로(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2배 이상 증가한 현상을 볼 때 빈곤 맞벌이 가족 내 아동의 야간보호 욕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의 방과후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방과후 서비스는 발달단계별 지원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방과후 서비스가 초등학교 위주의 사업내용으로 수행되는 측면이 많아 청소년기에 적합한 사업내용이 적절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이 성장하여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게 될 때 발달단계에 맞는 지원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적합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방과후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정익중 외, 2009, 류연규 · 김영미 · 정익중, 2011).

현재 우리나라는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방과후 보육,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등이 비슷한 사업내용을 전개하면서 각기 다른 전달체계와 다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도 위스타트,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시소와 그네 등 유사한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의 다양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며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방과후 서비스를 모두 합쳐도 저소득 지역을 조밀하게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순한 통합논의는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능별 유사성 때문에 단순하게 통합을 강조하기보다 이러한 다양성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서비스체계를 인정하되 기본규정을 정립하여 대상자 중복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를 지역종합계획 공동수립, DB구축, 공동평가, 예산 및 인력의 pooling 등 시스템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익중 외, 2009). 더불어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공급자간의 지나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돌봄교실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과후서비스기관은 부치는 상이하더라도 방과후아동센터(가칭) 등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이 48.9%이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이 24.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8 참조). 일반적으로 가족내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경험보다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수차례 경험하더라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경민·정익중, 2009).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부모역할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으며, 부모교육은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교육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부모교육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위기 상황의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들에게는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김경민·정익중, 2009). 따라서 부모교육을 부모가 공권력에 접촉할 때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자녀를 중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등 국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대신 부모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도 의무교육화되면서 5세부터 중학교까지 10년간 의무교육이 실시되므로 이러한 국가지원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접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아동기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의한 영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받는 때인 만큼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은 이들 아동보호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2) 정책제언

가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의 5.1%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답했고(표 III-3-10 참조),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을 묻는 질문에 93.7%가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 쉼터의 이용율은 1.2%로 나타나(표 III-3-13 참조) 쉼터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위상을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고위험청소년이지만 범죄청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재활율도 높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쉼터의 숫자가 2006년 71개에서 2012년 92개로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표 III-3-14 참조), 대다수 쉼터들이 큰 규모로 존재하기보다 영세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개의 쉼터가 동일 법인내 운영되기보다 각 쉼터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쉼터유형간 연계가 부족한 편이다. 쉼터의 전달체계내에서 가출청소년 발견에서부터 가정복귀, 장기보호, 자립 등 서비스가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쉼터에서 일시쉼터와 중장기쉼터 기능을 보강하여 통합적 형태(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로 운영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법인에서 여러 개의 쉼터를 운영하거나 지역내 쉼터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속적인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한다. 특히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쉼터를 규모화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해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분절 없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쉼터 서비스의 중심 역할은 이렇게 단기쉼터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기쉼터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일시쉼터와 중장기쉼터의 연결고리 역할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정익중·백혜정·박현선·천창암·박현동, 2009).

청소년쉼터의 시설은 주거공간이면서 활동 및 교육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집단활동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가정의 역할까지 감당해야한다.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활동 공간과 청소년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 공간을 동시에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위치는 이용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많은 재정부담이 수반하므로 쉼터의 시설 설치의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운영은 공모에 의한 민간 위탁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정익중·백혜정 외, 2009).

대부분 청소년쉼터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높았고, 이러한 높은 이직율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었다. 전문화된 인력은 대인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클라이언트인 아동청소년에게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온다(정익중·이정은·이상균, 2011).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국가 전문자격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되, 전문인력당 청소년비율을 1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수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문화된 인력의 잦은 이직과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에 합당한 급여 처우 조건을 개선, 야간 근무에 대한 3교대 제도, 안식월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미성년자가 가구주가 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아동복지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대로 상당수 가정 위탁으로 전환되었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를 더 빨리 다른 형태의 가정외 보호로 전환하여 미성년자가 후견인 없이 가구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대안적 양육을 받는 요보호아동과 기아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54.1%가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33.0%는 가정위탁을 받고 있고 11.2%는 입양되고 있다(표 III-3-17 참조). 아직 시설보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동이 가정형태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탁가정을 위한 제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아동을 대안적 양육에 의뢰하기 전 친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아동을 위탁한 후에도 가족복귀를 위해 친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동시에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친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아동을 입양 보내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사정하여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 적합하게 배치(placement)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신설되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시군구에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일차적인 접수가 이루어지면 민간의 각종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전문적 사정에 의한 가정외 배치(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가 필요한 경우 심의기구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담당 공무원, 아동청소년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이 참여하여 사례를 사정하고 심의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 하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고위기아동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 아동청소년팀에서 보호신청 접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욕구사정, 서비스계획,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의뢰, 종결과 평가 등 일련의 서비스 전달과정이 일관성있게

진행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가정외 배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적절한 위탁가정, 기관이나 시설에 보호의뢰를 한다. 이를 통해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배치 이후에도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적어도 6개월에 1회 정도 모니터링하여 현재의 보호체계가 적절한 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더 적절한 보호체계로 전환하거나 친가족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아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위탁부모들은 친권으로 인하여 양육에 대한 권리가 불분명하고,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으며, 양육과정에서 책임문제, 주변의 부정적이고 낮은 사회적 인식, 자원봉사자로 한정된 낮은 위상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일반위탁가정 발굴에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위탁가정 발굴 확대를 위해서는 위탁부모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보호에 참여하는 위탁부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반영한 대국민 공익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오정수, 정익중, 2013).

위탁아동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학대 등 다양한 가정내 생활사건을 통해 상처를 경험하여 문제행동이나 학업부진, 장애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이 많이 존재한다(김경민, 정익중, 2009). 이들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위탁부모의 발굴과정에서 장애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발굴하거나 기존 일반위탁부모 중에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을 돌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다른 위탁아동과 차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노충래 외, 2007). 현재 우리나라의 위탁보호 수준을 감안할 때 전문위탁가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 그룹홈을 전문치료시설을 갖춘 그룹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아동양육시설 가운데 일부를 전문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위탁부모들에게 동일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전문가정위탁의 경우는 양육보조금을 조금 더 현실화하고 임금의 개념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장애나 문제 행동 정도에 따라 양육보조금도 차별화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친가정의 역량강화를 통한 아동의 친가정 복귀이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에서 친가정은 거의 배제되고 주로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8). 현재 친부모의 참여와 책임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제재가 부재하다 보니 친부모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친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어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위탁아동의 종결 후 배치를 살펴보면 전체 종결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율은 11.8%로서 매우 낮은 실정이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빠른 시일 내에 친가정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초기 사정시 위탁서비스의 적절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아동을 위탁할 때부터 친가정을 위탁보호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친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을 위탁가정에 맡긴 친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애착이 감소되고 가정위탁에 대한 의존감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과 친부모가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친부모의 아동과의 정기적인 만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다(정익중, 2009). 친부모의 역량강화,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친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해서 친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 더 철저한 영구배치계획이나 자립지원계획을 통해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총 17개로서 종사자 1인당 약 190여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지역적으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한 개 시도에 하나로써 도 단위에 있는 센터는 하나의 센터가 그 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그리고 아동의 친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아동 전체에 대한 사례관리는 물론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CWLA)은 고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해서는 1인의 사회복지사가 12명의 아동을, 집중적인 가족보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인의 사회복지사가 2-6가족, 위탁가정의 경우 1인당 12명에서 25명이 적당하다고 기준을 세워놓았다(정익중, 2006). 전국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15,486명의 위탁아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대부분의 위탁아동에 대한 복지에 관심이 없거나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아동복지법이 2011년에 개정되면서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사회 내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발전시키고 가정위탁 된 아동의 복지와 친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을 시도나 시군구 차원에서 더 개설하고 전담인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 현재 각 시도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하고 시군구 차원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탁아동, 위탁가정 그리고 친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오정수, 정익중, 2013).

3) 입양

(2) 정책제언

국내입양 활성화는 중요한 아동복지 목표 중의 하나이지만 국내입양은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머물러있다(표 III-3-18).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 입양활성화에 협조적이지 못한 제도, 비밀입양, 홍보부족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친권을 중요시하는 현 제도로 인하여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한 아동이 많지 않고, 기아로 입소된 아동들의 경우도 역시 부모가 시설에 맡긴 경우와 비슷해 국내입양이든 해외입양이든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리고 입양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아주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는 훈련된 입양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조차 어렵다. 또한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의 책임을 개별 입양기관에만 떠넘기고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홍보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비밀입양은 혈통이나 가문을 중요시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어 다른 혈통에서 들어온 아동은 다른 가족원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입양가정에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비밀입양은 입양된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입양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도 장애가 된다. 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함으로 인하여 아동은 입양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아동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입양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동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입양의 좋은 점이나 입양의 성공 경험을 사회에 확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아동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입양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입양 사실이 공개되고 입양아동이 성공하거나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입양의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만을 보게 되므로 비밀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을 알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양의 장점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공개입양은 비밀입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며 입양의 좋은 점을 사회에 적극 알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동시에 입양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도록 국민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정익중 외, 2011). 사회문화적으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에 비해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신생여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 상당수의 가정이 여아를 입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남아나 장애아는 국내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적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다가 국외입양을 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입양에 대한 생각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김유경 외, 2010). 입양이 활성화되고 사회의 자연스런 문화로 정착되려면 정부는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단계별로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체계화하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입양가족도 정상적인 가정범주 중 하나이고,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교과서, 관련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긍정적인 입양사례를 발굴하여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명인의 입양사례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입양가족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입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입양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정익중 외, 2011).

마지막으로 아동이 입양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 부모를 철저히 심사하여 아동중심의 입양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입양대상아동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점점 많은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과의 갈등과 사회의 편견이 커서 많은 미혼모들이 아동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 입양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요보호아동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예방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감소시키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연대책임의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혼모가 친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는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입양가정, 미혼모 가정 등이堂堂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오정수, 정익중, 2013).

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2) 정책제언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는 2003년 2,921건에서 2011년 6,0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표 III-3-19 참조). 학대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야말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한미현, 2006). 따라서 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되고 실제적인 행동과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및 인식개선을 통해 학대행위를 막는 노력은 예방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강화하여 아동 스스로가 학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집중적 가정방문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저소득계층 부모들의 장시간 노동 및 인식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의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들을 활성화하여 지역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기발견 및 개입이 가능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방문의 기회가 많은 사회복지사나 지역방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증상 및 원인, 조기발견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향후 아동학대행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시기로 보편적 가정방문제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아동학대 고위험 집단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며 다학제팀으로 구성되는 가정방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는 통로로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 국민 수준의 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의 건강검진과 3회의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 전 국민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 건강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실제 수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지정된 검진기관이 있어 자신이 다니는 소아과 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며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소아과의원이 적어 예약 후 대기시간이 길어 시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기도 하며, 거주지에 따라 검진기관이 멀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방문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양육 및 영유아건강검진에 관심이 높은 가정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실제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예방 및 선별되어야 할 위기가정은 이 제도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검진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신체 측정과 발달검사에 따른 결과만을 받으며, 의료인에게 건강교육 및 진료 시간은 매우 짧아 실질적인 건강교육 및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건강교육 안에 영유아의 안전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된 매뉴얼이 부재하며 검진기관마다 달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교육의 항목이나 발달평가 및 상담 지표에 현재는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 없다.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보다 강화하면 아동학대의 보편적 예방 및 아동학대 위험가정의 조기발견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노충래, 정익중, 전종설, 2012). 첫째, 현재 영유아검진기관의 수를 지역의 영유아 수를 고려하여 보다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영유아검진을 받고 싶지만 예약 후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거주지에서 멀어 시기별 검진기간을 놓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건강교육 및 발달검사 항목에 아동학대 의심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검진 항목 안에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소아과의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1차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0-6세까지 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의지에 따라 수검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영유아검진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7회의 검진을 모두 필수검진으로 하기는 어려우나, 영아기에 1회 이상, 유아기에 1회 이상의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영유아검진 수검기록은 예방접종기록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입학 시 제출서류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모는 의료적 방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넷째,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한 번 이용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학대나 방임의 위험이 높으므로 필수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완전하게 종결이 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지원의 기본은

가족 내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아동이 가족 내에서 올바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을 것이다. 2002년에는 전체 서비스제공 횟수 7,268회 중 부모교육, 재학대 예방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4회(2.8%)에 불과하였으며 치료서비스도 99회(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1년 전체 서비스 제공횟수는 총 393,624회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310,406회(78.9%),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51,147회(13.0%),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32,071회(8.1%)가 제공되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는 증가했지만 아동학대의 감소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들의 행태 변화 유도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대행위자가 주로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장애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치료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도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학대로 자녀와 격리된 부모는 아동보호서비스 센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행해야만 아동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센터의 조치에 대해 잘 따르지 않으면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강제적인 교육이나 수강명령제도가 없다. 또한 전통적으로 친권을 중요시하여 피해자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분리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다. 이 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임은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이를 인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언론은 빈번하게 신체학대나 성학대와 관련된 매우 자극적인 사례를 보도하면서도 가장 극적이지도 생명에 위협적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방임의 사례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극적인 학대의 상황보다는 일상적인 방임의 상황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방임의 경우 학대보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사회적 관심도 쉽게 받지 못했고 적극적인 개입의 대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 중 약 절반이 방임의 희생자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방임은 학대의 다른 유형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방임은 가해자나 외부인에게 문제라는 인식자체가 전혀 없어 아동이 성장하여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나타나기 쉽다. 방임은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주변세계를 탐색할 의지가 사라지도록 천천히 지속적으로 아동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간다. 방임부모로 인한 불안정 애착은 아동의 전 생애주기 발달에서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 있다. 부부생활 적응과 부모의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여 세대를 이어가며

방임문제가 대물림되기도 한다(정익중, 2011).

아동방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방임의 예방을 위해서는 방임에 대한 인식개선이 출발점이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지 못하는 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임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학대가 범죄인 것처럼 방임도 범죄이다. 학대의 경우는 이를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방임의 경우는 아직도 사회적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방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방임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일반의 인식도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

5)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2) 정책제언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다. 2001년 아동복지시설 제1기 평가가 있었을 당시에 비해 아동복지시설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평가가 있었고 2013년에도 아동복지시설 제5기 평가가 진행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평가 준비정도도 매우 우수하고 평가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평가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가지표를 사전 개발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평가는 평가 직전에서만 평가지표를 공표하여 시설이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인력을 혹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년 전부터 지표개발을 준비하여 시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신규 지표의 경우는 지난 3년간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을 평가함으로써 늦게 개발된 평가지표에 이전 실적을 꿰맞춰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득점 취득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양적 평가에 의존했던 지난 평가에서 벗어나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횡수나 참여인원 비율 중심으로 양적 평가하는데서 벗어나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했는지, 계획서에 목표와 내용이 명시되었는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함께 평가하여 질적 수준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의 연속성과 평가준비의 용이성을 위해 정상화, 개별화,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지표들이

전폭적으로 포함되지는 못했다. 또한 시설평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질 평가에 특화하지도 못했다.

평가는 책임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상벌의 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지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원장을 교체하거나 예산과 인력을 삭감하는 등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가로부터 얻어지는 유용한 피드백 자료를 가지고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구체적인 수정완계획을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변화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만약 평가가 단지 어느 시설이 몇 등 했는지 순위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평가라면 이미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크게 자리잡고 있지만 평가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한다. 평가는 초기단계에 하위 기관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조직과 구성원들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결과를 지나치게 상벌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평가의 경쟁이 격화되어 동일분야 구성원들간의 연대와 협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속한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특징점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나눠야 하지만 평가의 무한경쟁 하에서는 그런 나눔의 행위는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선두주자들도 미숙한 하위시설에 정보를 나눠주지 않고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도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평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사라지길 바란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평가에서 발견된 강점에 더욱 집중투자해서 강화하기 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평가의 치명적인 부작용이다. 실제로 많은 시설들이 평가항목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시설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질적 수준 제고라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모든 시설들을 차별성이 없는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평가가 자리를 잡을수록 개척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결국 그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비슷비슷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민·정익중 (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사회복지학』 제25호, 93-120.
- 김유경·변미희·임성은 (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충래·정익중·전종설 (2012).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법무부.
- 류연규·김영미·정익중 (2011).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여성·아동·가족복지정책. 허재준 외. 고용친화적 복지전략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 오정수·이혜원·정익중(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 집.
- 오정수·정익중(2013). 아동복지론(제2판). 학지사.
- 정익중 (2006),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문인력 개발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12. 95-115.
- 정익중 (2008), “참여정부 아동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 14(2). 282-313.
- 정익중 (2009),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297-322.
- 정익중 (2009). 가정위탁 내 친가정 복귀의 현황과 과제. 제3회 가정위탁정책세미나 자료집.
- 정익중 (2011), “초중고 사교육비의 사회계층적 예측요인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5. 73-98.
- 정익중 (2011). 아동방임의 재조명: 방임의 사회적 방임을 넘어서. 동광 제107호, 1-33.
- 정익중·김미숙·김철민·조은경·김승형·이화미. 2011. 『대국민 입양홍보 중장기 전략연구』. 보건복지부·중앙입양정보원.
- 정익중·박현선·오승환·임정기 (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

- 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공동체.
- 정익중·박현선·오승환·임정기 (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공동체.
- 정익중·백혜정·박현선·천창암·박현동(2009). 청소년 컴퓨터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익중·이경림 (2008), 『야간요보호 아동 통합 지원사업 성과분석보고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정익중·이경림·이정은 (20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소진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1. 205-234.
- 정익중·이정은·이상균 (2011),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교사의 소진과 이직이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137-163.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2011년 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결과 보고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2011년 가정위탁현황 보고서.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2012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실태 분석

김 지 혜 (남서울대학교 교수)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김 지 혜 (남서울대학교 교수)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1) 지표의 현황

① 장애아동·청소년보호

가.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장애아동·청소년 취학률과 관련하여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4-1>과 같다. 2012년 현재,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85,012명이며, 이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 수는 총 24,932명(29.3%)이고,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총 60,080명(70.7%)이다. 일반학교 중에서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44,433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52.3%이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15,64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상학생 중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대상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애아동·청소년 통학교육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08	23,400(32.7)	37,857	10,227	48,084(67.3)	71,484(100.0)
2009	23,801(31.7)	39,380	12,006	51,386(68.3)	75,187(100.0)
2010	23,944(30.0)	42,021	13,746	55,767(70.0)	79,711(100.0)
2011	24,741(29.9)	43,183	14,741	57,924(70.1)	82,665(100.0)
2012	24,932(29.3)	44,433	15,647	60,080(70.7)	85,012(100.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을 살펴보면, <표 III-4-2>와 같다. 특수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도 이와 같다. 현원을 보면,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원이 평균 3.6명, 초등학교가 평균 4.9명, 중학교가 평균 6.2명, 고등학교가 평균 7.5명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유치원 평균 3.3명, 초등학교 4.3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6.9명으로 모두 정원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이 중, 고등학교의 정원 초과 현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2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7	5.2	6.9	7.6	3.7	4.3	6.1	7.5	3.7	4.6	6.4	7.5
부산	4.0	4.8	6.1	7.0	3.5	4.2	5.8	7.5	3.9	4.4	5.9	7.2
대구	3.6	5.2	5.9	7.2	1.9	4.3	5.7	8.3	2.4	4.5	5.8	7.6
인천	3.6	4.1	6.6	8.4	4.3	5.1	6.7	7.4	4.1	4.9	6.6	7.9
광주	4.0	5.1	5.3	7.1	4.0	4.2	5.4	6.9	4.0	4.4	5.4	7.0
대전	4.5	4.8	7.6	9.2	3.1	5.1	5.1	7.3	3.5	5.0	5.8	8.3
울산	3.0	4.3	5.0	7.4	3.4	4.7	5.4	6.8	3.3	4.6	5.2	7.1
경기	3.4	5.4	6.3	7.3	3.0	4.5	5.2	6.4	3.2	4.7	5.4	6.7
강원	5.8	4.0	5.3	7.4	3.5	3.8	5.9	6.9	4.4	3.9	5.7	7.2
충북	3.3	4.8	5.7	7.2	3.1	5.0	5.6	7.4	3.2	4.9	5.7	7.3
충남	3.4	4.3	5.6	7.3	3.9	4.0	4.9	6.3	3.8	4.0	5.1	6.8
전북	3.4	5	7.4	9.1	2.4	3.7	5.2	7.4	3.0	4.0	6.0	8.5
전남	2.3	5.5	7.7	8.8	3.0	4.4	5.1	6.9	2.9	4.6	5.6	7.6
경북	3.7	4.8	5.9	7.7	2.6	3.7	4.7	6.5	3.1	3.9	5.1	7.2
경남	3.4	4.9	5.2	6.7	4.0	4.4	5.4	6.3	3.8	4.4	5.3	6.5
제주	1.7	4.1	5.2	5.4	3.3	4.3	5.7	8.0	2.6	4.2	5.5	6.1
평균	3.6	4.9	6.2	7.5	3.3	4.3	5.4	6.9	3.5	4.5	5.7	7.2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나. 장애 청소년 취업률

장애 청소년 취업률은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과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일반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으로 구분하여 취업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특수학교 졸업생의 2012년도 취업률은 39.1%이고,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2012년도 취업률은 60.8%, 일반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의 취업률은 37.4%로 나타나서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장애정도, 졸업인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들은 이료관련 업종에 7.9%가 취업하였으며, 복지관 등에 7.1%, 포장조립운반 업종에

5.6%가 취업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경남 지역에서 50%이상의 취업률을 보였다.

표 III-4-3 2012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임업어업	제과제빵	IT및정보서비스	상업	의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등*	기타	소계	
서울	531	302	2	14	-	-	-	-	29	2	-	4	22	53	126	55.0
부산	181	90	1	5	-	-	1	-	6	1	-	-	7	33	54	59.3
대구	159	50	-	2	-	-	-	-	6	-	-	-	4	4	16	14.7
인천	126	59	-	2	-	-	-	-	6	1	-	-	10	19	38	56.7
광주	94	36	-	-	-	-	-	-	6	-	-	-	1	1	8	13.8
대전	79	55	-	3	-	-	-	-	9	-	-	-	-	5	17	70.8
울산	51	31	-	-	-	-	1	-	-	-	-	-	-	-	1	5.0
경기	356	157	-	15	1	-	6	-	-	2	-	-	19	31	74	37.2
강원	95	73	-	4	-	2	-	-	9	-	-	-	-	4	19	86.4
충북	132	92	-	1	-	-	1	-	7	-	-	-	-	8	17	42.5
충남	87	62	-	-	-	-	-	-	-	-	-	-	1	2	3	12.0
전북	136	69	-	7	-	1	1	-	3	1	-	-	1	2	16	23.9
전남	111	27	-	3	2	-	3	-	9	1	-	-	8	1	27	32.1
경북	153	114	-	-	-	-	-	-	-	-	-	-	2	1	3	7.7
경남	135	104	-	7	1	-	-	-	-	2	2	-	1	6	19	61.3
제주	43	15	-	-	-	-	-	-	-	-	-	-	4	1	5	17.9
계	2,469	1,336	3	63	4	3	13	-	90	10	2	4	80	171	443	39.1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100

*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 의료 : 의료술은 체표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여 피로 회복과 건강 증진을 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의료유사업에 속하는 처치 방법. 이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 및 침, 뜸, 전기치료 등의 기타 자극요법을 총칭함(출처 : 서울맹학교 홈페이지 <http://www.bl.sc.kr/sub/bl/youngsan/sub01/index.do>)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다음으로 일반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들은 복지관 등에 21.2%가 취업을 했고, 그 다음으로 포장조립운반업에 10.3%, 서비스업에 7.4%가 취업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제주가 6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I-4-4 2012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현황

(단위 : 명, %)

사·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임업어업	제과제빵	IT및정보서비스	상업	의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등*	기타	소계	
서울	401	55	3	17	-	1	-	-	48	17	21	94	31	232	67.1	
부산	151	62	-	10	2	2	1	-	-	4	1	1	24	4	49	55.1
대구	112	87	-	4	-	-	-	-	-	1	-	-	3	5	13	52.0
인천	169	55	7	10	-	-	-	-	-	3	1	1	13	13	48	42.1
광주	68	44	-	3	-	-	4	-	-	1	-	-	6	2	16	66.7
대전	98	48	-	3	-	-	-	-	-	6	3	3	6	3	24	48.0
울산	57	40	-	-	-	-	-	-	-	2	-	-	1	1	4	23.5
경기	689	192	1	47	3	9	3	4	-	34	10	11	119	85	326	65.6
강원	64	24	-	6	-	-	-	-	-	2	-	4	5	14	31	77.5
충북	99	25	-	17	1	-	-	-	-	8	1	3	20	3	53	71.6
충남	167	81	-	21	2	-	-	-	-	3	3	1	11	8	49	57.0
전북	65	29	-	8	-	-	-	-	-	1	-	1	5	3	18	50.0
전남	115	28	-	9	5	1	-	-	-	3	2	5	12	9	46	52.9
경북	136	58	-	4	2	-	1	-	-	3	-	1	18	13	42	53.8
경남	147	63	-	8	-	1	1	-	-	2	-	1	14	18	45	53.6
제주	38	18	4	4	-	1	-	-	-	2	1	-	3	2	17	85.0
계	2,576	909	15	171	15	15	10	4	-	123	39	53	354	214	1,013	60.8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114페이지)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일반고등학교의 일반학급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들은 포장조립운반업에 5.7%, 복지관 등에 2.7%, 서비스업에 2.5%가 취업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 강원, 충남, 제주가 5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I-4-5 2012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임업어업	제과제빵	IT및정보서비스	상업	이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등*	기타		소계
서울	163	72	-	3	-	1	-	-	-	1	3	-	3	20	31	34.1
부산	53	35	-	1	-	-	-	-	-	1	-	-	3	3	8	44.4
대구	90	58	-	2	-	-	-	-	-	-	-	-	2	6	10	31.3
인천	29	18	-	1	-	-	-	-	-	2	-	-	-	1	4	36.4
광주	12	10	-	-	-	-	-	-	-	-	-	-	-	-	-	-
대전	51	36	-	4	-	-	-	-	-	1	-	1	-	3	9	60.0
울산	56	45	-	1	-	-	-	-	-	1	-	-	-	-	2	18.2
경기	236	104	-	3	-	3	-	-	-	3	3	-	2	36	50	37.9
강원	33	18	-	2	-	-	-	-	-	1	-	1	1	3	8	53.3
충북	72	31	-	5	-	-	-	-	-	1	1	2	-	10	19	46.3
충남	30	16	-	3	-	-	-	-	-	-	-	-	-	6	9	64.3
전북	50	29	-	1	-	1	-	-	-	-	-	-	-	5	7	33.3
전남	39	7	-	-	1	-	-	-	-	-	-	2	3	3	9	28.1
경북	59	27	-	3	-	1	1	1	-	-	-	2	-	3	11	34.4
경남	95	51	-	-	-	-	-	-	-	2	-	1	-	5	8	18.2
제주	26	15	-	1	-	1	-	-	-	-	-	1	-	7	10	90.9
계	1,094	572	-	30	1	7	1	1	-	13	7	10	14	111	195	37.4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115페이지)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2) 생존 및 발달

(1) 지표의 현황

① 생존과 발달 보장

가. 15-19세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15-19세 여성의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은 <표 III-4-6>과 같다.

2011년도의 15-19세 여성 청소년의 출산율은 1,000명당 1.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1983년도에 13.0명, 1993년도 4.4명, 2003년도 2.5명으로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5-19세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미혼인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III-4-6 15-19세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명, 인구 1천명당)

연도	15-19세 출산율	합계출산율
1983	13.0	2.06
1988	5.7	1.55
1993	4.4	1.65
1998	2.8	1.45
2003	2.5	1.18
2004	2.3	1.15
2005	2.1	1.08
2006	2.2	1.12
2007	2.2	1.25
2008	1.7	1.19
2009	1.7	1.15
2010	1.8	1.23
2011	1.8	1.24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출생편).

* 주 : 1) 15-19세 출산율: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2) 합계 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명)

나. 0세의 기대여명

0세의 기대여명이란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 수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수명이다(임희진·김현신, 2011: 137).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0세 기대여명은 81.20세이며, 남자는 77.65세, 여자는 84.45세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8세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5년에는 기대수명이 68.44였으며, 1995년에는 73.53세, 2000년도는 76.02세, 2005년도는 78.63세, 2010년도는 80.79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I-4-7 0세의 기대여명

(단위 : 세)

연도	남자	여자	전체
1985	64.45	72.82	68.44
1990	67.29	75.51	71.28
1995	69.57	77.41	73.53
2000	72.25	79.60	76.02
2003	73.86	80.81	77.44
2004	74.51	81.35	78.04
2005	75.14	81.89	78.63
2006	75.74	82.36	79.18
2007	76.13	82.73	79.56
2008	76.54	83.29	80.08
2009	76.99	83.77	80.55
2010	77.20	84.07	80.79
2011	77.65	84.45	81.20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생명표

* 주 :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 수

다.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당해년도 출생아 가운데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수를 출생아 천명당으로 나타내는 보건지표로 국제적으로 국민 보건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9)

지표는 생존기간별로 구분을 하는데 출생한지 0-2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신생아 사망이라고 하며, 생후 28-364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는 신생아 후기 사망이라고 한다. 영아사망이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출생 후 0-364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지칭한다. 2011년도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3.0명으로 2010년(3.2명)대비 5.1% 감소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제공한 e-나라지표에 의하면, 2010년 OECD 34개국의 영아사망률은 평균 4.3명으로 한국(3.2명)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스웨덴(2.1명)이나 일본(2.3)보다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 명, 인구 1천명당)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여	전체												
신생아 사망률	2.2	1.9	2.1	2.0	1.8	2.0	1.8	1.7	1.7	2.1	1.5	1.8	2.0	1.5	1.7
신생아후기사망률	-	-	-	-	-	-	1.5	1.4	1.5	1.6	1.2	1.4	1.6	1.2	1.3
영아사망률	3.8	3.4	3.6	3.6	3.4	3.5	3.3	3.1	3.2	3.7	2.7	3.2	3.4	2.7	3.0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통계조사

주) * 영아사망률 : 연간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수

* '08조사(2005~2006 영아모성사망조사)부터 2년주기 조사로 변경

* '10년조사(2007~2008 영아모성사망조사)부터 신생아후기 사망률은 산출하지 않음

라. 아동·청소년 사망률

0-24세 아동·청소년의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은 <표 III-4-9>와 같다. 2011년 연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0세 318.9명, 1-4세가 20.9명, 5-9세가 10.0명, 10-14세가 12.6명, 15-19세가 28.3명, 20-24세가 41.7명으로 0세인 영아를 제외하면,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14세 이하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0-14세를 제외한 연령은 조금씩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0-14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슷한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I-4-9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연령별	2008		2009		2010		2011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0세	1,580	345.5	1,415	325.7	1,506	345.0	1,435	318.9
1-4세	455	24.7	405	22.0	386	20.9	389	20.9
5-9세	386	13.4	384	14.0	277	10.8	239	10.0
10-14세	431	12.5	441	13.1	417	12.7	402	12.6
15-19세	1,004	29.9	1,073	31.2	1,034	29.4	1,003	28.3
20-24세	1,525	47.3	1,507	47.9	1,411	45.1	1,318	41.7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 주: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표 III-4-10>과 같다. 2011년에 1-9세의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선천기형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0-19세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의 순이었다. 20-29세는 10-19세와 마찬가지로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10-19세, 20-29에서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4-10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연령					
		1-9세		10-19세		20-29세	
		사망원인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원인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원인	사망률 (10만명당)
2008년	1순위	운수사고	3.2	운수사고	5.0	고의적자해 (자살)	22.6
	2순위	악성신생물 (암)	2.7	고의적자해 (자살)	4.6	운수사고	10.4
	3순위	선천기형	1.4	악성신생물 (암)	2.9	악성신생물 (암)	5.8
2009년	1순위	운수사고	3.2	운수사고	5.0	고의적자해 (자살)	22.6
	2순위	악성신생물 (암)	2.7	고의적자해 (자살)	4.6	운수사고	10.4
	3순위	선천기형	1.4	악성신생물 (암)	2.9	악성신생물 (암)	5.8
2010년	1순위	운수사고	2.8	고의적자해 (자살)	5.2	고의적자해 (자살)	24.4
	2순위	악성신생물 (암)	2.1	운수사고	4.8	운수사고	9.0
	3순위	선천기형	1.3	악성신생물 (암)	3.0	악성신생물 (암)	5.0
2011년	1순위	악성신생물 (암)	2.6	고의적자해 (자살)	5.5	고의적자해 (자살)	24.3
	2순위	운수사고	2.1	운수사고	4.7	운수사고	7.9
	3순위	선천기형	1.4	악성신생물 (암)	3.0	악성신생물 (암)	5.3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 주 :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마. 사고사망률

아동청소년의 사고 사망률과 사망의 외인은 <표 Ⅲ-4-11>과 같다. 사고사망률이란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로 인해 인구 10만명당 사망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1년의 연령별 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0세가 인구 10만명당 16.9명, 1-9세가 4.8명, 10-19세가 12.7명, 20-29세가 36.8명으로 20세 이상의 사고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세, 10-19세, 1-9세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보면, 0세는 타살이 인구 10만명당 4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운수사고(1.3명)와 추락사고(0.9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세 영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부주의나 보호자에 의한 살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는 운수사고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추락사고와 익사사고, 타살이 모두 0.7명이었다. 10-19세는 자살이 인구 10만명당 5.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운수사고(4.7명), 익사사고(0.7명)의 순이었다. 20-29세는 자살이 인구 10만명당 2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수사고(7.9명), 익사사고(0.9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0-19세를 제외한 다른 연령에서는 사고사망률이 조금씩 감소하였다.

표 III-4-11 사고 사망률

(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연령	2008	2009	2010	2011	사망의 외인						
					운수 사고	추락 사고	익사 사고	화재 사고	중독 사고	자살	타살
0세	19.7	18.2	18.6	16.9	1.3	0.9	-	-	-	-	4.4
1-9세	7.5	6.7	5.5	4.8	2.1	0.7	0.7	0.2	-	-	0.7
10-19세	12.7	13.9	12.7	12.7	4.7	0.2	0.7	0.2	-	5.5	0.4
20-29세	39.4	41.0	39.0	36.8	7.9	0.7	0.9	0.1	0.1	24.3	0.7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 주 :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 주 :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 주 :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바. 자살률

통계청의 2011년도 아동·청소년 자살률 조사에 의하면, 10-14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명이고, 15-19세는 8.9명이며, 20-24세는 17.7명, 25-29세는 30.1명으로 10세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10-14세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으나 15세 이후부터는 남자청소년의 자살률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최근 10년 동안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III-4-12 자살률

(단위:명, 인구 10만명당)

연령	남			여			전체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10-14세	0.7	0.7	1.8	1.3	1.2	1.7	0.9	1.0	1.8
15-19세	5.8	6.6	10.1	4.9	5.9	7.6	5.3	6.2	8.9
20-24세	12.2	12.5	20.3	7.4	11.3	14.7	9.8	11.9	17.7
25-29세	17.2	17.6	35.2	7.3	13.3	24.6	12.4	15.5	30.1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질문한 결과는 <표 III-4-13>과 같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63.1%였으며, 가끔 생각한다는 32.3%, 자주 생각한다는 4.6%로 나타났고, 성별과 학교유형,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71.053, p<.001, \chi^2=51.723, p<.001, \chi^2=44.47, p<.001, \chi^2=48.09, p<.001, \chi^2=5.316, p<.05, \chi^2=1.7, p>.05$). 성별로는 여학생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이 45.8%, 남학생이 28.9%로 여학생의 자살생각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 37.3%, 중학교 36.9%, 특성화고 34.9%의 순으로 일반 학생의 자살생각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 청소년의 자살생각 빈도가 38.5%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의 49.3%가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학업성적은 하위인 청소년의 자살생각 빈도(44.5%)가 중상위에 비해 높았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층 청소년의 자살생각 빈도(44.9%)가 중상위층에 비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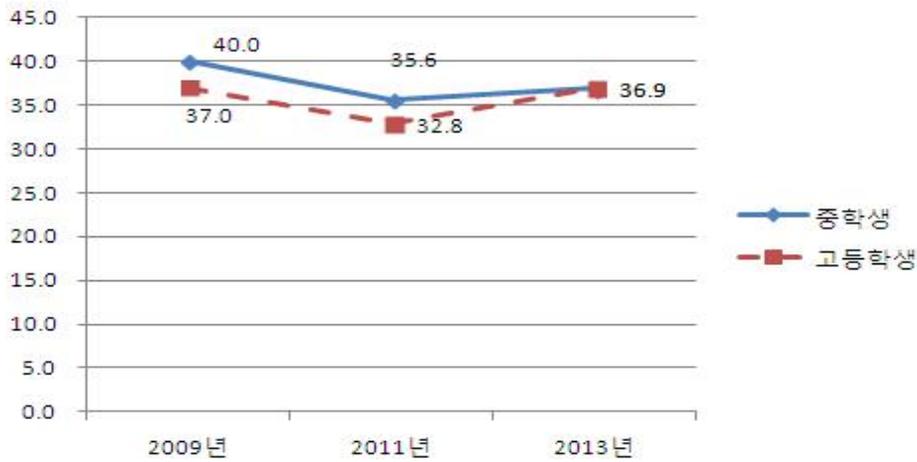
표 III-4-13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여부

(단위 : %)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63.1	32.3	4.6	100.0(6,669)	
성별	남자	71.1	25.7	3.2	100.0(3,497)	71.053***
	여자	54.2	39.6	6.2	100.0(3,172)	
학교 유형	중학교	63.0	31.5	5.4	100.0(3,269)	51.723***
	일반/특목/자율고	62.7	33.2	4.1	100.0(2,791)	
	특성화고	65.1	32.2	2.7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61.5	33.7	4.8	100.0(2,776)	44.47***
	중소도시	64.4	30.9	4.7	100.0(3,017)	
	읍면지역	63.7	32.4	3.9	100.0(8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3.8	31.9	4.3	100.0(5,941)	48.09***
	한부모가정	57.4	35.6	7.0	100.0(571)	
	조손가정	50.8	36.4	12.9	100.0(46)	
	기타	60.4	32.9	6.7	100.0(100)	
학업 성적	상	68.2	28.3	3.5	100.0(1,738)	5.316*
	중	66.2	30.0	3.7	100.0(2,633)	
	하	55.5	38.0	6.5	100.0(2,289)	
경제적 수준	상	64.7	31.6	3.7	100.0(2,551)	1.7
	중	66.1	29.8	4.1	100.0(2,626)	
	하	55.1	37.8	7.1	100.0(1,481)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3개년 추이비교는 <그림 III-41>과 같다.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를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분석한 결과, 2009년에는 중학생의 40.0%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며, 2011년도에는 35.6%, 2013년도에는 36.9%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2009년에 37.0%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32.8%, 2013년에는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끔 있다+자주 있다' = '있다'로 계산

* 문구: 2009년, 2011년 '자살'에서 2013년 '죽고 싶다는'으로 변경.

* 문구: 2009년 '전혀 없다,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에서 2011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로 변경, 2013년은 2011년과 동일.

【그림 Ⅲ-4-1】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 여부의 3개년 추이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Ⅲ-4-14>와 같다. 자살생각을 한 청소년 중 40.4%가 그 원인이 학교성적이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이 27.6%,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이 9.6%, 경제적 어려움이 2.0%로 성적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학교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인 학교 성적때문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은 가족간의 갈등이 28.1%로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이 가장 많았으며(41.6%),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들은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이 더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상위층과 중위층은 학교성적으로 인해, 하위층은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살을 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4 자살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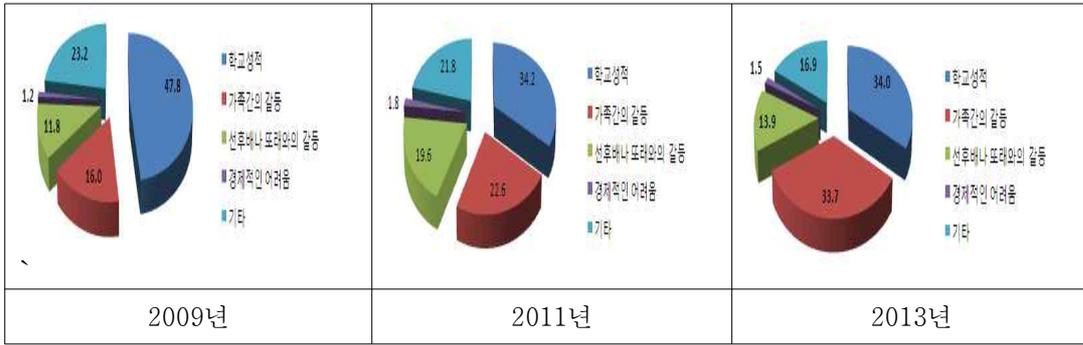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학교 성적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 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	기타	전체(N)	χ^2
전체		40.4	27.6	9.6	2.0	20.5	100.0(2,443)	
학교 유형	중학교	34.0	33.7	13.9	1.5	16.8	100.0(1,205)	177.124***
	일반/특목/자율고	50.5	20.3	5.2	1.8	22.2	100.0(1,031)	
	특성화고	27.1	28.1	5.9	5.6	33.3	100.0(2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1.6	26.7	9.5	1.6	20.6	100.0(2,138)	19.74***
	한부모가정	31.5	35.2	9.5	4.5	19.4	100.0(239)	
	조손가정	33.6	38.4	4.8	5.6	17.6	100.0(23)	
	기타	37.6	23.4	16.4	3.5	19.1	100.0(40)	
경제적 수준	상	44.7	25.5	9.1	0.5	20.2	100.0(895)	17.31**
	중	43.8	25.2	10.7	0.9	19.4	100.0(884)	
	하	30.1	33.7	8.6	5.5	22.1	100.0(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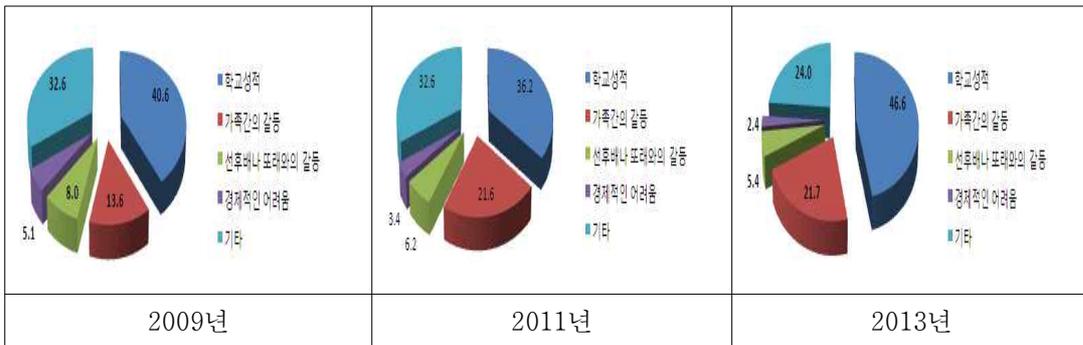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자살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4-2>와 같다. 먼저, 중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2009년 47.8%, 2011년 34.2%, 2013년 34.0%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2009년 16.0%, 2011년 22.6%, 2013년 33.7%로 증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2009년 40.6%, 2011년 36.2%, 2013년 46.6%로 2013년도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도 2009년 13.6%, 2011년 21.6%, 2013년 21.7%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중학생



* 고등학생

* 2009년에만 '외로움'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기타에 포함시킴.

* 문구: 2009년 '친구관계문제'에서 2011년 '친구와의 갈등'으로, 2013년에는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으로 변경.

* 문구: 2009년, 2011년 '가정불화'에서 2013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변경.

【그림 III-4-2】 자살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의 3개년 추이

사. 고민거리 대화상대

자신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III-4-15>와 같다. 전체 아동·청소년의 9.3%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친구가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 34.4%, 형제/자매 5.4%, 아버지 5.3%의 순이었고, 담임선생님(1.0%), 학교 상담선생님(0.8%), 이웃이나 친척(0.6%), 청소년 상담관련 센터(0.4%)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어머니와 고민을 나눈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이 부모보다 친구(46.1%)와 고민을 나누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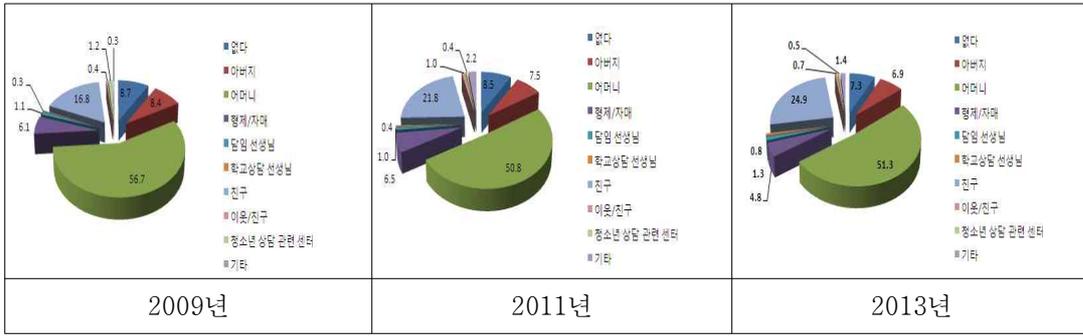
표 III-4-15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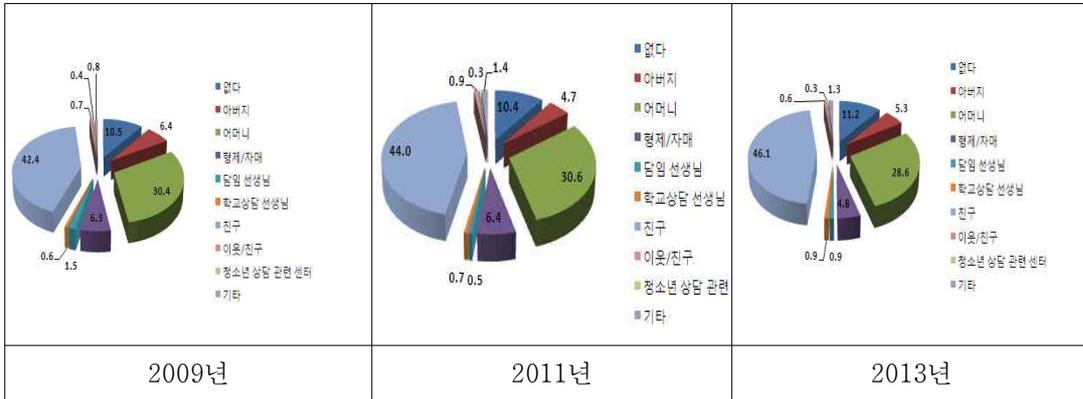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 상담 관련 센터	기타	전체(N)	χ^2
전체		9.3	5.3	34.4	5.4	1.0	0.8	41.6	0.6	0.4	1.2	100.0(9,385)	
학교 유형	초등학교	7.3	6.9	51.3	4.8	1.4	0.8	24.9	0.7	0.5	1.5	100.0(2,784)	491.755***
	중학교	11.1	5.2	28.6	4.8	1.0	1.0	46.1	0.6	0.3	1.3	100.0(3,231)	
	일반/특목/자율고	8.5	3.6	26.6	6.8	0.8	0.6	51.0	0.7	0.4	1.1	100.0(2,768)	
	특성화고	11.8	5.8	23.7	4.9	0.4	0.3	51.9	0.8	0.1	0.3	100.0(60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8	5.0	35.8	5.3	1.0	0.7	41.4	0.5	0.4	1.1	100.0(8,433)	86.605***
	한부모가정	13.6	7.6	24.2	5.3	1.1	1.3	42.7	1.3	0.4	2.5	100.0(750)	
	조손가정	22.0	2.9	20.5	12.7	1.1	1.3	28.2	6.1	0.0	5.1	100.0(80)	
	기타	5.3	9.0	13.5	9.1	3.6	0.0	58.3	0.0	0.4	0.8	100.0(101)	
경제적 수준	상	7.1	6.3	40.2	4.8	1.1	0.6	37.5	0.6	0.4	1.5	100.0(4,255)	111.921***
	중	9.0	4.7	32.2	5.8	1.0	0.9	44.6	0.8	0.3	0.7	100.0(3,486)	
	하	15.5	4.0	24.4	6.0	0.7	0.8	46.1	0.6	0.4	1.5	100.0(1,63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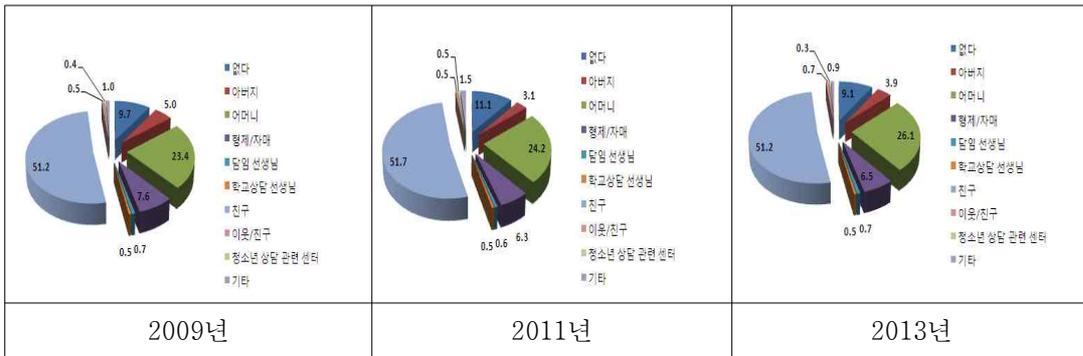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3개년 추이는 <그림 III-4-3>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친구는 2009년 16.8%에서 2011년 21.8%, 2013년 24.9%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친구는 2009년 42.4%에서 2011년 44.0%, 2013년 46.1%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은 초, 중학생과는 달리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응답이 2009년 23.4%에서 2011년 24.2%, 2013년 26.1%로 다소 증가하고 있었으며, 친구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그림 Ⅲ-4-3】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3개년 추이

아. 범죄 피해건수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는 <표 III-4-16>과 같다. 2011년도에 만 13세에서 20세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는 총 59,820건이며, 이는 청소년 인구 1,000명당 11.0건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은 인구 1,000명당 12.8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여자 청소년은 8.9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범죄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청소년 인구 1,000명당 5.5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13.1명이었다. 2010년도부터는 다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4-16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

(단위 : 건, 명, 인구 1천명당)

연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추계 인구수	피해율	피해 건수	추계 인구수	피해율	피해 건수	추계 인구수	피해율
2003	17,892	2,751,257	6.5	10,858	2,520,331	4.3	28,750	5,271,588	5.5
2004	25,000	2,705,387	9.2	17,038	2,463,396	6.9	42,038	5,168,783	8.1
2005	26,733	2,703,107	9.9	17,116	2,447,997	7.0	43,849	5,151,104	8.5
2006	27,526	2,729,734	10.1	17,355	2,450,374	7.1	44,881	5,180,108	8.7
2007	34,487	2,758,794	12.5	20,280	2,461,537	8.2	54,767	5,220,331	10.5
2008	38,680	2,797,367	13.8	22,580	2,480,493	9.1	61,260	5,277,860	11.6
2009	44,797	2,831,004	15.8	24,895	2,501,424	10.0	69,692	5,332,428	13.1
2010	39,695	2,841,982	14.0	24,363	2,518,442	9.7	64,058	5,360,428	12.0
2011	37,034	2,882,185	12.8	22,786	2,565,557	8.9	59,820	5,447,742	11.0

* 출처 :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홍영오(2008) 재구성

* 원자료 :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2008-2011년 자료는 2009-2012 범죄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 주: 피해율: 인구 1천명당 피해건수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용

* 청소년 : 만 13세에서 만 20세

자.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I-4-17>과 같다. 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 중 우리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은 52.9%였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여학생(47.6%)보다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48.6%, 일반/특목/자율고 49.2%, 특성화고 44.0%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경우 우리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였고, 중위층은 50.5%, 하위층이 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16.408, p<.001, \chi^2=73.741, p<.001, \chi^2=41.086, p<.001$).

표 III-4-17 현재 거주하는 동네의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도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1.0	36.1	42.6	10.3	100.0(9,493)	
성별	남자	10.4	31.9	44.6	13.1	100.0(4,975)	116.408***
	여자	11.7	40.6	40.3	7.3	100.0(4,5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	26.9	44.5	19.0	100.0(2,819)	73.741***
	중학교	12.7	38.8	41.3	7.3	100.0(3,269)	
	일반/특목/자율고	10.1	40.6	43.3	5.9	100.0(2,796)	
	특성화고	13.2	42.8	36.7	7.3	100.0(609)	
경제적 수준	상	9.6	30.9	44.7	14.8	100.0(4,305)	41.086***
	중	10.3	39.2	42.8	7.7	100.0(3,526)	
	하	16.2	42.8	36.7	4.3	100.0(1,653)	

* p<0.05, ** p<0.01, *** p<0.001

차.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II-4-18>과 같다. 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 중 우리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은 56.8%였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43.2%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로 여학생(47.6%)보다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53.8%, 일반/특목/자율고 51.6%, 특성화고 42.5%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경우 우리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4%였고, 중위층은

55.2%, 하위층이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1.678, p<.01, \chi^2=185.781, p<.001, \chi^2=65.895, p<.001$).

표 III-4-18 현재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1.5	31.7	43.9	12.9	100.0(9,510)	
성별	남자	10.1	24.8	47.9	17.2	100.0(4,981)	21.678**
	여자	13.0	39.4	39.4	8.2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8.4	23.2	44.8	23.6	100.0(2,826)	185.781***
	중학교	12.6	33.6	44.3	9.5	100.0(3,279)	
	일반/특목/자율고	12.2	36.1	44.3	7.3	100.0(2,795)	
	특성화고	15.9	41.6	35.4	7.1	100.0(609)	
경제적 수준	상	9.5	26.1	45.8	18.6	100.0(4,313)	65.895***
	중	11.1	33.7	45.6	9.6	100.0(3,533)	
	하	17.5	42.1	35.2	5.2	100.0(1,655)	

* $p<0.05$, ** $p<0.01$, *** $p<0.001$

3) 보건서비스

(1) 지표의 현황

① 건강관리조치

가. 보건교사 배치현황

교육부(2013)의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현황은 <표 III-4-19>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 초등학교 5,895개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4,219개교로 배치율은 71.6%이다. 중학교는 전체 3,162개교 중 1,623개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51.3%의 배치율을 보였으며, 고등학교는 2,303개교 중 1,568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배치율 68.1%), 특수학교는 156개교 중 133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배치율 85.3%).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65.5%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중학교의 경우에는 51.3%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배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III-4-19 보건교사 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 수	5,895	3,162	2,303	156	11,516
보건교사배치 (배치율)	4,219 (71.6%)	1,623 (51.3%)	1,568 (68.1%)	133 (85.3%)	7,543 (65.5%)

* 출처 : 교육부(2013). 2013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원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서비스

나. 의료급여 대상자 수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노숙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2011년도에 0세-24세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473,465명이며, 연령별로는 10-19세 청소년이 다른 연령에 비해 대상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4-20 의료급여 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도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합계
2003	4,428	33,012	88,496	126,586	148,669	61,932	463,123
2004	5,261	34,487	92,169	137,618	149,950	64,351	483,836
2005	8,258	67,917	141,744	165,317	159,314	69,113	611,663
2006	5,210	61,829	148,713	184,578	172,483	68,080	640,893
2007	7,070	53,523	141,445	190,788	185,232	66,647	644,705
2008	6,801	46,386	129,235	190,752	197,224	69,333	639,731
2009	5,910	29,959	73,023	146,222	190,204	76,037	521,355
2010	6,290	29,296	63,926	136,668	190,850	81,384	508,414
2011	5,675	28,606	55,665	121,758	178,942	82,819	473,465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 통계연보

다. 학교급식 만족도

아동·청소년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4-21>과 같다. 응답한 전체 학생 중 학교급식에 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는 학생은 75.3%이고,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6.3%, 중학교는 77.6%, 일반/특목/자율고는 64.0%, 특성화고 62.5%로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 학생들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76.5%, 중소도시는 73.2%, 읍면지역 78.4%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상위층 학생이 급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5%, 중위층 학생은 74.6%, 하위층 학생은 68.3%로 하위층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1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6.0	18.7	58.1	17.2	100.0(9,483)	
학교 유형	초등학교	2.8	10.8	59.2	27.1	100.0(2,825)	27.111***
	중학교	4.4	17.9	60.6	17.0	100.0(3,268)	
	일반/특목/자율고	10.0	26.1	55.0	9.0	100.0(2,786)	
	특성화고	11.5	25.9	53.8	8.7	100.0(604)	
지역 규모	대도시	6.0	17.5	57.8	18.7	100.0(3,926)	30.504***
	중소도시	6.5	20.3	57.4	15.8	100.0(4,380)	
	읍면지역	4.4	17.1	61.6	16.8	100.0(1,176)	
경제적 수준	상	5.4	16.1	57.4	21.1	100.0(4,305)	27.294***
	중	5.8	19.6	59.8	14.8	100.0(3,522)	
	하	8.2	23.6	56.5	11.8	100.0(1,642)	

* p<0.05, ** p<0.01, *** p<0.001

라. 학교급식 안전현황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에 사회조사에 응답한 13-24세 청소년 중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25.9%, 보통은 49.5%, 불안은 2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3-19세 청소년이 20-24세 청소년에 비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4-22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안전함			보통	불안함		
	안전함	매우	약간		불안함	약간	매우
계	25.9	4.7	21.3	49.5	24.6	20.5	4.1
13-19세	30.2	6.1	24.1	47.7	22.1	17.9	4.1
20-24세	19.3	2.5	16.8	52.2	28.5	24.5	4.0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 통계

*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2.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주된 이유는 ‘급식관리자의 식품안전의식부족’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급식되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 28.1%, ‘언론의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가 14.0%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3-19세 청소년은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급식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20-24세 청소년은 ‘급식관리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이라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4-23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이 불안한 이유

(단위:%)

	정부의 관리미흡	급식관리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언론의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급식되는 것을 본적이 있기 때문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부족	기타
계	19.5	33.2	14.0	28.1	4.3	0.9
13-19세	18.5	30.0	14.2	31.0	4.9	1.4
20-24세	20.6	37.1	13.8	24.7	3.6	0.2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 통계

*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2.

*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만 대상으로 조사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1) 지표의 현황

① 건강 평가 및 관심도

가. 주관적 건강평가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건강평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II-4-24>와 같다. 응답한 전체 학생 중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는 응답은 83.6%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은 16.4%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92.5%였고, 중학생은 83.7%, 일반/특목/자율고는 76.2%, 특성화고는 76.3%로 고등학생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9%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79.1%였으며,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81.1%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87.7%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83.4%, 하위층은 73.5%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4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1.3	15.1	62.4	21.2	100.0(9,493)	
학교 유형	초등학교	0.7	6.8	55.6	36.9	100.0(2,812)	11.264*
	중학교	1.4	14.9	65.2	18.5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2.0	21.9	64.7	11.5	100.0(2,798)	
	특성화고	1.1	22.7	67.9	8.4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	14.8	62.4	21.5	100.0(8,485)	18.632**
	한부모가정	2.2	18.6	62.5	16.6	100.0(754)	
	조손가정	0.6	18.3	61.0	20.1	100.0(80)	
	기타	1.3	13.5	57.9	27.2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1.1	11.2	58.9	28.8	100.0(4,296)	10.528*
	중	1.0	15.7	66.8	16.6	100.0(3,531)	
	하	2.7	23.9	61.9	11.6	100.0(1,653)	

* p<0.05, ** p<0.01, *** p<0.001

② 신체적 건강

가. 운동실천율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7%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월 1-2회는 21.2%, 주 1-2회는 27.9%, 주 3회 이상은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운동실천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84.7%가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69.2%가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운동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주 3회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은 전혀 하지 않는다가 30.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주 1-2회 정도(26.4%)로 나타나서 남학생의 운동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9.5%, 중학생은 20.5%, 일반/특목/자율고는 37.2%, 특성화고는 29.7%로 고등학생의 운동실천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으나 중고등학생은 주 1-2회 정도의 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더 자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양부모가정 22.6%, 한부모가정 25.5%, 조손가정 13.3%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운동실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빈도가 35.6%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17.3%인 반면에 중위층은 25.5%, 상위층은 30.8%로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의 운동실천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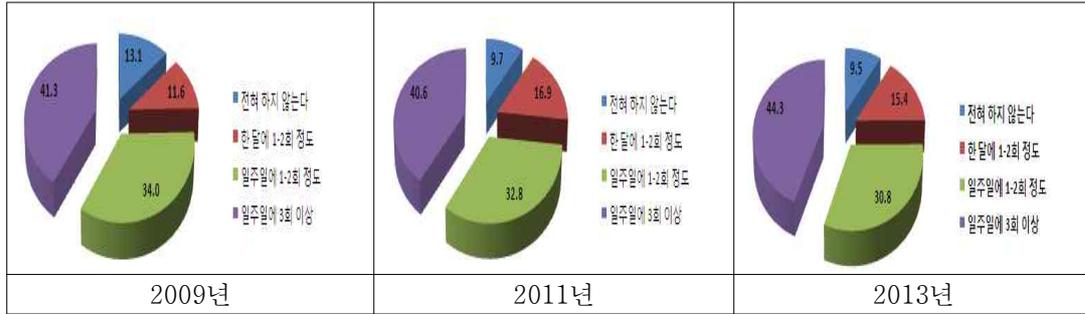
표 III-4-25 운동실천 여부와 빈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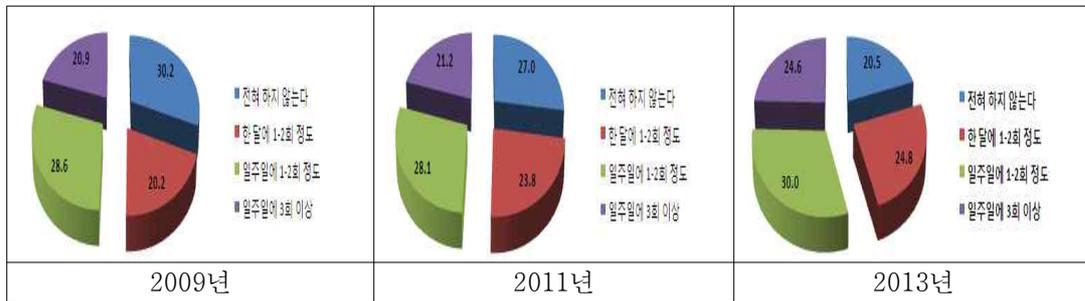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2.7	21.2	27.9	28.2	100.0(9,449)	
성별	남자	15.3	18.8	29.3	36.6	100.0(4,932)	24.07***
	여자	30.8	23.8	26.4	19.0	100.0(4,517)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	15.4	30.9	44.2	100.0(2,808)	25.624***
	중학교	20.5	24.9	29.9	24.7	100.0(3,266)	
	일반/특목/자율고	37.2	22.0	23.0	17.8	100.0(2,773)	
	특성화고	29.7	23.9	25.6	20.8	100.0(60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6	21.3	28.1	28.0	100.0(8,444)	45.327***
	한부모가정	25.5	21.5	24.5	28.5	100.0(752)	
	조손가정	13.3	17.0	34.1	35.6	100.0(79)	
	기타	19.5	15.0	32.4	33.1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17.3	19.5	30.9	32.3	100.0(4,290)	46.127***
	중	25.5	22.4	27.1	25.0	100.0(3,504)	
	하	30.8	22.7	22.1	24.5	100.0(1,64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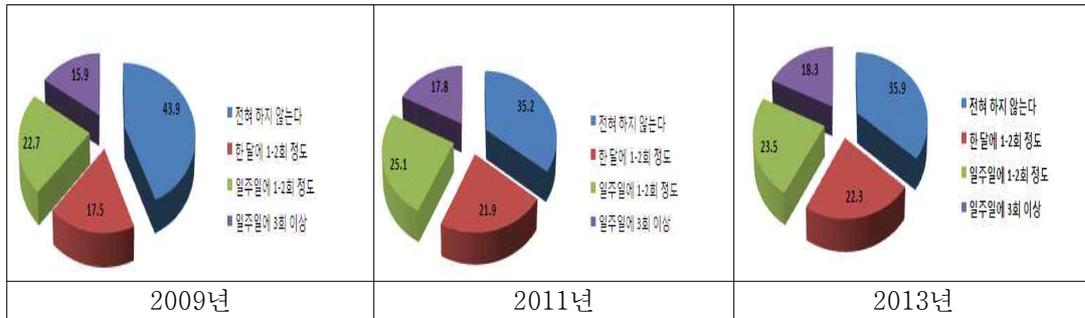
운동실천율에 대한 3개년 비교 결과는 <그림 III-4-4>와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2009년에는 전혀 하지 않다가 13.1%였으나, 2011년에는 9.7%, 2013년에는 9.5%로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문구: 2009년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 운동(단,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은 제외)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에서 2011년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로 변경, 2013년의 경우 2011년과 동일.

【그림 III-4-4】 운동실천율에 대한 3개년 추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2009년 41.3%, 2011년 40.6%, 2013년 44.3%로 2013년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2009년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30.2%였으나, 2011년에는 27.0%, 2013년에는 20.5%로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2009년 20.9%, 2011년 21.2%, 2013년 24.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9년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43.9%였으나, 2011년에는 35.2%, 2013년에는 35.9%로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2009년 15.9%, 2011년 17.8%, 2013년 18.3%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아침식사 결식율

아동·청소년의 결식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에 가기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표 III-4-26>과 같다. 응답한 아동·청소년 중 거의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0%였으며, 보통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7.7%, 보통 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5.3%, 거의 매일 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60.0%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결식률은 성별,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였으며($\chi^2=18.881$, $p<.05$, $\chi^2=28.406$, $p<.001$, $\chi^2=70.185$, $p<.001$),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7.8$,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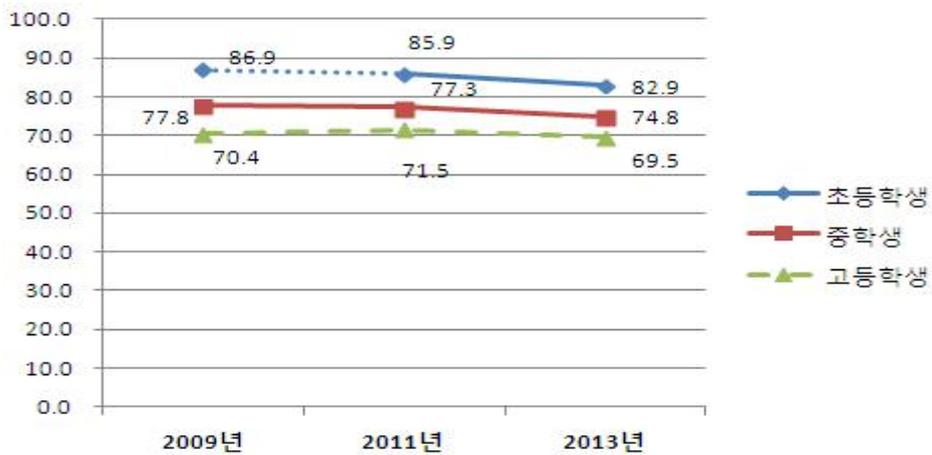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거의 매일 먹지 않는 비율은 15.9%로 여학생(18.3%)에 비해 낮았으며, 거의 매일 먹는 비율은 61.5%로 여학생(58.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은 거의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61.6%였으나, 한부모가정은 42.7%, 조손가정은 58.4%로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거의 매일 먹는 비율이 65.6%인데 비해 중위층은 58.0%, 하위층은 49.5%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결식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구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전체(N)	χ^2
전체		17.0	7.7	15.3	60.0	100.0(9,486)	
성별	남자	15.9	7.6	15.0	61.5	100.0(4,968)	18.881*
	여자	18.3	7.8	15.6	58.4	100.0(4,5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0.4	6.8	13.6	69.2	100.0(2,817)	7.8
	중학교	17.0	8.2	15.9	58.9	100.0(3,267)	
	일반/특목/자율고	19.8	7.9	16.3	56.0	100.0(2,793)	
	특성화고	35.1	7.8	15.1	41.9	100.0(6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8	7.5	15.1	61.6	100.0(8,479)	28.406***
	한부모가정	29.4	10.1	17.8	42.7	100.0(756)	
	조손가정	21.8	6.3	13.5	58.4	100.0(77)	
	기타	19.6	7.2	16.2	57.0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12.5	7.0	14.9	65.6	100.0(4,302)	70.185***
	중	18.2	8.2	15.6	58.0	100.0(3,520)	
	하	26.1	8.6	15.8	49.5	100.0(1,650)	

* p<0.05, ** p<0.01, *** p<0.001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에 대한 3개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III-45>와 같다. 초등학생은 2009년에 86.9%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1년에는 85.9%, 2013년에는 82.9%로 아침식사를 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중학생의 경우 2009년에 77.8%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11년에는 77.3%, 2013년에는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2009년 70.4%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1년에는 71.5%, 2013년에는 69.5%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여 모든 연령에 걸쳐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문구: 2009년 보기는 '매일 하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 않는 편이다'에서 2011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로 변경, 2013년은 2011년과 동일

【그림 Ⅲ-4-5】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에 대한 3개년 추이

다음으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Ⅲ-4-27>과 같다. 아침 결식 이유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입맛이 없다는 응답이 34.7%였다.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23.1%,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가 21.9%, 가족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가 6.8%,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가 6.3%였으며,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1.3%,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가 0.3%를 차지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못 먹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빈도가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하위인 아동·청소년들은 상위나 중위에 비해 가족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된 비율이 높았으며, 식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4-27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타	전체(N)	χ^2	
전체	23.1	21.9	6.3	34.7	0.3	6.8	1.3	5.6	100.0(2,34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8	12.5	6.1	46.4	0.4	6.4	1.7	8.7	100.0(487)	68.734***
	중학교	23.9	18.3	6.6	36.9	0.4	7.3	1.1	5.6	100.0(824)	
	일반/특목/자율고	27.8	27.3	6.9	26.6	0.2	6.0	1.6	3.5	100.0(774)	
	특성화고	16.0	35.0	3.5	30.4	0.0	8.5	0.7	5.9	100.0(263)	
경제적 수준	상	22.9	17.9	6.8	38.7	0.2	5.6	2.0	5.8	100.0(842)	48.651***
	중	22.9	21.7	5.1	36.9	0.1	7.2	0.7	5.4	100.0(926)	
	하	23.8	27.9	7.3	25.7	0.8	8.1	1.4	5.1	100.0(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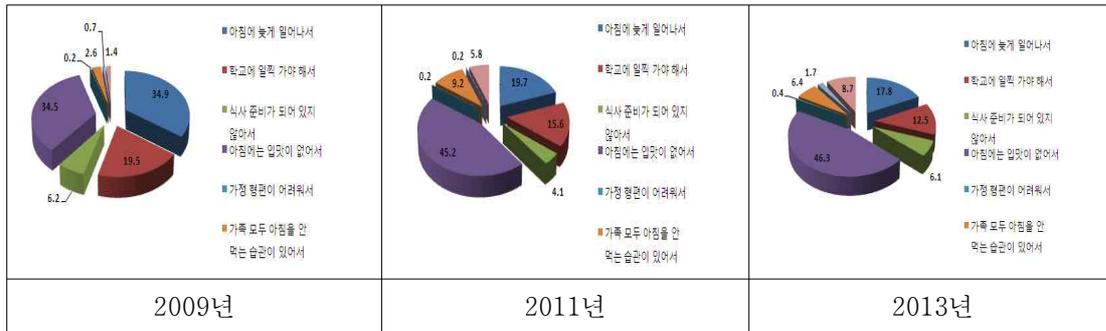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3개년 비교 결과는 <그림 III-4-6>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2009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34.5%),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9.5%)의 순이었고, 2011년에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19.7%),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5.6%)의 순이었다. 2013년에는 2011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가 4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17.8%),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2.5%)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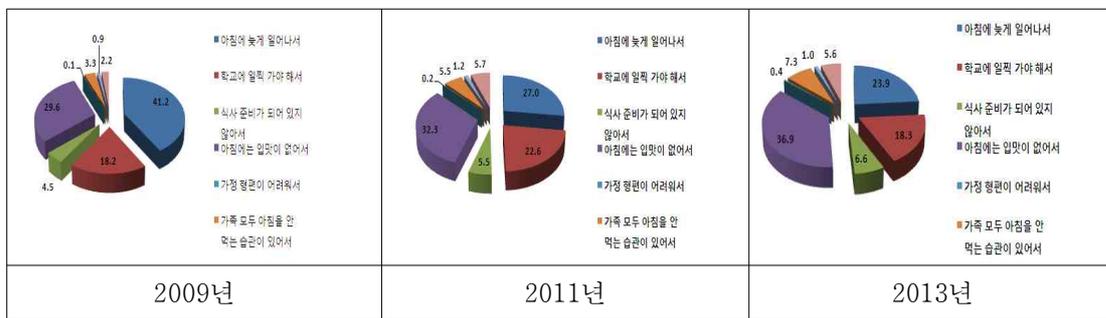
중학생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2009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29.6%),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8.2%)의 순이었고, 2011년에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7.0%),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22.6%)의 순이었다. 2013년에는 2011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3.9%),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8.3%)의 순이었다.

고등학생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2009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42.5%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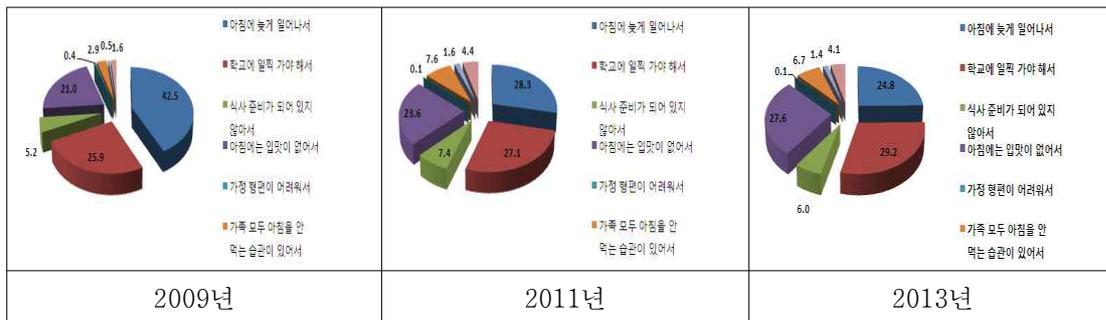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25.9%),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21.0%), 의 순이었고, 2011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8.3%),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27.1%),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23.6%)의 순이었다. 2013년에는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27.6%),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4.8%)의 순이었다.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그림 III-4-6】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3개년 추이

다. 수면시간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에 가는 날에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취침시간은 밤 11시 32분이었고,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10시 34분, 중학생 11시 27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12시 29분, 특성화고 학생 12시 10분이었다. 평균 일어나는 시간은 6시 34분이었으며, 학교유형별로 구분하여보면, 초등학교 7시 10분, 중학생 7시 2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6시 20분, 특성화고 학생 6시 21분이었다. 이를 토대로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III-4-28>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6분이었고, 이를 학교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8시간 19분, 중학생은 7시간 12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5시 27분, 특성화고 학생은 6시간 11분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7시간 6분,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이 7시간 1분,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이 7시간 15분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상위층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 14분이었으며, 중위층은 7시간 5분, 하위층은 6시간 22분으로 나타났다.

표 III-4-28 수면시간

(단위 : %)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 6시간 미만	6시간 ~ 7시간 미만	7시간 ~ 8시간 미만	8시간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전체(N)
전체		6.6	14.5	19.5	24.7	21.8	12.9	7시 6분	100.0(9,1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0.6	0.6	3.1	17.1	41.4	37.1	8시 19분	100.0(2,763)
	중학교	1.8	6.0	19.8	42.8	24.8	4.9	7시 12분	100.0(3,142)
	일반/특목/자율고	17.5	36.8	33.1	11.1	1.4	0.2	5시 27분	100.0(2,705)
	특성화고	11.4	22.3	32.3	26.4	6.8	0.8	6시 11분	100.0(58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7	14.6	19.3	24.5	21.9	13.0	7시 6분	100.0(8,234)
	한부모가정	6.9	14.8	24.3	25.7	16.6	11.8	7시 1분	100.0(716)
	조손가정	5.2	9.9	12.7	32.2	29.2	10.7	7시 15분	100.0(75)
	기타	4.7	9.5	11.3	26.5	31.0	17.0	7시 21분	100.0(150)
경제적 수준	상	5.8	12.3	16.2	23.2	25.2	17.3	7시 14분	100.0(4,180)
	중	6.1	14.4	19.8	27.0	21.6	11.1	7시 5분	100.0(3,420)
	하	10.1	20.5	27.4	23.5	13.1	5.4	6시 22분	100.0(1,58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에 대한 3개년 비교 결과는 <그림 III-4-7>과 같다.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은 2009년 8.5시간이었으며, 2013년에는 8.3시간으로 약간 줄어들었으며, 중학생 또한 2009년 7.4시간에서 2013년 7.2시간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2009년 6.1시간에서 2013년 5.5시간으로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수면시간의 줄어든 폭이 다소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4-7】 평균수면시간에 대한 3개년 추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III-4-29>와 같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52.8%였으며,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은 47.2%로 과반수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생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상위층보다는 하위층 아동·청소년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4-29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52.8	47.2	100.0(9,43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0	68.0	100.0(2,829)	58.051***
	중학교	53.6	46.4	100.0(3,242)	
	일반/특목/자율고	69.5	30.5	100.0(2,765)	
	특성화고	69.1	30.9	100.0(60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2.0	48.0	100.0(8,436)	18.396*
	한부모가정	62.3	37.7	100.0(749)	
	조손가정	54.4	45.6	100.0(79)	
	기타	46.4	53.6	100.0(151)	
경제적 수준	상	46.9	53.1	100.0(4,280)	543.11***
	중	53.2	46.8	100.0(3,499)	
	하	67.0	33.0	100.0(1,644)	

* p<0.05, ** p<0.01, *** p<0.001

아동·청소년들이 수면시간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3가지를 복수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III-4-30>과 같다. 수면시간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56.2%), 다음으로 채팅이나 문자메시지(53.2%), 가정학습(3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성인사이트 이용(61.6%), 채팅·문자메시지(53.1%),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40.5%)의 순이었고, 중학생은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67.6%), 채팅·문자메시지(55.9%), 학원·과외(51.1%)의 순이었다.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수면시간 부족의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이 야간 자율학습(52.6%)이었고, 다음으로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49.9%), 채팅·문자메시지(47.7%)의 순이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면 부족 이유는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70.9%), 채팅·문자메시지(66.8%), 게임(53.9%)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55.0%)가 수면부족의 가장 큰 이유였으며, 다음으로 채팅·문자메시지(52.9%), 가정학습(36.3%)의 순이었다.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 이유는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67.7%), 채팅·문자메

시지(56.3%), 게임(43.9%)의 순이었고,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채팅·문자메시지(57.4%),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50.2%), 게임(46.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 이유는 채팅·문자메시지(52.1%),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50.4%), 학원·과외(38.1%)의 순이었고, 중위층은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59.6%), 채팅·문자메시지(53.5%), 게임(36.6%)의 순이었다. 경제적 하위층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 이유는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60.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채팅·문자메시지(54.6%), 게임(4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0 잠이 부족한 이유

(단위 : %)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게임	채팅, 문자 메시지	성인 사이트 이용	드라마, 영화,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25.2	34.7	35.2	33.2	53.2	12.8	56.2	34.7	100.0(5,044)
성별	남자	25.6	33.2	30.5	43.8	49.1	14.7	54.5	33.2	100.0(2,421)
	여자	24.8	36.0	39.5	23.4	56.9	11.0	57.7	36.0	100.0(2,6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0.0	0.0	2.8	0.0	53.1	61.6	40.5	116.4	100.0(901)
	중학교	7.9	51.1	42.7	46.9	55.9	0.6	67.6	15.5	100.0(1,769)
	일반/특목/자율고	52.6	39.9	46.8	31.7	47.7	3.4	49.9	15.4	100.0(1,952)
	특성화고	24.5	15.6	18.8	53.9	66.8	2.6	70.9	29.4	100.0(42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5.9	36.0	36.3	31.9	52.9	13.0	55.0	34.4	100.0(4,444)
	한부모가정	19.3	24.0	27.1	43.9	56.3	10.7	67.7	34.8	100.0(474)
	조손가정	21.4	32.2	23.0	46.7	57.4	10.9	50.2	40.9	100.0(44)
	기타	26.8	31.3	26.4	35.9	47.2	13.6	59.7	39.0	100.0(72)
경제적 수준	상	23.0	38.1	37.5	25.4	52.1	18.1	50.4	38.4	100.0(2,034)
	중	24.1	35.2	32.9	36.6	53.5	10.7	59.6	32.9	100.0(1,894)
	하	31.1	27.5	34.7	41.9	54.6	6.4	60.9	30.6	100.0(1,109)

* 1+2+3순위, 복수응답

라. 비만을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지표에서는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을 비만,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면서 체질량지수 25미만을 과체중, 85백분위수 미만을 정상이라고 구분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12)에서 발표한 2011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 2-18세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9.7%이고, 이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11.0%, 여자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세의 비만율이 2.8%, 6-11세가 8.4%, 12-18세가 13.1%로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비만율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18세 전체 아동의 과체중 비율은 7.7%로 남자아동청소년이 5.3%, 여자아동청소년이 10.5%였다. 연령별로는 2-5세가 9.4%, 6-11세가 11.1%, 12-18세가 4.9%로 비만과는 달리 6-11세의 과체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4-31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2011)

(단위:명, %)

연령	정상1)	과체중2)	비만3)	N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전체(2-18세)	82.6(1.1)	7.7(0.8)	9.7(0.9)	1,716
2-5세	87.8(1.8)	9.4(1.7)	2.8(0.9)	424
6-11세	80.5(1.8)	11.1(1.5)	8.4(1.4)	632
12-18세	82.0(1.6)	4.9(1.1)	13.1(1.5)	660
남자(2-18세)	83.8(1.5)	5.3(0.8)	11.0(1.3)	904
2-5세	90.2(2.3)	6.5(1.8)	3.2(1.4)	225
6-11세	80.2(2.8)	10.2(2.0)	9.6(2.0)	326
12-18세	83.6(2.2)	1.8(0.8)	14.6(2.2)	363
여자(2-18세)	81.2(1.7)	10.5(1.3)	8.3(1.3)	812
2-5세	84.9(3.1)	12.9(3.0)	2.2(1.0)	199
6-11세	80.9(2.7)	12.0(2.5)	7.1(1.7)	306
12-18세	80.1(2.7)	8.6(1.9)	11.3(2.3)	307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 1) 정상 :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Kg/m²) 기준 85백분위수 미만

2) 과체중 :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면서 체질량지수 25미만

3) 비만 :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마. 청소년 유병률

아동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은 <표 III-4-32>와 같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12)가 발표한 2011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 1-11세의 천식유병률은 8.3%이고, 12-18세는 3.3%로 11세 이하 아동의 천식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천식유병률이 높았다. 이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 천식 유병률이 7.2%, 중하가 6.4%,

중상이 4.2%, 상이 4.9%로 소득수준이 중하 이하인 경우가 중상 이상에 비해 천식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천식 질병과 관련한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4-32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2011)

(단위:명, %)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천식유병률1)						
1-11세	8.9(1.5)	606	7.6(1.4)	564	8.3(1.0)	1,170
12-18세	3.9(1.2)	350	2.7(0.9)	306	3.3(0.7)	656
소득수준						
하	6.9(1.9)	219	7.6(2.2)	213	7.2(1.5)	432
중하	7.2(2.1)	245	5.6(1.9)	216	6.4(1.4)	461
중상	5.2(1.7)	246	3.1(1.5)	213	4.2(1.2)	459
상	5.5(1.8)	239	4.1(1.4)	218	4.9(1.1)	457

* 출처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 1) 천식 유병률 :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분을

2)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다음으로 선천성 심장질환과 아토피피부염, 주의력 결핍장애, 요로감염, 폐렴 등 아동청소년의 주요 질환별 유병률은 <표 III-4-33>과 같다. 선천성 심장질환의 유병률은 1-11세가 0.8%, 12-18세가 0.3%였으며,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1-11세 12.7%, 12-18세 9.8%였고, 주의력 결핍장애 유병률은 1-11세 0.7%, 12-18세 0.5%였다. 요로감염은 1-11세의 유병률이 2.9%, 12-18세가 1.0%였으며, 폐렴 유병률은 1-11세 12.0%, 12-18세 4.4%였다. 모든 질환에서 11세 이하 아동의 유병률이 더 높았으나 특히, 폐렴의 경우 11세 이하 아동의 발생 비율이 높아서 집중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 유병률 차이를 살펴보면, 선천성심장질환과 아토피피부염은 여자 아동·청소년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높고, 주의력결핍장애와 요로감염은 남자 아동·청소년의 유병률이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은 남녀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4-33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2011)

(단위 : %)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선천성심장질환1)						
1-11세	0.6(0.3)	606	1.0(0.5)	564	0.8(0.3)	1,170
12-18세	0.0(-)	351	0.7(0.4)	306	0.3(0.2)	657
아토피피부염2)						
1-11세	12.0(1.6)	606	13.4(1.8)	564	12.7(1.2)	1,170
12-18세	7.0(1.4)	351	13.1(2.0)	306	9.8(1.3)	657
주의력결핍장애3)						
1-11세	0.9(0.5)	606	0.4(0.3)	564	0.7(0.3)	1,170
12-18세	0.7(0.4)	351	0.4(0.2)	306	0.5(0.2)	657
요로감염4)						
1-11세	3.3(0.9)	606	2.4(0.7)	564	2.9(0.6)	1,170
12-18세	1.6(0.8)	351	0.4(0.3)	306	1.0(0.5)	657
폐렴5)						
1-11세	12.1(1.7)	606	11.8(2.0)	564	12.0(1.4)	1,170
12-18세	4.2(1.2)	351	4.6(1.6)	306	4.4(1.0)	657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 1) 선천성심장질환 유병률 : 의사로부터 선천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을
- 2)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을
- 3) 주의력결핍장애 유병률 : 의사로부터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분을
- 4) 요로감염 유병률 : 의사로부터 요로감염 진단을 받은 분을
- 5) 폐렴 유병률 : 의사로부터 폐렴 진단을 받은 분을

③ 정서적 안정

가. 우울증 지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우울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증 정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4-34>과 같다.

먼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5.5%는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남학생의 25.9%, 여학생의 46.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우울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의 17.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37.3%,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49.1%, 특성화고 학생은 44.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34.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44.1%,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3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29.5%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34.6%, 하위층은 52.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이유없이 불안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21.7%, 여학생의 36.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우울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의 14.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30.8%,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40.2%, 특성화고 학생은 36.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28.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34.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31.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24.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28.9%, 하위층은 40.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33.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21.9%, 여학생의 45.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우울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의 16.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35.6%,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45.9%, 특성화고 학생은 41.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3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42.0%,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33.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28.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33.2%, 하위층은 4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우울정도에 대한 문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정도가 더 심각하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과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경제적 하위층의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이유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전체	36.0	28.5	29.6	5.9	100.0(9,515)		
	성별	남자	45.2	28.9	22.1	3.8	100.0(4,984)	199.4***
		여자	26.0	28.1	37.9	8.1	100.0(4,5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59.7	22.4	13.9	4.0	100.0(2,828)	146.594***
		중학교	32.3	30.4	31.6	5.7	100.0(3,278)	
		일반/특목/자율고	19.1	31.8	41.2	7.9	100.0(2,799)	
		특성화고	23.6	31.9	38.3	6.2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6.6	28.7	29.3	5.4	100.0(8,503)	3.9
		한부모가정	29.5	26.4	34.2	9.9	100.0(757)	
		조손가정	30.2	31.9	29.6	8.2	100.0(80)	
기타		39.6	28.0	25.6	6.8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44.0	26.5	24.7	4.8	100.0(4,312)	10.881**	
	중	33.6	31.7	29.6	5.0	100.0(3,534)		
	하	20.4	26.7	42.6	10.3	100.0(1,656)		
이유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전체	41.5	29.6	24.4	4.5	100.0(9,516)		
	성별	남자	49.7	28.7	18.7	3.0	100.0(4,984)	0.7
		여자	32.5	30.6	30.7	6.2	100.0(4,5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65.9	20.1	11.2	2.8	100.0(2,829)	5.3
		중학교	37.3	31.9	26.2	4.6	100.0(3,278)	
		일반/특목/자율고	24.6	35.3	34.0	6.2	100.0(2,799)	
		특성화고	28.3	35.6	31.8	4.3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1	29.4	24.2	4.3	100.0(8,504)	5.8
		한부모가정	33.9	31.5	27.9	6.6	100.0(757)	
		조손가정	39.1	29.1	24.9	6.9	100.0(80)	
기타		44.7	31.1	19.0	5.3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49.3	26.3	20.4	4.0	100.0(4,312)	17.405*	
	중	39.1	32.0	25.3	3.6	100.0(3,535)		
	하	26.2	33.3	32.9	7.6	100.0(1,656)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전체	40.3	26.4	27.5	5.9	100.0(9,501)		
	성별	남자	50.7	27.3	18.7	3.2	100.0(4,974)	364.635***
		여자	28.8	25.3	37.2	8.7	100.0(4,5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64.3	19.2	12.6	3.8	100.0(2,819)	65.133***
		중학교	36.4	27.9	29.5	6.1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22.8	31.3	38.5	7.4	100.0(2,798)	
		특성화고	29.5	28.6	35.1	6.7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9	26.4	27.2	5.5	100.0(8,492)	60.276***
		한부모가정	32.4	25.6	32.5	9.5	100.0(756)	
		조손가정	38.9	27.9	23.2	10.0	100.0(80)	
기타		44.5	24.9	22.7	7.9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48.6	23.4	23.1	4.9	100.0(4,304)	2736.7***	
	중	37.2	29.6	28.5	4.7	100.0(3,530)		
	하	25.0	27.2	36.9	10.9	100.0(1,654)		

* p<0.05, ** p<0.01, *** p<0.001

나.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2012년도 제 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에 의하면,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37.0%, 중학교 2학년 38.8%, 중학교 3학년 40.7%, 고등학교 1학년 43.7%, 고등학교 2학년 44.2%, 고등학교 3학년 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율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2008년도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5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8	40.5	40.3	41.0	43.1	47.0	52.0
2009	40.1	39.4	40.5	42.3	44.4	53.4
2010	39.9	40.7	41.7	42.8	44.8	53.2
2011	36.9	39.2	40.8	41.1	43.5	50.5
2012	37.0	38.8	40.7	43.7	44.2	46.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 정의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 정도를 원인별로 파악한 결과는 <표 III-4-36>과 같다.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한 비율은 69.3%이고,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18.8%였으며,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21.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2.6%였으며, 외모 및 신체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29.2%였다.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51.6%로 나타나서 아동·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항목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은 학업문제가 46.2%, 가정불화가 18.6%, 또래와의 관계가 20.7%, 경제적인 어려움이 6.3%, 외모 및 신체조건이 17.6%, 미래에 대한 불안이 14.8%로 학업문제와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을 살펴보면, 학업문제가 74.2%, 가정불화가 18.2%, 또래와의 관계가 23.8%, 경제적인 어려움이 10.2%, 외모 및 신체조건이 31.0%, 미래에 대한 불안이 53.0%로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서는 학업문제가 87.2% 가정불화가

18.9%, 또래와의 관계가 21.5%, 경제적인 어려움이 17.5%, 외모 및 신체조건이 36.1%, 미래에 대한 불안이 81.5%로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문제가 68.5% 가정불화가 22.7%, 또래와의 관계가 19.4%, 경제적인 어려움이 31.9%, 외모 및 신체조건이 42.6%, 미래에 대한 불안이 77.4%로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36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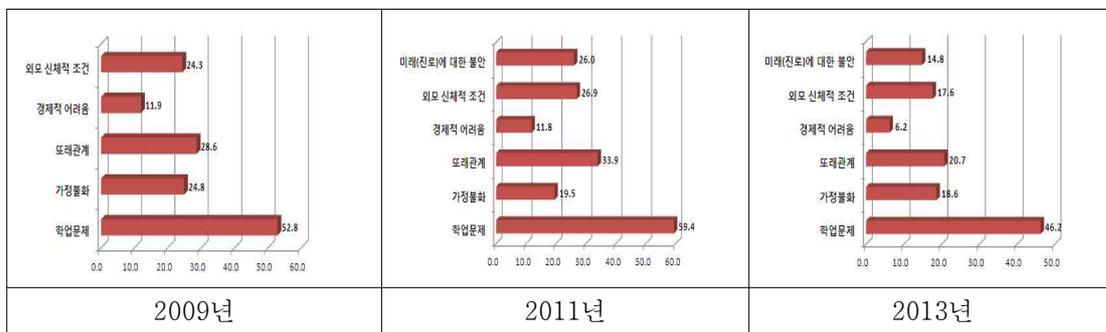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업 문제	전체	11.8	18.9	44.8	24.5	100.0(9,506)	95.692***
	초등학교	24.5	29.3	33.3	12.9	100.0(2,827)	
	중학교	8.6	17.3	48.7	25.5	100.0(3,271)	
	일반/특목/자율고	2.9	9.9	51.1	36.1	100.0(2,798)	
	특성화고	11.1	20.5	49.0	19.5	100.0(610)	
가정 불화	전체	50.1	31.1	15.1	3.7	100.0(9,507)	569.201***
	초등학교	55.3	26.0	13.9	4.7	100.0(2,825)	
	중학교	51.0	30.8	14.5	3.7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45.9	35.3	16.3	2.6	100.0(2,797)	
	특성화고	40.6	36.7	18.2	4.5	100.0(610)	
또래와 의 관계	전체	43.1	35.0	17.8	4.1	100.0(9,502)	210.367***
	초등학교	52.2	27.1	15.5	5.2	100.0(2,822)	
	중학교	41.4	34.9	19.4	4.4	100.0(3,273)	
	일반/특목/자율고	36.9	41.6	18.7	2.8	100.0(2,798)	
	특성화고	38.5	42.1	16.1	3.3	100.0(609)	
경제 적인 어려움	전체	56.1	31.3	10.9	1.7	100.0(9,490)	6.98**
	초등학교	72.7	21.1	5.2	1.1	100.0(2,820)	
	중학교	56.6	33.2	8.8	1.4	100.0(3,267)	
	일반/특목/자율고	43.7	38.7	15.3	2.2	100.0(2,795)	
	특성화고	33.0	35.1	28.3	3.6	100.0(609)	
외모 및 신체 조건	전체	35.3	35.5	24.1	5.1	100.0(9,493)	36.494***
	초등학교	55.2	27.3	13.8	3.8	100.0(2,823)	
	중학교	31.4	37.7	25.2	5.8	100.0(3,268)	
	일반/특목/자율고	22.7	41.2	30.7	5.4	100.0(2,792)	
	특성화고	22.1	35.3	36.9	5.7	100.0(610)	
미래에 대한 불안	전체	27.3	21.0	33.9	17.7	100.0(9,501)	152.015***
	초등학교	60.9	24.2	11.1	3.7	100.0(2,824)	
	중학교	20.6	26.4	38.3	14.7	100.0(3,271)	
	일반/특목/자율고	5.3	13.2	48.7	32.8	100.0(2,797)	
	특성화고	9.0	13.6	47.6	29.8	100.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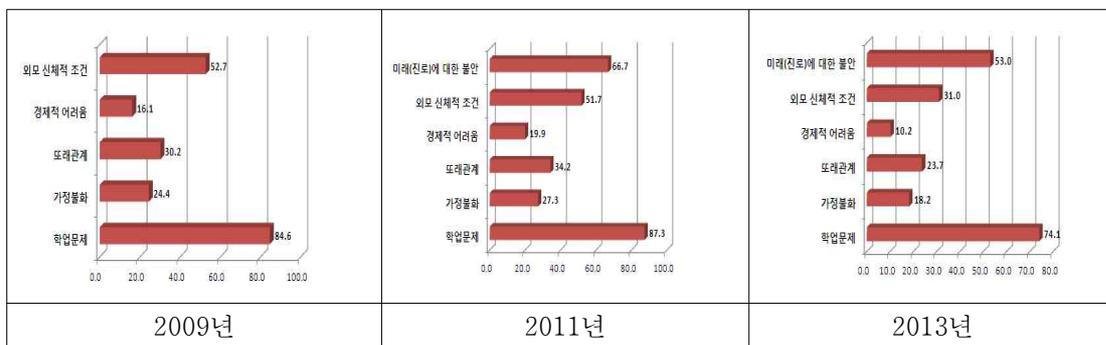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4-8>과 같다. 본 항목에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은 2013년도에 추가된 항목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2009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2009년도에 52.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011년에는 59.4%로 상승하였다가 2013년에는 46.2%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2009년 28.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011년에는 33.9%로 상승하다가 2013년에 20.7%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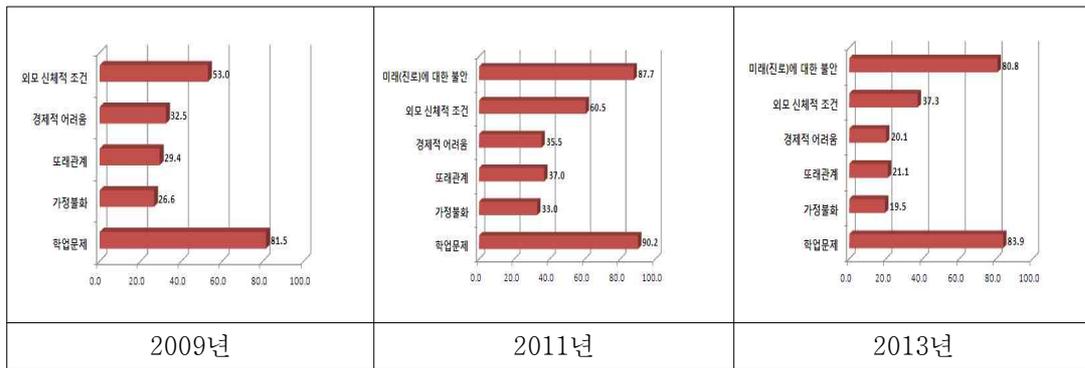
중학생의 경우도 모든 항목에서 2009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2009년에는 52.7%, 2011년도에는 51.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31.0%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2009년도(26.6%)나 2011년도(33.0%)에 비해 2013년도(19.5%)에 인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과 유사하게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2009년도 53.0%, 2011년도 60.5%에 비해 2013년도에는 37.3%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문구: 2009년 '평상시 아래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에서 2011년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로 변경, 2013년은 2011년과 동일.
- * 문구: 2009년 '전혀 받지 않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받는다', '많이 받는다'에서 2011년과 2013년은 '보통이다'를 제외한 4척도.
- * 문구: 2009년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에서 2011년 '가정불화'로 변경, 2013년 2011년과 동일.
- * 문구: 2009년, 2011년 '친구관계'에서 2013년 '또래관계'로 변경.
- * 2011년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추가, 2013년 2011년과 동일.
- * 데이터분석은 2009년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
- * '조금 받는다'와 '많이 받는다'를 합산하여 '스트레스 받는다'로 계산.

【그림 III-4-8】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에 대한 3개년 추이

다. 자아존중감

아동·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III-4-37>과 같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4가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비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6.2%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은 72.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75.9%,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80.7%, 특성화고 학생은 75.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77.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70.7%,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59.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78.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75.0%, 하위층은 71.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하위층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69.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의 7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65.1%,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67.5%, 특성화고 학생은 65.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70.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63.8%,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47.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76.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66.3%, 하위층은 57.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이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위층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문항에는 69.5%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의 83.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65.3%,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62.4%, 특성화고 학생은 58.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70.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63.6%,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58.1%가 그렇지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78.6%가 그렇지않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66.0%, 하위층은 53.5%가 그렇지않다라고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손가정일수록, 경제적으로 하위층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75.0%였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1%였고, 중학생의 74.6%,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74.2%, 특성화고 학생의 71.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75.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68.7%,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58.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8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73.7%, 하위층은 64.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7.6	16.2	52.0	24.2	100.0(9,5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6	11.1	40.8	31.5	100.0(2,823)	107.327***
		중학교	5.6	18.6	55.4	20.5	100.0(3,274)	
		일반/특목/자율고	1.6	17.7	58.7	22.0	100.0(2,798)	
		특성화고	4.8	19.4	55.4	20.4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	15.5	52.3	24.8	100.0(8,493)	968.096***
		한부모가정	8.6	20.7	51.7	19.0	100.0(757)	
		조손가정	15.0	25.4	51.6	8.1	100.0(79)	
		기타	13.3	22.8	38.5	25.4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9.3	11.9	47.8	31.0	100.0(4,304)	1211.509***
		중	6.9	18.0	56.4	18.6	100.0(3,533)	
		하	4.8	23.3	53.8	18.1	100.0(1,65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5.3	25.2	49.8	19.7	100.0(9,489)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	15.2	49.9	27.9	100.0(2,816)	789.118***
		중학교	5.9	29.1	49.2	15.9	100.0(3,268)	
		일반/특목/자율고	2.7	29.8	50.7	16.8	100.0(2,797)	
		특성화고	5.8	29.1	49.1	16.0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9	24.7	50.4	20.0	100.0(8,481)	9.547**
		한부모가정	7.7	28.5	46.3	17.5	100.0(753)	
		조손가정	15.4	36.7	38.6	9.3	100.0(80)	
		기타	7.4	29.8	42.7	20.1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5.5	17.7	50.7	26.1	100.0(4,300)	683.531***
		중	4.4	29.3	51.7	14.6	100.0(3,526)	
		하	6.5	35.8	43.6	14.0	100.0(1,652)	
내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전체	28.1	41.4	27.1	3.3	100.0(9,4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48.0	35.8	13.9	2.2	100.0(2,825)	701.55***
		중학교	23.2	42.1	30.6	4.1	100.0(3,264)	
		일반/특목/자율고	16.5	45.9	34.4	3.2	100.0(2,797)	
		특성화고	15.7	42.7	36.6	4.9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7	41.4	26.7	3.2	100.0(8,487)	914.643***
		한부모가정	21.3	42.3	31.5	4.9	100.0(754)	
		조손가정	24.9	33.2	39.9	2.0	100.0(80)	
		기타	33.9	36.5	24.6	5.1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38.4	40.2	19.0	2.3	100.0(4,303)	951.036***
		중	21.5	44.5	31.1	2.9	100.0(3,529)	
		하	15.6	37.9	39.8	6.7	100.0(1,650)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체	4.4	20.5	52.3	22.7	100.0(9,5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7.3	15.6	45.9	31.2	100.0(2,829)	308.52***
		중학교	4.1	21.2	53.8	20.8	100.0(3,273)	
		일반/특목/자율고	1.7	24.1	56.8	17.4	100.0(2,796)	
		특성화고	5.2	23.3	52.9	18.7	100.0(6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1	20.1	52.5	23.3	100.0(8,495)	177.873***
		한부모가정	6.2	25.1	51.0	17.7	100.0(757)	
		조손가정	13.9	27.8	43.3	15.1	100.0(79)	
		기타	8.8	20.2	47.2	23.7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4.9	15.1	51.2	28.8	100.0(4,308)	141.334***
		중	3.3	23.1	54.8	18.9	100.0(3,533)	
		하	5.8	29.3	49.7	15.2	100.0(1,651)	

* p<0.05, ** p<0.01, *** p<0.001

라. 행복도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한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II-4-38>과 같다. 행복하다(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1.1%였으며, 초등학생은 89.3%가, 중학생은 80.3%가 행복하다고 하였고,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은 75.1%, 특성화고 학생들은 73.8%가 행복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정도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82.0%가 행복하다고 하였고,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은 71.8%,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64.7%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나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행복도를 살펴보면, 상위계층은 행복하다는 응답이 86.9%였으며, 중위계층은 81.3%, 하위계층은 65.0%가 행복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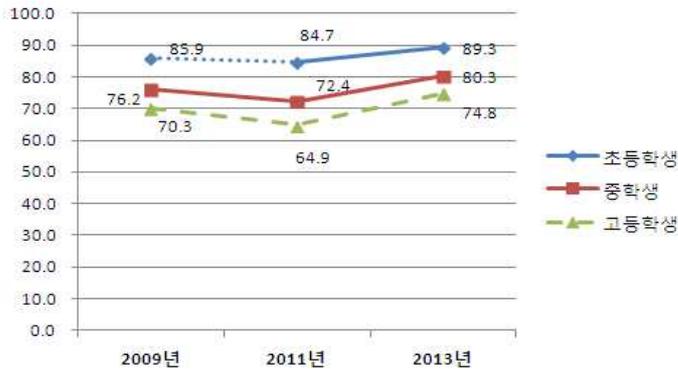
표 III-4-38 행복도

(단위 :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2.0	17.0	59.7	21.4	100.0(9,485)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	9.0	49.5	39.8	100.0(2,816)	3994.522***
	중학교	2.4	17.3	62.6	17.7	100.0(3,268)	
	일반/특목/자율고	1.7	23.2	65.5	9.6	100.0(2,792)	
	특성화고	2.2	24.0	64.3	9.5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	16.2	60.1	21.9	100.0(8,476)	370.86***
	한부모가정	3.4	24.9	56.6	15.2	100.0(753)	
	조손가정	7.7	27.6	47.0	17.7	100.0(80)	
	기타	5.2	17.2	55.3	22.3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1.4	11.6	56.0	30.9	100.0(4,299)	1321.507***
	중	1.5	17.2	65.4	15.9	100.0(3,520)	
	하	4.3	30.7	57.1	7.9	100.0(1,652)	

* p<0.05, ** p<0.01, *** p<0.001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에 대한 3개년 추이는 <그림 III-4-9>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행복하다는 응답이 2009년 85.9%에서 2011년 84.7%, 2013년 89.3%이고, 중학생은 2009년 76.2%에서 2011년 72.4%, 2013년 80.3%이며, 고등학생은 2009년 70.3%, 2011년 64.9%, 2013년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에 걸쳐 2011년에는 행복한 정도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009년에는 ‘보통이다’라는 보기가 있으며, 3개년 데이터분석을 위해, ‘보통이다’를 제외시키고,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
* 행복한 편이다+매우 행복하다 = 행복하다’로 계산.

【그림 III-4-9】 행복도에 대한 3개년 추이

다음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4-39>와 같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22.8%),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0.6%)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학업부담(40.9%), 미래에 대한 불안(23.3%),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9.8%)의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학업에 대한 부담(33.5%), 미래에 대한 불안(22.4%),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학업부담(37.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7.8%),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6.9%)의 순이었다. 중학생은 학업부담(37.4%), 미래에 대한 불안(15.5%),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3.5%)의 순이었으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부담(42.8%), 미래에 대한 불안(33.9%),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4.4%)의 순이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36.9%), 학업부담(13.8%),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학업부담(38.3%), 미래에 대한 불안(22.8%),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0.3%)의 순이었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들은 학업부담(28.3%), 미래에 대한 불안(24.3%),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4.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부담(45.4%), 미래에 대한 불안(18.0%),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학업부담(44.8%), 미래에 대한 불안(17.6%),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2.2%)의 순이었으며, 중위층도 학업부담(40.6%), 미래에 대한 불안(22.1%),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9.2%)의 순이었다. 하위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28.7%), 학업부담(26.4%),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차이에 따른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407.837$, $p<.001$, $\chi^2=271.181$, $p<.001$, $\chi^2=268.596$, $p<.001$, $\chi^2=1451.61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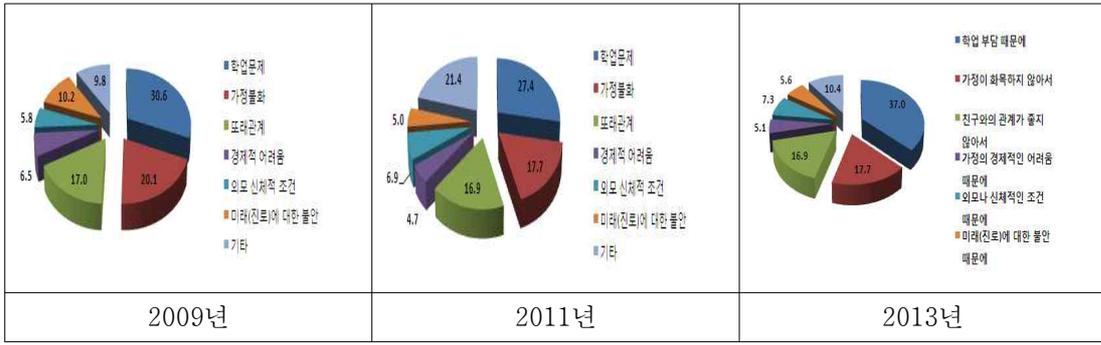
표 III-4-39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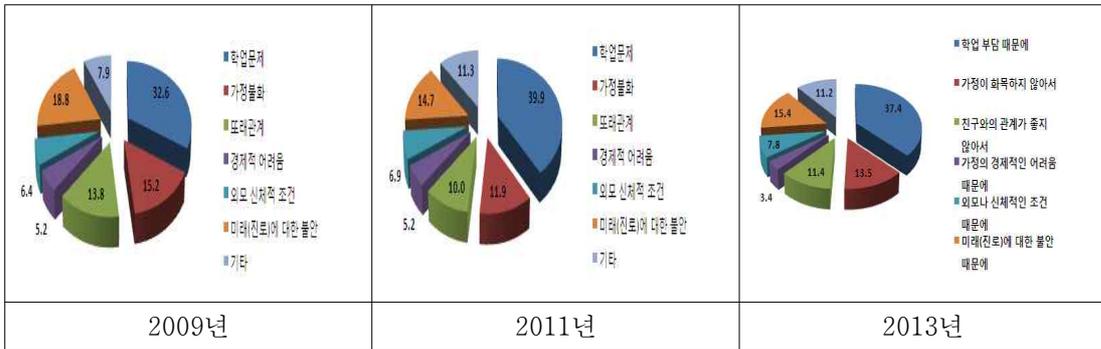
구분	학업 부담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37.3	10.6	9.1	4.5	6.2	22.8	9.4	100.0(1,782)		
성별	남자	40.9	9.8	6.6	4.1	5.3	23.3	10.1	100.0(920)	1407.837***
	여자	33.5	11.5	11.8	5.0	7.2	22.4	8.7	100.0(86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7.0	17.8	16.9	5.0	7.3	5.6	10.4	100.0(296)	271.181***
	중학교	37.4	13.5	11.4	3.4	7.7	15.5	11.1	100.0(638)	
	일반/특목/자율고	42.8	4.4	4.1	3.4	4.1	33.9	7.3	100.0(689)	
	특성화고	13.8	12.3	7.3	12.6	7.1	36.9	10.0	100.0(1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3	10.3	9.6	3.5	6.2	22.8	9.3	100.0(1,510)	268.596***
	한부모가정	28.3	14.8	3.9	10.7	6.9	24.3	11.1	100.0(210)	
	조손가정	45.4	7.7	12.1	8.9	4.3	18.0	3.6	100.0(28)	
	기타	43.1	2.3	16.5	7.6	3.2	17.6	9.6	100.0(33)	
경제적 수준	상	44.8	10.0	12.2	0.7	4.7	17.6	10.0	100.0(555)	1451.617***
	중	40.6	8.1	9.2	1.6	7.9	22.1	10.4	100.0(652)	
	하	26.4	14.0	5.9	11.6	5.6	28.7	7.8	100.0(57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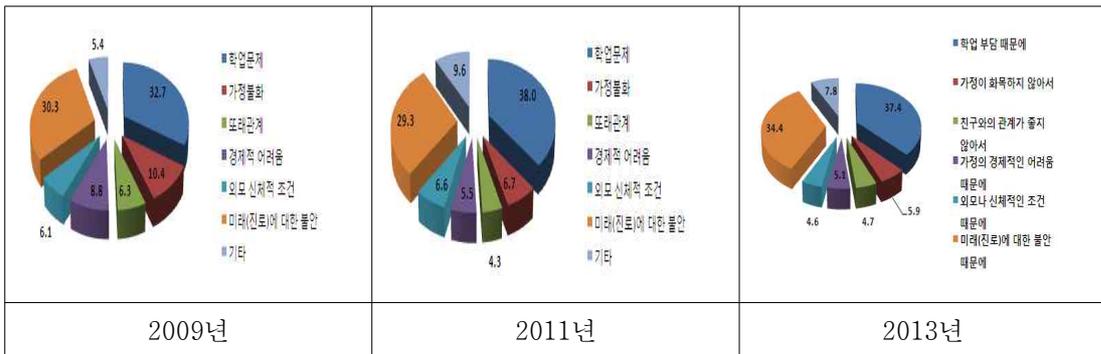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3개년 추이는 <그림 III-4-10>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2009년 30.6%에서 2011년 27.4%, 2013년 37.0%로 2009년과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 5.8%, 2011년 6.9%, 2013년 7.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에는 10.2%였으나, 2011년에는 5.0%, 2013년에는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2009년 32.6%에서 2011년 39.9%, 2013년 37.4%로 2009년에 비해 2011과 2013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 6.4%, 2011년 6.9%, 2013년 7.8%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에는 18.8%였으며, 2011년에는 14.7%, 2013년에는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2009년 32.7%에서 2011년 38.0%, 2013년 37.4%로 2009년에 비해 2011년과 2013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 6.1%, 2011년 6.6%, 2013년 4.6%로 나타났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에는 30.3%였고, 2011년에는 29.3%, 2013년에는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그림 III-4-10】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한 3개년 추이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1) 지표의 현황

① 성교육

가. 성교육 경험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2012년도 제 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에 의하면, 최근 12개월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표 III-4-40>과 같다. 중학교 1학년 75.1%, 중학교 2학년 74.6%, 중학교 3학년 71.5%, 고등학교 1학년 67.6%, 고등학교 2학년 67.8%, 고등학교 3학년 52.0%로 중학교 1학년 이후 학년이 증가할수록 성교육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입시 등 학업부담으로 인해 고학년에게 성교육이 실시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I-4-40 연간 성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81.3	75.5	72.7	74.6	65.2	43.8
2011	77.1	74.8	70.9	69.0	61.7	43.1
2012	75.1	74.6	71.5	67.6	67.8	52.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 정의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6) 약물남용 방지 대책

(1) 지표의 현황

① 예방교육

가.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2012년도 제 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에 의하면,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음주예방 등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현황은 <표 III-4-41>, <표 III-4-42>와 같다. 먼저,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은 67.5%, 2학년은 68.9%, 3학년은 68.5%이며, 고등학교 1학년은 59.8%, 2학년은 59.2%, 3학년은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은 2010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낮았다.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입시 등의 학업부담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각 연령에 적합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I-4-41 연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7.5	68.9	68.5	59.8	59.2	45.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 정의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청소년의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은 중학교 1학년 47.1%, 2학년 44.6%, 3학년 41.6%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29.9%, 2학년 25.9%, 3학년 18.1%로 성교육이나 흡연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학년에 걸쳐서 성교육이나 흡연예방교

육에 비해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내실 있는 음주예방 교육의 증대가 요청된다.

표 III-4-42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47.1	44.6	41.6	29.9	25.9	18.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 정의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② 음주·흡연

가. 흡연율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제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2012년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11.4%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3.6%, 2학년이 6.9%, 3학년이 10.9%이며, 고등학교 1학년이 14.0%, 2학년이 15.9%, 3학년이 16.3%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43 현재 흡연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8	12.8	8.0	17.8	5.4	8.3	10.4	16.6	17.8	19.2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 정의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나. 음주율

제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한 청소년 음주율 추이는 <표 III-4-44 >와 같다. 2012년 현재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19.4%로 흡연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6.6%, 2학년이 9.8%, 3학년이 14.3%이며, 고등학교 1학년이 22.4%, 2학년이 30.0%, 3학년이 32.2%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44 현재 음주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8	24.5	15.1	34.5	10.7	14.9	19.6	30.1	36.6	37.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 정의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7)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지표의 현황

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가. 빈곤율

아동빈곤율은 일반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가구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아동빈곤율이란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가구의 수를 백분율화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12b). 2010년도 아동빈곤율은 도시근로자가구 기준으로 2.6%이며, 전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4.7%로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아동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의 아동빈곤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5 아동빈곤율(절대 빈곤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도시근로자가구	전가구기준
2003	3.3	5.4
2004	2.8	6.4
2005	3.9	5.7
2006	3.3	5.7
2007	2.9	5.2
2008	3.4	7.8
2009	3.1	4.8
2010	2.6	4.7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3) 경상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미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발표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 2012년도의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4-46>과 같다. 0-24세의 수급자는 총 364,65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0%에 해당하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 대비 아동청소년의 수급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0-4세 수급자가 22,412명, 5-9세가 41,804명, 10-14세가 93,517명, 15-19세가 146,939명, 20-24세가 59,978으로 10-19세 청소년의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표 III-4-4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 명)

연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수급자 전체1)
2003	416,139	29,287	79,755	116,868	140,609	51,018	1,292,690
2004	432,666	30,641	82,724	127,251	141,729	50,321	1,337,714
2005	464,888	32,015	87,408	143,017	150,698	51,750	1,425,684
2006	471,503	30,757	85,431	147,672	158,400	49,243	1,449,832
2007	468,795	29,405	79,163	144,829	165,833	49,565	1,463,140
2008	457,122	27,073	70,251	138,023	169,986	51,789	1,444,010
2009	466,872	28,338	65,428	135,623	179,584	57,899	1,482,719
2010	445,080	27,106	56,051	124,724	176,277	60,922	1,458,198
2011	407,415	25,104	47,787	109,979	163,648	60,897	1,379,865
2012	364,650	22,412	41,804	93,517	146,939	59,978	1,300,499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주 : 1) 수급자전체 : 시설수급자(2012년도 93,543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년기의 수급자가 3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노년기(28.9%), 청소년기(16.3%), 청년기(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인구수 대비 수급자 현황은 영유아가가 해당연령의 총 인구수 대비 수급자가 1.0%였으며, 학령기 아동이 2.2%, 청소년기가 3.9%, 청년기가 1.0%, 중년기 2.5%, 노년기 6.3%로 나타나서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기의 수급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III-4-47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합계
수급자수	29,111	63,541	212,020	146,520	473,209	376,098	1,300,499
수급자비율	2.2	4.9	16.3	11.3	36.4	28.9	100
총인구수	2,816,103	2,907,732	5,392,155	14,795,891	19,056,331	5,980,060	50,948,272
총인구수대비 수급자비율	1.0	2.2	3.9	1.0	2.5	6.3	2.6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주 : 1) 생애주기는 영유아기(0-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분류함
 2) 총인구수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②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

가. 아동급식 지원현황

정부는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석식만을 지원하였으나, 2001년 이후 조식 지원을 실시하였고, 2004년부터는 방학이나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의 급식소에서 교육 또는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급식을 제공하거나,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주부식 배달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 보건복지백서의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은 <표 III-4-48>과 같다. 2011년도에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471,961명이며, 2003년 13,792명, 2007년 271,606명인 것에 비하면 지원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48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

(단위: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 대상자	13,792	235,202	214,009	257,276	271,606	415,519	476,444	475,811	471,961

*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1 보건복지백서

나.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정부에서는 방임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전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 2012b).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방과후 혼자 지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를 살펴보면, <표 III-4-49>와 같다. 2012년도 지원개소는 3,500개로 2004년도에 500개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월 지원 단가도 2004년에는 67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395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지원예산은 2004년 12억원, 2008년 282억원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767억원이었다.

표 III-4-49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

(단위 : 개소, 만원,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개소	500	800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지원단가 (만원/월)	67	200	200	200	220	상반기 :220 하반기 :320	320	370	395
예산(억원)	12	98	98	206	282	457	543	695	767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총 108,35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미취학 4,028명, 초등학교 저학년 19,495명, 초등학교 고학년 18,535명, 중학생 20,017명, 고등학생 3,663명, 탈학생 223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와 함께 연도별 이용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50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단위: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초 등 학 생	18,348	34,617	저 학 년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19,218	19,495
			고 학 년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18,189	18,535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고등 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탈학생	-	-	103	104	133	331	338	285	223	
기타	-	22	99	317	196	-	-	-	-	

*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2).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현황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으로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심리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2b).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신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종래 지역 단위로 사업학교가 선정되었던 기준이 학교단위로 전환되어 개별학교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읍면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2b). 연도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4-51>과 같다. 2011년도에 지원학교는 총 1,356개교로 2010년도의

534개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예산도 2010년도에는 810억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1,56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III-4-51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현황

(단위:지역, 개소, 명,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상지역	8지역 (서울6, 부산2)	15지역 (기준8, 신규7)	30지역 (기준15, 신규15)	60지역 (기준30, 신규30)	60지역 (기준60)	100지역 (기준60, 신규40)	100지역 (기준60, 신규40)	114개 교육 지원청
학교 수	45교 (초29, 중16)	82교 (초50, 중32)	163교 (초99, 중61,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538교 (초304, 중230, 고4)	534교 (초296, 중234, 고4)	1,356교 (초670, 중681, 고5)
학생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수)	40,707 (4,758)	75,189 (9,765)	153,178 (16,719)	326,826 (35,110)	304,464 (27,904)	490,081 (40,275)	452,467 (35,725)	1,086,434 (71,853)
지원액	238 억원	160 억원	359 억원	642 억원	514 억원	866 억원	810 억원	1,566 억원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1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현황.

* 주 :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에는 학생 수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 수 포함

라.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드림스타트(Dream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2). 지원대상은 0세부터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며, 아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양육지도와 직업훈련, 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대상 선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족 및 차상위계층 가정, 공동생활가정, 대리양육, 결손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여성가족부, 2012b). 2004년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된 ‘위스타트’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2007년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여성가족부, 2012b). 드림스타

트센터의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는 <표 III-4-52>와 같다. 2011년도에는 131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72억원의 예산으로 44,651명의 아동과 29,332명의 가구를 지원하였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설치지역과 예산, 지원아동과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52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단위 : 개소, 억원,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설치지역	16	32	75	101	131
사업예산	50	98	225	301	372
아동 수	3,769	9,901	26,208	32,641	44,651
가구 수	2,465	6,516	17,141	21,699	29,332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마. 아동발달계좌 개설현황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빈곤 대물림’ 현상을 예방하고, 저소득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부터는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디딤씨앗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 아동에게 전달되며, 0-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이 저축한 만큼 국가가 월 3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저축액이 두 배가 되게 하는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201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일부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12b).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현황은 <표 III-4-53>과 같다. 2011년도의 가입대상은 45,088명이며, 이 중 가입자는 42,985명으로 가입률은 95.3%이다. 월평균 정립액은 31,826원이며, 적립금 누계는 아동 510억원, 정부 409억원으로 총 919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과 2011년에 가입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월평균 적립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I-4-53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현황

(단위 : 명, %, 원, 억원)

연도	가입대상(명)	가입자(명)	가입률(%)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원)		
					아동	정부	계
2009	43,143	36,469	84.5	25,184	258	223	481
2010	42,030	40,829	97.1	29,129	377	308	685
2011	45,088	42,985	95.3	31,826	510	409	919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참 고 문 헌

- 경찰청(2012). 2012 경찰백서.
- 교육부(2013). 2013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김승권, 김인숙, 박동은, 이배근, 이용교, 이재연 외 공역 (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보건복지부(2012a).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b). 2011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통계.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여성가족부(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 인권운동사랑방(연도미상).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n the child)에 대한 이해**. 미간행자료.
- 임희진, 김현신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김현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연구보고 12-R11)**. 서울: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 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6).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505&bbs=INDX_001&clas_div=A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bbs=INDX_001&clas_div=A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9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정책 제언

홍 나 미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홍 나 미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2) 정책제언

장애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표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취학률과 취업률을 살펴보았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현황을 보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수는 감소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에서 강조하고 있는 통합교육 제공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흐름도 통합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2조 6항). 이처럼 통합교육은 평등과 장애로 인하여 차별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매우 기본적인 권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교육 대상자의 통계수치가 통합교육의 발전수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는 물리적 통합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박승희,

2003). 즉, 통합교육이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단지 통합교실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등이 수정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기존의 교육 환경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일반학생의 학습권을 주장하며 장애학생을 배제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보편성을 내세우지만 장애학생의 인권은 고려하지 못하여 기득권을 옹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박래군, 2013). 따라서, 장애 학생의 몸의 특성이나 경험, 속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결과의 수준이 조정되는 등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지원 및 인력확보를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학교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학교장의 인권감수성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장애 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한 명시화된 법령을 통해서 보다 정교한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청소년의 취업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는 실제로 많은 장애 학생들이 성인기 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성인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에서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 「장애 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전환과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교육부(2013)에서 추진 중인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 추진하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공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 청소년의 취업은 해당 직무기술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 구조가 필요하므로, 실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영선, 김환희, 2013). 이러한 접근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장애 청소년의 취업률 상황을 보완할 수 있으며, 장애 학생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생존 및 발달

(2) 정책제언

이 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에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의 사고사망률과 자살률 현황에서 보듯이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살의 범위를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까지 포함할 때 자살의 심각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끔 생각한다는 32%, 자주 생각한다는 46%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을 생각했던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시작한 첫 해 안에 자살계획과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Borges et al., 2008) 매우 주목해야 할 통계수치라고 볼 수 있다.

3개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은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감소하였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학교성적과 가족 간의 갈등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정신건강 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고민은 표면적으로 성적이나 진로의 어려움으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이나 친구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증가하는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2011년 3월 30일에 제정하고 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2013년간의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체계는 학생들의 자존감 증진 및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상 예방교육인 "예방활동", 우울 및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위기관리", 그리고 불행하게 자살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의 "사후대응"으로 구성되었으며, 단계 상황별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학교 내·외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자살예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들은 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부처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이루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사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한다면 죽음 앞에 내몰린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뒷받침된다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명존중과 관련된 예방활동과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과 함께, 학교가 자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 배제를 줄여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화상대에 대한 현황에서 친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위기 이동·청소년을 돕는데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다른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또래 조정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다는 조사결과(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는 이를 뒷받침한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뿐 아니라 자살을 포함한 위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2012)의 자살예방 원탁회의에서 언급되었듯이, 언론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충동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자살과 관련한 자극적인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체계」가 자살예방과 위기관리 강화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보건서비스

(2) 정책제언

보건서비스에 대한 지표로 보건교사 배치현황, 의료급여대상자수, 학교급식 만족도, 학교급식 안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학교급식과 관련된 현황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65.5%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51.3%로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어 급속한 신체변화와 정신건강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사춘기 청소년을 위한 보건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므로 학교에서의 건강관리는 가정에서의 건강관리만큼 중요한 영역이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교보건 계획, 학교환경 위생,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질병 예방, 보건지도, 건강 상담 및 평가, 보건교육 등으로 기술되어있다(교과부, 2013). 따라서,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 관리가 중요시 되는 현 시점에서,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의 유일한 보건전문인력이므로 학교 보건교육과 보건업무의 성과는 보건교사 개인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박경선, 배을규, 2012).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 뿐 아니라 편식교정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권대중, 박옥진, 2012). 우리나라 현재 학교급식 규모는 2012년 현재 전체의 99.9%인 11,476개교에서 학생 697만 명이 급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교과부, 2013),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급식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은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급격한 확대에 의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의 미비 및 위생 관리 체계의 소홀함 등이 지적되어 왔으며,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2006년 6월, 위탁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2007년 1월에 급식방식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됨으로써 위탁급식 직영전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강화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빠르게 안정화되어가는 학교급식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식재료 공급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에서는 별도의 급식실을 설치하는 등 위생적으로 청결한 급식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종교적 신념과 신앙으로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 영양섭취를 고려한 대체 음식이 고려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문화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감독이 철저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 학교급식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2) 정책제언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증진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관적 건강평가를 살펴보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생애초기 잠재적 시기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덜 부각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시기는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정책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우선순위 집단이다(안진상, 김희정, 2013).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평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선정책이 선행될 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지표로 운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수면시간, 비만율, 청소년 유병률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아침결식이나 비만 등은 불규칙한 식습관을 형성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학업성적이나 인지기능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노은이, 2013),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빈곤이 아동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구빈곤을 완화하는 소득보장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권은선, 구인회, 2010). 또한,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지원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로 영양, 신체활동, 생활 습관 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강증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학업위주의 사회에서 아동의 건강증진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지표로는 우울증 지수, 스트레스 인지률, 자아존중감, 행복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경우,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으로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성적과 학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과는 달리 우울 감정이 감추어진 상태로 나타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편인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무례하고 반항적인 행동, 공격적 행동 등을 하거나 두통, 복통, 피로감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유재순, 손정우, 남민선, 2010),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2007년부터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SOC: System of care)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전국의 초1·4학년, 중1·고1 학년 학생(약 210만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교폭력징후, 자살생각 등 정서와 행동발달 경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를 연계, 활용하여 위기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모델 구축·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부처별 서비스 중복을 피해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노력으로 보인다. 2012년에 설립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무기력하고 만성화된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다시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치료와 재활의 장이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첫째, 정신건강서비스지원인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와 개입과정이 대상자에게 비정상 또는 낙인감 없이 전달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아동·청소년기의 주요 정서·행동 발달경향을 조기에 진단하고 정신건강문제로의 악화방지 및 정상적인 발달지원을 통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우울 및 자살생각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청소년은 집중 사례로 지정하여 추적관찰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형별 위기상황에서의 개입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마다 위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촘촘히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성 있는 담당자들이 배치되어 효과적인 상담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역기능적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2) 정책제언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의 지표로 성교육 경험률 현황을 살펴보았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성교육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었다. 성범죄와 청소년의 임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가 이에 대한 관심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는 성교육에 대한 낮은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예방차원의 체계적·지속성이 미흡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 및 전문인력 등의 관련 인프라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2013). 따라서, 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기보다는 전문인력을 통해 현재 아동·청소년의 궁금증을 해소되고,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성지식과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성폭행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권교육이 성교육에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성 폭력 방지 대책」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며, 20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2016년부터 보급할 방침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청소년이 ‘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권을 폭 넓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은 학교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자녀의 2차 성징이 시작될 즈음에 부모는 자녀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쉼터 등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신체변화에 따른 성적 관심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나의 권리도 보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성적 주체로서 발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생식 보건 권리를 위해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6) 약물남용 방지 대책

(2) 정책제언

약물남용 방지 대책에 대한 지표로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과 흡연율 및 음주율 현황을 살펴보았다. 흡연예방과 음주예방 교육을 포함한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중·고등학생에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흡연과 음주에 대한 실태조사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부산시교육청, 2012)에서는 최초 흡연시기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4·5학년 때라고 보고하고 있어, 실제 약물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태조사 현황에 초등학생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예방교육의 방향과 지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축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시기별로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황성현(2012)에 의하면, 지위비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청소년 초기에는 가족과 부모가 중요하지만, 청소년 중기와 후기는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을 포함한 친구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시기별로 약물남용 예방교육 내용과 개입 전략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약물남용교육은 1·2회의 단순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학업중심의 교과 과정 운영으로 인해 약물남용예방교육은 형식적인 대집단 교육으로 끝날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동·청소년에게도 흡연과 음주의 단점과 폐해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담배와 술에 집중되기 보다는 자신을 통제하고 존중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된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약물과 비행이라는 행동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과 음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수 있음을 교사들과 담당 관련자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내면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불안을 감추거나 부인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신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2)에서도 우울한 경험 및 자살생각을 하는 학생은 흡연, 음주, 수면 등의 건강행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 경험이 자살생각을 한 적이 없는 학생보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약 2배, 수면 미충족률은 약 1.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전략 등 아동·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이나 구매대행업체의 대리 구매 및 신분증 변조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에게 흡연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치하는데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편의점 등의 담배 진열 등에 대한 규제도 검토되어야 한다(이경심, 이순례, 김지연, 2013).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청소년들보다 유해환경에 더 노출되었으면서도 어른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컴퓨터나 검정고시 학원 등에서도 약물남용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사회보장 보호시설

(2) 정책제언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지표로 사회보장서비스 내용인 아동급식 지원현황,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과 아동발달계좌 개설현황을 살펴보았다.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통합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센터가 확대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및 개발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고위험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우수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공공에서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가 취약하고, 교육부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 등에서 지원하는 대상과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린 시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격차를 예방적인 접근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영유아 연령대에 보다 집중 할 필요가 있다(이봉주, 2010). 이러한 전략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연령별로

대상을 차별화하여 아동·청소년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최은진 외, 2012).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고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3,50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이용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도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보호와 학습 뿐 아니라 문화, 대인관계, 인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 2012). 지역아동센터는 이처럼 빠른 양적성장과 함께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1차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일선 안전망으로서의 의의를 지니지만(김도균, 2011), 센터의 운영기관 또는 기관장의 역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등에 있어 지역편차가 큰 편이며, 관리체제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곳도 있는 형편이다. 이를 위해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객관적 지표와 평가를 통해 지원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하는 대상이 빈곤가족의 아동 뿐 아니라 다문화, 장애 아동 등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는 이들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담당 부처 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교과부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WEE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와 디딤씨앗통장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처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지만, 중복예산 발생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겹치거나 모호하여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마다 센터존재 여부와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서비스 질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의 종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상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관의 중점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사정과 빠른 개입을 위해서 인권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할 권리를 누리고, 존중받는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장과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소진을 막고 임파워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과 재교육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3). 201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 교육부(2013). 2013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교육부.
- 권대중, 박옥진 (2012).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한 위생관리 및 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사회안전학회지, 8(2), 119-144.
- 권은선, 구인회 (2010).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2(4), 129-148.
- 김도균 (2011).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젠더리뷰, 23, 34-39.
- 김혜연 (2011).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복지재단의 꿈나래통장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4), 1-26.
- 노은이 (2013).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 박경선, 배을규 (2012). 보건교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1), 1-13.
- 박래균 (2013). 장애인 인권. 인권상담전문가 아카데미 자료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 박승희 (2003). 한국장애 학생 통합교육: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관계 재정립. 서울: 교육과학사.
- 보건복지부 (2012). 청소년 자살,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 등 정신장애. 민·관·언론이 함께해야 해결 가능 보도자료.
- 부산시교육청(2012). 2012년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 흡연 및 음주 실태조사. 부산시교육청.
- 안진상, 김희정 (2013).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205-231.

유재순, 손정우, 남민선 (2010). 줄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재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1), 71-81.

이경심, 이순례, 김지연(2013). 청소년 흡연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소년보호 연구*, 22, 285-317.

이봉주 (2010). 드림스타트 사업의 현황과 과제. *복지동향*, 43, 8-10.

이영선, 김환희 (2013). 발달장애청소년의 전환성과 탐색. *장애와 고용*, 23(3), 83-103.

최은진, 김미숙, 이명수, 윤명주, 정지원(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성현(2012).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9(10), 23-43.

Borges, G. Behjet. C. Medina-Mora, M.E., Orozco, R., & Nocl, M. K. (2008). Suicide ideation, plan, and attempt in Mexican adolescent mental health survey. *Journal of th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1), 41-52.



5.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실태 분석

이 민 희 (평택대학교 교수)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이 민 희 (평택대학교 교수)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1) 지표의 현황

① 교육의 기회

가. 취학률

취학률은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를 취학 적령 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이다. 취학 적령은 보통 유치원의 경우 3~5세,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고등교육 기관은 18~21세이다. 아래의 <표 Ⅲ-5-1>의 취학률을 산출하는데 적용된 취학 적령 인구는 통계청(2010)의 '장래 인구 추계'를 기준하였고, 2010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잠정 추계이므로 다음 추계 시 변경될 수 있는 수치이다. 표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취학률은 통념상 아동으로 간주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를 볼 때에 유치원은 2000년에 26.2%였던 것이 2012년에는 44%로 증가되었고,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대상인 초등학생은 98.6%가 취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통념상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에서 의무교육의 대상에 해당되는 중학생의 취학률은 2000년의 95%에서 2012년의 96.1%로 미세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2000년에는 89.4%로 90%를 넘지 못했으나 2012년에는 92.6%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인 9~24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대한민국의 전체 고등교육기관¹⁾에 취학하고 있는 비율이 2000년에는 52.5%로 취학 적령인구의 과반수를 약간 넘었으나 2012년에는 68.4%에 달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취학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고 있다. 2010년의 OECD 국가 간 취학률을 비교해보면 3~5세의 연령에서 OECD 평균 취학률이 95.9%이고, 한국은 99.7%로 한국이 취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14세연령을 대상으로 중학교까지 취학률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82.9%인데 반해 한국은 85.9%로 한국이 교육의 기회를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4)

표 III-5-1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2000, 2008~2012)²⁾

(단위 : %)

구분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치원	26.2	37.8	39.5	40.2	40.9	44.0
초등학교	97.2	99.0	97.9	99.2	99.1	98.6
중학교	95.0	93.2	96.2	97.0	96.7	96.1
고등학교	89.4	90.0	92.5	91.5	91.9	92.6
전체 고등교육기관	52.5	70.5	70.4	70.1	71.0	68.4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p. 21

나. 진학률

진학률은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를 당해년도 졸업자로 나누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아래의 <표 III-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2000년에서 2012년까지 거의 100%에 가까운 99.9%에 해당한다.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2000년에 99.6%였고, 2012년에는 99.7%로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전체 62%였던 것이 2012년에는 71.3%로 나타나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77.8%를 정점으로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진학률이 차이가 많이

- 1) 전체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 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 2)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포함되었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에는 연도 및 기관에 따라 17세 이하의 학생이 포함되었다.

나는데 일반계고는 2008년 87.9%의 진학률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76.2%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계고는 원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기에 2000년 고등교육 과정으로의 진학률이 42%로 낮았으나 2009년 73.5%로 많이 증가했다가 2012년에는 54.9%로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2000, 2008~2012)³⁾

(단위 : %)

구분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초등학교→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99.9	99.9	
중학교→고등학교과정	99.6	99.7	99.6	99.7	99.7	99.7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전체	62.0	77.0	77.8	75.4	72.5	71.3
	일반계고	83.9	87.9	84.9	81.5	75.2	76.2
	전문계고	42.0	72.9	73.5	71.1	63.7	54.9
	일반고	-	-	-	-	[75.8]	[76.6]
	특수목적고	-	-	-	-	[67.4]	[64.2]
	특성화고	-	-	-	-	[61.0]	[50.0]
	자율고	-	-	-	-	[69.3]	[72.6]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p. 22

다.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은 학업을 중단한 자의 수를 전년도 재적 학생 수로 나눈 것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들에게 가정환경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이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의 질병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지식기반사회인 현대사회 속에서 특히, 학벌사회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자신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의 조건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는 차원의 인권문제가 되므로 한 국가의 학업중단율이 높다는 것은

3)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하였다. 일반계·전문계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당사국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알리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표 III-5-3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00, 2008~2011)⁴⁾

(단위 : %)

구분(학년도)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초등학교	0.4	0.5	0.5	0.3	0.6 (0.3)	0.6 (0.3)
중학교	0.7	1.0	1.0	0.8	1.0 (0.8)	0.9 (0.8)
고등학교	2.3	1.8	1.8	1.8	2.0 (1.7)	1.9 (1.7)
전체 고등교육기관	6.1	7.3	6.8	6.5	6.7	6.4
일반대학	3.9	4.8	4.1	4.0	4.0	4.0
전문대학	5.5	8.3	7.8	7.3	7.4	7.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p. 24

위의 <표 III-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에서 2000년에 0.4%의 학업중단율이 2011년에 0.6%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도 2000년에 0.7%였던 학업중단율이 2011년에는 0.9%로 증가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중단율이 더 높아서 2000년도에 2.3%였던 것이 2011년에는 1.9%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에 해외유학생을 학업중단자에 포함시켰는데도 전년도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한국의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각각 3,132,484명, 1,910,578명, 1,960,338명이고 각각 학업중단율이 0.6%, 0.9%, 1.9%이므로 학업중단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각각 18,795명, 17,195명, 37,246명으로 모두 합하면 73,236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 의해 매년 7만명이 넘는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로서도 큰 사회문제이고 차후에 이들의 학교와 사회에 다시 진입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해당 당사자에게는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률(제적률)=(제적 학생수/전년도 제적 학생수)×100. 중학교는 2003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중단자를 유예 및 면제자로 보았고,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포함되었다.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되었고, 2011~2012년의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제적학생은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 기타사유에 의해 학적에서 제외된 학생이다.

표 III-5-4 최근 1년 동안 학업포기 결심 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3.2	76.8	100.0(6,664)	
성별	남자	22.5	77.5	100.0(3,494)	508.223***
	여자	24.0	76.0	100.0(3,170)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16.9	83.1	100.0(3,265)	1674.729***
	일반계고	29.6	70.4	100.0(2,449)	
	특성화고	30.3	69.7	100.0(605)	
	자율고	25.2	74.8	100.0(254)	
	특목고	22.6	77.4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22.6	77.4	100.0(2,775)	150.412***
	중소도시	22.8	77.2	100.0(3,011)	
	읍면지역	26.6	73.4	100.0(878)	
학업 성적	상	13.0	87.0	100.0(1,740)	12.04*
	중	19.9	80.1	100.0(2,630)	
	하	34.8	65.2	100.0(2,285)	
경제적 수준	상	20.5	79.5	100.0(2,554)	1.9
	중	21.1	78.9	100.0(2,619)	
	하	31.4	68.6	100.0(1,479)	

* p<0.05, ** p<0.01, *** p<0.001

한편,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를 물었을 때에 위의 <표 III-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6,664명 중 23.2%가 학업을 중단할 생각을 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5명 중 1명이 넘는 비율로 매우 심각한 수치라 할 수 있다. 응답자의 23.2% 중 여성이 24%로 남성보다 많았고, 고등학생이 29.2%로 10명 중 3명꼴로 학업중단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은 34.8%의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더 생각했으며,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31.4%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할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수준과 학업수준의 상관관계와 이들의 학업중단율과의 상관관계 또한 읽을 수 있다.

표 III-5-5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48.2	51.8	100.0(9,488)	
성별	남자	44.5	55.5	100.0(4,970)	195.517***
	여자	52.3	47.7	100.0(4,518)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35.2	64.8	100.0(2,808)	8.588*
	중학교	49.9	50.1	100.0(3,278)	
	일반계고	57.2	42.8	100.0(2,449)	
	특성화고	61.6	38.4	100.0(608)	
	자율고	53.5	46.5	100.0(254)	
	특목고	45.5	54.5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49.1	50.9	100.0(3,934)	3.2
	중소도시	46.1	53.9	100.0(4,382)	
	읍면지역	53.1	46.9	100.0(1,172)	
학업 성적	상	39.4	60.6	100.0(2,844)	111.816***
	중	45.1	54.9	100.0(3,985)	
	하	62.5	37.5	100.0(2,642)	
경제적 수준	상	41.8	58.2	100.0(4,300)	285.483***
	중	49.6	50.4	100.0(3,520)	
	하	62.1	37.9	100.0(1,654)	

* p<0.05, ** p<0.01, *** p<0.001

라. 학교부적응

위의 <표 III-5-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업부적응은 위에서 서술한 학업중단보다는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에 있어서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업의 부적응이 학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에 학교부적응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지표는 2012년에는 없던 지표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아 2013년 새롭게 채택된 지표이다. 아직 국가의 관련기관에서 이에 관련된 통계가 산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2013년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상황에 관하여 조사되었다. 조사지에서는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에게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를 질문하였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려 응답자의 반수에 가까운 48.2%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44.5%)보다 여성이(52.3%), 초등학생(35.2%)과 중학생(49.9%) 보다는 고등학생(57.4%)이 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49.1%)보다는 읍면(53.1%) 거주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학생(39.4%)보다는 낮은 학생(62.5%)들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41.8%)보다는 낮은 학생(62.1%)들이 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6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1,2,3 순위, 복수 응답)

(단위 : %)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학교 수업이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른 취미활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타	전체(N)
전체		5.9	24.4	9.7	1.2	2.8	70.4	37.3	57.5	40.0	22.7	100.0(4,566)
성별	남자	6.0	23.0	10.7	1.4	3.1	71.6	36.8	54.6	45.3	20.2	100.0(2,206)
	여자	5.7	25.7	8.8	1.0	2.4	69.2	37.7	60.1	35.0	24.9	100.0(2,360)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13.2	23.9	12.4	1.1	2.3	63.2	23.9	41.9	50.7	28.0	100.0(987)
	중학교	6.2	22.4	10.3	1.3	3.6	72.1	41.4	61.0	37.4	21.1	100.0(1,633)
	일반계고	1.8	27.6	7.7	0.8	2.3	72.0	39.5	63.2	36.8	20.8	100.0(1,397)
	특성화고	1.9	19.0	8.2	2.3	2.4	78.9	42.8	59.2	39.6	23.6	100.0(372)
	자율고	1.7	29.9	8.8	0.2	2.8	64.3	51.4	61.4	31.3	18.3	100.0(136)
	특목고	3.5	38.9	3.5	2.9	1.5	58.9	21.8	65.1	25.5	27.6	100.0(42)
지역 규모	대도시	5.3	24.8	9.2	1.2	3.0	69.5	38.2	58.2	38.6	23.3	100.0(1,930)
	중소도시	6.2	24.2	9.3	1.3	2.9	70.5	34.9	57.4	40.5	22.8	100.0(2,015)
	읍면지역	6.5	23.9	12.3	0.5	1.4	72.7	42.0	55.2	42.3	20.0	100.0(622)
학업 성적	상	6.2	13.7	11.3	0.6	2.6	65.5	36.3	64.8	39.3	26.6	100.0(1,117)
	중	6.0	23.5	9.0	1.2	2.1	69.7	35.6	56.5	40.5	23.6	100.0(1,794)
	하	5.5	32.8	9.4	1.5	3.6	74.4	39.6	53.6	39.9	18.9	100.0(1,645)
경제적 수준	상	5.4	22.1	11.6	0.4	2.0	68.7	35.8	56.7	40.9	24.5	100.0(1,791)
	중	6.0	25.4	9.3	0.6	2.6	71.6	37.9	57.6	39.0	22.3	100.0(1,743)
	하	6.4	27.0	6.9	3.4	4.3	71.0	38.8	58.5	40.1	20.0	100.0(1,024)

한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들을 열거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택하라 하였을 때에 위의 <표 III-5-6>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4,566명의 전체 응답자 중에서 70.4%의 다수가 '학교의 수업이 싫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57.5%가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취미 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로 40%가 응답을 하였으며, 37.3%는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로 응답하였고, 24.4%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는 일시적이거나 상시적이지 않은 응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이 싫어서'와 '다른 취미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는 모두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과 일반적인 공부에 너무 시달려 이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학교가기 싫은 이유로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내지는 공부에 시달려 심신이 매우 피로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체로 특성학교의 학교유형에 다니는 학생과, 읍면 거주 학생과,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에 이러한 이유들에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당시 전국 남녀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 9,627명의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11.38%가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31.29%가 학교의 규범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류방란 외, 2007: 62) 2013년의 조사내용과 비교해 보면 6년 전보다 학교 규범보다는 수업에 더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이 보다 학교에서 즐겁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수업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나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마.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 1인당 학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임희진·김현신, 2012: 198) GDP 대비 공교육비가 한 국가의 전체 교육비 규모를 보여주는 거시적 지표라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실질적으로 개별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미시적 지표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에 활용되는 항목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지출된 경상비(인건비, 인건비 외)와 자본비로 구성된다. OECD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사용한다. 구매력지수는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서 OECD 및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3년을 주기로 몇 가지 물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산출한다. 우리나라 2009년 구매력지수 환율은 US 1\$당 804.11원이며, 국민 1인당 GDP는 US \$27,171이다. (한국교육개발원, 2012: 66)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산출은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상비와 자본비를 더한 총액을 학생 수와 구매력지수를 곱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말한다.

표 III-5-7 주요 국가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9)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국가	초등교육 (1)	전체 중등교육 (2)	중등교육 전기중등교육 (3)	후기중등교육 (4)	고등교육 (5)	전체 (6)
OECD 평균	7,719	9,312	8,854	9,755	13,728	9,252
한국	6,658	9,399	7,536	11,300	9,513	8,542
캐나다	8,262	8,997	x(1)	10,340	20,932	m
핀란드	7,368	8,947	11,338	7,739	16,569	9,910
프랑스	6,373	10,696	9,111	12,809	14,642	9,913
독일	6,619	9,285	8,130	11,287	15,711	9,779
이탈리아	8,669	9,112	9,165	9,076	9,562	9,055
일본	7,729	9,256	8,985	9,527	15,967	10,035
영국	9,088	10,013	10,124	9,929	16,338	10,587
미국	11,109	12,550	12,247	12,873	29,201	15,812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p. 68

위의 <표 III-5-7>에서는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잘 비교할 수 있다. 2009년의 국제비교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국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OECD의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공교육비 지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중등교육 단계는 초등고등교육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낮으나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545 높게 나타났다. 한국이 전체적으로 주요국가 중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낮게 나타난 큰 이유는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차이로 낮은 공교육비 지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교육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위의 표에서 나타난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많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구매력지수 PPP 기준 15,812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이다. 전체교육단계에서 이는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비교해 볼 때 초등교육 약 1.7배, 전기중등교육 약 1.6배, 후기중등교육 약 1.1배, 고등교육 약 3.1배에 달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나타내는 구매력지수 추이는 2000년 746.21에서 2004년 796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2007년까지 768.65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는 804.11 달러로 가장 높은 공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66)

바. 사교육 경험률

표 III-5-8 사교육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74.2	25.8	100.0(9,507)	
성별	남자	72.9	27.1	100.0(4,979)	1600.577***
	여자	75.7	24.3	100.0(4,528)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83.8	16.2	100.0(2,828)	1291.368***
	중학교	80.4	19.6	100.0(3,273)	
	일반계고	66.5	33.5	100.0(2,450)	
	특성화고	28.0	72.0	100.0(610)	
	자율고	70.6	29.4	100.0(255)	
	특목고	83.8	16.2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77.5	22.5	100.0(3,937)	997.458***
	중소도시	73.2	26.8	100.0(4,394)	
	읍면지역	67.4	32.6	100.0(1,176)	
학업 성적	상	82.5	17.5	100.0(2,848)	576.589***
	중	77.0	23.0	100.0(3,996)	
	하	61.1	38.9	100.0(2,646)	
경제적 수준	상	83.4	16.6	100.0(4,309)	519.425***
	중	71.9	28.1	100.0(3,531)	
	하	55.4	44.6	100.0(1,654)	

* p<0.05, ** p<0.01, *** p<0.001

사교육 경험률은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는 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학벌사회 속에서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극심한 교육의 상황에서 사교육의 경험이 곧 사회계층에의 진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의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 측면에서 볼 때에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학교 수업 이외에 성적을

높이거나 진학을 위해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의 결과에서 보면 위의 <표 III-5-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 9,507명 중 74.2%가 사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사교육 경험율은 더 높아서 83.6%로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0.4%, 60.4%로 보이고 있다. 세부유형 학교를 비교해 보면 사교육 경험의 차이는 극명한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집단인 특목고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율은 초등학생과 같이 83.6%로 가장 높고,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집단인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은 가장 낮은 28%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읍면에 거주하거나, 경제수준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사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III-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약 21조 6천억이 넘었던 사교육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도에는 약 19조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경제상황이 양극화되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 가정경제가 그 이유로 추정된다.

표 III-5-9 학교급 별 사교육비 총액 (2009~2012)

(단위 : 억 원)

시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체
2012	77,554	61,162	51,679	49,083	190,395
2011	90,461	60,006	50,799	47,640	201,266
2010	97,080	60,396	51,242	47,512	208,718
2009	102,309	62,656	51,294	47,853	216,259

* 출처 : 통계청(2013). 사교육비 조사

사.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지표는 해당교육 단계의 교원 수 대비 학생 수로 정의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한사람의 교원에게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이 배정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교원 1명이 지도하는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을 시에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가르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의 교수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교육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원 1인 당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보다 교육의 효과가 높아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 뒤처지는 학생이 있으면

그에게 상대적으로 더 지도를 하여 같은 수준으로 교육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표 III-5-10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0, 2008~2012)

구분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위 : 명)					
유치원		19.5	15.5	15.2	14.8	14.6	14.5
초등학교		28.7	21.3	19.8	18.7	17.3	16.3
중학교		20.1	18.8	18.4	18.2	17.3	16.7
고등학교	전체	19.9	15.5	15.7	15.5	14.8	14.4
	일반계고	20.9	16.4	16.7	16.5	-	-
	전문계고	18.2	13.4	13.3	13.1	-	-
	일반고	-	-	-	-	15.8	15.4
	특수목적고	-	-	-	-	11.0	10.3
	특성화고	-	-	-	-	12.5	12.1
	자율고	-	-	-	-	15.2	14.6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p. 26

위의 <표 III-5-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교원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더욱 시간과 노력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를 살펴보면 2000년 초등학교에서는 교원 1인당 28.7명이 배정되었으나, 2012년에는 16.3명으로 평균 12명 이상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도 2000년에 교원 1인당 20.1명의 학생 수가 2012년에는 16.7명으로 감소되었고, 고등학교에서도 2000년 19.9명에서 14.4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의 <표 III-5-1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제비교를 통해 2010년 주요국가의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아교육 단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교육 단계보다 다소 적지만 초등 이상의 단계에서는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OECD 평균의 경우 유아교육 단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 초등교육 단계는 15.9명이지만 전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 단계는 각각 13.7명, 13.8명으로 교육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수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높고 낮음은 국가별로 교육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핀란드, 이탈리아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 프랑스, 영국 등은 다소 많은 경향을 띤다. 한국의 경우

2010년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아교육 17.1명, 초등교육 21.1명, 전기중등교육 19.7명, 후기중등교육 16.5명으로 교육단계별 차이는 OECD 평균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단계별로 유아교육 2.7명, 초등교육 5.2명, 전기중등교육 6명, 후기중등교육 2.7명의 차이를 보여 전기중등교육이 OECD 평균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134)

표 III-5-11 주요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0)

(단위: 명)

구분	유아 교육	초등 교육	중등교육						전체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	(2)	(4)	(5)	(3)	(7)	(8)	(6)	(9)	
OECD 평균	14.4	15.9	13.5	13.1	13.7	13.7	13.9	13.8	13.8
한국	17.1	21.1	19.7	19.9	19.7	16.0	17.3	16.5	18.0
캐나다	x(3)	x(3)	17.8	15.6	17.7	15.9	14.4	15.8	17.7
핀란드	11.0	14.0	9.8	9.8	9.8	16.4	21.4	17.1	13.7
프랑스	21.5	18.7	14.7	16.3	15.0	9.6	10.0	9.7	12.3
독일	12.6	16.7	14.9	14.4	14.9	13.4	12.2	13.2	14.4
이탈리아	11.8	11.3	11.9	m	11.9	12.1	m	12.1	12.0
일본	15.9	18.4	14.6	12.7	14.4	11.5	13.9	12.2	13.2
러시아	m	19.2	10.1	m	x(9)	m	m	x(9)	11.3
영국	15.9	19.8	17.3	16.4	17.1	12.4	19.8	15.2	16.0
미국	14.6	14.5	14.4	10.7	14.0	15.6	10.7	15.0	14.4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p. 134

아. 대안학교 수와 종류

표 III-5-1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2009)

(단위: 명)

시도	학교명	설립별	모집 인원	소재지	교원수	학생수
부산	지구촌고	사립	30	연제구 거제1동 50	9	60
대구	달구벌고	사립	40	동구 덕곡동 75-5	15	101
인천	산마을고	사립	20	강화군 하점면 삼흥리 460	10	56
광주	동명고	사립	40	광산구 서봉동 518	17	120
경기	경기대명고	공립	40	경기도 수원시 군선구 당수동 122	18	110
	두레자연고	사립	40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화산리 692-11	16	120
	이우고	사립	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23	212
	한겨레고	사립	2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10-1	11	34
강원	전인고	사립	60	춘천시 동산면 원창1리 923-1	8	46
	팔렐고	사립	40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252	6	31
충북	양업고	사립	40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181	16	116
충남	한마음고	사립	40	천안시 동면 장송리 418-1	14	94
	공동체비전고	사립	40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75-1	16	92
전북	세인고	사립	60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	19	152
	푸른꿈고	사립	40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65	12	91
전남	영산성지고	사립	40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77	16	110
	한빛고	사립	75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1	21	230
경북	경주화랑고	사립	40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	14	113
경남	간디학교	사립	40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17	120
	원경고	사립	40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292	17	94
	지리산고	사립	20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	11	52
고등학교 21교					306	2,154
경기	현산중	사립	40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883-1	11	58
	두레자연중	사립	20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692-11	9	60
	이우중	사립	60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14	185
	한겨레중	사립	20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10-1	8	45
	중앙기독교중	사립	3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73-6	10	90
전북	지평선중	사립	40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99-1	13	82
전남	성지송학중	사립	20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219-1	10	65
	용정중	사립	24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186	11	84
중학교 8교					86	669
합계 29교					392	2,823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대안학교 규정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9.7.31.

2013년도에 마련된 대안학교 수와 종류의 지표는 2012년도에 없었던 지표이다. 이 지표의 채택은 한국에서 매년 약 7만 명이 넘는 학업중단 아동 및 청소년들이 나오고 있고, 가출청소년은

추정해서 전국에 약 20만 명 정도로 말하고 있으며, 앞에서 조사한 결과에 나타나있는 것과 같이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 수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의 권리 차원에서 이들이 학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대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한국에서 현재 설립되어 있는 대안학교의 종류는 크게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비(미)인가 대안학교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도입 첫해인 1998년에 기존의 비(미)인가 대안학교 중 6개교를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한 것을 기점으로, 위의 <표 III-5-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년 7월 현재 고등학교 21개교, 중학교 8개교가 각각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학교에 416명의 교원과 3,410명 학생이 근무 또는 재학 중이다.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3에 근거한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는 아래의 <표 III-5-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8년과 2009년에 각 1개교가 경기도와 서울에 개교하여 현재 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각각 국제화 교육 및 실용음악 교육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급당 2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교원은 26명이고 현 학생 정원은 222명에 해당한다.(강혜영 외, 2009: 70)

표 III-5-13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현황 (2009)

(단위: 명)

지역	학교명	인가년도	학교급	학급수	학생 정원	교원
경기(고양)	TLBU 글로벌학교	2008	초·중	초6, 중3	162 (초 108, 중 54)	20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	2009	고	3	60	6
계	2개교				222	26

* 출처: 강혜영 외(2009).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 p. 71

2009년 현재 위탁형 대안학교는 13개 시·도에 46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해당 교원은 675명, 학생은 1,28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상 학생 별로 보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15개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19개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곳이 12개교 이다. 그리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 10개교, 선택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 3개교가 있으며 나머지는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미)인가 대안학교는 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교육당국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데 2006년에 55개교가 선정된 이후 2009년 현재 비(미)인가 대안학교는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측된다. 비(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급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가 모두 54개교로 통합한 형태가 단일한 형태보다 더 많으며 통합의 형태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경우가 37개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학년을 모두 통합한 경우가 11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경우가 6개였다. 비(미)인가 대안학교 설립 초기에는 주로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통합형이 많았지만 초등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초·중, 초·중·고 통합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이혜영 외, 2009: 68~74)

자. 방과후학교 운영 수

교육과 관련된 지표 중 방과후학교 운영 수는 위의 2012년에는 없었던 지표이다. 2013년에 이 지표가 채택된 이유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방과 후에 홀로 집에 남아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학습의 부진과 인터넷이나 게임중독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과후학교의 지표는 이렇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방과 후에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III-5-14 보육시설 내 방과후 보육현황(지역별, 2009)

(단위 : 개소, 명)

구분	방과후 보육 실시 시설수							보육아동수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소계	방과후 현원		
								남	여	소계
계	49	118	12	199	3	1,227	1,608	7,839	7,611	15,450
서울	13	4	4	43	1	333	398	1,824	1,829	3,653
부산	2	19	1	22	-	118	162	862	870	1,732
대구	1	18	-	16	-	105	140	647	594	1,241
인천	3	-	2	16	1	43	65	235	243	478
광주	1	4	-	1	-	8	14	144	66	210
대전	3	1	-	6	-	20	30	79	70	149
울산	2	2	1	1	-	11	17	104	70	174
경기	7	7	4	40	1	236	295	1,121	1,151	2,272
강원	-	3	-	1	-	28	32	185	176	364

구분	방과후 보육 실시 시설수							보육아동수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 동	민간	소계	방과후 현원		
								남	여	소계
충북	18	1	4	-	3	-	10	106	77	183
충남	30	5	4	-	3	-	18	126	92	218
전북	114	-	16	-	6	-	92	727	802	1,529
전남	22	-	12	-	-	-	10	161	160	351
경북	109	4	14	-	4	-	87	859	722	1,578
경남	155	6	8	-	36	-	105	600	652	1,252
제주	7	1	2	-	1	-	3	32	34	66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 p. 59

이러한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은 보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관련 시설에서 정규 보육시간이 마쳐진 후에도 방과후 보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10년 대한민국의 방과후 보육 시설 수는 위의 <표 III-5-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국에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등의 1,608개소가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보육아동수는 15,450명이다. 이 중에 민간이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이 1,227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398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 295개, 부산 162개, 경남 155개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표 III-5-15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및 학생수 (2006~2010)

구분	운영 학교수	학생수
2006	1,421	31,788
2007	2,275	43,720
2008	2,716	51,110
2009	3,413	66,691
2010	5,117	104,496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 p. 148

위의 <표 III-5-15>는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 해당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및 학생수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학교 수는 2006년 1,421개 교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5,117개교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도 2006년 약 3만 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약 10만 명이 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아래의 <표 III-5-16>는 유형별, 학교급별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가 교과프로그램(33.6%)보다 특기, 적성 프로그램(66.4%)이 배나 많게 서비스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반대로 교과프로그램(82.6%)로 특기, 적성 프로그램(17.4%)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상은 고등학교에서 더 심해 교과프로그램(92.1%)이 특기, 적성 프로그램(7.89%)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로 갈수록 대학입학 시험을 겨냥한 교과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 III-5-16 유형별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 (학교급별, 2010)

(단위 : 개, %)

구분		교과프로그램	특기, 적성프로그램	계
초등학교	강좌 수	59,743	118,055	177,798
	비율	33.6	66.4	100.0
중학교	강좌 수	113,036	23,839	136,875
	비율	82.6	17.4	100.0
고등학교	강좌 수	116,112	14,180	180,292
	비율	92.1	7.89	100.0
계	강좌 수	338,891	156,074	494,965
	비율	68.5	31.5	100.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 p. 161

차.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2012년에는 없었던 지표이다. 이 지표는 먼저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적절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부여받고 있는 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와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의 수업을 마친 후 하루에 학습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면 이 또한 청소년의 놀 권리와 여가시간 활용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에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원래 이 지표가 채택되는 근본 이유는 전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과 같이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학원 등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안 학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너무 지식에 편중하여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심신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 덕, 체가 조화된 전인격체를 형성하는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큰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 III-5-17>은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라는 질문에 9,484명의 응답자들이 응답한 결과이다.

표 III-5-17 방과 후 평일 공부 시간

(단위 : %)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20.5	25.0	21.9	15.3	9.8	4.7	2.9	100.0(9,484)	
성별	남자	21.7	26.2	21.4	14.8	9.0	3.8	3.1	100.0(4,963)	9.646*
	여자	19.1	23.6	22.4	15.9	10.7	5.6	2.7	100.0(4,522)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1	31.6	23.3	13.8	8.2	4.2	2.7	100.0(2,822)	2.3
	중학교	18.8	22.8	25.1	17.6	9.2	4.1	2.4	100.0(3,266)	
	일반계고	18.7	22.6	20.5	15.9	12.6	6.1	3.7	100.0(2,442)	
	특성화고	63.0	17.0	6.6	5.6	5.2	1.7	0.8	100.0(609)	
	자율고	9.2	22.4	17.0	16.7	17.0	11.5	6.1	100.0(254)	
	특목고	10.4	19.0	16.1	24.0	17.6	3.5	9.4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18.5	24.7	22.8	15.4	11.0	4.6	3.0	100.0(3,939)	303.231* **
	중소도시	21.7	25.1	21.5	15.7	8.6	4.7	2.8	100.0(4,373)	
	읍면지역	22.8	25.5	20.0	13.7	10.2	4.9	2.9	100.0(1,171)	
학업 성적	상	10.1	22.1	24.7	18.1	13.3	6.9	4.8	100.0(2,840)	62.612 ***
	중	17.7	27.0	23.1	15.8	9.7	4.6	2.1	100.0(3,988)	
	하	36.0	24.9	16.9	11.5	6.3	2.4	2.1	100.0(2,639)	
경제적 수준	상	13.9	23.9	24.1	16.8	11.8	5.6	4.1	100.0(4,295)	47.579 ***
	중	21.7	27.3	21.9	14.8	8.2	4.1	2.0	100.0(3,524)	
	하	34.9	22.9	16.2	12.5	8.0	3.7	1.8	100.0(1,652)	

* p<0.05, ** p<0.01, *** p<0.001

위의 <표 III-5-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방과 후에 1시간 미만의 학습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0.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학습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3시간은 21.9%, 3~4시간은 15.3%, 4~5시간은 9.8%, 그리고 6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9%나 달했다. 그 중에서 학교별로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 학생들은 6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이 9.4%로 전체 평균 2.9%를 많이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특성화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하루 6시간 이상 학습하는 자가 0.8%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경제적 수준이 높고,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평일 공부 시간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과 후에도 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진로교육의 기회

가. 진로교육 체계

21세기 정보사회에 들어와 청년실업 문제는 글로벌 문제로 각국마다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에 몰입하느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매우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의 <표 III-5-18>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결과에서 13~24세 청소년이 자신이 경험한 진로교육에 대하여 복수로 응답한 내용이다.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진로와 직업 관련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72.3%로 나타났다. 진로와 관련된 현장 학습이나 견학은 54.8%, 상담교사와 진로상담을 한 경험은 60.5%로 응답되었다. 진로와 관련된 검사를 받은 경험은 73.9%이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은 51.3%에 달했다. 소집단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43.9%이었고, 진로교육에 관한 초청강연은 57.6%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에 진로교육관련 경험을 한 경우가 55.1%로 나타났다.

표 III-5-18 진로교육 경험 (복수응답, 2011)

(단위 : %)

	진로와 직업 수업	현 장 학 습, 견 학	상담교사 진로 상담	진로 관련 검사	인터넷 동영상 교육	소집단, 동아리 활동	초 청 강 연	재 량 활 동
13~24세	72.3	54.8	60.5	73.9	51.3	43.9	57.6	55.1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p. 23

* 원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1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50~70%의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반면에 30~50%의 응답자들은 전혀 진로교육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응답자의 1/3이상이 진로교육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한국의 진로교육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도 인권실태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초·중·고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전체 평균 비율이 34.3%인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임희진, 김현신, 2012: 201)

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는 학교의 진로와 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만을 전담하는 교사로서 기존 상담교사보다는 진로진학에 보다 전문성을 가진 교사제도로 2011.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교과교사 제도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12년 9월 25일 자 교육동향 소개에 따르면⁵⁾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6월 18일(월), 중학교 단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2013년에 배치할 1,551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2012년 실발령자 3,053명을 포함하여 총 4,550명의 진로교사가 활동하게 된다. 2013년 기준 전체 중고교의 84%(중학교는 72%, 고등학교는 100%)에서 진로교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12년까지 학생 수 100명이상 모든 고등학교(2,165교)에 배정을 완료하였고, 이번 중학교 배정에 따라 전국의 학생 수 100명이상 모든 중학교(2,525교)에 배치가 완료되는 것이다.

시도별 선발결과를 보면 경기, 383명, 서울 209명, 부산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제주, 세종은 각각 41명, 24명, 10명으로 가장 적게 선발되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선발되었지만 지난 2012년 7월 교육청이 공식 출범한 이래 첫 선발로서 새로운 진로교육의 출발이라는 의의가 있다. 반면 전북은 사립 4명 선발에 그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진로교사를 선발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진로교사 배치율(27%)을 기록하게 되었다. 전국 평균은 84%이다. 선발 후 각 시도별로 배정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정원은 시도별 중등교사 총 정원 내에서 별도로 정원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동계 합숙연수, 학기 중 연수, 하계 집합연수 등 8개월에 걸쳐 총 570 시간의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내년 3월에는 가배치, 9월부터는 정식 진로교사로 발령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된다. 중학교 진로교사가 배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의 직업체험을 대폭 확대하고, 재학 중 1회 이상의 직업체험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참고로 호주, 아일랜드 등은 이미 중등 단계에서 직업체험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5)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InternalForm.do?currentPage=1&editor_use_yn=Y&selectTp=0&article_sq_no=20311&board_sq_no=8 에서 2013년 09월 20일 인출

중학교는 1차적인 진로 결정의 시기로서 진로검사와 진로상담을 통한 소질과 적성의 발견이 중요하며, 직업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고졸 취업의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확대에 따라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지속적인 배치 확대는 성적 위주로 학교를 선택하고 진학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교육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 정책제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중 교육에의 권리로 분류된 10개의 지표들은 다시 교육의 기회와 관련된 지표 8개와 진로교육 기회 지표 2개로 분류되었다. 먼저 교육의 기회와 관련된 지표 8개를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자면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우선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열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이고 그에 따라 정기적인 아동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UN에서도 실사단이 한국에 실사를 나와 한국의 아동인권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였고, 권고사항에 한국의 아동들이 지나치게 학습시간이 과다하여 아동들의 여가 및 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UN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제도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 전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교육을 통한 한국 아동의 인권침해는 지속될 것이다.

각론으로 교육의 기회 및 진로교육 기회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취학률과 진학률, 교원 1인당 학생 수, 그리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체적으로 국제비교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진학률에서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학벌사회임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다시 말해서 상급학교의 진학에 있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들의 진로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오직 대학교 입학이라는 진학, 진로가 학습의 최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에 있어서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학교평준화와 같은 제도

도입에 준하는 대학입학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학의 분야를 다양하게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다양화를 꾀하고, 학벌로 인한 차별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사회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진로교육도 학교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 제도를 마련한 것은 진로교육정책의 긍정적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학업중단율과 학교부적응, 사교육 경험율, 방과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 진로교육 체계의 지표들이 보여준 부정적 결과는 한국의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나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선도대상 학생으로 보아 징계나 상담 등 소극적 지도에만 의지하지 말고 대안학교에의 입학이나 직업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주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이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MOU를 맺어 청소년 시설 및 기관들에 대안학교를 설치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이민희, 2009)

2) 교육의 목표

(1) 지표의 현황

① 학교의 의미와 기능

가.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인식

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이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정교육의 기능과 의미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퇴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교육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은 그들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현시대의 학교에 대하여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표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를 통해 학교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주었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둘째,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

고 있는가? 셋째,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가? 넷째,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러한 학교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약 9,500명 정도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Ⅲ-5-19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8.8	24.7	52.7	13.8	100.0(9,507)	
성별	남자	9.7	22.4	52.6	15.3	100.0(4,984)	39.735***
	여자	7.8	27.3	52.7	12.2	100.0(4,523)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3.8	9.8	55.4	31.0	100.0(2,825)	324.883***
	중학교	9.6	26.3	55.5	8.6	100.0(3,275)	
	일반계고	11.9	35.0	48.7	4.5	100.0(2,452)	
	특성화고	14.3	40.3	41.1	4.4	100.0(609)	
	자율고 특목고	12.7 5.4	31.6 30.3	50.1 56.9	5.6 7.4	100.0(255)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8.9	24.2	52.8	14.1	100.0(3,938)	74.671***
	중소도시	9.0	24.4	52.3	14.3	100.0(4,391)	
	읍면지역	7.7	27.7	53.4	11.3	100.0(1,179)	
학업 성적	상	6.7	20.2	52.1	21.0	100.0(2,846)	226.129***
	중	6.6	22.3	57.3	13.9	100.0(3,996)	
	하	14.3	33.4	46.2	6.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7.0	20.3	53.4	19.3	100.0(4,308)	100.341***
	중	8.6	24.4	56.1	10.9	100.0(3,530)	
	하	13.7	36.9	43.4	6.0	100.0(1,655)	

* p<0.05, ** p<0.01, *** p<0.001

먼저 위의 <표 Ⅲ-5-19>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교가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학생들은 66.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1/3 이상이 학교가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로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학생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 의미와 기능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 III-5-20>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66.7%,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이 33.3%로 앞의 질문에 대한 응답 반응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응답에서도 남녀 편차는 거의 없었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답변이 우세하였다.

표 III-5-20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가?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8.4	24.9	51.9	14.8	100.0(9,508)	
성별	남자	9.4	22.4	52.0	16.2	100.0(4,983)	16.886**
	여자	7.3	27.7	51.7	13.2	100.0(4,525)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	9.7	53.1	34.0	100.0(2,825)	14.1
	중학교	10.1	26.8	54.5	8.6	100.0(3,275)	
	일반계고	10.7	36.1	48.7	4.5	100.0(2,452)	
	특성화고	13.6	35.5	45.9	4.9	100.0(609)	
	자율고	10.3	34.9	48.4	6.4	100.0(255)	
	특목고	8.4	33.0	52.7	5.8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8.5	24.5	51.9	15.0	100.0(3,938)	138.31***
	중소도시	8.5	25.1	51.3	15.1	100.0(4,391)	
	읍면지역	7.4	25.9	53.9	12.8	100.0(1,179)	
학업 성적	상	7.2	21.6	49.2	22.0	100.0(2,848)	465.651***
	중	6.6	22.0	56.6	14.9	100.0(3,995)	
	하	12.4	33.0	47.7	6.9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6.8	20.5	51.7	21.1	100.0(4,309)	309.02***
	중	7.8	25.4	55.7	11.1	100.0(3,530)	
	하	13.9	35.4	44.4	6.4	100.0(1,655)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학교가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5-21>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72.7%,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이 27.3%로 앞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 반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서도 남녀 편차는 크지 않았으며, 역시 상급학교로 갈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답변이 우세하였다. 지역에

다른 응답의 편차는 앞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수준과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났고, 역시 앞의 질문들의 응답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인 응답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21 학교가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가?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1	20.2	56.5	16.2	100.0(9,506)	
성별	남자	8.2	19.6	55.0	17.2	100.0(4,983)	194.16***
	여자	6.0	20.8	58.1	15.2	100.0(4,523)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	10.9	53.2	33.0	100.0(2,823)	419.294***
	중학교	8.7	22.9	58.0	10.4	100.0(3,275)	
	일반계고	8.7	24.2	59.4	7.8	100.0(2,452)	
	특성화고	12.1	28.8	51.4	7.8	100.0(609)	
	자율고	7.1	25.5	58.8	8.6	100.0(255)	
	특목고	5.6	26.6	55.2	12.6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7.0	19.5	56.6	16.9	100.0(3,937)	42.642**
	중소도시	7.1	20.5	55.8	16.6	100.0(4,391)	
	읍면지역	7.5	21.1	58.6	12.8	100.0(1,178)	
학업 성적	상	6.4	17.1	51.8	24.7	100.0(2,848)	22.1
	중	5.3	18.0	61.0	15.7	100.0(3,992)	
	하	10.7	26.7	54.7	7.9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6.1	16.2	55.1	22.6	100.0(4,307)	227.859***
	중	6.1	21.8	59.9	12.2	100.0(3,530)	
	하	11.7	26.8	52.9	8.6	100.0(1,655)	

* p<0.05, ** p<0.01, *** p<0.001

학교가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아래의 <표 III-5-22>와 같은 결과로 응답을 하였다.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86.9%,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이 23.1%로 앞의 질문들에 비해 긍정적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서도 남녀 편차는 거의 없었다. 앞의 응답과 유사하게 상급학교로 갈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에 따른 응답의 편차는 거의 없었으나, 특이한 점은 앞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보다 일반계

고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일반계고, 자율고, 특목고보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성화고가 미래 직업과 직접 연관이 있고, 자신의 사회생활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교과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III-5-22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3	15.9	56.3	20.5	100.0(9,503)	
성별	남자	7.8	14.5	55.7	22.0	100.0(4,981)	111.843***
	여자	6.7	17.5	57.0	18.8	100.0(4,522)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2.3	7.6	48.4	41.6	100.0(2,822)	68.914***
	중학교	8.4	16.7	61.0	13.8	100.0(3,273)	
	일반계고	10.8	23.7	57.2	8.4	100.0(2,452)	
	특성화고	8.7	16.6	62.3	12.4	100.0(609)	
	자율고 특목고	10.7 9.5	21.2 18.1	58.4 60.6	9.7 11.9	100.0(255)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7.3	15.5	55.9	21.3	100.0(3,934)	333.421***
	중소도시	7.5	16.4	55.6	20.5	100.0(4,390)	
	읍면지역	6.8	15.6	60.1	17.5	100.0(1,179)	
학업 성적	상	6.1	14.1	51.2	28.6	100.0(2,846)	547.098***
	중	5.5	14.8	58.8	20.9	100.0(3,991)	
	하	11.4	19.5	58.0	11.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6.0	14.7	52.7	26.6	100.0(4,306)	421.74***
	중	6.8	15.1	61.1	16.9	100.0(3,528)	
	하	11.7	20.6	55.6	12.1	100.0(1,655)	

* p<0.05, ** p<0.01, *** p<0.001

②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가. 인권교육 경험

이 지표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다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인권에 관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존중하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지표이다.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9,298명의 응답자에게

직접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인권교육을 받았는가에 관하여 물었다. 응답의 결과는 아래의 <표 III-5-2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5.6%로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권교육 실태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수치이다. 1회의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18.6%이고, 5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7.4%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경험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권교육의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다. 한편, 응답자의 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권교육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가 성적이 낮은 집단인 특성화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은 특목고가 대학입학 시험에만 몰입하는 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표 III-5-24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 경험

(단위 :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적 없음	전체(N)	χ^2
전체		18.6	15.7	10.4	2.3	7.4	45.6	100.0(9,298)	
성별	남자	18.5	16.0	9.8	2.1	7.2	46.3	100.0(4,860)	596.92 ***
	여자	18.8	15.3	11.0	2.4	7.7	44.7	100.0(4,438)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18.9	18.2	14.7	4.2	12.6	31.5	100.0(2,765)	1035.79 5 ***
	중학교	18.4	14.6	10.8	1.6	6.0	48.5	100.0(3,178)	
	일반계고	18.7	14.7	6.4	1.2	4.2	54.7	100.0(2,419)	
	특성화고	18.6	16.2	7.4	1.8	5.4	50.5	100.0(590)	
	자율고	16.3	14.0	6.2	1.0	6.2	56.2	100.0(254)	
	특목고	20.8	7.2	5.0	0.0	3.5	63.4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19.3	15.6	10.1	2.3	7.1	45.6	100.0(3,865)	484.989 ***
	중소도시	18.1	15.8	11.1	2.2	7.8	45.0	100.0(4,288)	
	읍면지역	18.3	15.6	8.8	2.2	7.5	47.7	100.0(1,146)	
학업 성적	상	19.2	16.6	11.5	2.3	8.8	41.6	100.0(2,813)	513.455 ***
	중	17.7	16.3	10.7	2.6	8.1	44.6	100.0(3,912)	
	하	19.5	13.7	8.7	1.6	4.9	51.5	100.0(2,559)	
경제적 수준	상	19.0	16.5	11.5	2.5	9.2	41.3	100.0(4,227)	45.521 ***
	중	18.1	15.3	10.0	2.1	6.5	48.0	100.0(3,443)	
	하	18.9	14.4	8.6	1.9	5.0	51.3	100.0(1,618)	

* p<0.05, ** p<0.01, *** p<0.001

같은 실태조사에서 인권교육의 맥락에서 5,019명의 응답자에게 인권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이 70.1%가 나온 것은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응답결과이다. 반면에 약 30% 가까이가 인권교육을 받았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답변은 인권교육이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표 III-5-25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받은 다문화 이해교육 경험

(단위 :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적 없음	전체(N)	χ^2
전체		19.9	12.6	6.7	2.1	4.3	54.4	100.0(9,277)	
성별	남자	18.8	12.6	6.7	1.7	4.0	56.1	100.0(4,847)	1734.71***
	여자	21.1	12.6	6.7	2.6	4.6	52.5	100.0(4,430)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21.9	17.3	12.3	5.2	9.1	34.3	100.0(2,761)	213.445***
	중학교	20.0	11.5	5.9	1.1	3.0	58.5	100.0(3,164)	
	일반계고	18.7	10.3	3.2	0.3	1.5	66.0	100.0(2,418)	
	특성화고	18.7	8.2	1.9	1.2	1.3	68.7	100.0(588)	
	자율고	15.3	7.7	2.7	0.9	2.9	70.6	100.0(253)	
	특목고	8.5	8.7	4.1	1.6	2.0	75.1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20.2	13.5	7.1	2.2	5.4	51.7	100.0(3,858)	100.819***
	중소도시	19.6	12.2	6.7	2.1	3.6	55.7	100.0(4,278)	
	읍면지역	19.8	10.9	5.4	2.3	3.1	58.5	100.0(1,140)	
학업 성적	상	19.9	13.2	7.5	2.8	5.6	50.9	100.0(2,811)	28.288***
	중	19.8	13.3	7.4	2.1	4.6	52.8	100.0(3,903)	
	하	19.9	10.7	4.9	1.3	2.4	60.7	100.0(2,549)	
경제적 수준	상	19.4	14.4	8.5	2.9	5.3	49.5	100.0(4,223)	22.392**
	중	21.0	11.5	5.7	1.6	4.0	56.2	100.0(3,431)	
	하	18.9	10.2	4.1	1.4	2.2	63.2	100.0(1,612)	

* p<0.05, ** p<0.01, *** p<0.001

③ 다문화 및 자연환경 이해

가. 다문화 교육 현황

다문화 교육 현황에 대한 지표는 소수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지표이다. 이 지표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자칫 소외당하기 쉬운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인권보호가 필요한 시점에 시의 적절한 지표라 할 수 있다.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9,277명의 응답자에게 “최근 1년 동안 다문화 이해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를 물었을 때에 위의 <표 III-5-25>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응답결과가 있었다. 먼저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4.4%에 달했다. 1회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전체의 19.9%이었고, 5회 이상 받은 학생은 4.3%이었다. 성별의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경험 지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의 다문화 이해교육 경험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역시 대학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 몰입한 결과라 비판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실태조사에서 이 질문과 관련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의 경험이 있는 4,198명의 응답자에게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에 73.2%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26.8%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 정책제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중분류 된 교육의 목표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다문화 및 자연환경 이해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아동권리 협약의 교육목표와 관련된 28조, 29조를 기초로 분류된 것이다. 학교가 공교육제도의 중요한 기관으로 등장한 이래로 학교는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표를 세워서 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제도이자 실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아동의 권리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가 당사자들이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3 이상이 학교가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만 보더라도 한국의 이 시대에서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인 학교가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가와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20~30% 정도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10명중 3명 가까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고, 이는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분석해보면 결국 학교교육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다른 질문의 응답과는 달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의 기능과 의미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지식을,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식을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의미를 가져야 되는 데 한국의 학교들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학교의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인식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원하는 학생에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할 기회를 늘려주고, 일반계 고등학교 수를 줄이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특성화된 교과목의 전공을 고등교육과정에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폴리텍이나 전문대, 그리고 일반 4년제 대학의 고등교육과정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수되고 있는 과목들의 전공과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곧 바로 특성화된 과목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교육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찾아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인권존중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경험 정도, 학교 규율의 아동청소년 인권 반영 정도,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교원의 UN아동권리협약 준수 노력 정도의 지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로 나타나 한국의 인권교육 실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가 성적이 낮은

집단인 특성화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특목고가 대학입학 시험에만 몰입하는 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무적인 사실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련 지표에 따른 응답결과를 고려해서 정부는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학입시시험 준비로 오직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에만 몰입된 교육을 하고 인권교육과 같은 중요한 교육은 등한시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정에서 더욱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특목고라 해서 인권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학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목고에 대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 현황의 지표에 따라 조사된 결과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4.4%에 달한 것 역시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육적 초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 경험 지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의 다문화 이해교육 경험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역시 대학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 몰입한 결과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이 또 한 번 증명되었다.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어버린 한국의 사회에 대하여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는 큰 교육적 문제이자 장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전체의 교과과정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도입하고 수업시간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장차 한국의 엘리트들로 성장하게 될 특목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인권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면 장차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실제로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과 다문화 교육은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절대로 어떠한 교과과정에서도 소홀이 다루어져서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초등교과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지표의 현황

①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가.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할 시 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을 발간한다. 아래의 <표 III-5-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1년 현재 한국의 문화시설기반은 전국적으로 총 2,072개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786개, 등록된 박물관 수가 694개, 등록미술관은 154개, 문예회관은 209개, 지방문화원은 229개에 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일로에 있으며 6년 전인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문화시설이 확대되었다.

표 III-5-26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

연도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총계
2011	786	694	154	209	229	2072
2010	759	655	145	192	228	1979
2009	703	630	141	182	227	1883
2008	644	579	128	167	223	1741
2007	600	511	115	161	225	1612
2006	572	431	103	155	-	1261
2005	526	364	93	150	-	113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 14

지역별로 보면 아래의 <표 III-5-27>에서와 같이 경기도가 378개로 문화시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총 289개, 경북이 174개 순으로 많았다. 가장 문화시설이 적은 광역시는 울산으로

29개에 불과했으며, 문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광주도 42개에 불과하였고, 대전은 50개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지방이 64.3%로 차지했고, 수도권은 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7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분	시·도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총 계
지역1	서울	109	106	33	16	25	289
	부산	31	12	4	12	14	73
	대구	27	13	2	9	8	59
	인천	31	22	4	7	8	72
	광주	16	8	7	6	5	42
	대전	22	16	5	2	5	50
	울산	11	9		4	5	29
	경기	169	119	31	28	31	378
	강원	47	69	9	17	18	160
	충북	32	41	7	13	12	105
	충남	51	43	7	16	17	134
	전북	47	33	1	17	14	112
	전남	57	37	16	17	22	149
	경북	60	60	7	24	23	174
	경남	55	51	7	18	20	151
	제주	21	55	14	3	2	95
총계		786	694	154	209	229	2,072
지역2	수도권	309	247	68	51	64	739(35.6)
	지방	477	447	86	158	165	1333(64.3)
	계	786	694	154	209	229	2,072(1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 13

나.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이 지표는 국가가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권리를 향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도심지에 소재하며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주로 자연 속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규모가 수련관이나 수련원보다 작고, 도시 근린지역에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이 대표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이 이외에도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인 '청소년 특화시설'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인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있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2월에는 아래의 <표 III-5-28>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738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387)

표 III-5-28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1.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총계
계	176	215	176	43	121	7	738
공 공	172	210	41	26	13	7	469
민 간	4	5	135	17	108	0	269

* 출처 :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백서, p. 387

한편 전국의 시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아래의 <표 III-5-29>에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이 77개, 경남이 71개, 경북이 66개, 서울이 59개 순으로 많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9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며, 광주가 11개, 대구가 12개, 대전 13개 순으로 적게 설치가 되어있다. 광역시 단위에서 볼 때에는 역시 서울이 가장 많은 59개의 청소년수

련시설을 가지고 있고, 인천이 24개, 부산이 23개의 수련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만으로는 경기도보다 서울이 33개로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주로 자연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가 52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은 숙박할 수 있는 수련원이 2개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산과 해변이 많은 강원지역에 경기도의 40개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2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Ⅲ-5-29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1.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총 계
계	176	215	176	43	121	7	738
서울	33	16	2	0	3	5	59
부산	7	9	4	2	1	0	23
대구	5	5	1	0	1	0	12
인천	7	6	5	2	4	0	24
광주	5	4	1	0	1	0	11
대전	4	7	1	0	1	0	13
울산	1	6	2	0	0	0	9
경기	27	40	52	6	18	1	144
강원	14	26	14	5	18	0	77
충북	9	9	13	2	10	0	43
충남	7	11	13	3	12	0	46
전북	13	20	11	3	5	1	53
전남	12	11	10	6	5	0	44
경북	16	11	16	7	16	0	66
경남	13	15	26	4	13	0	71
제주	3	19	5	3	13	0	43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p. 388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써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이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 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2: 391~392)

다. 지역 내 문화 및 여가 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조사에서 9,491명의 응답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 시설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를 물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 III-5-30>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충분하다고 긍정적인 답을 한 학생들이 48.8%였고, 충분하지 않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은 41.2%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 차이는 응답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충분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2%에 달하나 중학생은 45.2%, 일반계 고등학생은 31%에 그쳤다. 성장이 많이 발달된 고학년들에게는 현존하는 여가 및 문화 시설 공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학생들은 반수가 여가 및 문화 시설 공간이 충분하다고 대답한 반면, 읍면지역의 응답학생들은 39% 정도만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읍면지역에는 시설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큰 편차는 없었지만 대체로 성적이 낮거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이 여가 및 문화 시설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0 여가 및 문화 시설 공간의 충분성

(단위 : %)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전체(N)	χ^2
전체		15.7	35.5	40.5	8.3	100.0(9,491)	
성별	남자	15.6	32.6	42.1	9.8	100.0(4,970)	4.1
	여자	15.8	38.9	38.7	6.6	100.0(4,521)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6.5	21.5	53.2	18.8	100.0(2,811)	8.7
	중학교	16.4	38.4	40.3	4.9	100.0(3,274)	
	일반계고	23.0	46.0	28.6	2.4	100.0(2,451)	
	특성화고	22.0	38.9	35.0	4.0	100.0(609)	
	자율고	20.1	43.5	32.1	4.4	100.0(254)	
	특목고	21.2	47.3	30.9	0.7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14.7	35.6	40.6	9.1	100.0(3,929)	14.1
	중소도시	14.9	34.6	42.0	8.4	100.0(4,388)	
	읍면지역	21.6	39.4	34.3	4.7	100.0(1,174)	
학업 성적	상	13.2	35.5	40.6	10.7	100.0(2,845)	5.6
	중	14.3	34.1	42.9	8.7	100.0(3,986)	
	하	20.4	37.8	36.7	5.0	100.0(2,643)	
경제적 수준	상	12.3	32.5	43.0	12.2	100.0(4,308)	10.9
	중	15.2	37.1	41.8	5.9	100.0(3,519)	
	하	25.2	40.5	31.1	3.2	100.0(1,651)	

* p<0.05, ** p<0.01, *** p<0.001

라.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지표는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아래의 <표 III-5-31>에서는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15~24세와 13~2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어떻게 여가를 활용하는가를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TV 및 DVD 시청이 평균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8% 정도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청소년도 30% 정도에 달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가 활용 방법은 대체로 활동이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스포츠 활동은 10%가 조금 넘고, 문화예술 관람이 16% 정도로 나타났으며, 여행은 6% 가까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과 여성은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에서 각각 20.3%와 2.3%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고, 문화예술 관람에서는 반대로 여성이 20.7%로 남성의 11.2%를 배정도 가까이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그룹이 TV 및 DVD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에서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큼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5-31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중복응답)

(단위 : %)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등	창작적 취미	자기개발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일
2009	57.3	6.7	16.5	10.2	47.7	5.6	18.5	7.8	5.6	33.2	33.5
2011	61.6	5.1	15.9	11.4	49.6	8.0	15.5	8.4	5.4	28.7	30.1
남자	58.2	4.9	11.2	20.3	58.7	6.0	15.6	7.6	2.6	25.3	23.2
여자	67.1	5.3	20.7	2.3	40.4	10.0	15.5	9.2	8.2	32.1	37.0
중학생	68.9	4.9	9.8	15.7	66.1	9.7	10.7	10.3	3.4	24.5	24.0
고등학생	61.2	3.1	12.4	12.9	56.7	9.5	22.1	8.4	2.6	26.4	24.9
대학생	57.5	5.4	21.7	10.3	40.9	6.4	17.8	8.6	5.3	28.7	36.3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p. 17

*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마.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이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여가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가를 묻는 지표로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여가활동을 할 권리가 일상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여부를 묻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3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이 지표와 관련하여 9,504명의 응답자에게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를 물었다. 응답의 결과는 아래의 <표 III-5-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시간 미만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9.7%로 근 30%에 가까웠다. 1~2시간 여가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30.8%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3시간 여가활동 응답이 17.6%, 3~4시간 여가활동을 하는 학생이 8.5%, 4~5 시간 여가활동은 5.7%, 그리고 5시간 이상 여가활동을 한다는 학생도 7.6%로 조사되었다.

표 III-5-32 평일 하루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

(단위 : %)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29.7	30.8	17.6	8.5	5.7	7.6	100.0(9,504)	
성별	남자	27.4	31.2	18.8	8.9	5.7	8.0	100.0(4,976)	81.534***
	여자	32.2	30.5	16.3	8.1	5.7	7.1	100.0(4,528)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22.5	26.8	19.8	11.6	8.2	11.2	100.0(2,824)	67.685***
	중학교	21.8	34.2	19.9	9.7	6.1	8.4	100.0(3,276)	
	일반계고	46.6	32.9	12.6	3.6	2.0	2.3	100.0(2,448)	
	특성화고	20.2	24.8	21.5	11.8	10.2	11.5	100.0(610)	
	자율고	61.5	26.5	6.6	3.0	1.1	1.3	100.0(255)	
	특목고	58.6	32.5	4.9	2.0	0.0	2.0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31.3	30.2	16.7	8.3	5.7	7.8	100.0(3,938)	6.6
	중소도시	27.7	31.3	18.6	8.8	5.7	7.9	100.0(4,388)	
	읍면지역	31.7	31.5	16.7	8.4	5.7	6.0	100.0(1,178)	
학업 성적	상	30.3	33.0	17.5	7.3	5.2	6.8	100.0(2,847)	21.63*
	중	28.9	30.9	18.1	9.3	5.9	6.9	100.0(3,996)	
	하	30.5	28.4	16.8	8.9	6.0	9.5	100.0(2,644)	
경제적 수준	상	28.7	32.2	18.0	8.3	5.7	7.1	100.0(4,309)	70.455***
	중	28.6	31.0	17.7	9.3	5.5	7.8	100.0(3,530)	
	하	34.6	27.0	16.2	7.8	6.2	8.3	100.0(1,652)	

* p<0.05, ** p<0.01, *** p<0.001

한편,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여가활동 시간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었고, 대체로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도 다른 지표와는 달리 눈에 띄는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휴일을 보내는 방법

휴일을 보내는 방법의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위의 질문과 달리 휴일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는 지표로 휴일에도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에서 전체 9,498명의 응답자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날(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골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응답을 물었다. 결과는 아래의 <표 Ⅲ-5-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친구와 놀기가 48.2%로 가장 응답자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TV시청이 46.6%, 게임이 43.4%, 집에서 휴식이 38.8%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공부가 이들 다음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응답의 결과이다.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낮게 응답한 활동은 쇼핑으로 4.6%이고, 여행이 5.1%로 다음으로 낮았다.

표 Ⅲ-5-33 휴일에 주로 하는 활동 (1+2+3 순위,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공부	독서	TV 시청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인터넷(정보 검색, 채팅, 이메일 등)	친구와 놀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등 취미활동	전체(N)
전체		23.5	8.6	46.6	43.4	17.5	48.2	18.6	100.0(9,498)
성별	남자	22.8	8.5	41.6	66.3	14.2	50.1	14.3	100.0(4,972)
	여자	24.2	8.7	52.0	18.2	21.1	46.1	23.2	100.0(4,526)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23.8	14.2	49.0	42.6	7.7	50.9	20.5	100.0(2,822)
	중학교	16.4	6.6	48.7	49.3	19.1	51.9	18.3	100.0(3,272)
	일반계고	33.8	5.9	42.3	37.1	24.4	40.7	17.2	100.0(2,448)
	특성화고	7.6	4.7	43.8	49.8	17.9	55.7	17.9	100.0(609)
	자율고	39.8	5.5	41.2	34.3	30.7	35.5	16.0	100.0(255)
	특목고	48.3	12.2	46.8	7.5	38.8	21.4	16.3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25.1	8.8	47.1	39.7	17.8	46.4	18.7	100.0(3,935)
	중소도시	22.9	8.6	46.0	46.7	16.1	49.8	18.3	100.0(4,387)
	읍면지역	20.0	7.5	46.9	43.5	21.7	48.1	19.0	100.0(1,176)
학업 성적	상	33.6	12.3	45.3	41.3	17.8	41.0	16.8	100.0(2,845)
	중	22.0	8.1	48.2	43.0	16.5	49.7	18.8	100.0(3,989)
	하	14.7	5.3	45.6	46.4	18.9	53.6	19.9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28.1	10.4	44.9	41.2	15.3	47.3	17.8	100.0(4,306)
	중	20.2	6.8	50.8	46.2	17.5	49.7	17.7	100.0(3,527)
	하	18.3	7.5	42.1	43.4	23.1	47.4	22.1	100.0(1,653)

구분		문화행사, 예술행사 관람(영화, 음악회, 운동 경기 등)	운동	휴대전화로 대화하기	쇼핑(인터넷 쇼핑 포함)	집에서 휴식	여행	기타	전체(N)
전체		9.1	17.4	14.2	4.6	38.8	5.1	3.1	100.0(9,498)
성별	남자	6.5	26.3	7.7	1.3	31.7	4.5	2.6	100.0(4,972)
	여자	12.0	7.7	21.4	8.2	46.7	5.7	3.5	100.0(4,526)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9.2	23.1	7.0	4.1	33.0	10.8	2.6	100.0(2,822)
	중학교	6.9	15.9	17.4	5.1	37.3	3.6	2.5	100.0(3,272)
	일반계고	11.4	13.5	17.1	4.6	46.0	1.6	2.9	100.0(2,448)
	특성화고	9.1	14.4	20.1	4.5	43.0	2.9	7.6	100.0(609)
	자율고	13.4	21.9	12.2	3.7	39.1	1.6	2.8	100.0(255)
	특목고	9.9	8.4	13.0	4.3	55.5	1.4	11.1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10.4	17.0	14.9	5.2	39.4	4.8	2.9	100.0(3,935)
	중소도시	8.2	18.2	13.5	4.2	37.4	5.7	3.2	100.0(4,387)
	읍면지역	8.3	15.7	14.8	4.2	42.4	3.7	3.0	100.0(1,176)
학업 성적	상	10.1	18.9	9.9	3.9	38.5	6.6	2.7	100.0(2,845)
	중	9.1	18.8	13.8	4.7	38.0	5.3	2.9	100.0(3,989)
	하	8.0	13.8	19.5	5.1	40.5	3.3	3.6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10.2	19.6	12.0	5.3	35.7	8.0	2.6	100.0(4,306)
	중	7.9	16.2	15.1	4.0	40.6	3.0	3.2	100.0(3,527)
	하	8.9	14.3	18.1	3.8	43.4	2.0	4.0	100.0(1,653)

한편, 응답의 내용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난 것은 게임에서 남성이 66.3%를 보인 반면, 여성은 18.2%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휴대전화로 대화하기에서도 남성은 7.7%로 낮은 편인데, 여성은 21.4%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운동에서는 남성이 26.3%인데 반해 여성은 7.7%로 낮게 나왔으며, 문화예술 행사 관람에서도 남성은 6.5%이고 여성은 12.0%로 배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크지 않은 편차를 보인 것은 친구와 놀기와 TV시청, 공부에서 비교적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집에서 휴식은 여성이 46.7%, 남성이 31.7%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주목할 점은 특목고 학생 응답자들은 가장 여가를 활용하는 내용이 집에서 휴식이 5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부가 48.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공부와 공부로 지친 심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려는 상태임을 응답결과에서 읽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인 특성화고 응답자들은 친구와 놀기가 55.7%로 가장 높았고, 공부는 7.1%로 아주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② 아동·청소년 활동

가.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에 참가하고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지표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활동하는 것은 심신의 발전에도 좋지만 특히 사회성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9,50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를 물었을 때에 응답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5-34>에서 볼 수 있다.

표 III-5-34 최근 1년 간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81.1	9.3	9.5	100.0(9,507)	
성별	남자	82.5	8.6	8.9	100.0(4,978)	8.0
	여자	79.6	10.2	10.2	100.0(4,530)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5	9.7	19.8	100.0(2,822)	14.5
	중학교	84.4	9.9	5.7	100.0(3,276)	
	일반계고	86.0	9.0	5.0	100.0(2,453)	
	특성화고	87.3	8.2	4.6	100.0(610)	
	자율고	91.3	4.9	3.8	100.0(255)	
	특목고	92.0	5.7	2.3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81.9	7.9	10.2	100.0(3,941)	3.1
	중소도시	82.4	8.6	9.0	100.0(4,391)	
	읍면지역	73.8	16.8	9.4	100.0(1,175)	
학업 성적	상	76.8	10.6	12.7	100.0(2,845)	7.578*
	중	80.9	9.5	9.6	100.0(3,996)	
	하	86.3	7.7	6.0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77.2	10.2	12.6	100.0(4,309)	5.1
	중	82.8	9.4	7.8	100.0(3,532)	
	하	88.0	6.8	5.2	100.0(1,654)	

* p<0.05, ** p<0.01, *** p<0.001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81.1%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응답학생은 9.5%에 불과하였다. 9.3%의 응답자는 가입은 하였지만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학생은 여성(24.2%)이 남성(17.5%)보다 많았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가입률은 떨어졌고, 특목고 학생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율은 가장 낮아 2.3%에 불과했다.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단체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표 III-5-35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단위 : %)

	참여자						
		친목 및 사교단 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기타
2009	27.4	63.5	24.5	36.9	19.9	11.8	2.4
2011	36.4	53.8	28.7	46.6	22.1	10.7	5.1
13~19세	32.4	39.9	32.6	47.9	29.5	8.6	4.2
20~24세	43.4	71.4	23.7	45.0	12.6	13.3	6.2
중학생	30.6	29.6	37.7	51.9	32.2	7.1	4.7
고등학생	31.9	35.9	33.7	47.0	32.7	8.2	3.6
대학생	45.6	65.5	23.6	46.6	17.7	16.7	5.3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p. 14

*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위의 <표 III-5-35>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입한 청소년단체의 성격과 참가율을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앞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13~19세 청소년의 청소년단체 참여율은 36.4%로 나타났다. 참가하는 청소년단체의 성격은 친목 및 사교단체가 53.8%로 가장 많았고,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가 46.6%로 두 번 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종교단체 28.7%, 시민사회단체 22.1%, 학술단체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앞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큰 차이는 없지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동아리활동 참가율

표 Ⅲ-5-36 최근 1년 간 취미나 문화 동아리 활동 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70.9	29.1	100.0(9,471)	
성별	남자	69.7	30.3	100.0(4,952)	5.5
	여자	72.2	27.8	100.0(4,519)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67.5	32.5	100.0(2,789)	14.3
	중학교	73.1	26.9	100.0(3,276)	
	일반계고	73.0	27.0	100.0(2,451)	
	특성화고	64.4	35.6	100.0(609)	
	자율고	76.0	24.0	100.0(255)	
	특목고	66.9	33.1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72.7	27.3	100.0(3,925)	3.7
	중소도시	67.4	32.6	100.0(4,373)	
	읍면지역	77.5	22.5	100.0(1,173)	
학업 성적	상	73.8	26.2	100.0(2,843)	15.699*
	중	69.9	30.1	100.0(3,967)	
	하	69.3	30.7	100.0(2,644)	
경제적 수준	상	72.7	27.3	100.0(4,287)	9.2
	중	68.9	31.1	100.0(3,517)	
	하	70.5	29.5	100.0(1,654)	

* p<0.05, ** p<0.01, *** p<0.001

동아리활동 참가율의 지표는 작은 규모의 청소년들의 활동모임으로 자치적인 성격이 강한 모임이라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역시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9,471명의 응답자들에게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를 물었을 때에 위의 <표 Ⅲ-5-3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70.1%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근 30% 가까이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성(72.2%)이 남성(69.7%)보다 동아리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단체에서의 참여율과는 달리 초등학생(67.5%)보다는 중학생(73.1%)과 고등학생(73.0%)들의 동아리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또래문화가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이한

조사결과는 자율고 학생(76.0%)들이 특성화고(64.4%)나 특목고(66.9%)보다 동아리활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

표 III-5-37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의 지지 여부

(단위 : %)

구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19.7	20.2	42.7	17.4	100.0(9,488)	
성별	남자	22.4	19.3	42.0	16.3	100.0(4,963)	16.679*
	여자	16.8	21.2	43.4	18.7	100.0(4,525)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	9.8	41.2	40.2	100.0(2,809)	10.9
	중학교	26.5	23.8	41.1	8.5	100.0(3,274)	
	일반계고	20.1	25.8	47.4	6.8	100.0(2,451)	
	특성화고	31.7	26.3	35.6	6.4	100.0(610)	
	자율고	19.7	21.0	48.6	10.7	100.0(255)	
	특목고	22.2	17.7	46.8	13.2	100.0(90)	
지역 규모	대도시	18.7	19.4	42.9	19.0	100.0(3,936)	12.4
	중소도시	20.9	20.5	42.1	16.6	100.0(4,375)	
	읍면지역	18.8	21.8	44.2	15.2	100.0(1,177)	
학업 성적	상	14.2	17.4	44.2	24.3	100.0(2,841)	14.9*
	중	16.9	19.5	45.4	18.2	100.0(3,987)	
	하	30.0	24.3	36.9	8.8	100.0(2,643)	
경제적 수준	상	14.7	17.1	43.9	24.3	100.0(4,299)	1.5
	중	22.1	22.5	42.1	13.3	100.0(3,522)	
	하	27.4	23.3	40.9	8.4	100.0(1,653)	

* p<0.05, ** p<0.01, *** p<0.001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정도에 관한 지표는 청소년의 활동할 권리가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지지받고 있는 가를 알아보려는 지표이다. 먼저 위의 <표 III-5-37>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9,488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이다. 조사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응답자 가정의 60.1%가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다섯 가정 중 두 가정에 해당하는 39.9%는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이어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비교의 결과에서는 성별에서는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여성(62.1%)이 남성(58.3%)보다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가정에서 조금 더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81.4%)의 청소년활동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가정에서 지지를 받는 반면 중학생(49.6%)이 고등학생(54.2%) 보다 가장 낮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학업성적이 높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이 청소년활동에의 참여에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38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참여에 대한 학교의 지지 여부

(단위 : %)

구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13.6	16.9	52.1	17.4	100.0(9,483)	
성별	남자	16.2	17.4	49.6	16.8	100.0(4,960)	12.824*
	여자	10.8	16.3	54.9	18.0	100.0(4,523)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	9.5	49.3	34.2	100.0(2,807)	18.066**
	중학교	16.9	18.4	53.8	10.9	100.0(3,269)	
	일반계고	14.8	22.1	54.1	9.0	100.0(2,451)	
	특성화고	20.9	21.6	46.9	10.6	100.0(610)	
	자율고	13.7	18.2	56.5	11.5	100.0(255)	
	특목고	19.9	15.1	46.5	18.5	100.0(91)	
지역 규모	대도시	12.7	16.5	51.6	19.2	100.0(3,930)	9.462**
	중소도시	14.9	17.5	51.6	16.0	100.0(4,378)	
	읍면지역	11.9	15.8	55.8	16.6	100.0(1,175)	
학업 성적	상	9.8	13.9	52.3	23.9	100.0(2,843)	4.7
	중	11.8	16.3	54.3	17.6	100.0(3,980)	
	하	20.5	20.8	48.7	9.9	100.0(2,642)	
경제적 수준	상	11.0	14.9	51.5	22.7	100.0(4,301)	8.7
	중	14.5	18.2	53.5	13.8	100.0(3,521)	
	하	18.5	19.2	50.9	11.3	100.0(1,648)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위의 <표 III-5-38>는 응답자 9,483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이다.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도가 가정에서의 경우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학교가 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지지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69.5%였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30.5%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여성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약간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나,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편차는 다른 경우보다 차이가 많지 않은 것도 특이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가 성적이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달리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고무적인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2) 정책제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으로 중분류된 지표체계는 다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아동청소년 활동,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 활동 권리로 소분류되어 각 분류에 지표들이 채택되었다. 먼저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채택된 지표들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는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총평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즉, 시설과 프로그램 및 지도자들이 충분히 양적, 질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그 무엇보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정적이고 부족한 인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녀가 가혹하다고 할 만큼의 한국의 학벌사회 속에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평생을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심정은 잘못되었다고 비판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청소년의 여가와 놀 권리,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이들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입학에 있어서 대학 간의 우열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통해 사회에 진입하여 학벌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고용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회체계의 변혁이 요구된다. 또, 정부가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고 교과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고, 독일과 같은 각 직업분야에서 마이스터(Meister)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그 위치에 걸 맞는 명예와 보수가 뒤따르도록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든 것이 바람직하다. 위기청소년들이나 다문화청소년과 같은 소수집단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 소외된 청소년집단은 향후 그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각종 비행과 문제를 야기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예방적 정책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며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정상적인 위치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재원으로는 이들을 최소한의 인권적 차원에서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2012년 청소년백서에는 이들을 위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상으로 이들의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용인 소재 청소년디딤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긍정적인 정서적, 심리적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디딤센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예산을 투입하여 최소한 광역시도에 하나씩 설치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최소한 전국 광역시·도부터 설립되어야 한다. 즉, 교육정책을 통해서도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늘려주어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에 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정책을 통해서도 이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권리의 기회균등 차원이나 치료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질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2011).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27262&gubun=KLAW>에서 2013년 5월 18일 인출.
- 구정우, 공석기, 박병진 (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미숙 (2011).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건·복지 Issue & Focus**, 106, 1-8.
- 김승권, 김인숙, 박동은, 이배근, 이용교, 이재연 외 공역 (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김영지, 김희진, 김진숙, 김진호, 안재희, 이경자 (2008). **국제기준대비 한국청소년 인권수준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연구보고 08-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홍, 윤덕경, 김영택, 주재선, 배호중, 김기곤 (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현미, 이호택, 이혜진, 신정희, 이연주 (2013).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뉴시스 (2013. 5. 10.).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15일 개막...112개 도시 498명 참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ticle&ar_id=NISX20130510_0012072856에서 2013년 5월 10일 인출.
- 류방란, 최윤선, 신희경, 이규재(2007).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고등학

- 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모상현, 김영지, 김영인, 이민희, 황옥경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V: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연구보고 10-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김영지, 김윤나, 이중섭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V: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연구보고 10-R1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김희진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V: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09-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오늘 (2013. 4. 14.). 찬반 논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3년새 20배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39>에서 2013년 4월 14일 인출.
- 박재민 (2010). **법무부 세미나 토론문. 제3회 난민 인권 워크숍 자료집: 난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 현황과 과제**, 1-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 https://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110&strAnsNo=A&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보건뉴스 (2013. 6. 4.). 유니베라, 아동친화경영 우수기업 뽑혀.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73489>에서 2013년 6월 4일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시사코리아저널 (2012. 12. 10.). 광주시, 세계적인 ‘민주·인권도시’ 위상 정립. <http://www.korea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에서 2012년 12월 10일 인출.

- 아시아경제 (2012. 4. 30.). 성북구, 전국 최초 어린이 친화도시 비전 선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3010574878496>에서
 2012년 4월 30일 인출.
- 안전행정부 (2013.5.30). 국민안전 종합대책 보도자료. 안전행정부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3775&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tPage=11> 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을 중심으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 (2013.5.30). 4대약 관련 국민안전종합대책 주요내용.
<http://www.yorhnews.co.kr/economy/2013/05/30/0301000000AKR20130530119100004.HTML?template=5565> 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 이민희(2009).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장근영, 김형주 (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Ⅱ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 07-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인권운동사랑방 (연도미상). 아동의 권리조약 해설. 미간행자료.
- 인권운동사랑방 (연도미상).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대한 이해. 미간행자료.
- 임희진, 김현신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김현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연구보고 12-R11).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병각 (2007).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최창욱, 박영균, 김진호, 임성택, 전성민 (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겨레 (2013. 5. 30.) 아동친화경영 모범기업 9곳 뽑았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9762.html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통계청(2013). 사교육비 조사. 서울: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0).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Conference edition). Vienn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
- (1991). 유엔아동권리협약 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 UNICEF (2007).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v. 3rd ed.). Geneva: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United Nations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1).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6).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6. 특별보호조치 실태 분석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 특별보호조치

(제22조, 제30조, 제32-36조, 제37조 (b)-(d),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1) 난민아동

(1) 지표의 현황

① 난민아동

가.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이 지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아동·청소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아동·청소년,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아동·청소년, 불인정 및 철회된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말한다. 법무부 요청자료에 의하면, 2013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5,580명이고, 이 중 난민 지위 인정자는 333명(6.0%), 인도적 체류자는 174명(3.1%), 불인정자는 2,507명(44.9%), 철회자는 1,075명(19.3%)으로 난민 지위 인정자 비율이 6.0%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해도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가 207명이고, 이 중 난민 지위 인정자는 52명(25.1%), 인도적 체류자는 27명(13.0%), 불인정자는 57명(27.5%), 철회자는 16명(7.7%)으로 난민 신청자 중 1/4 정도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면 38.1%에 이른다. 하지만 난민 불인정 아동·청소년과

철회된 아동·청소년 비율도 35.3%(73명)로 이들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는 2007년까지 10명 내외에 머무르다가 2008년 이후부터 20명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매해 30~40명씩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자의 수도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가장 많은 14명이었으며, 인도적 체류자 7명을 포함하면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3).

표 III-6-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4	0	0.0	148	2	11.1	18	0	0.0	1	0	0.0	12	0	0.0	10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06	7	2.5	278	0	0.0	11	0	0.0	13	2	1.9	108	0	0.0	46
2007	11	1.5	717	5	38.5	13	2	22.2	9	2	2.4	84	1	1.5	67
2008	20	5.5	364	8	22.2	36	0	0.0	14	1	1.3	75	0	0.0	117
2009	20	6.2	324	6	8.6	70	4	18.2	22	15	1.9	804	3	1.5	206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1	29	2.9	1,011	7	16.7	42	4	20.0	20	8	4.0	202	3	3.2	95
2012	38	3.3	1,143	14	23.3	60	7	22.6	31	9	2.0	454	3	1.4	211
2013. 6월	34	6.7	511	4	30.8	13	2	66.7	3	16	4.7	341	0	0.0	180
총합	207	3.7	5,580	52	15.6	333	27	15.5	174	57	2.3	2,507	16	1.5	1,075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요청자료(2013. 7. 18.)를 토대로 재구성

나. 탈북난민 아동 현황

이 지표는 북한을 탈출하여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한국에 입국한 아동을 말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탈북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구에서

현지 인터뷰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좋은벗들은 2006년에 탈북난민의 규모를 탈북자 10만명, 탈북 아동 5만명으로 추정하고,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에서도 탈북자의 규모를 10만명으로 추정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 통일연구원과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중국 동북 3성 내 체류 탈북자 수는 7,500명(최소 4,500~최대 10,500명), 탈북여성 출산 아동은 20,000명(최소 15,000명~최대 2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정현, 김수암, 손기웅, 이규창, 이금순, 임순희, 한동호, 2013: 387).

한편, 유엔난민기구의 「2012 세계 난민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말에 전세계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가 1,110명, 망명 신청 대기 중인 탈북자가 1,027명으로 2011년의 탈북 난민 인정자 1,052명, 망명 신청자 490명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망명 신청 국가는 캐나다(719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벨기에(109명) 등의 순이었다(한국일보, 2013. 6. 21일자).

또한 통일부 요청자료(통일부, 2013)에 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2013년 2월 현재 총 24,695명이며, 이중 남자가 7,600명, 여자가 17,095명으로 여자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입국자를 살펴보면, 입국자 총 24,695명 중에서 0~9세가 4.1%(1,022명), 10~19세가 11.7%(2,895명), 20~29세가 27.4%(6,76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6-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13.2 현재)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10	1,352	2,107	1,813	1,119	396	303	7,600
여	512	1,543	4,653	5,705	2,983	884	815	17,095
누계(명)	1,022	2,895	6,760	7,518	4,102	1,280	1,118	24,695

* 출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요청자료(2013. 7. 30.)

아동·청소년 연령대 입국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0~9세의 경우에 남자는 49.9%(510명), 여자는 50.1%(512명)로 비슷했으며, 10~19세의 경우에는 남자가 46.7%(1,352명), 여자가 53.3%(1,543명)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20~29세의 경우에는 남자가 31.2%(2,107명), 여자가 68.8%(4,653명)로

여자가 남자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북청소년의 연도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100명 미만의 청소년이 입국하였으나 2001년에는 124명이 입국하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2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매년 300명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표 III-6-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대상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입국자수)	148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2,706
6~20세 (입국자수)	22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656	306	501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다. 탈북 청소년 중도탈락률

이 지표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 중에서 학교부적응, 이민,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중도에 탈락한 학생의 비율을 말한다. 연도별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초등학생 3.5%, 중학생 12.9%, 고등학생 28.1%로 전체 재학생 687명 중 10.8%가 중도 탈락했으며, 2011년도에는 초등학생 2.5%, 중학생 4.4%, 고등학생 10.1%로 전체 재학생 1,417명 중 4.7%가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도에는 초등학생 2.6%, 중학생 3.8%, 고등학생 4.7%가 중도 탈락했으며, 전체 재학생 1,681명 중 3.3%가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탈북 청소년 중도탈락률은 2008년도에 매우 높았으나, 2008년 이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표 III-6-4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2. 4)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08년도	'07. 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1년도	'10. 4. 재학생 수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12년도	'11. 4. 재학생 수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생 수	27	11	18	56
	중도탈락률(%)	2.6	3.8	4.7	3.3

*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 연도별 재학생 총수) × 10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http://www.hub4u.or.kr> (검색일: 2013. 7. 30)

2012학년도 중도탈락자의 사유를 살펴보면,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43%로 가장 많았고, 장기결석 등(23%),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으로의 진로변경(21%), 학교부적응(9%), 행방불명(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중도 탈락은 2011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는 2배로 급증한 반면, 학교부적응 사유로 인한 중도 탈락은 2008년도에 28.3%에서 2009년에 33.9%, 그리고 2010년도에는 57.1%로 증가하다가 2011년도 이후(2011년 11.9%, 2012년 8.9%)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 정책제언

그동안 한국에서의 난민에 대한 정책은 1992년에 비준한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과 「난민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에 근거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 「난민법」 을 새롭게 제정(2012년 2월 10일) · 시행(2013년 7월 1일)하게 됨으로써 이법에 의해서 난민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난민법」 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과 「난민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난

민법 제1조),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제2장),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3장), 난민인정자들의 처우(제4장),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제5장 보칙 제4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인정자들의 처우는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제33조 교육의 보장),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제35조 학력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제36조 자격인정),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난민법」 제39조에서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등의 지원(제40조)과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의료지원(제42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제43조).

「난민법」은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출입국 관리의 차원에서 난민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것을 인권보호 관점에서 법을 마련하였고, 아시아 최초로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법을 만들어서 난민법 체계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신지원, 송영훈, 박가영, 신예진, 2012: 36-37).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과 집행 방식 및 내용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난민들의 정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송영훈, 이순복, 2012: 신지원 외, 2012: 40에서 재인용). 특히, 난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자아정체성 유지를 위한 모국어교육의 실시, 다문화학교나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난민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문화중개자의 양성, 그리고 난민 아동에 대한 오해와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일본 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폭넓은 민주시민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외, 2013: 130-131). 이밖에 난민인정 절차에서 특히,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반 없이 입국한 무연고아동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며, 출입국항과 구금시설에서 머무르는 경우에도 난민 아동의 개별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현미 외, 2013: 126-127).

한편, 탈북난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와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따라 각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로의 입국이나 해외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으로 인한 탈북자 및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위한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와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서 난민협약에 의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이기현, 2012: 136~137).

국내 체류 탈북자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보호신청(제7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제10조), 학력인정(제13조), 자격 인정(제14조), 직업훈련(제16조), 주거지원등(제20조), 정착금 등의 지급(제21조), 생활보호(제26조),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제26조의2), 생업지원(제26조의3)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탈북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초기 적응교육의 강화, 학교교육의 내실화, 학교 밖 교육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교육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및 탈북청소년 연구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하지만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보다 입국전 제3국에서의 교육경험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교사의 양성과 배치, 그리고 다양한 교재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향규, 2011: 207~210). 이밖에도 다문화관점에서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탈북청소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문희정, 2012: 162~163).

2) 소년사법의 운영

(1) 지표의 현황

① 소년사법의 운영

가.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지난 5년간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2008년에 5.5%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7년과 같은 수준인 4.4%(83,068명)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소년범죄자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09년의 소년법 개정으로 19세가 제외된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338).

표 III-6-5 소년범죄자 구성비

(단위 : 명, %)

연도	구분	소년범죄자	전체범죄자	구성 비율
2007		88,104	1,989,862	4.4
2008		134,992	2,472,897	5.5
2009		113,022	2,519,237	4.5
2010		89,776	1,954,331	4.6
2011		83,068	1,907,641	4.4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지난 5년간 발생한 청소년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절도, 횡령 등의 재산범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 교통사범, 강력범죄, 저작권법 위반 사범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의 경우에 청소년범죄자 83,068명 중 재산범죄는 45.7%, 폭력범죄는 26.8%, 교통사범은 13.9%, 강력범죄는 4.0%, 저작권법 위반범죄는 0.4%로,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흉악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강력범죄는 최근에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범죄 중

절도나 폭행·상해 등의 범죄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성폭력 등 강력범에 대한 대응 마련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은 2009년에 8,720명에서 2010년에는 275명으로 급감했으나, 2011년에는 318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표 III-6-6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88,104	134,992	113,022	89,776	83,068
강력범	소 계	1,928	3,016	3,182	3,106	3,289
	흉악범	1,094	1,427	1,608	999	1,268
	성폭력	834	1,589	1,574	2,107	2,021
폭력범	소 계	23,275	34,067	29,488	23,276	22,233
	공갈	562	1,046	1,495	1,422	1,509
	폭행·상해 등	22,713	33,021	27,993	21,854	20,724
재산범	소 계	33,659	39,688	45,774	40,478	37,978
	절도	28,839	33,073	38,494	33,534	31,380
	횡령 등	1,167	1,855	1,664	1,483	1,528
	장물	271	571	820	722	454
	사기	3,382	4,189	4,796	4,739	4,616
교통사범		21,893	27,666	18,138	13,842	11,523
저작권법 위반		2,338	20,272	7,720	275	318
기타		5,011	10,283	8,720	8,799	7,727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 주: 1) 흉악범 :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상해 등 : 폭행·상해의죄 + 폭력행위등처벌법(공갈죄 제외) + 기타

3) 횡령 등 : 횡령+배임+손괴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5) 2006년도 통계에는 특별법 위반 현황 중 저작권법 위반 관련통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청소년범죄의 처리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보호사건으로 결정내리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임희진, 김현신, 2011: 224). 청소년

범죄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현재 전체 소년범죄자 83,060명 중 5.6%(4,691명)만이 기소 유예되었으며, 불기소 55.7%(46,224명), 소년보호송치 36.8%(30,587명) 등으로 소년범죄자의 90% 이상을 형사사건보다는 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추세에서도 소년범죄자는 형사사건보다는 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비형사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서 소년보호송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비율은 2007년도에 11.8%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에는 5.6%까지 감소하였다. 비형사사건 중에서 기소유예 비율도 2007년도에 50.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에는 44.0%로 감소하였으나, 소년보호송치 비율은 2007년도에 24.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36.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표 III-6-7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기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참고인 증지	기소 증지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7	88,104 [100]	10,367 [11.8]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21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46 [0.0]	104 [0.1]	2,370 [1.8]
2009	133,022 [100]	7,795 [6.9]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86 [0.1]	1,535 [1.4]
2010	89,776 [100]	5,443 [6.1]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93 [0.1]	1,392 [1.6]
2011	83,060 [100]	4,691 [5.6]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86 [0.1]	1,455 [1.8]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법무부 훈령 제733호인 「선도보호지침」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 “범죄소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선도 보호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며(제4조), 선도방법은 상담, 서신, 전화 등을 통한 접촉선도와 범죄예방위원의 주거지나 복지시설에서 의, 식, 주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원호선도를 행하고 있다(제18조, 제19조). 선고기간은 재범가능성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데, “비교적 재범가능성이 높은 1급 유예소년은 1년, 비교적 낮은 2급 유예소년은 6월로 하고 3개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25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35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은 2011년에 소년범죄자 89,068명 중 1.5%(1,363명)로 지난 5년간을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수치는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 36,582명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적은 비율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는 반면,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교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소유예나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청소년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없다.

표 III-6-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소년범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원	비율
2007		88,104	6,610	7.5
2008		134,992	5,886	4.4
2009		113,022	7,104	6.3
2010		89,776	2,967	3.3
2011		89,068	1,363	1.5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 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법무부 훈령 제731호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제3조),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1년,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급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6월의 선도기간을 갖는다”(제4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해서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며”(제10조), “보호관찰관은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하고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대상은 소년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않고 전문적인 선도가 필요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353). 소년범죄 기소유예자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은 집계되고 있지 않는데, 전체 기소유예자 위탁 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자는 전체 기소유예자 353,564명의 1.4%인 4,950명이며, 2009년의 0.8%(3,807명) 이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표 III-6-9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7	262,823	5,258(2.0)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0.9)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0.8)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1.2)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1.4)	6,716	2,833	313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2)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 소년사법의 운영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처벌 위주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범죄소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에서도 처벌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는데 법 개정의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화해권고제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도입 등은 소년범죄자의 인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희철, 2008). 즉, 2007년 개정된 소년법 제17조의2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범죄소년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소년, 빈곤한 소년 등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여 소년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제25의 3에서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게 하고 있다”. 제49조의 3에서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년범죄의 발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의 축소, 법률에서의 회복적 사법 등 인권적 요소의 결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인권보장적 보호이념을 가지고 있는 회복적 소년사법에 대한 확대 실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하여 화해를 도모하는 일종의 갈등해결 절차로서 형사절차와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iers, 2001: 김은경, 2007: 1171에서 재인용).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 가해소년의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재범 방지, 가해소년의 책임수용 등을 목적으로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였으나(강경래, 2009: 257), 조정주체와 개시요건, 진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년의 건전육성, 적정절차의 보장 등의 가치를 고려하는 사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강경래, 2009: 262). 둘째, 소년경찰 전문화 교육, 법원소년부예의 청소년전담 조사원 배치 등 전문화를 통해서 소년사법이 사회방위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명숙, 2009: 271). 셋째, 청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변화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해 대응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소년범죄 중에서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폭력 범죄나 저작권법 위반사범 등의 범죄 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년사법에서 범죄소년의 인권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범죄소년들에게 소년보호 송치 비율보다 기소유예 처분 비율을 확대하고, 기소유예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교육조치가 이루어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보다 인권적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전 사법처리단계에 있는 모든 청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제도로 확대해야 한다”(이명숙, 2009: 271~272).

3) 자유를 빼앗긴 아동(어떤 형태의 구금, 수감 및 수용환경에의 조치를 포함)

(1) 지표의 현황

① 자유를 빼앗긴 아동(어떤 형태의 구금, 수감 및 수용환경에의 조치를 포함)

가.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소년법원의 비행소년에 대한 처분에 앞서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기간 수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36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의 과학적 분류를 위한 조직과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인권과 발달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년분류심사원은 “학문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류심사관을 두어”(제25조),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고 있다”(제24조). 또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처우에서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제5조). “소년분류심사위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건강진단과 위생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7조). 또한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하며”(제10조), “보호소년등이 그 처우에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제11조).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14조 3항에 의해서 법원소년부의 결정에 의하여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361). 2011년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수용된 신수용인원은 6,682명으로 1일 평균 456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 5,275명이 수용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은 2007년 대비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신수용인원	5,275	5,620	6,065	6,295	6,682
1일 평균수용인원	289	341	399	419	456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나. 보호소년의 수용 및 교육 현황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보호자등에 감호위탁하는 1호 처분에서부터 소년원에 장기 위탁하는 10호 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년원에서는 7호 처분에서부터 10호 처분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내의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말한다(여성가족부, 2012: 368).

2011년 현재, 보호시설 수용 인원 2,559명 중 7호 처분을 받아 의료보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7%(69명)이고, 8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1개월 이내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51.9%(1,329명), 9호 처분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단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5.2%(644명), 10호 처분을 받아 2년 이내에 장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0.2%(517명)으로 1개월 이내의 수용 청소년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년원에 단기 및 장기적으로 수용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1개월 미만 수용된 소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단위 : 명, (%))

연도 \ 기간	계	7호 (의료)	8호 (1개월)	9호 (단기)	10호 (장기)	평균수용기간 (개월)
2008 (‘08.6.22~)	2,526 (100)	66 (2.6)	895 (35.6)	783 (30.9)	782 (30.9)	6.9
2009	2,672 (100)	52 (2.0)	1,218 (45.6)	684 (25.6)	718 (26.8)	4.93
2010	2,755 (100)	56 (2.0)	1,339 (48.6)	771 (28.0)	589 (21.4)	5.1
2011	2,559 (100)	69 (2.7)	1,329 (51.9)	644 (25.2)	517 (20.2)	5.1

주 :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 과정을 10호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소년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송치된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기관으로”(「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 학생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소년원 학생 중 취업한 인원은 총 1,540명이고, 2011년 현재 소년원 학생 중 취업 인원은 261명으로, 2008년 339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표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취업인원	277	339	335	328	261	1,540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소년원 학생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현황은 2011년 현재 111명으로 전년도 108명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나 고등학교 진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교 진학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진학 상황을 비교해보아도 진학자 수가 낮은 편이며,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표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32	113	166	108	111
대학교	63	49	52	38	22
고등학교	69	64	114	70	89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다.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은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의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하고 있다. 또한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373). 2011년 현재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114명으로, 2007년 657명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은 2008년 6월 22일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만 19세 이상의 수용자가 성인교도소로 이송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374).

표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용인원	657	156	169	146	114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법무부(2012). 교정본부 통계자료

소년교도소의 학교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일반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은 3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40명으로, 2009년 이후로 동일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소년교도소 수용인원과 비교해보면 학교교육을 받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표 소년교도소 학교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교육인원(계)	60	85	75	75	75
일반학교교육	27	35	35	35	35
방송통신고 (졸업인원)	33 (16)	50 (8)	40 (6)	40 (13)	40 (13)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법무부(2012). 교정본부 통계자료

(2)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 등 자유가 박탈되어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호하고 있다. 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으로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발달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 등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 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호소년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성장발달이 처우의 가장 우선되는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호소년등의 이탈, 난동, 자해, 자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3),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면회나 서신교환, 가족등과의 전화통화 등을 허가하고”(제18조), 특히,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열할 수 없도록 하여”(제18조 5항) 보호시설의 운영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소년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보호소년등의 교육은 학교교육, 직업훈련교육,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통한 사회생활에의 원만한 적응”(제28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 입교는 곧 보호소년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보며”(제31조),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하며”(제31조),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다른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제32조). 또한 “소년원장은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제3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두도록 하여”(제35조) 보호소년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을 위한 정책은 인권의 보호와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호소년 수용시설의 환경과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보호소년등의 생활상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소년보호시설이 적정 인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공부나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소년 등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이유진, 2011: 130~131). 둘째, 구금을 최소화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안을 위한 각종 시설과 감호장비의 완화, 시설환경의 기술학교 형태로의 전환 등 모든 소년원의 처우를 개방하는

개방처우시설화가 필요하다(이유진, 2011: 131). 셋째,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 방안, 교과교육 및 인성교육 지도인력의 배치 및 외부인력 활용, 직업훈련직종의 다양화 및 직업훈련 교사 확충, 단기처분 교육과정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안선영, 2011: 10~11). 넷째, 국제적 기준인 자유박탈규칙 제35조에 부합하도록 알몸검사의 개선, 목욕시간의 확보, 지급 물품과 간식 및 운동의 양과 질의 개선, 두발에 대한 자율 결정권 부여 등 보호시설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이유진, 2011: 131). 다섯째, 보호소년 등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 청소년에 대한 욕설, 폭력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의 발표와는 다르게 수보호시설 청소년에 대한 폭력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보호시설이 인권을 침해하는 시설로서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있다. 시설에의 과밀수용으로 인해서 공격성이 높아진 데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이유진, 2011: 133), 폭력 및 체벌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4)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1) 지표의 현황

①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가. 청소년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이 지표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근로일수, 월평균 근로시간수, 하루평균 근로시간수를 살펴보았다. 2011년 현재 청소년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 남자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이 전체 남자 청소년근로자보다 많아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현재 19세 이하 청소년이 172.6시간, 20~24세 청소년이 187.9시간으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189.3시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평균 근로시간을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0~24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같은 8.5시간이며,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8.3시간으로 약간 낮으나 연소근로

자 법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표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 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2007	전 체	22.2	194.0	22.3	186.2	22.3	191.5
	19세 이하	23.1	204.4	22.3	198.4	22.6	200.2
	20~24세	23.0	205.8	22.1	186.8	22.4	193.0
2008	전 체	21.9	191.6	21.8	182.6	21.8	188.7
	19세 이하	21.0	176.8	22.2	192.0	21.7	185.6
	20~24세	22.3	204.6	21.7	181.3	21.9	188.9
2009	전 체	22.7	197.2	22.8	189.6	22.8	194.8
	19세 이하	21.2	186.9	21.2	179.9	21.2	182.1
	20~24세	22.7	205.9	22.6	188.5	22.6	193.9
2010	전 체	22.5	195.7	22.5	186.9	22.5	192.8
	19세 이하	19.7	165.4	19.9	162.2	19.8	163.5
	20~24세	22.6	200.3	22.4	184.9	22.5	189.9
2011	전 체	22.2	192.7	22.2	182.4	22.2	189.3
	19세 이하	20.3	172.6	20.9	172.6	20.7	172.6
	20~24세	22.4	200.0	22.0	181.5	22.1	187.9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아동·청소년백서

* 원자료 :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또한, 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20~24세 남자청소년의 경우에 전체 남자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회하여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19세 이하가 172.6시간이고, 20~24세 남자청소년이 200.0시간으로, 20~24세 남자청소년의 경우에 전체 남자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192.7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해서 살펴보면, 20~24세 남자청소년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9시간이고, 19세 이하 청소년이 8.5시간, 전체 남자근로자가 8.7시간으로 특히 20~24세 청소년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한편, 지난 5년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월평균 근로시간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200.2시간, 20~24세 청소년이 193.0시간, 전체근로자가 191.5시간으로, 19세 이하 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9세 이하 청소년이 172.6시간, 20~24세 청소년이 187.9시간, 전체근로자가 189.3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나.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이 지표는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근로자 대비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였다.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11년 현재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 126만 7천원이고 20~24세 청소년은 157만 5천원으로, 2010년 대비 19세 이하 청소년은 24.0%, 20~24세 청소년은 10.4% 증가하였다. 하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월평균 급여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수준과 비교해 보면, 2011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10만 2천원으로(고용노동부, 2011), 19세 이하 청소년은 전체근로자의 60.3%, 20~24세 청소년은 전체근로자의 74.9% 수준이었다.

표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임금수준		증감률	
	19세이하	20~24세	19세이하	20~24세
2006	1,167	1,285	10.2	7.1
2007	1,197	1,324	2.6	3.1
2008	1,166	1,377	-2.6	4.0
2009	1,106	1,381	-5.2	0.3
2010	1,022	1,427	-7.6	3.3
2011	1,267	1,575	24.0	10.4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1년도 청소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은 5,942원이고, 20~29세 청소년은 10,070원으로 청소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201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30세 이상 성인 임금수준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정규직은 8,232원, 비정규직은 5,292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4.3%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20~29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11,097원, 비정규직이 7,691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9.3%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용노동부, 2012).

표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	15,289	9,372(61.3)	13,769
19세 이하	8,232	5,292(64.3)	5,942
20~29세	11,097	7,691(69.3)	10,070
30~39세	15,521	11,014(71.0)	14,807
40~49세	17,865	10,415(58.3)	16,171
50~59세	16,672	10,014(60.1)	14,638
60세이상	11,292	8,464(75.0)	9,978

* 출처 : 고용노동부(2012. 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 주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다.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이 지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최저임금지급 불이행, 부당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경험률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2009년, 2011년 및 2013년에 본 연구원에서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산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펴보면, 2013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3%로, 2011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13.7%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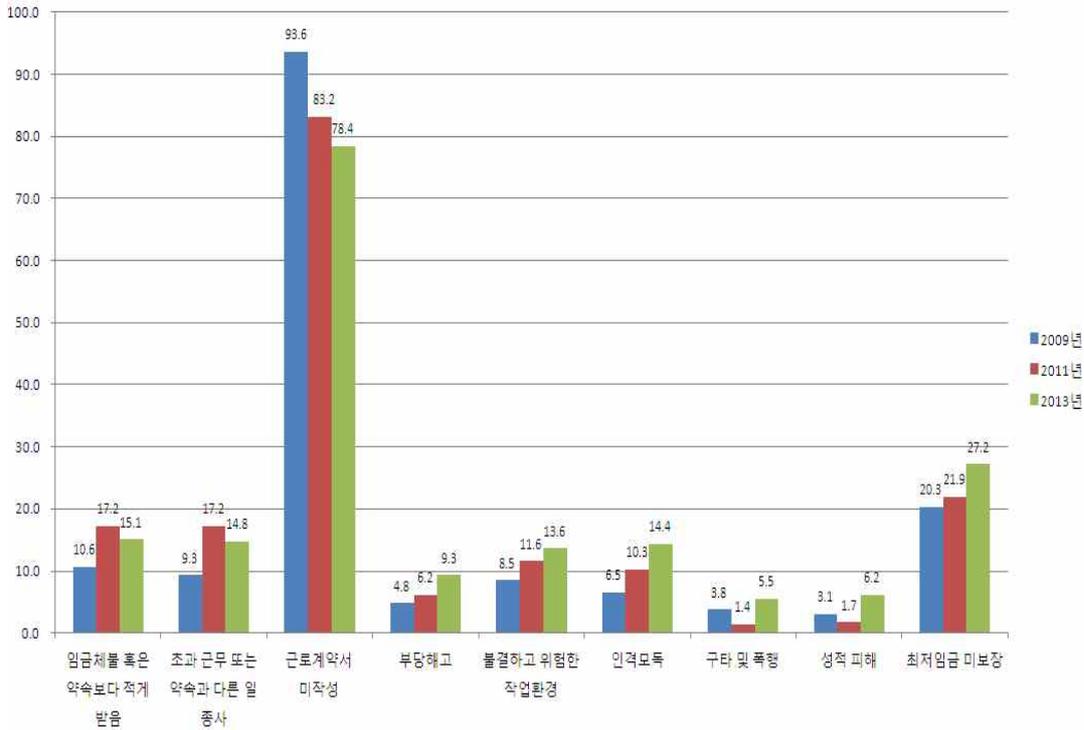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13.3	86.7	100.0(6,692)	
성별	남자	13.9	86.1	100.0(3,513)	383.691***
	여자	12.7	87.3	100.0(3,180)	
학교 유형	중학교	6.5	93.5	100.0(3,281)	717.706***
	일반계고/특목고 /자율고	15.2	84.8	100.0(2,801)	
	특성화고	41.1	58.9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12.2	87.8	100.0(2,784)	167.667***
	중소도시	13.4	86.6	100.0(3,027)	
	읍면지역	16.2	83.8	100.0(8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3	87.7	100.0(5,962)	506.741***
	한부모가정	20.5	79.5	100.0(572)	
	조손가정	37.9	62.1	100.0(46)	
	기타	21.6	78.4	100.0(100)	
학업 성적	상	7.3	92.7	100.0(1,744)	406.592***
	중	11.8	88.2	100.0(2,641)	
	하	19.5	80.5	100.0(2,298)	
경제적 수준	상	10.7	89.3	100.0(2,562)	202.493***
	중	12.3	87.7	100.0(2,635)	
	하	19.5	80.5	100.0(1,485)	

* p<0.05, ** p<0.01, *** p<0.001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13.9%)이 여학생(12.7%)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특성화 고등학생이 41.1%로 가장 많았고, 일반계 고등학생(15.2%), 중학생(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조손가정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37.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학생(20.5%), 양부모가정 학생(12.2%)으로, 양부모 가정 학생보다 조손가정 학생이나 한부모가정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성적은 성적이 하인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19.5%로 가장 많았고, 중인 학생은 11.8%, 상인 학생은 7.3%로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하인 경우가 19.5%로 가장 많았고, 중 12.3%, 상 10.7%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보장(27.2%),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5.1%), 초과 근무 또는 약속과 다른 일 종사(14.8%), 인격모독(14.4%),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한 경험(13.6%), 부당해고(9.3%), 성적 피해(6.2%), 구타 및 폭행(5.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1】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2009년, 2011년, 2013년의 3개년 동안 부당 처우 경험을 비교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당 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구타 및 폭행, 성적 피해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경험은 2009년에 6.5%에서 2013년 14.4%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구타 및 폭행 경험도 2009년 3.8%에서 2013년 5.5%로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성적 피해 경험도 2009년 3.1%에서 2013년 6.2%로 2배 증가하여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정책제언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근로자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²⁾.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2005; 이완영, 2008). 매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연소근로자 보호조항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334). 또한 청소년근로 관련 법령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교 교사 연수과정에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및 피해구제방법을 포함시키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며, 요식업,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업종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노동부 외, 2005; 이완영, 2008).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은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청소년교실 등을 활용하여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고용업종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과 청소년아르바이트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지도 등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12: 334). 청소년 근로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방법으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근로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및 사업장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홍보 팸플릿과 포스트 등을 배포하며,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교육용 CD를 제작·배포하고,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노동부 외, 2005; 이완영, 2008).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워크넷을 개설하여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 검사,

2) 청소년근로 보호 정책의 주 내용은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2005. 6. 20)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 대한 경제정책 해설인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마련”(이완영, 2008)과 「2012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12)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청소년직장체험, 진로와 직업 이러닝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연소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1318 알바신고센터를 도입하였다(노동부 외, 2005; 여성가족부, 2012). 이 밖에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비진학 청소년을 구분하여 비진학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18세 미만자(15세까지)의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의무제도를 보완하고 18세 미만자의 야업·휴일근로 인가 요건 및 절차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노동부외, 2005: 4).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 임금체불, 부당해고, 폭언 등 인격모독, 폭력 등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주의 법 위반과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는 다르게 그 시행과정이 철저하지 못했고, 청소년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 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에 집중되었던 것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시·도 행정단위 수준에서 시·군·구 등으로 확대하며, 점검대상 업소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김경준, 김희진, 성운숙, 2012: 172). 둘째, 청소년근로 관련법 점검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적발·시정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경준 외, 2012: 172). 셋째, 청소년들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청소년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경상, 김기현, 김가람, 2011: 173~174). 넷째, 청소년 근로시 발생하는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위급할 시 경찰서 등에 긴급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김경준 외, 2012: 171). 다섯째,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내용을 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이경상 외, 2011: 147). 여섯째, 불법해고,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 중에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청소년 근로자가 신속하게 신고하여 상담·치료 및 법적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간편신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경준 외, 2012: 171).

5) 성적착취, 학대 및 인신매매

(1) 지표의 현황

① 성적착취, 학대 및 인신매매

가.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 및 조치 현황

이 지표는 청소년성매매 행위자, 알선자, 청소년 등 청소년성매매에 가담된 자와 그들에 대한 구속 등의 조치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검거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때 2006년에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교육과정 이수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성매매 대상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한 대검찰청의 수사지침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성매매에 대한 단속 시행 여부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를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242).

2011년 기준으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006명으로, 이 중 성매매 행위자는 74.5%(1,494명), 성매매 업주 등 성매매 알선자는 8.1%(162명),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17.4%(350명)였다. 또한 검거된 대상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2.0%(41명)이고, 98.0%(1,965명)는 불구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매매 검거자에 대한 구속률은 2005년 15.2%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까지 낮아져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법제 제제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표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 및 조치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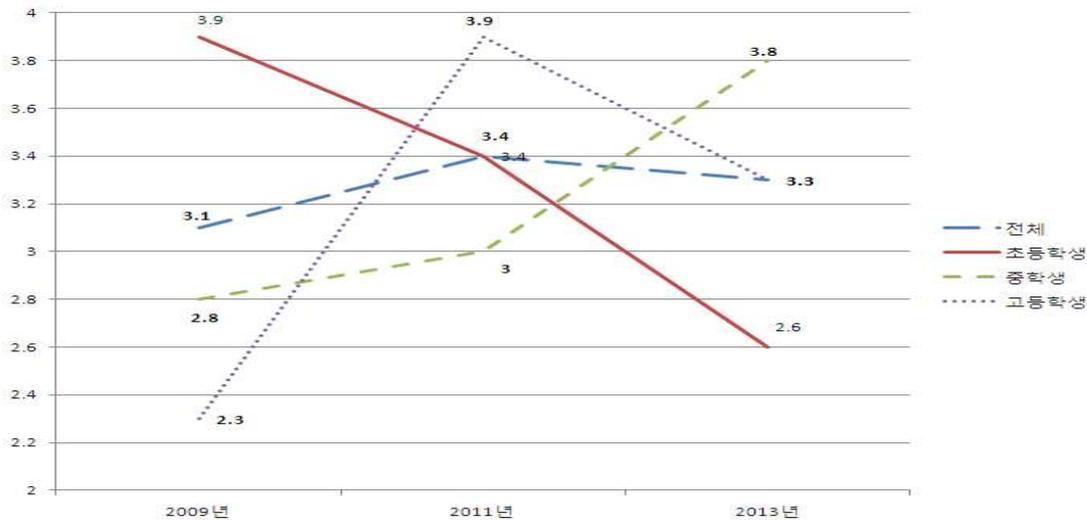
연 도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5	1,946	1,611	305	30	295(15.2)	1,651(84.8)
2006	1,745	1,502	183	60	149(8.5)	1,596(91.5)
2007	2,582	1,835	242	505	126(4.8)	2,456(95.1)
2008	2,112	1,464	196	452	81(3.8)	2,031(96.2)
2009	2,182	1,543	264	375	125(5.7)	2,057(94.3)
2010	1,345	972	164	209	56(4.1)	1,289(95.8)
2011	2,006	1,494	162	350	41(2.0)	1,965(98.0)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원자료 : 경찰청(2012). 행정통계

나.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이 지표는 청소년의 성희롱, 성추행, 강제적 성관계 피해 경험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을 2009년, 2011년, 2013년에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면, 2013년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3.3%로 2009년의 경험률(3.1%)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1년의 경험률(3.4%)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성적 피해 경험률과 증가율이 가장 높아, 중학생들의 성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피해 경험률이 2009년 3.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 2.6%까지 감소하였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3.8%까지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이 3.3%로 2011년의 경험률(3.9%)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의 경험률(2.3%)에 비해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2】 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 추이

한편,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3.7%)이 남학생(2.9%)보다 성적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3.8%), 일반계 고등학생(3.5%), 특성화 고등학생(2.8%), 초등학생(2.6%)의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학생(3.4%), 읍면지역 학생(3.3%), 중소도시 학생

(3.1%)의 순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 학생(7.2%), 한부모가정 학생(4.3%), 양부모가정 학생(3.1%)의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하(4.5%)인 학생들이 상(2.8%)이나 중(2.8%)인 학생보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하(5.4%)인 학생이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1년 동안의 성적인 피해 경험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3	96.7	100.0(9,498)	
성별	남자	2.9	97.1	100.0(4,979)	24.926**
	여자	3.7	96.3	100.0(4,5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2.6	97.4	100.0(2,817)	18.134**
	중학교	3.8	96.2	100.0(3,277)	
	일반계고/특목고/자율고	3.5	96.5	100.0(2,795)	
	특성화고	2.8	97.2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3.4	96.6	100.0(3,941)	36.662***
	중소도시	3.1	96.9	100.0(4,380)	
	읍면지역	3.3	96.7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	96.9	100.0(8,493)	31.409***
	한부모가정	4.3	95.7	100.0(757)	
	조손가정	7.2	92.8	100.0(80)	
	기타	4.5	95.5	100.0(152)	
학업 성적	상	2.8	97.2	100.0(2,848)	14.58*
	중	2.8	97.2	100.0(3,996)	
	하	4.5	95.5	100.0(2,641)	
경제적 수준	상	3.0	97.0	100.0(4,307)	16.142*
	중	2.7	97.3	100.0(3,530)	
	하	5.4	94.6	100.0(1,653)	

* p<0.05, ** p<0.01, *** p<0.001

성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피해 유형은 성희롱이 59.6%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32.6%, 그리고 강제적 성관계이 5.1%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다른 교급 유형에

비해 성희롱 비율(57.9%)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강제적 성관계 비율(7.7%)은 높았으며, 일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강제적 성관계 비율이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성적 피해 유형(복수응답)

(단위 : %, 명)

구분		성희롱	성추행	강제적 성관계	전체(N)
전체		62.6	34.2	5.4	100.0(309)
성별	남자	62.7	31.5	8.6	100.0(142)
	여자	62.5	36.5	2.6	100.0(166)
학교 유형	초등학교	57.9	34.4	7.7	100.0(72)
	중학교	68.9	30.6	3.6	100.0(124)
	일반계고/특목고/자율고	59.0	37.3	6.8	100.0(97)
	특성화고	56.3	43.7	0.0	100.0(16)
지역 규모	대도시	68.2	31.4	2.1	100.0(134)
	중소도시	61.2	34.6	7.6	100.0(135)
	읍면지역	48.4	42.7	8.9	100.0(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2.5	34.1	6.0	100.0(263)
	한부모가정	62.1	37.9	0.0	100.0(32)
	조손가정	84.7	15.3	0.0	100.0(6)
	기타	43.1	42.3	14.6	100.0(7)
학업 성적	상	58.4	36.6	7.7	100.0(80)
	중	65.3	34.5	1.3	100.0(111)
	하	63.6	31.7	7.8	100.0(117)
경제적 수준	상	66.3	29.8	6.4	100.0(125)
	중	64.7	32.9	5.0	100.0(96)
	하	55.1	42.0		100.0(88)

* p<0.05, ** p<0.01, *** p<0.001

성적 피해를 경험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은 친구가 3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11.8%), 선생님(6.5%), 인터넷(3.0%), 선배(2.4%)나 형제자매(2.4%) 등의 순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경우보다는 친구에게 알린 경우가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여학생들(34.5%)이 남학생들(31.6%)보다, 그리고 교급이 높을수록(초 29.1%,

중 31.7%, 일반고 37.9%, 특성화고 35.3%), 대도시(32.3%)나 중소도시(29.8%)보다 읍면지역(48.2%)에 거주할수록, 양부모가정(34.7%)이 한부모가정(27.2%)이나 조손가정(0.0%)보다, 학업 성적이 중간(36.7%)이나 상(35.6%)이 하(28.7%)인 경우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28.9%, 중 34.3%, 하 38.1%)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친구에게 알린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학생들(13.8%)이 남학생들(10.5%)보다, 그리고 초등학생(27.3%)이 중학생(8.5%)이나 고등학생(일반고 4.4%, 특성화고 18.3%)보다, 읍면지역(10.2%)보다 대도시(12.3%)나 중소도시(12.9%) 지역에 거주할수록, 양부모가정(12.5%)이 한부모가정(9.9%)이 조손가정(0.0%)보다, 성적이 낮을수록(상 8.5%, 중 12.2%, 하 15.1%),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11.5%)이나 하(7.7%)보다 중간(17.5%)인 경우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비율이 76.2%이며,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선배에게만 도움을 받았으며, 보호자나 친구 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는 사람

(단위 :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경찰	인터넷	기타	전체(N)	χ^2
전체		36.0	33.2	2.5	12.3	2.5	6.7	0.3	0.6	3.1	2.7	100.0(311)	
성별	남자	42.8	31.6	3.2	10.5	0.0	5.2	0.7	0.0	4.0	1.9	100.0(142)	293.559***
	여자	30.2	34.5	1.9	13.8	4.6	8.0	0.0	1.1	2.3	3.5	100.0(168)	
학교 유형	초등학교	22.9	29.1	1.3	27.3	1.2	15.5	1.3	0.0	1.3	0.0	100.0(75)	27.797***
	중학교	37.1	31.7	3.5	8.5	3.6	6.7	0.0	0.0	5.7	3.2	100.0(123)	
	일반계고/특목고/자율고	46.5	37.9	1.1	4.4	1.5	1.2	0.0	2.0	1.7	3.8	100.0(95)	
	특성화고	26.8	35.3	8.1	18.3	5.6	0.0	0.0	0.0	0.0	6.0	100.0(17)	
지역 규모	대도시	38.3	32.3	1.0	12.3	1.6	6.9	0.7	0.7	2.6	3.6	100.0(137)	94.853***
	중소도시	34.1	29.8	3.9	12.9	3.4	7.9	0.0	0.7	4.5	2.7	100.0(135)	
	읍면지역	34.5	48.2	2.6	10.2	2.5	2.1	0.0	0.0	0.0	0.0	100.0(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8	34.7	1.9	12.5	2.6	6.5	0.4	0.7	2.9	3.0	100.0(264)	132.194***
	한부모가정	37.2	27.2	3.6	9.9	2.9	11.1	0.0	0.0	6.2	1.8	100.0(34)	
	조손가정	76.2	0.0	23.8	0.0	0.0	0.0	0.0	0.0	0.0	0.0	100.0(6)	
	기타	32.6	36.7	0.0	30.8	0.0	0.0	0.0	0.0	0.0	0.0	100.0(7)	
학업 성적	상	32.3	35.6	0.0	8.5	3.0	9.8	0.0	0.0	3.2	7.6	100.0(80)	30.551***
	중	32.0	36.7	4.1	12.2	2.9	8.7	0.0	0.0	3.3	0.0	100.0(110)	
	하	42.4	28.7	2.7	15.1	1.8	1.9	0.8	1.6	2.9	2.1	100.0(120)	
경제적 수준	상	39.2	28.9	1.9	11.5	0.7	10.5	0.0	0.0	2.7	4.6	100.0(126)	29.752***
	중	29.7	34.3	2.9	17.5	5.9	6.8	0.0	0.0	2.3	0.6	100.0(97)	
	하	38.4	38.1	2.9	7.7	1.3	1.4	1.1	2.1	4.6	2.4	100.0(88)	

* p<0.05, ** p<0.01, *** p<0.001

다.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현황

이 지표는 심리·정서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지원, 수사·법적 지원 등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이다. 2011년도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건수는 73,938건으로 이 중 57.2%가 심리·정서적 지원이고, 의료지원 7.7%, 시설입소연계지원 1.5%, 수사·법적 지원 16.3%, 기타 지원 17.2%로 심리·정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설입소 연계 비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지원내용을 비교해보아도 심리·정서적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었다(여성가족부, 2011).

표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단위 : 건, %)

연 도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수사·법적 지원	기 타	계
2007년	38,031	5,001	727	15,288	7,673	66,720
	57.0	7.5	1.1	22.9	11.5	100%
2008년	40,803	3,773	638	10,416	10,663	66,293
	61.5	5.7	1.0	15.7	16.1	100%
2009년	36,367	3,750	925	8,510	9,868	59,420
	61.2	6.3	1.6	14.3	16.6	100%
2010년	41,941	5,419	1,350	13,205	12,187	74,102
	56.6	7.3	1.8	17.8	16.4	100%
2011년	42,290	5,724	1,138	12,043	12,743	73,938
	57.2	7.7	1.5	16.3	17.2	100%

* '04년 이후 운영실적 항목에서 「시설입소연계」 항목은 '쉼터',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입소률', 「기타」 항목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등 포함함.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한편, 성폭력 피해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입소자는 총 226명으로, 이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51.8%(117명)이며, 보다 자세하게는 7세 미만이 6.2%(14명), 7~13세가 6.6%(15명), 14~19세가 38.9%(88명)으로 14~19세가 가장 많았다. 또한 2011년도에 성매매 보호시설에 입소한 전체 장애인은 64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은 34.4%에 해당하였다.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08년 43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26명으로 48.3%나 감소하였다.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시설 입소도 2008년 이후에 감소하고 있는데, 2008년에 241명에서 2009년에 171명, 2010년에 160명, 2011년에는 11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1).

표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구 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 이상	계
2007년	전 체	23	38	150	144	355
		6.5	10.7	42.3	40.6	100%
	장애인	1	4	46	46	97
		1.0	4.2	47.4	47.4	100%
2008년	전 체	21	60	160	196	437
		4.8	13.7	36.6	44.9	100%
	장애인	0	12	51	49	112
		0	10.7	45.5	43.8	100%
2009년	전 체	13	33	125	141	312
		4.2	10.6	40.1	45.2	100%
	장애인	0	3	33	54	90
		0	3.3	36.7	60.0	100%
2010년	전 체	10	30	120	122	282
		3.5	10.6	42.6	43.3	100%
	장애인	0	5	29	56	90
		0	5.6	32.2	62.2	100%
2011년	전 체	14	15	88	109	226
		6.2	6.6	38.9	48.2	100%
	장애인	-	-	22	42	64
		-	-	34.4	65.6	100%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2) 정책제언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 강화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과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된다. 즉, 가해자 대상의 정책은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법적 처벌 강화 등이 있으며,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의 정책은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이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공개(고지)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행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적극적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은 당초 경찰서에서만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열람방식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 열람으로,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주민에게 우편 고지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245~24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를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제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및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2년 현재 총 449,430개소가 취업대상기관으로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³⁾.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친고죄가 없어져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를 처벌하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에도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하게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기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그리고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2년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16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도입하여 재범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다(서울신문, 2013. 06. 18일자; 김경준 외, 2012: 39).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여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였으며, 1366 긴급전화 등의 응급신고체계 구축, 의료지원, 법률지원, 취학·주거지원, 상담 및 보호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김경준 외, 2012: 39). 또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 상담·치료교육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와

3) 여성가족부 정보보호정책가이드(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1.jsp)(인출일: 2013. 8. 23.)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지원을 하고 있다⁴⁾.

이상에서 아동·청소년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법 제도적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형량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성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 범죄자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하게 되어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만 관심을 갖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서는 안된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 범죄 발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수사기관의 경쟁만을 부추키며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방문서비스 실시,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과 13-19세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문 시설 및 전문가 확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유진, 강지명, 윤옥경, 조윤오, 2012). 넷째, 사회에 부각되어 있지 않고 숨겨져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대응은 이슈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하여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는 보이지 않는 데에서 더욱 심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조사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 가출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아동·청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4) 여성가족부 성보호정책가이드(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1.jsp)(인출일: 2013. 8. 23.)

참 고 문 헌

- 강경래 (2009).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 연구, 17(1), 241-266.
- 고용노동부(2012. 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과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1). 201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과천: 고용노동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2). 2011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2. 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hub4u.or.kr> 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김경준, 김희진, 성운숙 (2012).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 김은경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18(3), 1159-1188.
- 김현미, 이호택, 이혜진, 신정희, 이연주 (2013).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2005. 6. 20).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과천 : 노동부 고용평등국 평등정책과.
- 대한민국정부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문희정 (2012). 다문화관점에서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2), 145~16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
https://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

- =110&strAnsNo=A&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법무부(2013. 7. 18).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요청자료.
서울신문(2013. 06. 18.), “성범죄자에 관용 없다” 처벌 대폭강화.
<http://www.seoul.co.kr//news/seoulPrint.php?id=20130618006014>에서 2013
년 7월 30일 인출
- 신지원, 송영훈, 박가영, 신예진 (2012).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
경기 : IOM 이민정책연구원.
- 안선영 (2011).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 NYPI Youth Report 13(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자료. 서울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여성가족부(2013). 성보호정책가이드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1.jsp
에서 2013년 8월 23일 인출.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 이기현(2012).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 21(2),
119~142.
- 이경상, 김기현, 김가람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서
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명숙 (2009). 비행청소년 교정보호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시스템 비교: 한국, 이
태리, 벨기에 소년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4), 239~278.
- 이유진 (2011).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서울 : 법무부·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이유진, 강지명, 윤옥경, 조윤오 (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완영 (2005).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마련, 나라경제 2005년 8

월호, 72-75.

이향규 (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희철 (2008). 개정 소년법의 소년사법의 효율성, 고려법학, 51(0), 327-346.

조정현, 김수암, 손기웅, 이규창, 이금순, 임순희, 한동호 (2013).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최병각 (2007).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2013. 7. 30.).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통일부 정착지원과 요청자료.

한국일보(2013. 6. 12.). 유엔 전세계 탈북 난민 1110명.

<http://news.hankooki.com/service/pront/Print.php?po=news.hankooki.com/1page/politics/201306/h2013062121004021000.htm> 2013년 7월 29일 인출.

난민법. 로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lawkorea.com>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소년보호선도지침(법무부 훈령 제733호). 법무부 홈페이지 <http://moj.go.kr>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법무부 훈령 제731호). 법무부 홈페이지 <http://moj.go.kr>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lawkorea.com>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로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lawkorea.com>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1).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토 론 문

이 승 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특별보호조치에 있어서 아동인권지표의 적정성

이 승 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인권에 대한 논의는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 20여년전부터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국가별로 5년마다 청소년인권이행상황을 국가이행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한국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부터 소년사법에 있어서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등을 통해 청소년인권에서 문제점들이 사회문제화되고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사법분야에서 청소년인권지표들을 개발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는 본 연구는 소년사법분야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유용한 연구가 되리라 기대가 된다.

본 연구의 내용 전반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내용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검찰의 범죄분석통계를 활용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설명하시면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소유예나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 선도위탁은 청소년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P.15)고 하셨는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하나, '보호관찰 선도위탁'의 경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호관찰 선도위탁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가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선도위주 교육들을 하고 있고, 소년법상 형사처분이 아닌 선도 및 교육 위주의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내 처우로서 보호관찰 선도위탁도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년사법의 정책대안(P.17)에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구체화노력, 소년관련분야 전문성 확보, 소년범죄 변화동향 분석,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등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이들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두 번째 대안에서 '법원소년부에서 청소년전담 조사원 배치'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소년조사관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치 자체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대안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하고 소년보호 송치비율을 줄이자고 제안하셨는데, '소년보호 송치'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소년의 선도과 교정교육을 위주로 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바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인권을 평가한다면 소년보호송치가 인권보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단계별로 대상소년에 대한 교육 및 제재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적 경미한 단계에서의 소년범이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한 교육이 적합하나, 강력소년범죄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통한 교육이 보다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학과교육 현황을 비교하였는데, 소년원에서 학과교육이 줄어든 것은 최근 보호처분 현황에서 비교적 긴 9·10호 처분의 비율이 줄어들고 초단기 8호처분(1개월 이내)이 보호관찰과 병합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년원에서 교육이 대부분 학교에 돌아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학과위주 교육이 아니라 특성화교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원 출원 이후에 학교에 돌아가더라도 학교의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교과교육 충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8호처분은 수용기간도 1개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규율강화를 위해 두발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귀 후 사회와의 단절감이 예상될 수 있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한 인권보장 노력들도 필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소년사법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의 보완을 요한다. 소년사법절차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고, 소년형사절차에서는 구속이,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절차와 관할의 이원화로 인해 형사처분으로 처리되었다가 다시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상태로

장기간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장기간 구금은 구속과 다름이 없어 소년에게 또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형사보상법상 형사소송절차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처분 결정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미결구금을 당한 소년의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년사법에서 미결구금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형사보상법상 불처분결정을 당한 소년에 대한 형사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워크숍

인 쇄 : 2013년 9월 26일

발 행 : 2013년 9월 26일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 이 재 연

인쇄처 : (주)계문사(02-725-5216)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재를 금함.
